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668-01

2017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11.

연구수행기관

연구책임자 김은정 (한양여자대학교)

공동연구원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조숙현 (법무법인 원)

허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가. 연구목적	3
나.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범위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범위	7
다. 연구절차	7
3. 선행연구 검토	12
가. 기존 연구의 한계	12
나. 검토	13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4
II .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및 관련법제	15
1. 국내체류 결혼이주민의 현황	17
가. 국내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17
2. 결혼이주민 체류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	19
가. 결혼이주민 체류의 헌법적 근거	19
나. 결혼이주민의 체류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	20
3.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국내법·제도	22
가.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보호정책	22
나.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법제의 체계 및 그 내용	29
다.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34

라. 결혼이주민 체류 관련 해외 제도	47
4.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및 결정례 분석	52
가.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52
나. 다누리콜센터 상담 현황 및 분석	62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여성 체류 관련 결정례 및 의견표명	64
5. 소결	68
가.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의 문제점	68
나.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70

Ⅲ. 결혼이주민 체류현황 실태조사 73

1. 조사개요	75
가. 조사목적	75
나. 조사절차	75
다. 조사방법	76
라. 조사항목	78
2. 조사결과	79
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9
나. 국내 입국 전후의 체류현황 및 실태	104
다. 가족구성 및 해체 과정에서의 체류현황 및 실태	121
라.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실태	148
마. 결혼이주민의 심리정서적 상태	156
3. 요약 및 시사점	159
가. 주요결과 요약	159
나. 시사점	161

IV.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조사 165

1. 조사개요	167
가. 조사대상	167
나. 조사절차	167
다. 조사방법	167
라. 조사항목	167
2. 조사결과	168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68
나. 결혼이주민의 체류관련 사항	174
다. 결혼이주민 관련 정부정책	185
3. 요약 및 시사점	199
가. 주요결과 요약	199
나. 시사점	200

V. 심층면접조사 203

1. 심층면접조사 개요	205
가. 조사대상 및 방법	205
나. 조사내용	205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5
2. 심층면접 조사결과	207
가. 결혼이주민	207
나.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218
3. 요약 및 시사점	228
가. 주요결과 요약	228
나. 시사점	229

Ⅵ. 결론 및 정책제언 231

1.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233
 - 가.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 필요 233
 - 나. 체류연장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절차상 어려움에 대한 대응 필요 235
 - 다. 결혼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 236
 - 라. 혼인단절/가정해체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237
 - 마. 정책대상자 및 행정서비스 수요자로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식전환 ... 238
2.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39
 - 가.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안 ... 239
 - 나.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개선안 247

참고문헌 251

부록 259

- 부록1. 결혼이주민 대상 설문조사지 261
- 부록2.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대상자 대상 설문조사지 276

표 목 차

<표 I -1> 1차 TFT 회의일정 및 참여자	9
<표 II -1> 외국인과의 혼인, 2000-2016	17
<표 II -2> 결혼이주민 현황_국적, 지역별, 성별	18
<표 II -3> 혼인귀화자, 2010-2016	18
<표 II -4> 현행법상 결혼이주민의 개념	24
<표 II -5>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30
<표 II -6> 2015년 의뢰내용별 현황	63
<표 II -7> 2016년 상담내용별 현황	63
<표 II -8> 연도별 상담내용 현황	64
<표 III-1> 결혼이주민 대상 설문조사 개요	75
<표 III-2> 결혼이주민 대상 설문조사 배포 주요기관	77
<표 III-3> 결혼이주민 대상 설문조사 _ 조사항목	78
<표 III-4> 조사대상자의 연령	79
<표 III-5> 조사대상자의 연령 _ 체류자격별	80
<표 III-6> 조사대상자의 출생국가	80
<표 III-7> 조사대상자의 출생국 _ 체류자격별	81
<표 III-8>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82
<표 III-9>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_ 체류자격별	82
<표 III-10>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83
<표 III-11> 조사대상자의 교육기간	84
<표 III-12>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_ 체류자격별	84
<표 III-13>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85
<표 III-14> 조사대상자의 세부 거주지역	85
<표 III-15>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_ 체류자격별	86
<표 III-16>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	87
<표 III-17>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 _ 체류자격별	88
<표 III-18>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88
<표 III-19>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_ 체류자격별	89
<표 III-20> 조사대상자의 현재 및 과거 직업 유무	90
<표 III-21> 조사대상자의 직업 유무 _ 체류자격별	91
<표 III-22>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	92

<표 III-23>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 _ 체류자격별	92
<표 III-24>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경제상태 인식	93
<표 III-25>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경제상태 인식 _ 체류자격별	94
<표 III-26> 조사대상자의 주거유형	95
<표 III-27> 조사대상자의 주거유형 _ 체류자격별	96
<표 III-28>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식	97
<표 III-29>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식 _ 체류자격별	97
<표 III-30>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활용수준	98
<표 III-31>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활용수준 _ 체류자격별	99
<표 III-32> 한국거주만족도	100
<표 III-33>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만족도 _ 체류자격별	101
<표 III-34>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만족도 _ 혼인상태별	102
<표 III-35> 조사대상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변화	102
<표 III-36> 조사대상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변화 _ 체류자격별	103
<표 III-37> 입국시/현재 체류자격 현황	105
<표 III-38> 체류연장 경험유무	106
<표 III-39> 체류연장 횟수	106
<표 III-40> 체류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복응답)	107
<표 III-41> 체류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_ 혼인상태별	108
<표 III-42> 체류연장과정에서 도움받은 곳 (중복응답)	108
<표 III-43> 체류연장과정에서 도움받은 곳 _ 혼인상태별	109
<표 III-44>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	110
<표 III-45> 영주 및 국적취득 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	110
<표 III-46>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 _ 체류자격별	110
<표 III-47> 혼인상태별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	111
<표 III-48> 조사대상자의 체류상태 현황	112
<표 III-49>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_ 체류연장 기한	113
<표 III-50>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_ 향후 체류자격 계획	113
<표 III-51>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_ 국적취득 미계획 이유	114
<표 III-52>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_ 국적취득요건 미비 요인	115
<표 III-53> 영주자격 체류자 _ 영주자격 취득 소요기간	116
<표 III-54> 영주자격 체류자 _ 영주자격 취득 시 어려움	117
<표 III-55> 영주자격 체류자 _ 영주자격 취득 시 도움받은 곳	118
<표 III-56> 혼인귀화자 _ 국적취득 소요기간	119

<표 III-57> 혼인귀화자 _ 국적취득 시 어려움	119
<표 III-58> 혼인귀화자 _ 국적취득 시 도움받은 곳	120
<표 III-59> 동거가족 수	121
<표 III-60> 동거가구원	122
<표 III-61> 자녀 수	122
<표 III-62> 자녀의 국적	122
<표 III-63> 자녀양육자 _ 양육권자 및 실제양육자	123
<표 III-64> 이혼 및 별거 고려 유무	123
<표 III-65> 혼인관계 유지 이유	124
<표 III-66> 가정폭력 경험유무 현황	125
<표 III-67> 가정폭력 현황 _ 체류자격별	127
<표 III-68>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심리 언어적 학대)	130
<표 III-69>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신체적 학대)	131
<표 III-70>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성적 학대)	132
<표 III-71>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건강상 불이익)	133
<표 III-72>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활동자유 구속)	134
<표 III-73>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고국과의 단절강요)	135
<표 III-74>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경제적 학대)	136
<표 III-75> 폭력발생시 도움 요청 여부 _ 혼인상태별	137
<표 III-76> 폭력발생시 도움을 요청한 곳 _ 혼인상태별	137
<표 III-77>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_ 혼인상태별	138
<표 III-78> 가정폭력 현황 _ 거주지역별	138
<표 III-79> 가정폭력시 도움요청 여부	141
<표 III-80> 폭력피해시 도움요청 여부 _ 거주지역별	141
<표 III-81> 가정폭력시 도움요청하지 않은 이유	142
<표 III-82> 가정폭력시 도움요청하지 않은 이유 _ 한국거주기간별	142
<표 III-83> 가정폭력시 도움요청한 대상	143
<표 III-84> 도움요청 후 가정폭력 해결여부	143
<표 III-85> 이혼/별거 사유	144
<표 III-86> 이혼/별거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시 어려움	145
<표 III-87> 면접교섭권 인지여부	146
<표 III-88> 면접교섭권 인지여부 _ 거주지역별	146
<표 III-89>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녀양육 여부	147
<표 III-90> 양육비 지원현황	147

<표 III-91>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147
<표 III-92> 결혼이주민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 인지여부	148
<표 III-93> 사회서비스 인지여부 _ 체류자격별	149
<표 III-94> 사회서비스 인지여부 _ 혼인상태별	149
<표 III-95> 결혼이주민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 인지여부 _ 거주기간별	150
<표 III-96> 주요 사회서비스 이용현황 _ 연령 및 거주기간별	150
<표 III-97> 결혼이주민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 이용현황 _ 기관별	151
<표 III-98> 결혼이주민을 위한 주요사회서비스 이용현황 _ 체류자격별	151
<표 III-99> 결혼이주민을 위한 정책욕구	152
<표 III-100> 결혼이주민을 위한 정책욕구 _ 체류자격별	153
<표 III-101> 결혼이주민을 위한 정책욕구 _ 혼인상태별	154
<표 III-102> 결혼이주민을 위한 정책욕구 _ 거주지역별	155
<표 III-103> 결혼이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	156
<표 III-104> 결혼이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 _ 연령별	157
<표 III-105> 결혼이주민 문화적응스트레스 _ 체류자격별	157
<표 III-106> 결혼이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 _ 혼인상태별	158
<표 III-107> 결혼이주민 문화적응 스트레스 _ 한국거주기간별	158
<표 IV-1> 조사대상 업무담당자 성별	168
<표 IV-2> 조사대상 업무담당자 연령	169
<표 IV-3> 조사대상 업무담당자의 근무기관	169
<표 IV-4> 조사대상 업무담당자의 재직기간	170
<표 IV-5> 결혼이주민 접촉빈도	171
<표 IV-6> 결혼이주민의 기관서비스(방문) 이유	172
<표 IV-7> 결혼이주민의 기관서비스 방문이유 _ 지원기관별	173
<표 IV-8>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1년 한정	174
<표 IV-9>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2) 체류기간 재량여부	175
<표 IV-10> 별거/이혼/배우자실종 시 입증서류 제출 필요성	176
<표 IV-11> 면접교섭권 행사 시 서류제출 필요	177
<표 IV-1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행정기관의 재량권에 대한 인식	178
<표 IV-13>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1)_ 품행단정	179
<표 IV-14>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2) _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	180
<표 IV-15>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3) _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통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요구	181

<표 IV-16>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4)_ 자녀유무, 귀책사유 관계없는 영주자격 신청 가능	182
<표 IV-17> 국적취득 요건 및 절차 난이도	183
<표 IV-18> 면접시험 2회 불합격 시 귀화불허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184
<표 IV-19>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의 필요성	185
<표 IV-20> 특정국가에 대한 프로그램 이수 의무 차별 여부	186
<표 IV-21>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	187
<표 IV-22> 조기적응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	188
<표 IV-23>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시간 확대	189
<표 IV-24>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190
<표 IV-25>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한국어 능력향상에 적합한지 여부	191
<표 IV-26>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에 적합한지 여부	192
<표 IV-27> 결혼이주민 프로그램 방향성(1)_ 빠른 한국문화 습득	193
<표 IV-28> 결혼이주민 대상 프로그램의 방향성(2)_ 고유문화 보존	194
<표 IV-29>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195
<표 IV-30>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 위협요인	196
<표 IV-31> 업무담당자의 정책수요 욕구	197
<표 V-1> 결혼이주민 연구참여자의 특성	206

그 립 목 차

<그림 I-1> 연구개요	11
<그림 III-1> 조사대상자의 연령	79
<그림 III-2> 조사대상자의 연령 _ 체류자격별	80
<그림 III-3> 조사대상자의 출생국가	81
<그림 III-4> 조사대상자의 출생국가	81
<그림 III-5>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82
<그림 III-6>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_ 체류자격별	83
<그림 III-7>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83
<그림 III-8> 조사대상자의 교육기간	84
<그림 III-9>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_ 체류자격별	84
<그림 III-10>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85
<그림 III-11> 조사대상자의 세부 거주지역	86
<그림 III-12>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_ 체류자격별	86
<그림 III-13>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	87
<그림 III-14>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 _ 체류자격별	88
<그림 III-15>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89
<그림 III-16>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_ 체류자격별	89
<그림 III-17> 조사대상자의 현재 및 과거 직업 유무	90
<그림 III-18> 조사대상자의 직업 유무 _ 체류자격별	91
<그림 III-19>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	92
<그림 III-20>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 _ 체류자격별	93
<그림 III-21>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경제상태 인식	94
<그림 III-22>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경제상태 인식 _ 체류자격별	94
<그림 III-23> 조사대상자의 주거유형	95
<그림 III-24> 조사대상자의 주거유형 _ 체류자격별	96
<그림 III-25>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식	97
<그림 III-26>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식 _ 체류자격별	98
<그림 III-27>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활용수준	99
<그림 III-28>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활용수준 _ 체류자격별	100
<그림 III-29> 한국거주만족도	100
<그림 III-30>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만족도 _ 체류자격별	101
<그림 III-31>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만족도 _ 혼인상태별	102

<그림 III-32> 조사대상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변화	103
<그림 III-33> 조사대상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변화 _ 체류자격별	104
<그림 III-34> 입국시/현재 체류자격 현황	105
<그림 III-35> 체류연장 경험유무	106
<그림 III-36> 체류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복응답)	107
<그림 III-37> 체류연장과정에서 도움받은 곳 (중복응답)	109
<그림 III-38>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 _ 체류자격별	110
<그림 III-39> 혼인상태별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	111
<그림 III-40> 조사대상자의 체류상태 현황	112
<그림 III-41>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_ 향후 체류자격 계획	114
<그림 III-42>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_ 국적취득 미계획 이유	115
<그림 III-43>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_ 국적취득요건 미비 요인	116
<그림 III-44> 영주자격 체류자 _ 영주자격 취득 시 어려움	117
<그림 III-45> 영주자격 체류자 _ 영주자격 취득 시 도움받은 곳	118
<그림 III-46> 혼인귀화자 _ 국적취득 시 어려움	120
<그림 III-47> 혼인귀화자 _ 국적취득 시 도움받은 곳	121
<그림 III-48> 이혼 및 별거 고려 유무	123
<그림 III-49> 혼인관계 유지 이유	124
<그림 III-50> 가정폭력 경험유무 현황	126
<그림 III-51>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심리 언어적 학대)	130
<그림 III-52>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신체적 학대)	131
<그림 III-53>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성적 학대)	132
<그림 III-54>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건강상 불이익)	133
<그림 III-55>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활동자유 구속)	134
<그림 III-56>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고국과의 단절강요)	135
<그림 III-57>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경제적 학대)	136
<그림 III-58> 가정폭력시 도움요청 여부	141
<그림 III-59> 이혼/별거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시 어려움	145
<그림 III-60> 면접교섭권 인지여부	146
<그림 III-61> 결혼이주민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 인지여부	148
<그림 III-62> 결혼이주민을 위한 정책욕구	153
<그림 III-63> 결혼이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	156
<그림 IV-1> 조사대상 업무담당자 성별	168
<그림 IV-2> 조사대상 업무담당자 연령	169

<그림 IV-3> 조사대상 업무담당자의 근무기관	170
<그림 IV-4> 조사대상 업무담당자의 재직기간	170
<그림 IV-5> 결혼이주민 접촉빈도	171
<그림 IV-6> 결혼이주민의 기관서비스(방문) 이유	172
<그림 IV-7> 결혼이주민의 기관서비스 방문이유 _ 지원기관별	173
<그림 IV-8>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1년 한정	174
<그림 IV-9>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2) 체류기간 재량여부	175
<그림 IV-10> 별거/이혼/배우자실종 시 입증서류 제출 필요성	176
<그림 IV-11> 면접교섭권 행사 시 서류제출 필요	177
<그림 IV-1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행정기관의 재량권에 대한 인식	178
<그림 IV-13>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1)_ 품행단정	179
<그림 IV-14>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2) _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	180
<그림 IV-15>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3) _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통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요구	181
<그림 IV-16>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4)_ 자녀유무, 귀책사유 관계없는 영주자격 신청 가능	182
<그림 IV-17> 국적취득 요건 및 절차 난이도	183
<그림 IV-18> '면접시험 2회 불합격 시 귀화불허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184
<그림 IV-19>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의 필요성	185
<그림 IV-20> 특정국가에 대한 프로그램 이수 의무 차별여부	186
<그림 IV-21>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	187
<그림 IV-22> 조기적응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	188
<그림 IV-23>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시간 확대	189
<그림 IV-24>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190
<그림 IV-25>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한국어 능력향상에 적합한지 여부	191
<그림 IV-26>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에 적합한지 여부 ..	192
<그림 IV-27> 결혼이주민 프로그램 방향성(1)_ 빠른 한국문화 습득	193
<그림 IV-28> 결혼이주민 대상 프로그램의 방향성(2)_ 고유문화 보존	194
<그림 IV-29>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195
<그림 IV-30>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 위협요인	196
<그림 IV-31> 업무담당자의 정책수요 욕구	198
<그림 VII-1> 국적업무처리기간 안내	241

연구요약

I.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목적

- 2016년 12월 기준으로 결혼비자(F-6)로 체류 중인 이주민(121,332명)과, 한국인과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 114,910명을 포함하면 전체 결혼이주민 수는 288,603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대다수(83%)를 차지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특히 2000년 초기 입국 이후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폭력피해, 국적 및 영주자격 취득과정에서의 어려움, 이혼 및 재혼과정에서의 체류자격 유지 위험, 자녀 국적취득 제한, 사회서비스 수혜 배제 등 안정적인 체류를 위협하는 여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등).
- 하지만 그간 이주민 관련 연구는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정책 역시 이민자의 취업 또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결혼이주민의 상황,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이주민의 경험과 인권실태를 주목하지 못하였다.
- 전체 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의 범주를 탈피한 결혼이주민에 대한 접근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놓인 결혼이주민의 체류 현황과 인권 실태를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시, 분석하고, 관련 국제규범의 내용과 선진제도를 검토하여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필요성

1) 결혼이주민의 폭력피해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69.1%가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성적 학대, 방임, 통제 등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누리콜센터 상담통계(2015)의 상담내용 분석을 살펴본 결과, 119,982건의 상담 중 한국 생활정보 제공이 28%, 부부 및 가족갈등 15%,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12%, 이혼문제 11%, 체류 및 국적 10% 등으로,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이 폭력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미등록 체류 결혼이주여성이 폭력피해를 경험할 경우,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사건종결 후 추방절차가 진행되므로, 체류가 불안정한 폭력 피해자는 추방의 두려움으로 인해 폭력피해 신고를 꺼려 인권침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 따라서 결혼이주민의 폭력 피해에 따른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결혼이주민의 불안정한 체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제도적 대응의 필요성

- 2016년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는 208,971명으로 전체 10.2%에 달하고, 2016년 1년 동안 결혼이민 비자에서만 1,433명이 미등록 체류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출입국외국인 통계연보, 2016년 12월 통계연보).
-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영주자격, 국적 취득 등의 권리는 한국인 가족에게 종속되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 출산 중심으로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귀화 전 결혼이주민이 체류와 이혼을 동시에 원할 경우, 미등록 체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결혼이주여성의 이혼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 그리하여 가정폭력 등 혼인피해 결혼이주민은 혼인이 단절된 이후에도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법무부, 2014), 이혼 후 불안정한 체류 지위로 인해 자녀양육권 혹은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한국이주여성인

권센터, 2016).

- 또한 혼인귀화자의 경우 국적취득을 위한 신청 조건(거주기간 2년)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심사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2017년 2월 법무부 국적처리 기간 안내 지침에 따르면, 혼인귀화자의 경우 국적취득시 10개월이 소요되며, 무자녀 혼인귀화자의 경우 18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혼인관계 파탄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국적취득이 어려워 불안정한 체류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한국인 자녀에 대한 등록권 보장 및 미등록·무국적 이주아동 보호 등 결혼이주민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의 필요성

- 2015년 기준 19세 이하 미등록 체류자는 6,2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와 보육, 교육 등의 기본적 권리보호에서 제외된 국내 무국적 이주아동은 현재 약 2만 명으로 추산된다(2015년 11월 4일 KBS ‘추적 60분’ 보도).
- 현재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출생 등록이 어렵거나 무국적 상태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미등록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거나 혼인관계 밖에서 외국인 여성이 출산한 경우 출생등록이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결혼이주민의 모성보호를 침해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결혼이주민의 경제활동 및 노동 환경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 모색의 필요성

- 최근 결혼이주민의 경우 여러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거주하거나 국내에서 혼인 또는 동거를 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고용허가제는 ‘노동시장 보충성의 원칙’외에도 ‘노동허가 불허’와 우리 사회의 정주화 방지의 측면에서 ‘가족동반 불허’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 ILO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외국인의 취업허가(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침적 권리로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할 권리이므로, 가족동반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 또한 김창연(2009)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결과 설문조사대상 165명 중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지켜진다”는 답변은 42명(25%)에 불과했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은 106명(64%)에 달하였다. 농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2013)의 조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27만원이었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19만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은 대부분 한 달 평균 약 2.1일 나타났고 월 30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자도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2013)의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10.7%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주여성 노동자의 경우 일터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 상태에 처하기 쉽다.
- 따라서 결혼이주민의 경제활동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에서 배제된 결혼이주민의 보호방안 검토의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 정의에 따르면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여,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결혼이주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UN의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2015. 6)”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다문화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외국인 간 또는 민족간 결합을 포함시켜 현재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사회보장 규정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경우, 외국인 특례 조항을 통해(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임신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서비스 수급자격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인 가족 중심 접근으로서 이혼, 사별 후 혼자된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 따라서 사회보장 지원체계 및 사회통합에 결혼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 및 확대를 위한 논의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6) 소결

- 앞서 살펴본 문제들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사실상 간과되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놓인 결혼이주민의 체류 현황과 인권 실태를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시, 분석하고, 관련 국제규범의 내용과 선진제도를 검토하여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가. 연구내용

1)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검토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내 체류 결혼이주민의 입국 과정에서부터 정착, 가족 구성 및 경제활동 등의 현황을 검토하고, 외국인등록증 신청, 체류기간연장신청, 국적취득 실태 및 현황 파악,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자료를 통해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정책의 추세와 한계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2) 국내외 법규 및 정책, 판례 분석

- 체류자격의 성격(헌법 기본권 또는 국제인권협약 상 근거), 체류와 관련된 해외 결혼이주민 법령 및 정책과 판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정책의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3)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 조사

- 국내 체류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가족관계, 자녀양육, 가족구성 및 해체 과정에서의 실태, 폭력피해 실태, 국내 체류 결혼이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4)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법제도 개선을 통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당사자 중심의 개인적 차원, 지역사회의 차원, 국가적 차원 등 단계별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함. 그리하여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연구범위

-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을 ‘결혼이민 비자(F-6) 등으로 국내 입국하거나 체류 중인 이주민’으로 정의하고 이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특히 결혼이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불안정한 체류여건에 대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여성이주민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 또한 결혼이주민의 입국 과정에서부터 정착, 가족 구성·해체 및 체류활동 등의 인권상황 전반을 검토함으로써 차별해소와 인권침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따라서 연구방법도 이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다. 연구절차

1) 결혼이주민 설문조사

- 조사대상은 국내 거주 결혼이주민이었으며, 2016년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의하면 결혼이주민의 수는 서울수도권 52.4%, 중부권 11.5%, 전라도권 12.3%, 경북권 10.8%, 경남권 13%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조사대상을 서울경기지역 600명, 그 외 지역 각각 100명씩 한정하여 하여 표집하였다.
- 설문조사는 총 1,061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14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95.6%). 이중 무응답 및 응답 누락 등 분석에 적절하지 다고 판단된 94

부를 제외하고 총 920명의 표본을 조사대상으로 확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7월부터~9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 설문대상자 선정은 다양한 이주여성 관련기관 및 다문화 관련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되 거주 지역, 연령, 국적취득 여부, 체류현황, 출신국 등의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결혼이주민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적 미취득 등 조사대상자의 결혼이주민의 다양한 상황과 체류 지위로 인해 대상자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주민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통한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다양한 조사대상자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 조사는 서베이(Survey)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국내 결혼이주민의 수가 많은 출신국인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등 5개 국어로 번역하여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내용이 정책 제언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문지 설계 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다. 1차 연구진 초안 작성 ⇒ 현장전문가 자문 ⇒ TFT 및 인권위 검토 ⇒ 설문지 수정을 위한 대상자 사전인터뷰(Pilot) 실시 ⇒ 설문지 재검토 및 수정 ⇒ 최종안 완성 ⇒ 인권위 확인 ⇒ 번역 및 감수 과정을 거쳐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 TFT 회의는 총 2회 실시되었다. 먼저 결혼이주민의 체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개발 및 점검을 위해 1차 TFT TEAM 회의를 실시하였다. 1차 TFT 회의에는 연구진과 TFT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가 참석하여 설문지를 검토하였다. 2차 TFT TEAM 회의에서는 완료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 결혼이주민 관련 현장 및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체류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및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 제도적 개선과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총 12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69부를 회수하였으며(54.3%), 무응답 등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2부를 제외한 총 67부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8월부터 10

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7개), 다누리콜센터(6개 지역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6개 지부) 등 결혼이주민 관련 기관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담당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회수율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설문조사 시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업무담당자 리스트를 확보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회수율 담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설문조사 진행하였다.
- 결혼이주민 대상 조사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내용이 정책 제언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문지 설계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였다. 1차 연구진 초안 작성 ⇒ 현장전문가 자문 ⇒ TFT 및 인권위 검토 ⇒ 설문지 수정을 위한 대상자 사전인터뷰(Pilot) 실시 ⇒ 설문지 재검토 및 수정 ⇒ 최종안 완성 ⇒ 인권위 확인의 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관련기관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3) 결혼이주민 및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담당자 심층면접조사

-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보다 심도깊은 연구를 위해 결혼이주민 당사자 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은 결혼이주민 15명,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 결혼이주민 심층면접 참여자는 총 15명이었으며, 이주관련 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 시에는 체류유형, 출신국가, 연령, 혼인상태 등 다양한 조건들을 포함하는 참여자를 선정하여 결혼이주민의 체류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심층면접 참여자는 총 10명이었으며, 민간기관 현장전문가와 공공기관 공무원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민간기관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련업무 담당자, 이주여성지원기관 업무담당자, 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이주여성쉼터 업무담당자,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미흡한 점은 연

구진이 추가적으로 서면을 통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은 출입국관리소 등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 형태로 진행하였다.

-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조사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참여자 전원에게 인터뷰에 대한 녹음과 녹취자료 활용, 참여자 익명처리 및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여 동의를 받았다.

3. 선행연구검토

가. 기존 연구의 한계

1) 성별 통계분석의 부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49,441명이고,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하나, 통계월보는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수치를 제공할 뿐 성별 통계분석은 행하지 않고 있다.
- 통계월보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비자에서는 여성이 83%(전체 121,332명 중 101,393명)로, 취업 관련 비자에서는 남성이 특정활동비자 92%(전체 21,498명 중 15,258명), 비전문취업비자 71%(전체 279,187명 중 24,078명)로 다수를 차지하여 현실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기초적인 통계자료에서조차 성별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여성이주민의 상황과 경험을 대변한 정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 정책형성과 정책결정과정의 토대가 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성별 분석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성이주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방향의 한계

- 국가의 연구나 정책은 주로 경제활성화를 염두에 둔 인재유치나 취업전선에 국한되어 있거나 전체 이주민 또는 가족단위로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다양한 결혼이주민이 겪는 특수한 경험이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2016년 중앙행정기관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방/통합/인권/안전 4개의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성이주민을 위하여 특화된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농업교육실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아동학대에 대한 진술조력인 지원,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담 검사·수사관 대상 전문화교육 실시’ 정도이며, 인권정책에 배정된 예산(655.21억원) 또한 ‘경제활성화 지원’에 배정된 예산(3,079.82억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정부가 이주민의 인권 특히 여성이주민의 인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접근방향(2015)’ 연구에서는 이주민 가족의 이주형태를 분석을 통해 불안정한 현실을 지적하며, ‘가족’의 생활안정, ‘유학생’의 정착유도 지원, ‘자녀’양육·교육 관련 지원, 이주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결혼이주민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3) 추상적인 차원의 논의 한계

- 결혼이주민 관련 연구에서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거나 추상적인 차원의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어 결혼이주민,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법무부의 ‘결혼이민 체류관리 개선연구(2014)’에 따르면 결혼이민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가령 이혼 문제, 결혼이주민의 자녀가 겪는 어려움, 국제결혼 중개에 관련된 법적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결론에 여러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연구는 ‘결혼이민가족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지’에만 집중하여 결혼이민가족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연구

(2009)’에서는 2009년 당시 이미 12만 명을 넘어선 결혼이주민, 그 중에서도 109,474명(87.5%)에 달하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규정과 정책을 검토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관련 법 개정, 지원 근거 명문화 등 법적 해결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인프라 구축 또는 협력체계 구축, 창업지원 등 다소 추상적인 해결책에만 머물러 있다.

- 그 밖에 결혼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해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그 해결방안을 ‘주체성 인정’, ‘문화이해’와 같은 철학적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거나, ‘문화적 시민권’과 같은 개념을 통해 담론중심으로 접근하여, 결혼이주민의 현실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검토

- 이와 같이 법적 제도화의 문제, 문화적·철학적 접근 역시 중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시도이나, 우리는 포괄적인 문제제기와 추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그간의 연구 및 정책은 주로 전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해 왔고 정부 정책도 주로 이주민의 취업 또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던 탓에 결혼이주민의 상황과 경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가 표면화되더라도 단편적인 문제제기 또는 추상적인 방안을 제시함에 그쳐 체류보장과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미흡하였다.
- 따라서 결혼이주민이 처한 현실을 젠더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체류연장, 간이귀화, 국적취득 현황, 인권침해 현황 및 구제현황 등 인권실태에 중점을 둔 연구로서, 이들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및 정책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 결혼이주민 인권가이드라인 제공 및 인권침해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 결혼이주민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류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결혼이주민의 차별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절차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

II. 결혼이주의 체류현황 및 관련법제

1. 국내체류 결혼이주민의 현황

가. 국내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49,441명으로,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외국인 중 여성은 932,235명으로 46%를 차지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87%가 아시아 지역 출신이다.(법무부.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12월호).
- 결혼이주민은 국제결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증가추세를 보이던 국제결혼이 1만건 이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했다. 2000년 7천건이 채 되지 않았던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5년뒤인 2005년에는 3만건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전체 국제결혼은 2만건 수준이며, 그 중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14,800건이다.
- 국제결혼의 증가로 늘어난 결혼이주민 수는 2016년 연말 기준 267,275명이다. 이중 비자 상태로 외국인 신분인 경우가 152,374명, 한국인과 결혼으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114,901명이다(법무부.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12월호).

2. 결혼이주민 체류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

가. 결혼이주민 체류의 헌법적 근거

(1)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결혼이주민

-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영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인권관련 법이 국내 거부 외국인에게까지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4. 12. 29. 자 93헌마120 결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같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들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자 99헌마494 결정, 2016. 3. 31. 자 2014헌마367 결정 등 다수)고 하여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2) 국제결혼 가족의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 결혼이주민의 경우 특히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로, 정착성이 매우 강하다. 이렇듯 정착성이 강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출입국관리법을 해석함에 있어 보호의 관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문중흠, 2016).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1헌마82 결정).
- 이중 ‘가족’은 부부 중 한 명이 우리 국민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인인 국제결혼의 경우도 포함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바, 한 가족 구성원이 특정 국가에 합법적으

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다른 가족이 그 국가에 입국하고 거주할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결합권이 혼인의 자유 중 특수한 형태로 보호된다(문중흠, 2016).

(3) 결혼이주민 체류보호의 필요

- 우리 헌법은 ‘혼인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부부 일방의 체류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혼인 유지 여부에 따라 체류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부부 상호간에 평등하고 서로의 존엄을 보장하는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도 없는 것이다.
- 결혼이주민은 근본적으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장결혼 등으로 인한 불법체류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엄격한 체류관리보다는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체류관리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김두년, 2013). 결혼이주민에 대한 엄격한 체류관리는 오히려 정상적인 결혼이주민의 존엄과 평등한 혼인생활의 유지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결혼이주민의 체류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

(1)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제2조는 제2항에서,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제9조는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

리를 부여”할 것, 그리고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ationality of Married Women) 제1조는 “자국민과 외국인사이의 혼인의 성립이나 해소, 혼인 중 부의 국적 변경이 자동적으로 처의 국적에 영향 끼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조는 “국민의 외국인 부인은 그녀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국적취득 절차를 통하여 남편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며, “자국민의 외국인 부인이 그녀의 요청에 따라 당연한 권리로서 남편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나 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Marilyn Achiron, 2005).

(4) 국제기구 권고

- (가)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2009)
 - 동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최종견해 제11항에서,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아직도 거주자격(F-2)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려”하며, “한국정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하기 위하여 한국인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그들이 받는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
- (나)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1)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7월 제49차 세션에서 심의된 대한민국의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1.7.)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귀화신청 접수의 전제조건이 되는 남편의 지원이 없을

경우, 또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당사국이 협약 제9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에 관한 모든 차별적인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하여 국적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기를 권고”하였다.

(다) UN인권이사회,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2014)

- UN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인 무투마 루티에레는 대한민국에서 1990년대에 국제결혼이 시작되어 2000년 결혼중개업자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결혼 중개업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내의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과 지원서비스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대부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적용된다는 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다문화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여 이주노동자 간의 가족이나 중국, 북한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동포가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이주민 가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그리하여 특별보고관은 동 보고서에서 i) 별거 또는 이혼의 경우, 결혼의 결과 또는 지속기간,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에게 체류의 안정성을 포함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 ii)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등 폭력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통지를 받고 재판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할 것, 그리고 폭력피해 여성들이 원할 경우 국내에 합법적으로 남아있을 권리를 부여할 것, iii)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하여 현재 법에 따른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3.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국내법·제도

가.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보호정책

- 결혼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2004년 보건복지부 주관의 ‘국제 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2005년 5월에는 ‘외국인 이주여성

자녀의 인권실태 및 차별개선 추진'이 대통령 지시과제로 지정되었으며(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다. 나아가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을 제정, 결혼이민자의 처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 또한 동법 제5조에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법무부장관의 의무로 하고 있는 바,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소관으로 2008년도부터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그 밖에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7개 부처의 장관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 2010년도부터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 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 지원강화' 등의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1) 결혼이주민의 개념과 법적 지위

- 국제결혼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려는 결혼이주민은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적법하게 체류하며 생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적법상의 귀화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결혼이주민의 개념은 이주민의 법적 지위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 결혼이주민을 포함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 관한 기본법은 2007. 5. 17. 제정되어 같은 해 7. 18.부터 시행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다. 동법은 제2조 제3호에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고 하여, 귀화허가를 받지 않은 결혼이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결혼이민자”를 사용하고 있다. 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귀화허가를 받기 전의 결혼이주민들이 체류를 보장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그들이 사회에 조기적응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이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는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

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2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모든 범위의 결혼이주민을 아울러 지원·보호하고 있다.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결혼의 형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아울러 '결혼이주민'으로 쓰고자 한다.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드러난 결혼이주민 보호정책

(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 2008년 확정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구성이 종래 단순기능 분야 종사자 중심에서 결혼이주민 등 활동유형별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주민 등의 국내 정착 이주민이 증가하고, 결혼이주민 자녀의 취학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강조하였다.
- 그러나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따라 과거 통제 관리 중심의 정책기조를 '전략적 개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한 것과는 달리, 결혼이주민에 관하여는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 강화', '결혼이민자 입국 후 생활실태 모니터링 강화(위장결혼 실태조사 및 기획수사' 등 통제 중심 정책(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이 계속되었다. 이는 위장결혼이나 브로커 등을 통한 결혼이민에서의 인권침해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동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의 귀화 허가시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적취득 시 이주민의 한국어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영주자격전치주의'의 도입을 검토하여 일정기간 영주자격으로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정책에 따라 2012. 8. 법무부는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조건으로 거주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3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함께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서 영주자격에 대한 심사기준을 신설하면서, '한국어 능력 등'을 추가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정책 및 입법예고안은 영주자격자에게 어떠한 시민적·사회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소라미, 2012)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오히려 F-6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동안 체류 연장시마다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 해태로 인해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가정폭력 피해 등에 노출되며, 게다가 국적법 개정 법률안은 결혼이주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해서 영주자격 심사와 귀화 심사를 이중으로 통과해야(소라미, 2012)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국민의 해외이주는 제외)’을 의미함을 밝히고 있다.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도 국제결혼 비자심사의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계속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결혼이민비자 발급요건에 의사소통 가능여부, 초청자의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가능 여부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동 요건이 신설되었다. 다른 한편 결혼이주민의 한국생활 초기적응 지원 방안으로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자녀 양육관련 정보제공’, 법무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및 취업 허용 추진’ 및 고용부, 여가부, 문화부의 ‘결혼이민자 맞춤형일자리 참여 확대’ 등의 정책이 설정되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한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6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성과로는 귀화신청자에 대한 자립능력 검증 강화를 위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마련과 결혼이주민의 자녀 양육 등 생활적응 지원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단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일반귀화에만 적용되고, 결혼이주민이 주로 해당되는 간이귀화에는 적용이 제외되었다.

(3) 체류자격과 체류보장 관련 법령의 변화

(가) 출입국관리법

①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신설

- 기존 시행령 [별표1]에는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이 거주(F-2)에 포함되어 난민, 외국투자가 등의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는데, 국내 결혼이주민의 급증으로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에 대해서 별도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구분하여 지원 및 관리하도록 하였다.
- 나아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나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허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체류기간 연장허가시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첨부을 삭제

- 기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는 결혼이주민이 거주(F-2)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연장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에 신원보증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원보증 제도가 실제로는 평등한 부부관계를 막고, 극단적으로는 가정폭력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신원보증서가 인질이 되어 피해여성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 이에 2011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요구가 헌법 제11조 및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신원보증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안진, 2013)하였고, 법무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 및 [별표5의2]에 규정되었던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시 신원보증서의 제출의무가 삭제되었다.

③ 결혼이민 목적의 사증발급 심사기준 강화

- 2013년 일부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제9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기준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기준은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등이다.

④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결혼이주민의 특칙조항 신설

- 한편,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제25조의2에 결혼이주민에 대한 특칙조항을 신설하여,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기간 만료 후에도 피해회복 등에 필요한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나) 국적법

① 간이귀화 대상의 확대

- 기존 국적법에서는 혼인 후 2년 이상의 동거기간만을 혼인귀화의 요건으로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남편의 가정 폭력, 학대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김두년, 2013) 결혼이주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2004년 개정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법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과 아동보호 차원에서 국적취득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박귀천·이유봉, 2012).

②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불행사 서약으로 대체

- 기존 국적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외

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다.

- 2010년 개정법은, 제10조 제2항 이하를 신설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중 간이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하였다(박귀천·이유봉, 2012). 그러나 간이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것은 제6조 제2항 1호, 2호 요건 해당자 즉, 귀화 당시 혼인상태인 결혼이주민으로 제한하여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나. 결혼이주민 체류 관련 법제의 체계 및 내용

1) 체류자격 관련

(1) 입국 및 체류자격 취득단계

- 결혼이주민이 결혼동거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이 있어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7조), 일정한 체류자격이 필요하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필요하며(법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의4)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심사·확인한 후 사증을 발급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이주민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2) 체류자격 유지 단계(기간연장, 자격변경)

가) 혼인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국민의 배우자, F-6-1)

- 결혼이주민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결혼이민(F-6) 사증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매년 배포하는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에 따르면 국민의 배우자(F-6-1)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초 체류허가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초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연장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단, 국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가 가능하다(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2017)).
-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제25조의2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주민은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위의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에 단기사증 소지자나 불법체류자 등은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며 출국 후 다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임신·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2017)).

나)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국민의 배우자, F-6-1)

- 혼인이 단절되지는 않았으나, 배우자와 별거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배우자의 실종으로 실종선고를 받기 전의 사람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2017)).

다)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민의 경우 (자녀 양육자, F-6-2)

- 자녀양육 사증(F-6-2)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최대 3년씩 체류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결혼이민 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통해 자녀양육 사증(F-6-2)을 발급받을 수 있다(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2017)).

라) 혼인이 단절된 경우 (혼인단절자, F-6-3)

-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인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또는 국민 배우자에게 실종선고가 된 경우,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에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은 특칙을 두어,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라도 그 외국인이 국민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관련 입증서류를 징구하여 F-6-3자격으로 1년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녀

양육(F-6-2)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 한편 결혼이민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중 과거 국민의 배우자(F-6-1, F-2-1 포함)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사람 중에,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혼인단절자(F-6-3)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령상 정함은 없으나,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에는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예: 국민의 귀책사유 없는 혼인단절 등)의 경우라도, 재산분할이나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게는 가사정리(F-1-6) 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여 주고 있다.

(다) 영주자격 취득 단계 (국적, 영주자격)

- 국민 또는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F-5)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8의3-나). 영주자격이란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하며,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김두년, 2013).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주민은 일반귀화보다 요건이 완화된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은 제6조 제2항에서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법무부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제2항은 증명자료로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이나 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나 출국사실증명원 등의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다.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1) 외국인으로서 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

- 국적취득 이후 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는 한국인의 그것과 동일하고, 이때 발생하는 인권보호 및 관련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은 국적취득 이전의, 불안정한 신분을 지닌 외국인으로서의 결혼이주민이다.
-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제10조 내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진다고 하므로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함으로써,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094. 12. 29. 선고 93헌마120 결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적극적 견해를 취하였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횟수 제한과 관련하여,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외국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결정).
-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 분야의 권리에 대하여는 타국과의 상호보증관계에 기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사회보장 및 보험 또는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경우는 국적 취득 이전의 외국인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다. 결혼이주민은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후 정주가 예상되는 지위를 갖는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의 양육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결혼이주민은 다른 외국인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기도 하나 반면에 결혼이주민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매우 종속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인 신분보장 및 체류자격의 유지를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과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한 지위는 국제결혼이라는 인신매매적 성격을 띠는 혼인성립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 한국에 거주하며 가정폭력 등 여러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됨에도 이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2)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와 관련 법률

(1) 혼인성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결혼이주민의 경우 인권침해의 시작은 인신매매적 결혼중개이다. 무엇보다 국제결혼의 중개영업이 정상적인 결혼중개행위가 되려면 양당사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내용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기도 한다.
- 결혼중개업체의 알선 및 중개에 의한 국제결혼은 그 과정 자체가 매매의 성격을 띤다. 대개 현지의 결혼브로커들은 한국 중개업체의 파트너 형식으로 현지에서 결혼희망자를 한 곳에 모아 집단숙식을 시킨다. 모집 과정에서 현지 가족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혹은 결혼 성립 후 일정금액을 약속하기도 한다.
- 결혼중개업체들은 한국인 남편들에게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본국민이 모이는 곳에 보내지 않기, 컴퓨터 배우지 못하게 하기, 아이 낳을 때까지 외출 금지하기, 여권 등 신분증을 당사자에게 주지 않기 등 반인권적 지침들이 대부분이다.
- 결혼이주민에 대한 결혼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제결혼 중개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서 신고필증 게시의무(제8조), 명의대여 금지의무(제9조), 계약내용 설명의무 및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제10조)를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조의2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신랑, 신부 쌍방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상호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신상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에 대하여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제10조의 3), 결혼중개계약서·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를 진다(제10조의4).

- 국제결혼업자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10조의5). 국내외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제12조).
- 위 규정들을 위반한 결혼중개업자는 그 행위에 따라 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제17조, 제18조, 제26조 및 제28조).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가정폭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

- 결혼이주민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가정폭력이다. 결혼이주민이 겪는 가정폭력은 비단 배우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 즉 가족 안에서도 빈번히 이루어진다. 또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이혼 강요, 낙태 강요, 악의적 유기, 인격적 모독, 경제적 학대 등 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무형적 가정폭력도 매우 빈번히 발생한다. 혼인의 인신매매적 성격과 이에 따른 국적 취득 전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결혼이주민은 인권침해 상황에 쉽게 노출되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 행동을 하는 경우 강제추방 또는 강제퇴거명령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 결혼이주민들 대부분은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고 있으며, 이때 결혼과 관련된 비용 등은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인 배우자들은 결혼이주민을 동등한 반려자 또는 배우자로 대하기보다는 돈을 주고 사온 소유물같이 취급하며, 보다 쉽게 결혼

이주민들에 대하여 인격모독적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 성적 학대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 결혼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 곧 현재의 한국인 배우자를 떠날 것이라는 편견에 기인하여,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이주민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취직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아예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생활통제를 하게 된다. 결혼이주민의 국내체류와 관련하여 신원보증은 남편이 하도록 되어 있고, 비자연장의 경우나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신청에도 남편이 동행해야 한다(국적법 제6조 제2항). 이를 무기로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주민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형적 가정폭력에 대하여도 일응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결혼이주민 및 그 자녀를 보호하고, 의료·법률·출국 등과 관련된 문제의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외국인 보호시설로서 이주여성 쉼터의 운영을 정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한다.

3)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제도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 법률들 중 결혼이주민 및 그 가족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 법은 교육권 및 노동권과 관련하여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제6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한 가족형성을

위한 지원으로는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의 추진 규정(제7조) 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가정폭력 방지 노력,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확대 노력, 혼인관계 종료시 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제공(제8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성보호로는 임신, 출산교육 및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강검진(제9조)을 규정하고 있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때 재한외국인에는 결혼이민자도 포함된다(제2조 제3호).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로는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기타 필요한 조치,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제10조 및 제11조). 특히 제12조 제1항은 결혼이주민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 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07. 1.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합법적’ 체류자격의 외국인이라는 이중적 조건을 충족한 거주외국인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준조례안은 거주외국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체계의 확립, 문화체육행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 결혼이주민들은 다른 목적의 이주자들과 달리, 국민의 배우자로서 또는 한

국국적 자녀의 어머니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사회권 보장에 있어서도 내국민과 동일한 수준에서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린다.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주민은 외국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동안 ‘외국인 특례조항’에 의해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국민의 배우자로서 수급자격을 갖게 되고,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같은 법률에서는 한국 국적 자녀의 양육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을 갖는다.

- 공공부조의 경우에도 결혼이주민은 노동이주 여성과 달리 한국인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로서 수급대상자로 포섭된다. 결혼이주민이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되는데 필수적인 자격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이다. 공공부조의 경우 결혼이주민, 난민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결혼이주민에게는 기초노령연금 및 근로장려세제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는 상당수 결혼이주민과 중복이 되고 있어 영주자격이 있는 결혼이주민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통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결혼이주민이 아닌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는 아무런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결혼이주민을 제외한 영주자격 체류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공공부조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의료지원서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결혼이주민에 대한 특례가 있을 뿐이며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불법체류자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 결혼이주민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 이외에, 양육권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수급권을 갖는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결혼이주민의 문제를 이주여성운동단체들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결과, 2007년 11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호대상자 범위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14. 1. 21. 개정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즉,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민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부모인 결혼이주

민은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으며, 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법무부 주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주민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언어교육과 다문화 사회이해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주민에게는 국적 취득 필기 시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체류 외국인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체류유형과 자격을 프로그램 안에 반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재는 법무부 훈령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법과 제도로서의 기반을 충분히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전의 법령이나 제도, 정책들이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의 성격을 가졌던 것에 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라. 결혼이주민 체류 관련 해외 제도

1) 대만

-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가까이 위치하여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 여성이나 중국대륙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이 성행하였고, 그에 따라 수백여 개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난립하였으나, 결혼중개업 관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2003년 결혼중개업을 제재하고 관리하기 위한 ‘출입국 및 이민법’을 시행하였고, 이후 인신매매적 성격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 및 아동의 무국적, 방치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하자 2007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결혼중개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김두년, 2014).

- 한편 대만은 2007년 1월 ‘출입국 및 이민서’를 신설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결혼이민자들의 실질적인 체류안정을 돕고 그들을 점차 수용하려는 경향에 있다(조영희 편, 2013).

2) 일본

- 2013년 12월 현재, 일본인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151,156명이고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24,649명에 달하나, 현재까지 국제결혼중개업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한국이민법학회, 2014).
- 한국이민법학회(2014)의 결혼이민(F·6) 체류관리 개선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장기체류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며, 결혼이민자는 일본법에 따라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는 1년 내지 3년 체류자격이 부여되며, 이는 심사하는 담당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한다.
- 2017년 4월 개정된 일본 법무성이 제공하는 영주허가 가이드라인(2017.4. 개정)에 따르면, 영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10년 재류요건에 관하여는 특례를 두어 실체를 동반한 혼인생활이 3년 이상 계속하며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을 요하여 상당 부분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 일본 국적법은 일본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혼인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
-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할 경우, 일본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배우자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제22조의4 제1항 7호). 이 때 정주자로의 자격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실무상 혼인기간이 3년 이상에 이르며 직업적으로나 생활상으로 일본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 일본에서의 거주가 필요하다

는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하나, 일본 법무성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인의 자녀를 부양할 경우, 친자관계의 존재와 양육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주자로서의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여 주도록 되어있다(한국 이민법학회, 2014).

3) 미국

- 미국에서의 결혼이민은 주로 1986년 이민 사기 결혼 수정안에 의해 미국 이민 및 국적법에 추가된 법률규정들을 토대로 규율되고 있다(한국이민법학회, 2014).: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조건부 영주기간은 2년이고 귀화에 필요한 거주기간에 전부 산입된다. 2년의 조건부 영주기간 말에 해당 결혼이 유효하며 종결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영주자격자의 지위를 얻게 되나, 위 기간 중 해당 결혼이 부적절하거나 법적으로 취소 또는 종료될 경우 강제퇴거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 조건부 영주기간 2년을 둔 취지는 가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이 기간 동안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행사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자, 미연방의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에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피학대 배우자의 경우 영주자격 절차에서 ‘초청’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여 외국인 배우자 스스로 ‘자기초청 내지 자기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건제거신청에 있어서도 공동신청이 필요 없게 되었다(한국이민법학회, 2014).

4) 호주

- 호주의 결혼이민사증(partner visa)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인지, 국내 또는 국외 소재인지에 따라 사증 유형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결혼이민사증을 신청하였으나 결정이 내리지기 전 단계에서 발급되는 임시배우자 사증, 정식 결혼 전에도 장래 결혼을 전제로 하는 약혼자 사증 등을 마련하고 있어, 매우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있다. 약혼자 사증은 호주인 또는 영주자격자의 초청으로 9개월 간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기간 동안 결혼을 해야 하며, 그 후 배우자의 지위에서 영주신청을 할 수 있

다. 파트너 사증의 경우 첫째 단계에서 2년의 기한부 사증이 부여되며, 이 기간 경과 후 관계가 ‘진정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에만 영구 사증이 발급될 수 있다(한국이민법학회, 2014).

- 호주 이민법상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도 영주자격이 부여되나, 이러한 가정폭력 예외 규정은 약혼사증 소지자의 경우 호주시민 또는 영주자격자인 초청자와 이미 결혼하였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한국이민법학회, 2014).

5) 독일

- 체류에 관한 권리는 혼인의 자유 및 가족의 보호를 규정한 독일기본법 제6조와 그것이 구체화된 통합이민법에 의하여 규율된다(한국이민법학회, 2014). 통합이민법 제27조 제1항은 가족수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제31조에서 그것과 별개의 배우자의 독자적인 체류권을 규정하고 있다. 부부의 생활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 i) 부부관계가 적어도 3년 이상 독일 내에 적법하게 존재했거나, ii) 부부관계가 독일에서 존속하던 도중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iii) 그 때까지 체류허가나 영주허가를 보유하고 있었던 당해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수반의 원칙과 별개로 독자적인 체류권이 부여되어 체류허가가 1년 연장된다(제1항).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등 특별히 가혹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부부관계가 3년 간 독일에 존재했어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 부부의 생활공동체 해체 이후, 결혼이주민의 생활이 스스로 유지되고 영주허가를 보유한 경우, 여타 요건들에도 불구하고 영주허가를 발급할 수 있고(제3항), 영주허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동안은 체류허가가 연장될 수 있다(제4조).

4.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및 결정례 분석

가.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1)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재량권과 그 한계

- 전통적으로 국가의 외국인체류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국가가 외국인이

그 국가에 체류하도록 허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폭넓은 이민정책적 재량을 가진다는 것이다(최윤철·카이 하일브로너, 2003; 문중흠, 2016 재인용). 이러한 입장에 따라 출입국관리행정 관련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 다만 우리 대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의 재량범위와 그 한계에 관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 결혼이주민의 체류와 관련되는 판례는 체류기간연장불허, 영주자격변경불허, 귀화신청불허 등에 관한 것들이 있다. 이중 체류기간연장불허·영주자격변경불허 사안에서는 주로 혼인의 진정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며, 귀화신청불허 사안에서는 간이귀화 요건 관련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2) 혼인 진정성이 부정된 사례

(1) 상시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이 문제로 혼인의 진정성이 부인된 사례

- 서울고법 2013.03.28. 선고 2012누23367 판결(원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642 판결)은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짧은 동거기간, 사망 전후 경과 등을 미루어봤을 때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동거개시시점과 동거 장소에 관한 원고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주말부부였지만 거주지가 인근이었고 체류기간 만료일 직전 이혼을 한 후 제3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례에서 혼인의 진정성이 부정된 바 있다(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

두25336 판결, 원심 서울고법 2009누40423, 1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17032 판결).

- 서울고법 2011.02.11.선고 2010누16907 판결(원심 인천지법 2009구합 5033 판결)에서, “...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약 9개월동안 박OO의 주소지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체류한 점... 원고는 위 약 9개월의 기간동안 약 3개월 동안 혼자 중국에 있기도 한 점... 원고가 1년 7개월간 이혼한 상태였다가 체류기간 만료를 1년 남짓 두고 별다른 이유 없이 혼인신고한 점, 원고는 박OO과 다시 혼인하였다고 하나, 박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의 차임도 알지 못하는 점, 시댁과의 교류 등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과 박OO의 진술은 서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박OO 사이의 혼인의 진정성 내지 실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고 하며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인천지법 2011.04.20.선고 2010구합4081 판결에서도, 주말부부이면서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던 점을 혼인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제시하였다.
- 인천지법 2011.10.27.선고 2011구합3214 판결은 동거하지 않은 사정 외에 혼인사실을 친족 등에게 알리지 않은 점, 통화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혼인진정성 부인 근거로 제시하였다.

(2) 의심스러운 금전거래를 이유로 혼인진정성이 부인된 사례

- 서울고법 2012.01.18.선고 2011누1028 판결(원심 춘천지법 2011구합1410 판결)에서는 혼인시점 전후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을 혼인진정성 부인의 사유로 인정하였다.
- 이외 위장결혼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혼인의 진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의 서울고법 2011.10.07. 선고 2011누 37444 판결(원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512 판결)도 있는 등, 기본적으로 법원은 출입국행정기관의 혼인진정성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출입국행정기관의 혼인의 진정성 부인 판단을 배제한 사례

- 다만 상시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사안에서는 혼인의 진정성을 부인한 행정관청의 판단을 부인하고 체류기간연장, 영주자격변경불허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대전지법 2013.02.18.선고 2012구합4151 판결).

- 대전지법 2013.02.18.선고 2012구합4151 판결에서는 미동거 사실만으로 바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당시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대전지법 2011.04.13.선고 2010구합2564 판결에서는, 혼인신고 후 실질적인 동거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영주자격변경불허처분을 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3) 혼인단절자의 체류 관련 판례

(가) 결혼이주민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의미

-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는 결혼이주민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혼인관계 단절이 결혼이주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또한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은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함은 타방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에 준할 정도로 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2.02.01.선고 2011구합37091 판결)고 하여, 혼인단절에 대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나) 공시송달 또는 피고 불출석으로 이혼판결에 대하여 결혼이주민의 귀책 사유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2.02.01.선고 2011구합37091 판결은 외국인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인 경우 이 판결만으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서울고법 2014.01.14.선고 2013누17734 판결(원심 인천지법 2012구합6319 판결)은 외국인 원고가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가 원고의 소장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아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인천지법 2013.08.16.선고 2013구합1199 판결 역시 “... 원고가 이OO를 상대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나, 위 판결은 이OO가 원고의 소장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판결 결과만으로 전적으로 이OO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이OO의 혼인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에 이르렀으나 결혼이주민의 귀책사유 인정한 경우

- 인천지법 2012.05.03.선고 2011구합4217 판결은 법원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 결정만으로도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3.04.25.선고 2013두2631 판결(원심 서울고법 2012누11685 판결, 1심 수원지법 2011구합13607 판결)에서도, “ ...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 함은 배우자의 사망, 실종에 준할 정도로 배우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 단순히 ‘원고와 김OO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김OO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그 파탄에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는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김OO와 결혼하여

함께 살다가 2008.8.3경부터 1년 가량 가출한 바 있고 다시 2011. 3월경부터도 가출하여 김OO와 별거하다가 위와 같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김OO는 위와 같이 가출한 원고를 그때마다 수소문하여 그 귀가를 설득하는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후로 계속 별거를 고집하면서 이혼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김OO도 결국 위와 같은 노력을 포기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김OO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데에 원고 자신에게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결혼이주민에게 혼인단절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체류연장 또는 간이귀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 한국인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었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 서울고법 2012.01.12.선고 2011누21852 판결(원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337 판결)은, 외국인 원고가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지급된 경우에도 결혼이주민의 귀책사유에 의해 혼인단절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외 대법원 2013.10.24.선고 2013두16258 판결(원심 서울고법 2012누24278 판결, 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459 판결)도 “ ... 원고가 조OO과 이혼하였고 조OO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혼이 조OO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마) 이혼소송 경과 과정에서 보이는 간접사실을 이유로 결혼이주민의 귀책사유 인정

○ 서울고법 2012.12.21.선고 2012누22340 판결(원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68 판결)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간접사실을 이유로 하여 결혼이주민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 대법원 2012.03.15.선고 2011두30991 판결(원심 서울고법 2011누18603

판결, 1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359 판결)에서도, “이혼소송 당시 원고는 김OO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수소법원은 증거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다며 이러한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 또한 원고는 2006년 이후 서울 또는 수원시 일원에서 거주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빈번하게 출입국을 반복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며, 위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보태어 볼 때, 원고와 김OO 사이의 혼인관계가 김OO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마저 엿보인다고 하겠다…”고 하며,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간접사실을 이유로 결혼이주민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바) 결혼이주민의 일부 귀책사유에도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사유를 인정한 사례

○ 그러나 최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함은 타방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에 준할 정도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성이 없는 경우, 즉 상대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혹은 주된 귀책사유가 있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었다(울산지법 2017.5.11. 선고 2016구합 7006 판결).

나. 다누리콜센터 상담 현황 및 분석

○ 2014년 설치된 다문화가족의 종합정보 전화센터인 다누리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으로 13개국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센터를 이용한 상담현황을 주제별로 보니 체류 및 국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담이 2015년에는 13,959건에서 2016년에는 16,747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상담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 상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에

는 상담내용 중 부부갈등이 11.8%로 가장 높고 이혼문제가 11.2%, 가정폭력 10.6%, 체류 및 국적은 9.6%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6년에는 부부갈등 11.3%, 체류 및 국적 10.9%, 이혼문제 9.7%, 가정폭력 8.6% 등이다. 따라서 체류 및 국적에 대한 문제가 결혼이주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결혼이주여성들의 체류 및 국적에 대한 상담이 많은 이유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신분은 입국부터 한국인배우자들이 체류자격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므로 여성들이 의존적 또는 종속적 관계로 되고 있으며, 국적취득시에도 결혼생활이 안정적이고 배우자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고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혼인초기에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할 경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 2011년부터 체류 및 국적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는 비율을 보면 2011년에는 10.9%, 2012년 7.64%, 2014년 13.2%, 2015년 9.7%, 2016년 10.9% 등이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여성 체류관련 결정례 및 의견표명

- (1) 2011.8.26. 11진정0173200 국내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
 - 결혼이주여성이 국내체류한지 5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사례이다. 이 진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치아보험 가입시 국내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계약인수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요지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3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국내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보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5년 이내의 질병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나 체류기간 5년 이상을 보험가입요건으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았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의 경우 한국어로 된 청약서와 약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외에 별도의 국내체류기

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위반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 2012.12.6. 결정 인도적 체류자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권고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을 배제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생계곤란, 주거상실, 건강악화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위 대상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사례이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이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 인도적 체류자나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응급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난민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시키고, 제1조의2 제2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3) 2009.4.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는 강제퇴거되지 않도록 의견표명을 하였다.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조 제2항은 강제퇴거 제외대상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결혼이주자의 인권보호에 이바지 할 것이다. 한편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간이귀화

요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귀책사유의 입증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 기간동안 결혼이주자는 강제퇴거의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도 강제퇴거 되지 않도록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국적법의 간이귀화 규정취지와 맞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4) 2016.7.25. **자 결정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통합국가보고서 제48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9.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2 신원보증서의 제출규정을 삭제하라고 의견표명한 것을 받아들여 2011.12. 신원보증서 청구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2012.12.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복지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지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개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바, 입법적, 행정적 조치 관련현황으로 국가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5. 소결

(1)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 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의 문제점

① 결혼이주민의 최초 입국 시 신원보증 제도 문제

-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던 조항은 2011년 폐지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 및 [별표5의2]에서는 결혼이주민이 최초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원보증제도는 체류기간 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평등한 부부관계를 막고,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원보증서의 제출의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간이귀화의 국내거주 요건 및 귀화허가 심사 기한 문제

- 기존 국적법은 외국인이 국민과 혼인을 함으로써 곧바로 혼인귀화를 허가하였으나, 위장결혼이나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되는 일이 증가하면서 현행 국적법에서는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제도’가 폐지되고, 간이귀화에 의하여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모든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2년 유예의 간이귀화 요건을 규정한 것은 위법한 행위를 하는 소수를 규제하기 위해 선량한 다수의 결혼이주민의 인권과 삶을 제약하는 것으로, 국적 취득 시까지 결혼이주민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을 한국인 남편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¹⁾
- 또한 귀화신청 후 귀화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기한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고, 심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결혼이주민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이귀화 심사기한의 설정, 최초 체류기간의 상한기간 준수, 심사권자의 재량권 축소를 위한 개선조치 등이 필요하다.

③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의 간이귀화 및 체류연장 문제

-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결혼이주민은 혼인단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를 불현듯 박탈당한다.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기간의 연장, 체류자격의 변경, 나아가 국적취득의 기회를 부여받기 어렵다. 예외적인 경우조차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

1) 박승용,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측면 고찰’, 한국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118쪽.

의 양육권이 있는지, 면접교섭권만 있는지에 따라 차별을 받으며, 자녀가 없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을 부양하기라도 하여야 체류가 허가된다. 또한 결혼단절 결혼이주민은 국적 취득 후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는다.

- 체류기간 연장 및 간이귀화 신청시 귀책사유 없을 것을 요구하는 문제,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의 복수국적 불인정 문제, 면접교섭권을 가진 결혼이주민의 체류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④ 간이귀화 및 영주자격 변경허가의 요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

- 현행 ‘국적법’상 귀화의 요건(제5조 및 제6조)과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에 따르면 귀화 및 영주자격(F-5)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품행단정’이라는 요건은 그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심사권자의 재량이 남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는 결혼이주민은 3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귀화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⑤ 가정폭력피해자인 결혼이주민에 대한 보호문제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 특칙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어서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에 있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① 국제결혼 중개업에 재검토 필요

- 결혼이주민이 사실상의 매매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이며, 이의 규제를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은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로부터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영리적인 국제결혼중개업을 금지하여 속성결혼의 방식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민 보호에 따른 문제

- 실제 결혼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점은 가정폭력이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가정폭력은 비단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입증이 어려운 협의이혼 강요, 낙태강요, 악의적 유기, 인격모독, 언어적·심리적 폭력, 경제적 착취 등 무형적 가정폭력의 경우도 포함된다. 국내법은 이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법제도와 법무부의 업무관행은 결혼이주민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려면 심각한 정도의 폭력을 상습적으로 겪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해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③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의 문제

- 결혼이주민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지원 법률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으나, ‘합법’적 체류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합법적 체류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주민들도 위 법률의 보호 내지 지원대상이 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문제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사회보험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결혼이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지위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양육자 지위에서 일반 노동이주 여성과는 달리 지원혜택을 다소 폭넓게 받고 있다. 그러나 위 지원을 받는 결혼이주민은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요구된다.

Ⅲ. 결혼이주민 체류현황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결혼이주민의 입국, 체류, 국적, 가족형태 등 일반현황, 가정폭력, 이혼 등 인권현황, 취업, 임금 등 경제적 활동현황,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정책요구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결혼이주민의 경우 1061명의 대상자 중 1014명이 설문이 완료되었으며(회수율 95.6%), 그 중 무응답 등 응답의 성실도가 낮은 94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총 920표본을 확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7월부터 2달여간 실시되었다.
- 구조화된 설문지를 결혼이주민의 수가 많은 출신국인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등 5개 국어로 번역하여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 선정은 다양한 다문화관련 관련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관 이용자들의 협조를 통한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다양한 조사대상자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조사결과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의 연령별로는 30대가 390명(42.4%)로 가장 많았고, 20대 345명(37.5%), 40대 129명(14.0%), 50대 이상 29명(3.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2.77세로 나타나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20대(44.5%), 30대(43.2%)가 비슷한 비율로 많았던 반면, 영주자격 체류자와 혼인귀화자의 경우 30대(각 50.9%, 50.6%)가 가장 많았다.
- 출생국가별로는 베트남이 356명(42.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국 247명(29.4%), 필리핀 96명(11.4%), 일본 56명(6.5%), 캄보디아 30명(3.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출생국가를 체류자격별로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13명 중에는 베트남 출신이 80명(37.6%), 중국 출신이 69명(32.4%) 순으로 많았다. 영주자격 체류자 99명 중에는 중국 출신자가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46.5%), 혼인귀화자 236명 중에는 베트남 출신자가 117명으로 가장 많았다(49.6%).

- 혼인상태는 기혼 비율이 806명(91.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혼 3.7%, 별거 1.6%, 사실혼(동거) 1.2%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를 체류자격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체류상태에서 기혼 비율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만 혼인귀화자의 이혼 비율(5.4%)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2.2%)나 영주자격 체류자(2.8%)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40.8%, 고등학교 졸업이 38.5%로 나타나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80%에 달했다. 출신국에서의 교육기간을 포함해 교육을 받은 기간도 10년 이상이라는 응답(59.5%)의 비중이 가장 높아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민 체류자격별로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중학교 졸업 이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5%).
- 결혼이주민의 거주 지역은 대도시(서울특별시 및 6대광역시) 거주자가 569명(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188명(20.4%), 농어촌은 163명(17.7%)로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체류자격별로 거주지역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농어촌 거주비율이 22%로, 영주자격 체류자(11.5%)나 혼인귀화자(15.1%)에 비하여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318명(35.6%)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이 188명(21.1%), 3년 이상 5년 미만이 123명(13.8%), 1년 이상 3년 미만이 106명(11.9%)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한국거주기간은 16.3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별로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1년 미만(12.3%),

1년 이상 3년 미만(23.6%) 거주 비율이 영주자격 체류자(각 1.9%, 2.8%)나 혼인귀화자(각 7.4%, 1.2%)에 비하여 높았던 반면, 5년 이상 거주 비율은 영주자격 체류자와 혼인귀화자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다. 특히 10년 이상 거주 비율은 11.8%로, 영주자격 체류자 29.2%, 혼인귀화자 38.7%와 차이가 컸다.

- 배우자와의 동거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33명으로 41.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24.6%), 3년 이상 5년 미만(15.1%), 1년 이상 3년 미만(10.7%) 순으로 나타나, 한국거주기간 응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동거기간연수는 6.3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별로 배우자와의 동거기간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높았지만,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18.9%), 영주자격 체류자와 혼인귀화자의 경우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각 34.3%, 39%).
- 현재 직업유무에 대해서는 직업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70.7%)였으나, 과거에는 직업이 있었다는 응답이 61.5%로 나타나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체류자격별로 조사대상자의 직업 유무를 분석한 결과, 과거의 직업 유무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현재의 직업 유무에서 체류자격별로 차이를 보였다. 현재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혼인귀화자의 경우 52.0%였으나,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 31.0%, 결혼이민비자 소지자는 19.9%에 불과해 체류자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조사대상자의 개인 소득 수준 조사결과, 소득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21명, 59.8%),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108명(12.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105명(12.1%)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150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귀화자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비율(37%)이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절반 정도로 적은 한편,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24.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8.7%) 응답은 2배 내지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관적인 경제생활수준 인식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6명(66.8%)으로 가장 높았다. 나쁘다는 응답(①+②)은 214명(24.4%), 좋다는

응답(④+⑤)은 77명(8.8%)으로,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보다 부정적인 경우가 3배 가까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체류자격별로 살펴본 결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나쁘다는 응답(①+②) 역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각 21.8%, 25%, 22.5%), 좋다고 응답한 비율(④+⑤)은 영주자격 체류자가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각 7.9%, 11.6%, 6.7%).

- 주거유형은 아파트라는 응답이 408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단독주택(252명, 28.9%), 빌라(143명, 1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거주용 건물(0.8%),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0.3%), 숙박업소(0.3%) 등 불안정한 거주형태를 보이는 응답도 많았다. 체류자격별로 주거유형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빌라 거주비율(20.4%)이 영주자격 체류자(16.7%)나 혼인귀화자(14.2%)에 비하여 다소 높다는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94명, 56%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좋다는 응답이 255명, 28.9%로 그 뒤를 이었다. 좋은 편이라는 응답(①+②)은 38.5%, 나쁜 편이라는 응답(④+⑤)은 5.4%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건강수준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식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본 결과,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각 59.6%, 66.1%, 55.7%), 나쁜 편이라는 응답(④+⑤)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각 5.7%, 6.3%, 5.9%). 좋은 편이라는 응답(①+②)은 혼인귀화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8.5%), 결혼이민비자 소지자(34.8%), 영주자격 체류자(27.6%)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어 수준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라는 응답이 390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간단한 자기소개 등이 가능한 수준’이 286명(32.2%), 일반적 업무가능이 97명(10.9%)로 나타나 상당수가 비교적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민 체류자격별로 한국어 활용수준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간단한 자기소개 등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40.0%), 다른 체류자들에 비하여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7.4%).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

을 정도'라는 응답은 영주자격 체류자가 52.2%, 혼인귀화자가 59.1%인 데 반하여 결혼이민비자 소지자는 37.8%에 그쳤고, '선주민과 큰 차이 없이 일반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응답도 6.1%에 그쳐 영주자격 체류자(15.0%)와 혼인귀화자(19.5%)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 한국 거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10명(46.3%)으로 가장 높았고,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 267명(30.2%)으로 뒤를 이었다. 만족스럽다는 응답(④+⑤)은 총 372명으로 42%를 차지하여,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①+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03명, 11.6%). 한국거주만족도를 체류자격별로 살펴본 결과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순으로 나타나 체류자격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 '약간 불만족'의 응답 비율이 다른 체류자격자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한국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기혼 집단에 비해 이혼/사별, 별거 집단이 한국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①+②)이 130명, 14.7%인 데 비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④+⑤)이 455명(51.5%)으로 나타나, 한국거주상황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는 체류자격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모든 체류자격에서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좋아졌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지만, 나빠졌다는 응답(①+②)도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14.1%,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 19.6%, 혼인귀화자의 경우 15.6%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국내 입국 전후의 체류실태 현황

1) 입국과정에서의 체류실태

(1) 입국시/현재 체류자격 현황

- 입국 시의 체류자격은 응답자 920명 중 F-6, F-2-1(결혼이민)이 390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응답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무응답이 33.7%에 달했는데, 이는 자신의 입국시 체류자격을 잘 몰랐던 조

사대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체류자격에 대한 응답 역시 F-6, F-2-1(결혼이민)이라는 응답이 514명(55.9%)로 가장 많았고, 한국국적 취득이 145명(15.8%), F-5 비자취득이 76명(8.3%) 순으로 나타났다.

- 체류연장 경험은 조사대상자의 76.1%가 체류연장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평균 체류연장 횟수는 2.69회였다. 연장 횟수별로는 2회 연장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25.2%), 3회 연장(21.8%), 1회 연장(15.3%) 순으로 나타났다.
- 체류연장 경험이 있다고 답한 719명에게 체류연장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한국어가 서투른데서 기인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17.2%), 다음으로 체류인정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13.2%), 체류연장 방법이나 정보를 알기 어려워서(9.7%), 출입국사무소 등 공공기관 직원의 불친절(9.2%), 체류연장을 위한 증거마련이 어려워서(8.8%)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체류연장시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이혼사별 집단의 경우 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웠던 점(13.3%), 공공기관 직원들의 무시(10%)도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별거/기타 집단의 경우 체류연장 정보와 방법을 알기 어려웠다(22.2%)는 응답률이 높았다.
- 체류연장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은 남편 및 남편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529명, 73.6%) 주로 남편 및 남편 가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12.1%로 뒤를 이었으며, 한국거주 선주민 친구들로부터의 도움이 5.0%로 나타났다. 한편, 체류연장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응답도 47명(6.5%)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체류연장 과정에서 도움 받은 곳을 살펴본 결과, 이혼사별 집단의 경우 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에서 조력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별거/기타 집단의 경우 본국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체류자격 연장절차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이 527명(57.3%)로 높았으나 ‘모른다’는 응답도 344명(3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 체류자격별로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에

부를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연장절차를 모른다는 응답이 41.0%로 나타나, 영주자격 체류자(35.5%) 및 혼인귀화자(24.9%)에 비해 연장절차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상태별로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이혼/사별(42.5%), 별거/기타(57.1%) 집단이 기혼(38.3%) 집단에 비해 체류자격 연장절차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2) 입국 후 체류실태

(1) 체류상태 현황

- 조사대상자의 체류상태 현황은 혼인귀화자가 258명(28.0%), 결혼이민비자 소지자가 232명(25.2%), 영주자격 체류자가 113명(12.3%) 순의 분포를 보였다.

가)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 현재 결혼이민자격 체류상태인 232명에게 최근 체류연장 기한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최근 체류연장 기한은 2년 이상~3년 미만이 40명(2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이 39명(20.9%), 1년 이상~2년 미만이 22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류연장 기한은 22.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90명(26.3%)이 향후 국적취득 계획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59명(17.3%)은 체류연장을 할 계획이 있고, 57명(16.7%)은 영주자격 취득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60.3%가 향후 한국에 체류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민자격 체류상태인 응답자들 중 향후 국적취득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35.3%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 수 없는 환경이어서’라고 응답하였고, 그 구체적인 사유로는 한국어 미숙(31.8%), 재산기준 미충족(16.7%), 거주기한 미충족(13.6%), 남편 및 남편가족의 비협조(12.1%)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국적취득 계획이 없는 이유로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18.8%), 본국에 가서 살 계획(12.0%) 순으로 나타났다.

나) 영주자격 체류자

- 영주자격 체류자들에게 영주자격 취득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0.9%, 6개월 미만이 20.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영주자격 취득기한은 15.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자격 취득 시 어려움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는 응답비율이 1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국어가 서툴러서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응답이 8.7%, 담당공무원의 태도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은 9.5%로 나타나, 정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주자격 체류자들은 영주자격 취득 과정에서 남편 및 남편가족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7.1%), 다음으로 1577-1366 등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11.9%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1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비자 소지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하여 조력자 및 조력기관이 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혼인귀화자

(1) 국적 취득 소요기간

- 혼인귀화자들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소요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63명(25.0%)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취득 소요 기간은 23.6개월로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취득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국어 미숙(15.2%), 국적취득에 관한 정보 취득의 어려움(13.7%), 공공기관 직원들의 까다로운 태도(7.4%)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귀화자의 경우 영주자격 체류자와는 달리 한국어 구사능력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혼인귀화자들의 경우에도 결혼이민비자 소지자나 영주자격 체류자와 같이 국적취득 과정에서 남편 및 남편 가족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69.5%). 또한 1577-1366, 다문화지원센터, 이주민지원기관을 비롯한 관련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도 21.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5.1%로 나타났다.

다. 가족구성 및 해체 과정에서의 체류실태

1) 혼인 및 가족관계

(1) 동거가족 수

- 조사대상자의 동거가족 수는 4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29.6%), 다음으로 3명(22.9%), 5명(15.7%), 2명(13.0%)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 수의 평균은 3.91명이었다.
- 동거가족 구성원은 남편(82.3%), 자녀(64.7%), 남편 부모(26.4%)로 나타났다.
- 자녀수는 1명(3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명(32.9%), 3명(6.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녀수는 평균 1.41명이었다.
- 조사대상자의 자녀들은 한국 국적을 소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74.0%, 둘째 자녀의 70.6%, 셋째 자녀의 34.7%가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양육권자 및 실제 양육자는 본인 또는 남편인 경우가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민들이 실제 양육자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혼 및 별거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8.3%로 나타났다.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한 적이 있음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걱정되어 유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52.6%),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25.0%). 그 외에 갈등관계가 잘 회복되어서(21.1%),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서(19.7%), 체류자격 불안정 우려(19.7%) 순으로 나타났다.

2) 가족해체 과정에서의 체류실태

(1) 가정폭력 실태

- 가정폭력의 경험유무 및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920명중 387명(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한 욕설(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0%) 순으로 가정폭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험한 폭력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심리언어적 학대 영역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고, 부모나 본국에 대한 모욕적 말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6%에 달하였다. 또한 성행위 강요(27.9%),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언동(24.5%) 등 성적 학대를 경험하였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본국에의 방문과 송금을 방해하는(각 26.9%)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전적으로 방해하고(33.3%) 과도한 집안일을 시키는 등(27.4%)하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폭력 경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체류자격별로 가정폭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심리언어적 폭력 영역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비자 소지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영주자격 체류자가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활동자유 구속, 경제적 학대, 고국과의 단절강요, 심리언어적 폭력, 건강상불이익 영역에서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중소도시, 농어촌 거주자일수록 가정폭력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모든 영역과 문항에서 이혼사별, 별거기타 집단이 기혼 집단에 비해 폭력경험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발생시 도움 요청 여부 및 도움을 요청한 곳도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혼사별, 별거기타 집단이 기혼집단에 비해 도움 요청 경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혼사별, 별거기타 집단이 기혼집단에 비해 1366 등 기관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도 집단간 차이가 있었는데, 이혼사별 집단의 경우 남편이 보복이 두려워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 가정폭력 피해시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99명을 조사한 결과, 도움 요청 대상은 1577-1366 등 관련 민간기관이 가장 높았으며(47.1%), 경찰(23.5%), 한국에 거주하는 선주민 친구(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37.6%)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9.1%)보다 많았다.

(2) 이혼

- 이혼/별거중인 38명에게 이유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남편의 폭력(56.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32.6%), 성격 차이(32.6%), 남편 가족과의 갈등(21.7%),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21.7%) 순으로 나타났다.
- 이혼/별거 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남편 및 남편가족이 체류연장을 방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19.6%), 다음으로 체류자격 연장에 필요한 서류 마련에 어려움(17.4%)을 겪고, 체류연장 자격이 불가하는 등(10.9%), 이혼 및 별거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혼한 경우 면접교섭권 제도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58.7%)였지만, 면접교섭권을 몰랐다는 응답도 2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거주자들이 면접교섭권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거주자에 비해 높았다(70%).
- 이혼/별거중인 결혼이주민 본인의 자녀 양육비율은 39.1%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61.1%가 전남편 또는 가족으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혼/별거 후 조사대상자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75%가 행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라.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실태

- 결혼이주민을 위한 정부 및 민간기관의 주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사회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모른다는 응답도 21.0~3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제도에 대한 미인지 비율(35.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거주기간별로 사회서비스 인지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대체로 사회서비스 인지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결혼이주민 체류자격별로 사회보장제도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하여 결혼이주민 관련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혼인상태별로 사회보장제도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기혼집단에 비해 이혼/사별, 별거/기타 그룹이 1577-1366 서비스, 취업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거주지역별로 사회보장제도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농어촌 거주자들이 쉼터,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각 30.1%, 37.5%). 그러나 1577-1366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들이(30.5%),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각 12.4%, 18.9%).
- 결혼이주민 지원기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민은 전체의 56%였으며, 20~30대에 비하여 40대 이상이 비교적 이용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 이용해본 지원기관 중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8.2%). 다음으로 보건소(23%), 시청·구청·동사무소(20.5%) 순으로 나타났다.
- 체류자격별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이주민 관련기관 지원기관 이용경험이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37.3%), 결혼이주민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에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의 체류 안정을 위한 정책적 요구를 조사한 결과,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문항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51.7%). 그 다음으로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47.9%),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38.4%), ‘자녀 유무 및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31.4%)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 체류자격별로 정책 욕구를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

답율이 높았던 반면(33.1%),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 ‘현행 제도 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28.1%). 혼인귀화자의 경우에는 자격요건 완화의견이 26.1%, 현행제도 유지 의견이 21.2%로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또한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10.1%로, 영주자격 체류자(4.5%), 혼인귀화자(1.8%)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및 ‘한국어 활용수준 정도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8%, 10.9%).

마. 결혼이주민의 심리정서적 실태

- 결혼이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25점으로 나타났다. 그중 언어·사회적 장벽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36점), 다음으로 불안(2.36점), 차별(2.19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64점), 특히 언어·사회적 장벽과 차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05점).
- 혼인상태별로 살펴본 결과 사별이나 이혼, 별거 등 혼인관계가 해체된 가족 형태의 결혼이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기혼/동거 상태에 있는 결혼이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의 경우 언어·사회적 장벽(3.58), 차별(3.17), 불안(3.07) 순서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이혼의 경우 가족갈등(2.83), 불안(2.72), 언어사회적 장벽(2.61) 순으로 나타났다.
- 체류자격별로 살펴본 결과, 언어사회적 장벽, 소외감, 가족갈등 영역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와 영주자격 체류자가, 혼인귀화자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언어사회적 장벽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은 1년 ~ 3년 미만(2.34), 5년 ~ 10년 미만(2.33), 10년 이상(2.30) 순이었다.

3.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결과 요약

- 결혼이주민들은 20대~30대의 연령대로 비교적 교육 수준이 양호한 기혼 여성이 다수였다. 출신국 별로는 베트남(42.4%), 중국(29.4%), 필리핀(11.4%)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0.7%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약 60%가 개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및 한국 거주기간은 모두 5년 이상~10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동거중인 가족 수는 평균 약 4명이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1.4명이었다. 한편 이혼, 사별 등 가정해체 상태인 결혼이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6.1%로 나타났다.
- 거주 지역은 대도시 거주자가 가장 많았으며(61.8%),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절반(49.3%)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활용수준은 ‘일상생활 가능’한 정도로 비교적 어려움 없이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 입국시 체류자격 및 현재 체류자격은 결혼이민비자(F6, F-2-1) 소지자가 가장 많았으며(42.4%, 55.9%), 응답자의 76.1%가 체류 연장경험이 있고 평균 횟수는 약 2.7회였다. 체류자격별로는 결혼이민비자 소지자가 25.2%, 영주자격 체류자가 12.3%, 혼인귀화자가 28.0%로 나타났다.
- 결혼이주민들은 체류연장과정에서 상당수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한국어 수준이 낮고(17.2%), 체류인정 기간이 짧고(13.2), 체류연장방법이나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으로(9.7%) 조사되었다.
- 체류과정에서는 남편 및 남편가족의 도움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73.6%), 누구에게도 도움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5%나 되었다. 또한 체류자격 연장절차에 대해서도 37.4%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연장절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으며, 기혼상태에 비해 이혼/사별 상태의 이주민들이 체류자격 연장절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평균 체류연장 기한은 22.8개월이었으며 60.3%가 향후 한국에 체류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영주자격/국적 취득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는데, 이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 수 없는 환경’을 꼽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미숙(31.8%), 재산기준 미충족(16.7%), 국내 거주기한 미충족(13.6%), 남편 및 가족의 비협조(12.1%) 순으로 나타났다.
-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 영주자격 평균 취득시한은 15.7개월이었으며, 영주자격 취득과정에서 약 42%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관련 정보 취득시 어려움, 담당기관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로 인해 어려움이 컸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영주자격 취득과정에서는 남편 및 남편가족의 도움이 가장 컸으나(57.1%), 도움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약 12%에 달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취득자의 경우, 평균 국적 취득 소요시간은 23.6개월이었으며, 국적 취득과정에서 약 48%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한국어 미숙, 관련정보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 과정에서는 남편 및 남편가족의 도움이 가장 컸으나(69.5%), 도움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5.1%였다.
- 동거중인 가족 수는 평균 약 4명이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1.4명이었다. 한편 이혼, 사별 등 혼인단절이거나 가정해체 상태인 결혼이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6.1%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경우 한국 국적 소지 비율이 70%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해 이혼 및 별거 등을 고려해 본 결혼이주민은 8.3%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시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체류자격 불안정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의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적 폭력,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폭력 위협의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상황시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는 응답한 비율이 31.7%에 달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도움 요청방법을 모르고,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혼인단절 기혼집단에 비해 가정폭력 경험 빈도가 더 많았다.

-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의 경우 체류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5%에 달했다. 주요 이유로는 서류구비의 어려움, 남편 및 남편 가족의 방해로 인한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혼인단절 결혼이주민 39.1%가 본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으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26.1%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육비는 61.1%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주민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으나, 모른다는 응답도 약 30%에 달하였다. 특히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인식 수준이 낮았다.
- 사회서비스 수혜여부는 관련 기관을 이용해본 이주민이 약 56%였으며, 한국거주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기관 서비스 이용 경험율이 높았다. 체류자격별로는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들이 지원기관 서비스 이용경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주민 관련 정책욕구로는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입국 허용(51.7%), 행정절차 간소화(47.9%), 자격요건 완화(38.4%),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상관없는 체류자격 유지(31.4%) 등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자격요건 완화,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상관없는 체류자격 유지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결혼이주민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언어사회적 장벽, 불안, 차별 영역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비자 소지자가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고, 이혼/사별 상태의 결혼이민자가 불안과 차별, 가족갈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시사점

- 결혼이주민들은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해체를 고려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상 어려움이나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하여 불만족스러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민이 국내 체류자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혼인상태여야 하고, 이혼 후에도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비양육권자라도 면접교섭권 행사를 입증해야 체류자격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혼인단절 및 가정해체 과정을 살펴보면 결혼이주민들이 체류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 및 남편 가족의 방해로 인한 어려움이 크고, 체류연장 과정에서도 남편 및 가족의 비협조로 인해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나 남편 가족의 협조 여부에 따라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결혼이주민들은 불만족스러운 혼인관계나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는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요인이 된다.
- 결혼이주민의 정책욕구에서도 체류자격 요건의 완화 및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상관없는 체류자격 유지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인상태 유지나 자녀양육 유무,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를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유지의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결혼이주민의 상당수가 체류연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주요 이유로 한국어 수준이 낮고(17.2%), 체류인정 기간이 너무 짧고(13.2%), 체류연장방법이나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으로(9.7%) 나타나므로, 체류연장 과정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
- 체류인정 기간에 대한 정책 개선 논의가 필요하며 체류연장 과정에서 한국어 지원서비스 제공확대, 체류연장 방법 등 정보취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체류연장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했다거나, 체류연장 절차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이므로, 체류연장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 혼인 상태에 따르면 특히 기혼상태의 결혼이주민에 비해 이혼/사별 등 가정해체 상태인 결혼이주민이 건강상태나 한국생활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가정해체 집단이 기혼집단에 비해 가정폭력 경험 빈도가 높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해체 결혼이주민 지원을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
- 특히 혼인단절 등 가정해체 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혼상태 결혼이주민에 비해 높았다. 특히 남편 및 남편 가

족의 방해로 인한 어려움이 크고, 체류연장 과정에서도 남편 및 가족의 비협조, 무시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편이나 가족의 협조 여부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에 따른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 조사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42.1%)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언어적 폭력,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폭력 위협의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상황시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는 응답한 비율이 31.7%에 달했는데, 그 이유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거나 도움 요청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 현재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수립, 운영되고는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 구제 및 예방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또한 결혼이주민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크고, 특히 언어 및 사회적 장벽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감, 차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과 사회서비스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IV.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조사

1. 조사개요

-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체류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및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 제도적 개선과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총 12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69부를 회수하였으며(54.3%), 무응답 등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2부를 제외한 총 67부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보장, 간이귀화,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시 현황, 이혼, 폭력피해에 따른 체류자격 유지의 어려운 점,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시 어려운 점, 결혼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제 정비 및 정책개선 등에 대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조사결과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결혼이주민 업무담당자들은 총 67명이며, 여성이 58명, 남성이 9명이었다. 연령은 40대가 29명(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28.4%), 20대(16.4%) 순으로 나타났다.
- 근무기관별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38명(56.7%)이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누리콜센터가 17명(25.4%),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및 이주여성쉼터가 11명(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재직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응답자가 19명(28.4%), 10년 이상인 응답자가 18명(26.9%)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결혼이주민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결혼이주민 접촉빈도로는 한 달 1~2회 또는 거의 없는 경우는 각 1회에 불과하였고, 거의 매일 접촉한다는 응답이 55명(82.1%)로 가장 많았다.
- 결혼이주민들이 기관을 방문하는 이유는 체류기간 연장목적이 가장 많았으며(47명, 70.1%), 체류자격 변경(39명, 58.2%), 영주자격 취득(35명, 52.2%), 국적 취득(29명, 43.3%) 순으로 나타나, 체류자격 및 영주자격/국적 취득 관련한 방문이 가장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 습득/문화적응(33명, 49.3%), 가족관계/가족폭력(26명, 38.8%) 등의 이유로도 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법률 및 의료지원요청, 가족초청 및 체류연장, 취업 및 긴급지원, 자녀교육, 가족갈등 등이 있었고, 성폭력/성매매라는 응답도 있었다.
- 기관별로 결혼이주민의 방문사유를 살펴보았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86.8%) 및 체류자격 변경(73.7%), 영주자격 취득(63.2%) 사유의 비중이 높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 및 결혼이주여성센터 등의 경우 가족관계/가족폭력(각 64.7%, 100%) 및 한국어습득/문화적응(각 94.1%, 63.6%) 쪽의 비율이 더 높았다.

나. 결혼이주민의 체류관련 사항

1)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업무담당자들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1년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찬성한다+대체로 그렇다)이 67.2%, 반대한다는 의견(반대한다+대체로 아니다)은 23.9%로 나타나,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담당자의 찬성쪽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86.8%),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은 반대쪽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72.7%).
-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없이 ‘2년 범위 내’가 아닌 ‘2년’으로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73.7%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및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 민간기관의 경우 각각 찬성의견이 64.7%, 54.5%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 “별거, 이혼소송, 배우자 실종의 경우 입증서류 제출의 필요성”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및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의 경우에도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각 76.5%, 72.7%).
- 면접교섭권 행사에 있어 자녀와의 교류를 증명할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담당자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97.4%).
- 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큰 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보통이다’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44.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및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각 41.2%, 45.5%).

2) 영주자격 변경허가 관련

- 품행단정 요건에 대해서는 44명(65.7%)가 찬성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들이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92.1%, 41.2%),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은 반대 의견 비율

(54.5%)이 더 높았다.

-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에 관해서는 32명(47.8%)가 찬성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89.5%),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은 반대쪽 응답률이 높았다(72.7%).
-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의 결혼이주민은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 32명(47.8%)가 찬성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담당자는 84.2%가 찬성 비율은 보인 반면,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은 반대한다는 의견이(36.4%) 가장 높았다.
- “자녀유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국내 체류한 결혼이주민에게도 영주자격이 신청 가능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55.3%가 반대쪽 응답인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은 찬성측 응답이 높아 상반된 응답을 보였다(52.9%, 100%).

3) 국적취득(귀화) 관련

- 결혼이주민에게 국적취득 요건과 절차가 어려운지에 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57.9%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경우 76.5%,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의 경우 100%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 “면접시험 2회 불합격에 대해 결혼이주민의 귀화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86.8%가 반대하는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은 64.7%, 90.9%가 찬성하는 응답을 보여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다. 결혼이주민 관련 정부정책

-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국가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차별이 아니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47.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은 차별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각 70.6%, 90.9%).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대체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많았으며 (57.9%) 결혼이주여성기관 등은 36.4%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을 위한 부부동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하는 응답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에 관하여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프로그램 이수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하는 응답이 높았다 (53.7%).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간 차이를 보였는데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의 부정적 의견 비율이 높았다(36.4%).
-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에 적합한가 하는 문항에 대하여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49.3%, 46.3%). “결혼이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민들로 하여금 빨리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담당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81.6%),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에서는 반대응답도 찬성응답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각 36.4%). “결혼이주민 대상 프로그램이 한국사회 적응과 함께 고유문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찬성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3.6%).
-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보다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에서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복수응답)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68.7%), 취업 및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40.3%), 이혼 및 재혼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 위협(3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폭력피해를 특히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 체류연장시 개별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한국인배우자(남편)과 동거하게 하는 것, 배우자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인프라 부족, 한국어습득 및 정보접근의 어려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 기관 부재 및 불필요한 서비스들의 중복·남용 등을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꼽았다.

- 개선 또는 마련되어야 할 체류보장 정책에 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현행제도 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53.7%). 근무기관별로 살펴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담당자의 경우, 현행 제도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78.9%), 그 뒤로 재산기준 하향(28.9%), 행정절차 간소화(21.1%),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입국 허용(21.1%), 체류자격 및 영주자격 취득 기간 단축(13.2%) 순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경우 대체로 정책수요가 고르게 나타났지만 행정절차 간소화(47.1%),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 가능해야 한다(41.2%)는 응답이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의 경우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취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정책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취득을 위한 기간 단축(45.5%), 자격요건 완화(36.4%), 배우자의 동의요건 완화(36.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세 유형의 기관 업무담당자들 모두 한국어 활용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응답률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각 5.3%, 11.8%, 9.1%).

3.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결과 요약

-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담당자들의 분포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56.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누리콜센터 25.4%,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및 센터 업무담당자가 16.4%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업무담당자가 유사한 분포로 조사되었다.
- 현행 제도인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1년 한정 요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찬성, 민간기관은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체류기간 재량권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반대, 민간기관은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혼소송 및 별거 등 혼인파탄 상황에 대한 입증서류 및 면접교섭권 행사시 입증 제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기관 업무담당자 모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재 체류자격 연장허가와 관련된 재량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재량권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관들은 재량권이 과도하다고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 현행 제도인 품행단정 요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찬성, 민간기관은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은 찬성, 민간기관은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제출여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들의 찬성비율은 높았으나, 지원기관 및 쉼터업무담당자들은 반대의견이 많았다.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에 따른 영주자격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반대, 민간기관은 찬성의견이 높았다.
- 현행 국적취득 요건과 절차에 대해 공공기관은 결혼이주민에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많은 반면, 민간기관은 어려움이 크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귀화불허에 대한 재량권 남용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민간기관은 반대로 나타났다.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 대다수가 찬성하였다. 또한 특정국가 프로그램 이수 의무제도는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부부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이수시간 확대에 대해서도 역시 전반적인 찬성 비율이 높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포함한 결혼이주민 대상 프로그램 실시와 효과성에 대해서도 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들에 비해 민간기관 업무담당자들이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 위협요인으로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68.7%),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40.3%), 이혼 및 재혼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 위협(34.3%)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결혼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 전반적으로는 현행제도 유지가 적절하다는 의견비율이 가장 높았으나(53.7%), 항목별로 공공기관과 민간기

간이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경우, 현행 제도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데 비해(78.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은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47.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은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체류/영주자격 유지(90.9%) 응답 비율이 높았다.

나. 시사점

- 업무담당자들은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68.7%),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40.3%), 이혼 및 재혼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 위험(34.3%)을 들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정책 개선 및 지원이 요구된다.
- 정부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과 민간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결혼이주민관련 지원기관) 간 결혼이주민 체류와 관련해 인권침해의 심각성, 체류현황 및 위협 요인 등에 대해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를 조율하고 정책개선의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 특히 정부기관 업무담당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가기간의 1년 한정, 결혼이주민의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 및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입증서류제출, 품행단정 요건 구비 등에 대해 민간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아, 결혼이주민을 특정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이에 따른 결혼이주민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와 안정적인 체류보장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결혼이주민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자 권리의 주체로써 전제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V. 심층면접 조사

1. 심층면접조사 개요

- 심층면접 대상은 결혼이주민과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결혼이주민 심층면접은 1:1 개별인터뷰로 진행되었고, 관련업무 담당자는 초점집단인터뷰 및 개별면접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참여자는 총 15명이며, 서울, 경기, 대구 등 지역에 다양하게 거주하고 있다.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이 13명, 남성 2명이었다. 출신국의 경우 베트남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캄보디아 3명, 중국 2명, 일본 1명, 방글라데시 1명, 네팔 1명, 우즈베키스탄 1명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의 연령은 20대 중반~30대 초중반이 가장 많았으며, 40대 중반 3명, 50대 1명이었다. 체류자격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 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민간기관 현장전문가의 경우 FGI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개별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2.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가. 결혼이주민

1) 체류기간 연장 및 영주자격, 국적취득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가) 체류기간 연장과정에서의 어려움

- 결혼이주민들은 체류자격 연장과정에 있어 배우자(주로 남편)의 비협조로 체류기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주민들은 2년마다 돌아오는 체류연장 기간 및 이에 따른 신청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 이에 대한 정보부재, 복잡한 신청서류, 비협조적인 남편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체류연장 기간 신청 시, 반드시 배우자의 동행과 동의 아래 절차과정이 이루어지는 복잡성과 번거로움을 토로하였다.
- 결혼이주민들은 이혼 및 남편 사망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체류연장 기간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주민들은 공통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불친절한 응대와 성의 없는 정보제공의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었다.
- 결혼이주민들은 정확한 기준이 없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기간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나) 영주자격 취득과정에서의 어려움

- 결혼이주민들은 영주자격 취득과정에서 높은 재산기준과 범죄여부에 증빙 서류 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가족의 비협조로 인한 어려움과 대사관 조회 등을 통해 제출하는 과정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 또한 가족관계상 문제점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 국적 취득과정 경험에서의 어려움

- 결혼이주민들은 국적취득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들은 공통적으로 남편 및 남편가족의 국적취득에 대한 비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어능력 시험에서 특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주민들은 국적취득 과정에서 높은 재산기준과 남편의 협조의 필수 요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 결혼이주민들은 국적취득과정에서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크게 토로하였다.

(라)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 결혼이주민들은 가족 안에서 남편의 폭력과 전적인 양육부담 전가, 남편 가족의 학대 등에 노출되어 있었다.
- 결혼이주민들은 배우자와 다른 문화 속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 결혼이주민들은 이혼 후, 남편으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 우려로 인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 결혼이주민들은 한국에서 거주하며 자신의 출신국에 대한 주변의 무시 등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 남성이주민의 경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차별과 무시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남성 결혼이주민들은 노동현장에서의 인권문제와 부당한 차별 경험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2)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결혼이주민들은 현행 2년마다 돌아오는 체류연장 신청기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재산기준을 보다 낮게 책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결혼이주민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행정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결혼이주민들은 국적취득 조건 중 한국어능력 시험의 난이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결혼이민자들은 귀책사유 입증없이 체류연장기간은 물론 국적취득 인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나.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1) 체류기간 연장 및 영주자격 취득, 국적취득 업무에 나타난 문제점

(1) 체류기간 연장 업무상의 문제점

-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들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체류기간 연장업무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더불어 모호한 기준과 매뉴얼 부재로 인한 표준화된 적용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 업무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체류자격 및 기간 연장 업무에 있어 결혼이주민과 배우자간의 부부갈등 문제와 배우자의 동의조건이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을 언급하였다. 특히 민간기관 현장기관 업무담당자들은 남편의 일방적인 학대와 폭력, 의도적인 이혼, 가출신고로 인해 결혼이주민이 체류연장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였다.
- 반면,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재량의 여지는 있으나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의 첨예한 대립시 조율이 어려운 점과 의사소통의 어

려움을 언급하였다.

- 업무담당자들은 결혼이주민들이 자녀가 없거나 이혼 귀책사유로 인해 체류연장시 어려움을 겪으며, 안정적인 체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즉, 가정해체 과정에서 체류자격 문제로 인해 체류자격 연장과 영주자격 취득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었다.
- 반면 공공기관 공무원의 경우 귀책사유가 체류자격 기준에 제시되고 있지만, 이 기준의 적용이 모호한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 업무담당자들은 한국인 배우자(남편)의 신원보증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고 보고 있었다. 즉, 신원보증 서류를 빌미로 결혼이주민의 체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 업무담당자들은 결혼이주민이 합의이혼을 통해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이혼 이후 일방적인 배우자의 거부나 가정폭력 우려로 인해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나)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 업무상의 문제점

- 업무담당자들은 현재 영주자격 취득기준에 있어서 품행단정, 재산기준, 범죄여부 등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한 해석 적용으로 인해 영주자격 취득인정 여부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먼저, 품행단정 기준과 범죄여부에 대한 애매한 기준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 업무담당자들은 재산기준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 결혼이주민들이 체류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 특히 민간기관 현장전문가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체류연장 기간이 결혼이주민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큰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2)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업무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체류 연장기간 허가와 관련한 연장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할 기관의 재량권의 범주가 크고 모호

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일부 현장전문가들은 재량권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두면서 무조건 연장허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체류기간은 기본으로 하면서 불가항적인 사례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기한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업무담당자들은 자녀유무와 귀책사유 없이 체류자격 유지와 영주자격 취득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녀가 없거나 이혼을 한 귀책사유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체류자격 유지와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다양한 상황에 처한 결혼이주민을 만나는 민간기관 현장전문가들은 사례들마다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철저한 근거서류를 통해 악용소지를 예방하고, 유책사유 적용 전제를 통해 체류자격 유지와 영주자격 취득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업무담당자들은 배우자(남편)의 신원보증제도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업무담당자들은 결혼이주민들이 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받아 체류자격을 유지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즉, 결혼이주민들은 면접교섭권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체류유지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실제 서류준비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업무담당자들은 현재 영주자격 취득에 대한 인정기준인 품행단정, 재산관계입증, 한국어능력시험의 인정절차과정이 모호하면서 기준이 엄격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간기관 현장전문가들은 ‘품행단정’의 인정기준이 모호한 점과 재산기준 및 한국어능력시험의 인정기준이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업무담당자들은 영주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국적취득 기준은 적절성 검토를 토대로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적취득의 세부조건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시간과 한국어능력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 세부기준에 있어서는 민간기관 현장전문가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능력시험은 현행 유지를 제시하지만, 법무부 공무원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능력기준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업무담당자들은 결혼이주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혼이주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교육 커리큘럼의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3.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결과 요약

- 결혼이주민 당사자는 물론 현장전문가들 모두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체류기간 연장에서 연장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 결혼이주민들은 체류자격 기간 연장,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의 관련 과정에서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의 비협조가 실질적인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짧은 체류허가 기간으로 인한 잦은 연장신청과 배우자의 행정절차 과정상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혼이주민들은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협조를 빌미로 가정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 배우자(남편) 등의 동의, 한국어수준, 재산기준 등에서 오는 높은 자격요건이 이들의 체류연장과 영주자격, 국적취득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업무담당자들은 국적 취득에 있어서의 기준인 한국어능력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은 타 기준보다는 강화되어야 할 의견들이 발견되었다.
- 결혼이주민들은 자녀가 없거나 이혼, 사별 시 귀책사유 입증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결혼이주민들은 이혼을 하더라도 자식이 없는 경우 귀책사유로 출입국 담당자의 재량권으로 2~3년을 귀책사유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지만, 그 이후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없으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체류연장과 영주자격 취득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었다.
-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불친절한 업무태도와 불확실한 정보 제공 등이 발견되는 것이 문제로 제시되었다. 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역시 결혼이민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업무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시사점

- 결혼이주민 당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에 있어 배우자(남편)의 동의조건을 없애거나 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적절한 재산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주자격의 경우 국적취득에 비해 언어적 측면에서 낮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활용수준을 영주자격과 국적취득시를 달리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체류자격 유지 및 국적,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에 있어 전반적으로 정확한 정보안내를 토대로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기간 연장을 2년마다 하는 방안에 있어서의 연장이 필요하다. 민간기관 현장전문가들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행정적인 재량권은 유지하되, 체류기간을 연장(2년→3년)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사례마다 달리 적용되어야 할 유연성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체류기간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 결혼이주민 당사자들 및 현장기관 업무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체류자격 유지시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 입증과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와 영주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현장기관 업무담당자들은 영주자격 취득기준에 반해 국적 취득기준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 심각한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에 놓여진 문제 개입 및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사례개입 강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할 행정기관의 수요자의 욕구에 근거한 행정 처리와 더불어, 결혼이주민들의 체류기간 연장과 영주자격, 국적취득 과정에서 보다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가.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 필요

1) 현황

- 결혼이주민의 입국시 체류자격 및 현재 체류자격은 결혼이민비자(F6, F-2-1) 소지자가 가장 많았으며(42.4%, 55.9%), 응답자의 76.1%가 체류연장 경험이 있었다. 평균 체류연장 횟수는 약 2.7회였고 체류연장 기한은 22.8개월이었다.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 평균 취득시한은 15.7개월이었으며, 혼인귀화자의 경우 23.6개월로 비교적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었다.
- 결혼이주민의 약 50% 체류연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주요 이유로는 한국어가 미숙하고(17.2%) 체류인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13.2%), 체류연장 관련 정보와 방법을 잘 몰라서(9.7%) 순이었다.
-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60.3%가 체류연장이나 영주권/국적 취득을 통해 향후 한국에 체류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영주권/국적 취득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이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 수 없는 환경’(35.3%)을 꼽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미숙(31.8%), 재산기준 미충족(16.7%), 국내 거주기한 미충족(13.6%), 남편 및 가족의 비협조(12.1%) 순이었다.
-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 결혼이주민들은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해체를 고려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상 어려움이나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하여 불만족스러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민이 국내 체류자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혼인상태여야 하고, 혼인 파탄 시에는 배우자(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비양육권자라도 면접교섭권 행사를 입증해야 체류자격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 또한 결혼이주민의 체류연장 과정에서도 결혼이주민들은 남편 및 남편가족의 도움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었다(73.6%). 즉 결혼이주민들은 남편이

나 남편 가족의 협조 여부나 범위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가 확보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므로 불만족스러운 혼인관계나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 또한 혼인파탄 과정이나 이후에도 배우자의 귀책사유나 자녀양육 유무,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등을 입증해야 체류자격 유지가 가능하므로, 결론적으로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남편 가족에 따른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종속적 상황을 전제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정책제안

- 현재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은 남편 및 남편가족의 협조 여부 및 범위에 따라 그 안정성이 종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체류인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시 정부의 재량권이 크므로, 현행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유지 및 연장 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면 i) 결혼이주민의 최초 입국 시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국적법 시행령 규정을 폐지한다. ii) 결혼이주민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시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미만으로 체류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결혼이주민의 예측가능성과 알권리를 보호한다. iii) 국적법상 간이귀화 신청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을 보유하는 등의 재정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결혼이주민의 현실에 맞추어 완화하고, 결혼이민 초청시 국민인 배우자의 재정요건 신설 규정이 시행된 2014.4.1. 이전에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혼이주민에 대하여는 간이귀화 요건에 재정능력 요건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당사자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체류자격 요건의 완화(38.4%) 및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상관없는 체류자격

유지’(31.4%)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체류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정책적 욕구가 가장 높으므로(33.1%), 혼인상태 유지나 배우자 귀책사유 입증, 자녀양육 유무,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를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유지의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면 i)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요건에서 결혼이주민에게 ‘귀책사유 없을 것’을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책임을 지우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되, 규정 개정 전까지는 ‘결혼이주민의 주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결혼이주민에게 귀책사유 없을 것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ii) 혼인이 단절된 결혼이주민 중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결혼이주민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간이귀화신청 대상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iii)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간이귀화의 요건으로 2년의 국내거주 요건을 일률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국적 취득 시 까지 결혼이주민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을 한국인 남편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국내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재정비한다. iv) 현재는 귀화허가의 심사기한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아, 결혼이주민이 귀화를 신청한 후에도 수년간을 불안정한 외국인의 지위에서 체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심사기한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나. 체류연장 및 영주권/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절차상 어려움에 대한 대응 필요

1) 현황

-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약 50%,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에는 약 42%, 혼인귀화자의 경우 약 48%가 체류연장/영주권/국적 취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주요 이유로는 관련 정보와 방법을 모르는데서 오는 어려움, 한국어 미숙, 담당기관 직원의 까다로운 태도가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꼽혔다.
- 체류 과정에서는 남편 및 남편가족의 도움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73.6%), 누구에게도 도움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5%였다. 또한 체류자격 연장절차에 대해서도 37.4%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

다. 영주자격 체류자 역시 남편 및 남편가족의 도움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57.1%), 누구에게도 도움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11.9%였다. 혼인귀화자도 남편 및 남편가족의 도움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69.5%), 누구에게도 도움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5.1%나 되었다.

- 즉 체류연장, 영주권 및 국적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거나, 체류연장 절차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로 나타났으므로, 결혼이주민의 체류연장 및 영주권/국적 취득 과정과 절차상 지원과 대응이 요구된다.

2) 정책제언

- 체류연장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체류연장 및 영주권/국적취득 과정에서 결혼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지원 서비스 제공확대, 체류연장 방법 등 정보취득에 대한 보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수립, 담당직원의 결혼이주민 대응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
- 현재 체류연장 및 영주권/국적취득 과정에서 결혼이주민들을 절차상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이민자네트워크’ 등을 통한 이중언어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자원봉사단의 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의 욕구에 따른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체류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주요 관련기관에 이중언어가 가능한 행정지원 가이드 및 인력을 확보하여, 결혼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특히 체류연장 및 영주권/국적취득 심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 차별을 느끼는 행동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의 실시 및 면접관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다. 결혼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

1) 현황

- 조사결과 결혼이주민의 절반 가까이(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적 폭력,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폭력 위협의 경험 빈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높은 발생 빈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는 응답한 비율이 31.7%에 달했다. 그 이유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거나 도움 요청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 결혼이주민 관련 주요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미인지 비율도 약 30%에 달했다. 특히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인식 수준이나 실제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결혼이주민의 심리정서적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언어 및 사회적 장벽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감, 차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이 당면한 폭력피해, 차별과 불안 등을 완화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언

- 현재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수립, 운영되고는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 구제 및 예방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1차 피해자 지원 기관인 1577-1588 다누리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폭력 피해자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주민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이주여성을 위한 피해자 쉼터에 대한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폭력피해 여성 쉼터 입소시 자녀동반 피해자의 경우 입소 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더불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특히 긴급복지지원시 무자녀 결혼이주민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조치가 요구된다.
- 결혼이주민의 언어사회적 장벽감, 불안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욕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결혼이주민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선주민 교육이

나 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라.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1) 현황

- 혼인단절 등 가정해체 상태인 결혼이주민들이 혼인상태 유지 결혼이주민에 비해 가정폭력 경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유지 결혼이주민에 비해 상태인 결혼이주민이 건강상태나 한국생활만족도가 낮았다.
- 가정해체 과정에서 특히 결혼이주민들은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63.0%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남편 및 남편 가족의 방해로 인해 체류연장이 어려웠고(19.6%),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이나 면접교섭권 행사 등 체류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워(17.4%)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류연장 과정에서도 혼인유지 상태의 결혼이주민에 비해 남편 및 남편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비율이 더욱 높았다(14.5%).
- 가정해체 결혼이주민의 경우 혼인유지 상태의 결혼이주민에 비해 남편이나 가족의 협조 여부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에 따른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류안정성을 더욱 크게 위협받는 여건에 놓여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해체 상황의 결혼이주민 지원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 정책제언

-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가정해체 상태에 있는 결혼이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자녀’가 있을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어, 무자녀인 가정해체상태(한부모) 결혼이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시에도 무자녀 결혼이주민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조치가 요구된다.

- 앞서 체류자들이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 수 없는 환경’으로 한국어 미숙, 재산기준 미충족, 남편 및 가족의 비협조’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제시했는데, 한부모 결혼이주민의 경우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여건이므로 한국어를 습득할 교육시간 확보가 충분치 않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영주권이나 국적취득 위한 재산기준 충족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 결혼이주민의 경우 영주권/국적취득을 위한 한국어 활용수준 및 재산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해체 상태에 있는 결혼이주민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임대주택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마. 정책대상자로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식전환

1) 현황

- 정부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와 민간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결혼이주민관련 지원기관) 업무담당자 조사결과 두 집단 간 결혼이주민 체류와 관련해 인권침해의 심각성, 체류현황 및 위협 요인 등에 대해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정부기관 업무담당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가기간 한정, 결혼이주민의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 및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입증서류제출, 품행단정 요건 구비 등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아, 결혼이주민을 특정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정부기관 업무담당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 및 이에 따른 결혼이주민 정책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와 안정적인 체류보장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결혼이주민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자 권리의 주체로써 전제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2) 정책제언

- 결혼이주민을 ‘관리 대상’으로서가 아닌 정책 대상이자 행정 수요자로서 전제하고, 공공서비스 대상자로서 그들의 현황과 욕구에 대응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적/행정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주민의 경우, 다른 이주민과 달리 국내 입국 목적이 혼인 및 이에 따른 자녀출산/양육이며 추후 영속적인 국내 체류가 예측되므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정책적 당위성이 확보된다.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결혼이주민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통합적인 방향으로의 정책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이다.
- 특히 현행 결혼이주민 체류관리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외국인체류안내 매뉴얼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매뉴얼에 근거해 체류자격 심사시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정부기관(업무담당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결혼이주민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가.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 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안

① 결혼이주민의 최초 입국 시 신원보증 제도 폐지

-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던 조항은 2011년 폐지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 및 [별표5의2]에서는 결혼이주민이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원보증제도는 체류기간 연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부부관계를 막고,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내린 결정내용에 따르면 “신원보증서는 피용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정한 신원보증법에 따른 것으로 이를 국제결혼가정에 적용하면 국가는 사용자, 한국인 배우자는 중간 관리자, 결혼이민여성은 피용자가 되는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한 바 있으며 실제로 결혼이주민들은 여전히 신원보증을 빌미로 배우자로부터 협박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 및 [별표5의2]에 규정된 신원보증서의 제출의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② 간이귀화의 국내거주 요건 및 귀화허가 심사 기한

- 기존 국적법은 외국인이 국민과 혼인을 함으로써 곧바로 혼인귀화를 허가하였으나, 위장결혼이나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되는 일이 증가하면서 현행 국적법에서는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제도’가 폐지되고, 간이귀화에 의하여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국적 취득 시까지 결혼이주민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을 한국인 남편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박승용, 2014), 또 하나의 문제는 귀화신청 후 귀화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기한이 명문화되어있지 않고, 심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결혼이주민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 현실이 이와 같다면 결혼이주민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상 정한 2년의 체류요건을 충족해야할 뿐 아니라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 다시 최소 1~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총 4년 이상의 체류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결국 결혼이주민은 한국에 정착하여 생활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면서도 4년 이상을 불안정한 외국인의 신분으로 있게 되며, 동시에 국민과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만 비로소 국민으로서의 법적 정체성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혼인상태에서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주민이라도 허가여부가 확정되는 1~2년 사이에 이혼 등으로 혼인이 단절되었다면, 귀화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이귀화의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귀화허가 업무의 신속성과 결혼이주민의 체류안정성, 귀화를 신청한 결혼이주민 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결혼이주민에게 인정되는 체류기간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득 시에 1년(해피스타트 이수시 2년)으로 매우 짧으며 이후 체류연장도 2년 이하의 기간에서 재량으로 인정되고 있어, 결혼이주민이 간이귀화의 체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한 번 이상의 체류연장을 거쳐야만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결혼이주민이 간이귀화허가를 획득하기 까지는 4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므로, 최초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체류기간 상한인 3년으로 부여하고, 나아가 연장 시에도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을 3년으로 허가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류기간을 3년 미만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도록 하여, 신청권자인 결혼이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결혼이주민이 국민이 배우자와의 관계에만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법적 주체성을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의 간이귀화 및 체류연장 문제

-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간이귀화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현행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과 ‘국적법’상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에 따라,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사람은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혼인단절에 국민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도 결혼이주민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잔여 체류기간을 채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간이귀화를 인정하고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제2항에서는 결혼이주민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제시된 대부분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들이다.
- 그러나 외국인의 신분으로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열악한 결혼이주민으로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의 연장 및 국적이 부여되는 바, 법무부장관의 재량이라는 조건이 모호하여 문제가 된다.
- 결국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혹은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문언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김

상찬·김유정, 2011)’로 구체화 하는 방안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더 나아가 두 사람의 결합인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데에는 어느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드문데도 현행 체류 및 국적관련 법제는 외국인인 결혼이주민에게는 결혼 파탄에 전혀 책임이 없어야 하는 듯이 규정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결혼이주민의 권리보장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채워 간이귀화가 가능하도록 법 문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혼인단절 결혼이주민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혼인 지속중인 결혼이주민과는 달리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제10조 제2항에서 제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단절된 결혼이주민에게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결혼여부에 따른 차별이며, 동일하게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결혼이주민이 원국적을 보유할 권리를 이유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차별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행 ‘국적법’상으로 간이귀화가 가능한 결혼이주민이라면 제한적 복수국적 취득을 동일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최근의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에는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결혼이주민에게 자녀 양육자(F-6-2)로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의 지침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정으로, 사실상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한편 위의 특칙은 면접교섭권이 있더라도 제한, 배제된 경우나,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에는 체류를 불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 측에서 결혼이주민이 자녀를 만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거나 방해하여 체류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 체류허가를 인정하는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만으로 정하고 있어 문제된다. 즉, 결혼이주민은 국민의 배우자(특히, 아내)나 국민의 부모(특히, 엄마)로서만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둔 이주민으로서의 주체성과 권리는 무시된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결혼이주민을 도구화, 기능화하여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므로 문제가 된다.

- 또한 면접교섭권만 보유한 결혼이주민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결혼이주민과 달리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이무선, 2014).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자녀양육권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혼인 중에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간이귀화 및 영주자격 변경허가의 요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

- 현행 ‘국적법’상 귀화의 요건(제5조 및 제6조)과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에 따르면 귀화 및 영주자격(F-5)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품행단정’이라는 요건은 그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예측가능성이 없는 등 재량이 남용될 여지가 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2년 ‘품행단정’의 상세한 기준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구체적인 규정을 법령 등에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품행단정 요건은 폐지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목의 나. 에 의하면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결혼이주민은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나,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증명사항서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결혼이주민 중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 이주하여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2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3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스스로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국적취득에 있어 한국인 배우자가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또는 국적취득을 빌미로 학대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결혼이주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한편 2013. 10. 10. 일부개정되기 전의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소득 관련 요건 등에 관하여 심사·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재산이 3천만원 이상에 달하지 않는 초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민도 결혼사증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국적법 시행규칙'은 간이귀화 신청에 있어 3천만원 이상의 재산 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미 2013. 10. 이전에 국내에 정상적으로 입국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재산이 3천만원에 달하지 않는 결혼이주민은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 이번 결혼이주민 실태조사에 접수된 응답에 따르면, 향후 국적취득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의 35.3%가 '요건을 갖추 수 없어서'라고 답하였다. 또한 국적취득요건 미비에 관하여 '재산기준 미충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16.7%로 두 번째로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도 연구용역보고로 발표한 '제조업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히 여성이주자들은 임금이 매우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이 드러난다.
- 이상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목의 나.의 소득요건은 그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고 특히 2013. 10. 이전에 결혼이민 사증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에게는 적용을 배제, 또는 그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사실상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결혼이주민이 일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 의지만 있어도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편, 결혼이주민이 귀화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하면 국적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자에 대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귀화허가가 불허되므로(동조 제5항 2호) 면접심사는 귀화를 원하는 결혼이주민에게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귀화심사는 물론 체류연장/영주허가 심사를 경험한 결혼이주민들이 심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 차별을 느끼게 하는 행동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있어 면접관의 자격심사 및 인권,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⑤ 가정폭력피해자인 결혼이주민에 대한 보호문제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 특칙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어서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에 있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인 배우자 측에서 협의이혼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체류를 보장하거나 협의이혼의 적정성판단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 등에 관해 명문화시켜 구제할 필요가 있다.

2)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안

① 국제결혼 중개업에 재검토 필요

- 결혼이주민이 사실상의 매매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이며, 이의 규제를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은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로부터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위 법률은 부정한 방법이나 속임수로 대상자를 모집·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표현이 애매하다는 점과 피해자 보호나 처벌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또한 결혼중개업자에게 중개결혼과 관련하여 서면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지 중개업자와 이루어지는 결혼이주민과의 결혼중개계약을 규제하는데 있어 위 조항을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 이에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그 예로써, 피해여성이 본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국비용을 지원하고, 국내 체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규정의 신설, 그리고 생계를 보장하는 피해자 보호조항을 위 법률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결혼 지원금 제도’는 사실상의 매매혼을 지원하는 반인권적 제도인바, 조속한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근본적으로는 대만의 예와 같이 영리적인 국제결혼중개업을 금지하여 속

성결혼의 방식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민에 대한 보호 필요

- 실제 결혼이주민들이 국제결혼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점은 가정폭력이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가정폭력은 비단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 입증이 어려운 협의이혼 강요, 낙태강요, 악의적 유기, 인격모독, 언어적·심리적 폭력, 경제적 착취 등 무형적 가정폭력의 경우도 포함된다. 국내법은 이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법제도와 법무부의 업무관행은 결혼이주민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려면 심각한 정도의 폭력을 상습적으로 겪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해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 결혼이주민은 한국인 배우자의 교묘한 방식의 폭력과 협의이혼의 요구에 굴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상 명문규정을 통해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체류보장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부여, 법률구조,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의 부여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김상찬·김유정, 2011).

③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개선

- 결혼이주민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지원 법률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으나, 이 역시 ‘합법’적 체류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민만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주민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체류 연장이나 국적신청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는 경우, 결혼이주민은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 경우 결혼이주민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배제되어 더 이상 이들이 대한민국의 사회에 정착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등(제2조)과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전제하고 있어(제2조 제1항 나목)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다른 나라 출신 외국인간의 혼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가족을 이루게 된 원인으로 혼인만을 인정하고 있어, 입양과 결혼이주민이 수반하는 가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사실혼에 이르지 못한 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의 그 자녀, 자녀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의 사실혼 배우자, 한국국적의 혼혈인 가족 등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 이처럼 ‘체류자격’이 합법인지 여부를 기준에 두고 정착지원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다면,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고 초과체류 상태가 된 결혼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도 위 법률의 보호 내지 지원대상이 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5조는 재한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획일적으로 위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 규정에 대하여는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에 있어 지나치게 단기로 제한하였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이승우, 2009).
-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경우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각종 행정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원대상을 한정할 경우 출산 및 건강, 기타 이주당사자의 주된 귀책사유 없이 생계활동을 중단한 이주자, 특히 가사노동 및 양육, 노부모봉양 등을 담당하는 결혼이주민,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미등록 결혼이주민 등

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주기간 제한이나 생계활동중사 조건은 조속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④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필요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사회보험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결혼이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지위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양육자 지위에서 일반 노동이주 여성과는 달리 지원혜택을 다소 폭넓게 받고 있다. 그러나 위 지원을 받는 결혼이주민은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이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인단절자 중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대하여는 2012. 12. 6.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있었으므로 조속한 개정을 통해 혼인관계가 단절된 결혼이주민에 대하여도 지원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목적

2016년 12월 기준으로 결혼비자(F-6)로 체류 중인 이주민(121,332명)과, 한국인과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 114,910명을 포함하면 전체 결혼이주민 수는 288,603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대다수(83%)를 차지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특히 2000년 초기 입국 이후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폭력피해, 국적 및 영주자격 취득과정에서의 어려움, 이혼 및 재혼과정에서의 체류자격 유지 위험, 자녀 국적취득 제한, 사회서비스 수혜 배제 등 안정적인 체류를 위협하는 여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등).

하지만 그간 이주민 관련 연구는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정책 역시 이민자의 취업 또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결혼이주민의 상황,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이주민의 경험과 인권실태를 주목하지 못하였다.

전체 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의 범주를 탈피한 결혼이주민에 대한 접근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놓인 결혼이주민의 체류 현황과 인권 실태를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시, 분석하고, 관련 국제규범의 내용과 선진제도를 검토하여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필요성

1) 결혼이주민의 폭력피해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69.1%가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등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누리콜센터 상담통계(2015)의 상담내용 분석을 살펴본 결과, 119,982건의 상담 중 한국 생활정보 제공이 28%, 부부 및 가족갈등 15%,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12%, 이혼문제 11%, 체류 및 국적 10% 등으로,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이 폭력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등록 체류 결혼이주여성이 폭력피해를 경험할 경우,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사건종결 후 추방절차가 진행되므로, 체류가 불안정한 폭력

피해자는 추방의 두려움으로 인해 폭력피해 신고를 꺼려 인권침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결혼이주민의 폭력 피해에 따른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결혼이주민의 불안정한 체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제도적 대응의 필요성

2016년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는 208,971명으로 전체 10.2%에 달하고, 2016년 1년 동안 결혼이민비자에서만 1,433명이 미등록 체류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²⁾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영주자격, 국적취득 등의 권리는 한국인 가족에게 종속되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 출산 중심으로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귀화 전 결혼이주민이 체류와 이혼을 동시에 원할 경우, 미등록 체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결혼이주여성의 이혼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가정폭력 등 혼인피해 결혼이주민은 혼인이 단절된 이후에도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법무부, 2014), 이혼 후 불안정한 체류 지위로 인해 자녀양육권 혹은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6).

또한 혼인귀화자의 경우 국적취득을 위한 신청 조건(거주기간 2년)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심사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2017년 2월 법무부 국적처리 기간 안내 지침에 따르면, 혼인귀화자의 경우 국적취득시 10개월이 소요되며, 무자녀 혼인귀화자의 경우 18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혼인관계 파탄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국적취득이 어려워 불안정한 체류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한국인 자녀에 대한 등록권 보장 및 미등록·무국적 이주아동 보호 등 결혼 이주민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의 필요성

2015년 기준 19세 이하 미등록 체류자는 6,2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와 보육, 교육 등의 기본적 권리보호에서 제외된 국내 무국적 이주아동은 현재 약 2만 명으로 추산된다.³⁾

현재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출생 등록이 어렵거나 무국적 상태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미등록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거나 혼인관계

2) 2015년 출입국외국인 통계연보, 2016년 12월 통계연보

3) 2015년 11월 4일 KBS '추적 60분' 보도

밖에서 외국인 여성이 출산한 경우 출생등록이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의 모성보호를 침해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결혼이주민의 경제활동 및 노동 환경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 모색의 필요성

최근 결혼이주민의 경우 여러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거주하거나 국내에서 혼인 또는 동거를 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고용허가제는 ‘노동시장 보충성의 원칙’외에도 ‘노동허가 불허’와 우리 사회의 정주화 방지의 측면에서 ‘가족동반 불허’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ILO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외국인의 취업허가(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침적 권리로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할 권리이므로, 가족동반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김창연(2009)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설문조사대상 165명 중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지켜진다”는 답변은 42명(25%)에 불과했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은 106명(64%)에 달하였다. 농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2013)의 조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27만원이었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19만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은 대부분 한 달 평균 약 2.1일 나타났고 월 30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자도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2013)의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10.7%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주여성 노동자의 경우 일터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 상태에 처하기 쉽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의 경제활동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경제활동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에서 배제된 결혼이주민의 보호 방안 검토의 필요성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 정의에 따르면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여,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결혼이주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UN의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2015. 6)”에 따르면 ‘특별보고

관은 정부가 다문화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외국인 간 또는 민족간 결합을 포함시켜 현재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회보장 규정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경우, 외국인 특례 조항을 통해(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임신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서비스 수급자격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인 가족 중심 접근으로서 이혼, 사별 후 혼자된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따라서 사회보장 지원체계 및 사회통합에 결혼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 및 확대를 위한 논의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6) 소결

앞서 살펴본 문제들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사실상 간과되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놓인 결혼이주민의 체류 현황과 인권 실태를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시, 분석하고, 관련 국제규범의 내용과 선진 제도를 검토하여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가. 연구내용

1)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검토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내 체류 결혼이주민의 입국 과정에서부터 정착, 가족 구성 및 경제활동 등의 현황을 검토하고, 외국인등록증 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 국적취득 실태 및 현황 파악,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자료를 통해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정책의 추세와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2) 국내외 법규 및 정책, 판례 분석

체류의 성격(헌법 기본권 또는 국제인권협약 상 근거), 체류보호와 관련된 해외

결혼이주민 법령 및 정책과 판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정책의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 결혼이주민 체류현황 및 인권실태 조사

국내 체류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가족관계, 자녀양육, 가족구성 및 해체과정에서의 실태, 폭력피해 실태, 국내 체류 결혼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이용현황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4)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결혼이주민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인적 차원, 지역사회 차원, 국가적 차원 등 단계별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통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범위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을 ‘결혼이민 비자(F-6) 등으로 국내 입국하거나 체류 중인 이주민’으로 정의하고 이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특히 결혼이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불안정한 체류여건에 대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여성이주민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결혼이주민의 입국 과정에서부터 정착, 가족 구성·해체 및 체류활동 등의 인권상황 전반을 검토함으로써 차별해소와 인권침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따라서 연구방법도 이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다. 연구절차

1) 결혼이주민 대상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국내 거주 결혼이주민이었으며, 2016년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의하면 결혼이주민의 수는 서울수도권 52.4%, 중부권 11.5%, 전라도권 12.3%, 경북

권 10.8%, 경남권 13%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조사대상을 서울경기지역 600명, 그 외 지역 각각 100명씩 한정하여 하여 표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061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14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95.6%). 이중 무응답 및 응답 누락 등 분석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94부를 제외하고 총 920명의 표본을 조사대상으로 확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2달여간 실시되었다.

(2) 조사방법

설문대상자 선정은 다양한 이주여성 관련기관 및 다문화 관련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되 거주 지역, 연령, 국적취득 여부, 체류현황, 출신국 등의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결혼이주민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적 미취득 등 조사대상자의 결혼이주민의 다양한 상황과 체류 지위로 인해 대상자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주민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통한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다양한 조사대상자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국내 결혼이주민의 수가 많은 출신국인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등 5개 국어로 번역하여 실시하였다.

(3) 조사절차

가) 설문지 설계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내용이 정책 제언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문지 설계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다. 1차 연구진 초안 작성 ⇒ 현장전문가 자문 ⇒ TFT 및 인권위 검토 ⇒ 설문지 수정을 위한 대상자 사전인터뷰(Pilot) 실시 ⇒ 설문지 재검토 및 수정 ⇒ 최종안 완성 ⇒ 인권위 확인 ⇒ 번역 및 감수 과정을 거쳐 설문지를 개발, 확정하였다.

나) TFT TEAM 회의

TFT 회의는 총 2회 실시되었다. 먼저 결혼이주민의 체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개발 및 점검을 위해 1차 TFT TEAM 회의를 실시하였다. 1차 TFT 회의에는 연구진과 TFT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가 참석하여 설문지를 검토하였다. 2차 TFT TEAM 회의에서는 완료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 I-1> 1차 TFT 회의일정 및 참여자

일 시	2017. 6. 2 (1차) / 2017. 11.10 (2차)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B244호 세미나실		
구성원	참석자		소속
	연구진	김은정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복지학과 교수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허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TFT TEAM	강혜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대표
		공상길	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조난영	다누리콜센터장

2)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기간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체류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및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 제도적 개선과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총 12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69부를 회수하였으며(54.3%), 무응답 등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2부를 제외한 총 67부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2달여간 실시되었다.

(2) 조사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7개), 다누리콜센터(6개 지역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6개 지부) 등 결혼이주민 관련 기관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담당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회수율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설문조사 시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업무담당자 리스트를 확보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회수율 담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설문조사 진행하였다.

(3) 조사절차

결혼이주민 대상 조사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내용이 정책 제언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문지 설계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다. 1차 연구진 초안 작성 ⇒ 현장전문가 자문 ⇒ TFT 및 인권위 검토 ⇒ 설문지 수정을 위한 대상자 사전인터뷰(Pilot) 실시 ⇒ 설문지 재검토 및 수정 ⇒ 최종안 완성 ⇒ 인권위 확인의 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관련기관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3) 결혼이주민 및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담당자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보다 심도깊은 연구를 위해 결혼이주민 당사자 현장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은 결혼이주민 15명,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10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 결혼이주민 대상 심층면접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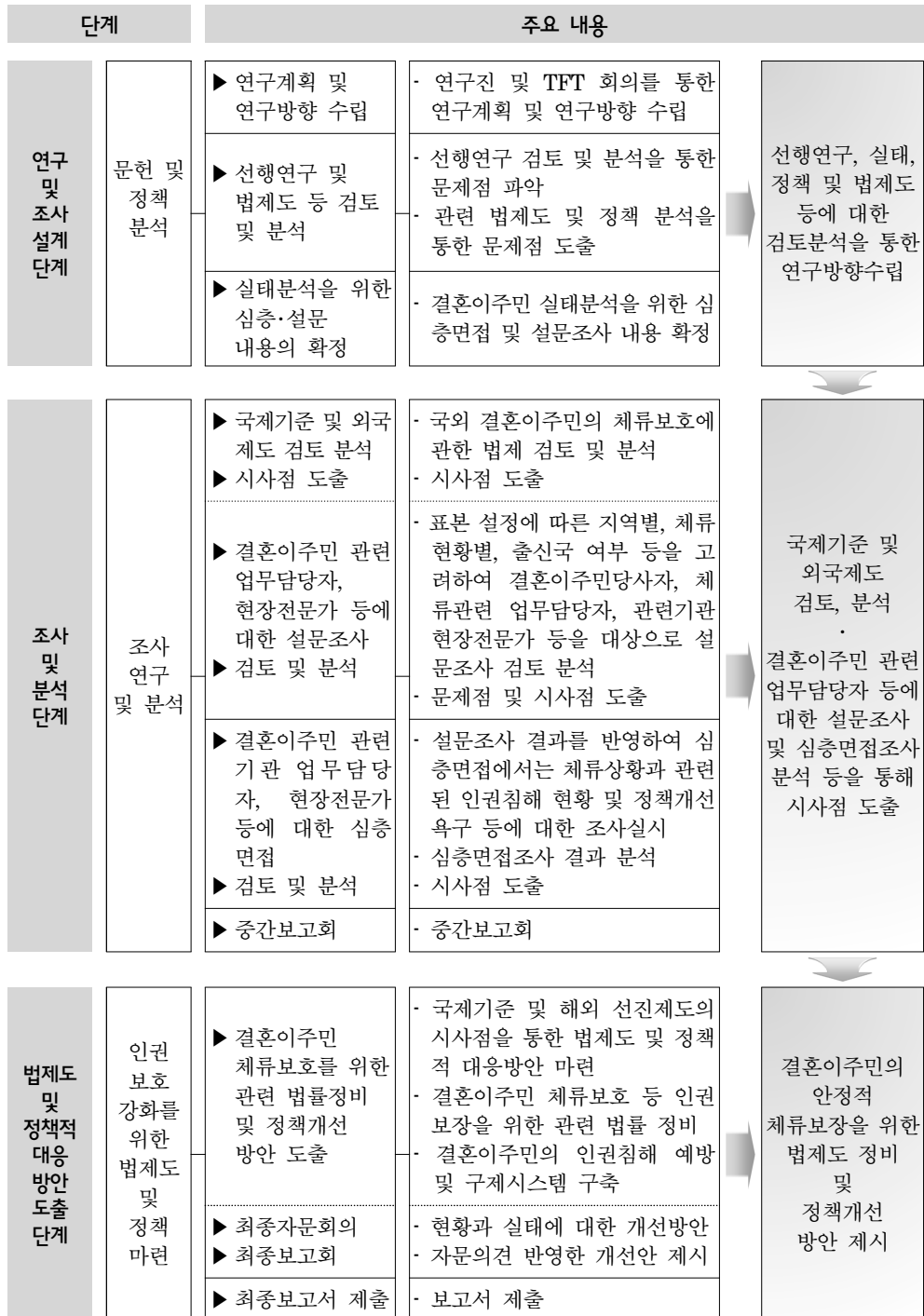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참여자는 총 15명이었으며, 이주관련 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시에는 체류유형, 출신국가, 연령, 혼인상태 등 다양한 조건들을 포함하는 참여자를 선정하여 결혼이주민의 체류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 심층면접 조사

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참여자는 민간기관 현장전문가와 공공기관 공무원을 나누어 각각 진행하였다. 민간기관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 이주여성지원기관 실무자, 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이주여성쉼터 실무자,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심층면접에서 미흡한 점은 연구진이 추가적으로 서면을 통해 면접을 실시하였다.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은 출입국관리소 등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 형태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조사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참여자 전원에게 인터뷰에 대한 녹음과 녹취자료 활용, 참여자 익명처리 및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여 동의를 받았다.

<그림 I-1> 연구개요



3. 선행연구 검토

가. 기존 연구의 한계

1) 성별 통계분석의 부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49,441명이고,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하나, 통계월보는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수치를 제공할 뿐 성별 통계분석은 행하지 않고 있다.

통계월보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비자에서는 여성이 83%(전체 121,332명 중 101,393명)로, 취업 관련 비자에서는 남성이 특정활동비자 92%(전체 21,498명 중 15,258명), 비전문취업비자 71%(전체 279,187명 중 24,078명)로 다수를 차지하여 현실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기초적인 통계자료에서조차 성별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여성이주민의 상황과 경험을 대변한 정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정책형성과 정책결정과정의 토대가 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성별 분석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성이주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방향의 한계

국가의 연구나 정책은 주로 경제활성화를 염두에 둔 인재유치나 취업전선에 국한되어 있거나 전체 이주민 또는 가족단위로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결혼이주민이 겪는 특수한 경험이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중앙행정기관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방/통합/인권/안전 4개의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성이주민을 위하여 특화된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농업 교육실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아동학대에 대한 진술조력인 지원,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담 검사·수사관 대상 전문화교육 실시’ 정도이며, 인권정책에 배정된 예산(655.21억원) 또한 ‘경제활성화 지원’에 배정된 예산(3,079.82억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정부가 이주민의 인권 특히 여성이주민의 인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접근방향(2015)’ 연구에서는 이주민 가족의 이주형태를 분석을 통해 불안정한 현실을 지적하며, ‘가족’의 생활안정, ‘유학생’의 정착유도 지원, ‘자녀’양육·교육 관련 지원, 이주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결혼이주민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3) 추상적인 차원의 논의 한계

결혼이주민 관련 연구에서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거나 추상적인 차원의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어 결혼이주민,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의 ‘결혼이민 체류관리 개선연구(2014)’에 따르면 결혼이민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가령 이혼 문제, 결혼이주민의 자녀가 겪는 어려움, 국제결혼 중개에 관련된 법적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결론에 여러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연구는 ‘결혼이민가족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지’에만 집중하여 결혼이민가족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연구(2009)’에서는 2009년 당시 이미 12만 명을 넘어선 결혼이주민, 그 중에서도 109,474명(87.5%)에 달하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규정과 정책을 검토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관련 법 개정, 지원 근거 명문화 등 법적 해결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인프라 구축 또는 협력체계 구축, 창업지원 등 다소 추상적인 해결책에만 머물러 있다.

그 밖에 결혼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해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그 해결방안을 ‘주체성 인정’, ‘문화이해’와 같은 철학적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거나, ‘문화적 시민권’과 같은 개념을 통해 담론중심으로 접근하여, 결혼이주민의 현실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검토

이와 같이 법적 제도화의 문제, 문화적·철학적 접근 역시 중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시도이나, 우리는 포괄적인 문제제기와 추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연구 및 정책은 주로 전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해 왔고 정부 정책도 주로 이주민의 취업 또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던 탓에 결혼이주민의 상황과 경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가 표면화되더라도 단편적인 문제제기 또는 추상적인 방안을 제시함에 그쳐 체류보장과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이 처한 현실을 젠더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실태 조사와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첫째,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체류연장, 간이귀화, 국적취득 현황, 인권침해 현황 및 구제현황 등 인권상황 실태에 중점을 둔 연구로서, 이들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및 정책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결혼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 제공 및 인권침해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결혼이주민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류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결혼이주민의 차별 및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

II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및 관련법제

1. 국내체류 결혼이주민의 현황
2. 결혼이주민의 체류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
3.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국내법·제도
4.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및 결정례 분석
5. 소결

1. 국내체류 결혼이주민의 현황

가. 국내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2,049,441명으로,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외국인 중 여성은 932,235명으로 46%를 차지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87%가 아시아 지역 출신이다.⁴⁾

결혼이주민은 국제결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증가추세를 보이던 국제결혼이 1만건 이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했다. 2000년 7천건이 채 되지 않았던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5년 뒤인 2005년에는 3만건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전체 국제결혼은 2만건 수준이며, 그 중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14,800건이다.

<표 II-1> 외국인과의 혼인, 2000-2016

(단위: 천 건)

구분	총 혼인건수	외국인과의 혼인	한국남자+외국여자	한국여자+외국남자
2000	332.1	11.6	6.9	4.7
2001	318.4	14.5	9.7	4.8
2002	304.9	15.2	10.7	4.5
2003	302.5	24.8	18.8	6.0
2004	308.6	34.6	25.1	9.5
2005	314.3	42.4	30.7	11.6
2006	330.6	38.8	29.7	9.1
2007	343.6	37.6	28.6	9.0
2008	327.7	36.2	28.2	8.0
2009	309.8	33.3	25.1	8.2
2010	326.1	34.2	26.3	8.0
2011	329.1	29.8	22.3	7.5
2012	327.1	28.3	20.6	7.7
2013	322.8	26.0	18.3	7.7
2014	305.5	23.3	16.2	7.2
2015	302.8	21.3	14.7	6.6
2016	281.6	20.6	14.8	5.8

* 통계청, 년도별 혼인이혼통계에서 재구성

4) 법무부(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12월호

국제결혼의 증가로 늘어난 결혼이주민 수는 2016년 연말 기준 267,275명이다. 이중 비자 상태로 외국인 신분인 경우가 152,374명, 한국인과 결혼으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114,901명이다.⁵⁾

1) 국적·지역별 및 성별 현황

결혼이주민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적별로는 중국과 한국계가 가장 많았으며 (37.4%), 베트남(27.4%), 일본(8.6%), 필리핀(7.6%)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23,856명(15.7%), 여성이 128,518명(84.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2> 결혼이주민 현황_국적, 지역별, 성별

(2016.12.31.현재, 단위: 명)

구분\국적	계	중국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골	기타
전체	152,374 (100%)	56,930 (37.4%)	21,328 (27.4%)	41,803 (8.6%)	13,110 (7.6%)	11,606 (2.9%)	4,473 (2.1%)	3,182 (1.6%)	2,381 (1.6%)	18,889 (12.4%)
남자	23,856 (15.7%)	11,629	6,889	1,324	1,218	334	61	77	117	9,096
여자	128,518 (84.3%)	45,301	14,439	40,479	11,892	11,272	4,412	3,105	2,264	9,793

2) 혼인귀화자

혼인귀화자의 비율은 2010년에 66,474명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0만 명을 넘어서, 2016년 12월 현재 114,9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혼인귀화자, 2010-2016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년 12월
혼인귀화자 (전체누계)	66,474	77,203	84,933	93,953	101,560	108,526	114,901

5) 법무부(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12월호

2. 결혼이주민 체류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

가. 결혼이주민 체류의 헌법적 근거

1) 기본적인 인권의 주체로서 결혼이주민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 기업인의 유입, 국제결혼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다문화사회가 되었고, 기존의 국민개념으로는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인권관련법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4. 12. 29. 자 93헌마120 결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같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들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자 99헌마494 결정, 2016. 3. 31. 자 2014헌마367 결정 등 다수)고 하여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2) 국제결혼 가족의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결혼이주민의 경우 특히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로, 정착성이 매우 강하다. 이렇듯 정착성이 강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출입국관리법을 해석함에 있어 보호의 관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⁶⁾.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이중 '가족'은 부부 중 한 명이 우리 국민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인인 국제결혼의 경우도 포함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바, 한 가족 구성원이 특정

6) 문중흠 '출입국관리법 해석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의 보호' 사법논집 제60집 (2015), 120쪽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다른 가족이 그 국가에 입국하고 거주할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결합권이 혼인의 자유 중 특수한 형태로 보호된다⁷⁾.

3) 결혼이주민 체류보호의 필요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존엄은 보호될 수 없으며 행복추구권 또한 보장될 수 없다. 또한 배우자에게 종속된 체류 상황에서는 혼인 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 헌법은 ‘혼인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부부 일방의 체류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혼인 유지 여부에 따라 체류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부부 상호간에 평등하고 서로의 존엄을 보장하는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도 없는 것이다.

결혼이주민은 근본적으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장결혼 등으로 인한 불법체류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엄격한 체류관리보다는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체류관리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⁸⁾. 결혼이주민에 대한 엄격한 체류관리는 오히려 정상적인 결혼이주민의 존엄과 평등한 혼인생활의 유지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결혼이주민의 체류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

1)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제2조는 제2항에서,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제9조는 “여성이

7) 문중흥(2015) 122쪽 각주 53) 재인용

8) 김두년,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법학연구 49, 한국법학회(2013) 343쪽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 그리고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ationality of Married Women) 제1조는 “자국민과 외국인사이의 혼인의 성립이나 해소, 혼인 중 부의 국적 변경이 자동적으로 처의 국적에 영향 끼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조는 “국민의 외국인 부인은 그녀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국적취득 절차를 통하여 남편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며, “자국민의 외국인 부인이 그녀의 요청에 따라 당연한 권리로서 남편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나 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⁹⁾

4) 국제기구 권고

(1)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건해 (2009)

동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최종건해 제11항에서,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아직도 거주자격(F-2)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려”하며, “한국정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여성들이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하기 위하여 한국인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그들이 받는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

(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건해 (2011)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7월 제49차 세션에서 심의된 대한민국의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건해(2011.7.)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귀화신청 접수의 전제조건이 되는 남편의 지원이 없을 경우, 또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당사국이 협약 제9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에 관한 모든 차별적인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하여 국적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기를 권고”하였다.

9) Marilyn Achiron(2005), “국적과 무국적: 국회의원을 위한 편람”,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의회연맹(IPU)

(3) UN인권이사회,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2014)

UN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인 무투마 루티에레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하였고, 2015년 4월 인종차별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에서 1990년대에 국제결혼이 시작되어 2000년 결혼중개업자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결혼중개업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내의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과 지원서비스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대부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적용된다는 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다문화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여 이주노동자 간의 가족이나 중국, 북한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동포가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이주민 가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특별보고관은 동 보고서에서 i) 별거 또는 이혼의 경우, 결혼의 결과 또는 지속기간,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에게 체류의 안정성을 포함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 ii)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등 폭력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통지를 받고 재판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할 것, 그리고 폭력피해 여성들이 원할 경우 국내에 합법적으로 남아있을 권리를 부여할 것, iii)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하여 현재 법에 따른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3.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국내법·제도

가.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보호정책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에 있어, 단지 적법한 체류자격, 영주자격 및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법에 정해두는 것만으로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국내의 현실과 맞물려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국내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결혼이주민의 사회부적응과 가정폭력피해, 인신매매적 결혼중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가족관계의 파탄사례는 꾸준히 증가하였고¹⁰⁾, 혼인단절이나 내국인 배우자의 비협조 등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혼이주

민 역시 늘어나고 있다. 결국 결혼이주민이 국내에서 안전하고 차별 없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류자격의 취득이나 유지의 어려움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혼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2004년 보건복지부 주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2005년 5월에는 ‘외국인 이주여성 자녀의 인권실태 및 차별개선 추진’이 대통령 지시과제로 지정되었으며¹¹⁾,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다. 나아가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을 제정, 결혼이주민의 처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동법 제5조에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법무부장관의 의무로 하고 있는 바,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소관으로 2008년도부터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그 밖에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7개 부처의 장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 2010년도부터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 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 지원강화’ 등의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 관련 국내 법령과 정책은 역사가 짧은 만큼 종류는 많지 않다.¹²⁾ 아래에서는 결혼이주민의 개념과 법적 지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보호정책의 흐름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이 어떻게 보장되고 변화하였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1) 결혼이주민의 개념과 법적 지위

국제결혼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려는 결혼이주민은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적법하게 체류하며 생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적법상의 귀화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결혼이주민의 개념은 이주민의 법적 지위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08-2012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39~41쪽.

11)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2쪽

12) 김혜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기초연구’, 4쪽

<표 II-4> 현행법상 결혼이주민의 개념

상황	적용법조	사용된 개념
국제결혼 후 입국 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국민의 배우자’, ‘결혼이민’
귀화 전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12조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결혼이민자등’
	국적법 제6조 제2항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
귀화 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결혼이민자등’

결혼이주민을 포함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 관한 기본법은 2007. 5. 17. 제정되어 같은 해 7. 18.부터 시행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다. 동법은 제2조 제3호에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고 하여, 귀화허가를 받지 않은 결혼이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결혼이민자”를 사용하고 있다. 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귀화허가를 받기 전의 결혼이주민들이 체류자격을 보장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그들이 사회에 조기적응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이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는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2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모든 범위의 결혼이주민을 아울러 지원·보호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결혼의 형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아울러 ‘결혼이주민’으로 쓰고자 한다.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드러난 결혼이주민 보호정책

외국인정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¹³⁾이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 부여는 결국 ‘이민 허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인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외국인의 입국·체류·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년)

2008년 확정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구성이 종래 단순기능 분야 종사자 중심에서 결혼이주민 등 활동유형별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주민 등의 국내 정착 이주민이 증가하고, 결혼이주민 자녀의 취학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따라 과거 통제 관리 중심의 정책기조를 ‘전략적 개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한 것과는 달리, 결혼이주민에 관하여는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 강화’, ‘결혼이민자 입국 후 생활실태 모니터링 강화(위장결혼 실태조사 및 기획수사)’ 등 통제 중심 정책¹⁴⁾이 계속되었다. 이는 위장결혼이나 브로커 등을 통한 결혼이민에서의 인권침해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동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의 귀화 허가시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적취득 시 이주민의 한국어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영주자격전치주의’의 도입을 검토하여 일정기간 영주자격으로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정책에 따라 2012. 8. 법무부는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조건으로 거주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3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함께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서 영주자격에 대한 심사기준을 신설하면서, ‘한국어 능력 등’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정책 및 입법예고안은 영주자격자에게 어떠한 시민적·사회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¹⁵⁾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오히려 기존 영주자격 심사기준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한국어능력을 요구하여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준비를 하며 F-6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동안 체류 연장시마다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 해태(미동행, 신원보증 철회 등)로 인해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가정폭력 피해 등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지 못

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08-2012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15) 소라미, ‘이주민에 대한 귀화·영주 제도의 변천과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에 대한 검토’, 영주자격전치주의 토론회 자료집, 24쪽.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국적법 개정 법률안은 결혼이주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해서 영주자격 심사와 귀화 심사를 이중으로 통과해야¹⁶⁾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국민의 해외이주는 제외)’을 의미함을 밝히고 있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도 국제결혼 비자심사의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계속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결혼이민비자 발급요건에 의사소통 가능여부, 초청자의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가능 여부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동 요건이 신설되었다. 다른 한편 결혼이주민의 한국생활 초기적응 지원 방안으로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자녀 양육관련 정보제공’, 법무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및 취업허용 추진’ 및 고용부, 여가부, 문화부의 ‘결혼이민자 맞춤형일자리 참여 확대’ 등의 정책이 설정되었다¹⁷⁾.

한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6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 성과로는 귀화신청자에 대한 자립능력 검증 강화를 위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 마련과 결혼이주민의 자녀양육 등 생활적응 지원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단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일반귀화에만 적용되고, 결혼이주민이 주로 해당되는 간이귀화에는 적용이 제외되었다.

3) 체류자격과 체류보장 관련 법령의 변화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이다. 두 법령은 결혼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재한외국인과 구분하여 별도의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결혼이주민,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이 여러 사건을 통해 알려지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보장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6) 소라미, 위의 글, 25쪽.

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47-48쪽

(1)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은 결혼이주민과 관련하여 2011년과 2013년에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 특기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신설

기존 시행령 [별표1]에는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이 거주(F-2)에 포함되어 난민, 외국투자가 등의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는데, 국내 결혼이주민의 급증으로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에 대해서 별도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구분하여 지원 및 관리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나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허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시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첨부 삭제

기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는 결혼이주민이 거주(F-2)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연장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에 신원보증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원보증 제도가 실제로는 평등한 부부관계를 막고, 극단적으로는 가정폭력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신원보증서가 인질이 되어 피해여성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2011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요구가 헌법 제11조 및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신원보증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¹⁸⁾하였고, 법무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 및 [별표5의2]에 규정되었던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신원보증서의 제출의무가 삭제되었다.

18) 안진, ‘결혼이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찰-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의 관점에서-’, 법학논집 제30권 제1호, 53쪽.

다) 결혼이민 목적의 사증발급 심사기준 강화

2013년 일부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제9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기준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기준은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등이다.

라)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결혼이주민의 특칙조항 신설

한편,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제25조의2에 결혼이주민에 대한 특칙조항을 신설하여,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기간 만료 후에도 피해회복 등에 필요한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2) 국적법

‘국적법’은 2004년과 2010년 개정법에서 결혼이주민에 관련한 법 개정이 있었으며 특기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간이귀화 대상의 확대

기존 국적법에서는 혼인 후 2년 이상의 동거기간만을 혼인귀화의 요건으로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남편의 가정 폭력, 학대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¹⁹⁾ 결혼이주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2004년 개정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법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과 아동보호 차원에서 국적취득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²⁰⁾.

나)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불행사 서약으로 대체

기존 국적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

19) 김두년,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법학연구 49, 2003, 327쪽.

20) 박귀천·이유봉,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46쪽.

을 포기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다.

2010년 개정법은, 제10조 제2항 이하를 신설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중 간이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제도를 도입²¹⁾하였다. 그러나 간이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것은 제6조 제2항 1호, 2호 요건 해당자 즉, 귀화 당시 혼인상태인 결혼이주민으로 제한하여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10조(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 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법제의 체계 및 그 내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과정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법령은 ‘헌법’을 시작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 등이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이주민에 관한 지원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체류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적법’,

21) 박귀천·이유봉, 위 논문, 같은 쪽.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매년 출입국관리법령의 세부적인 적용 및 실시사항을 지침의 형식으로 배포하는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을 중심으로 법제의 체계와 그 내용, 나아가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체류자격 관련

(1) 입국 및 체류자격 취득단계: 출입국관리법령,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

결혼이주민이 결혼동거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이 있어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7조), 일정한 체류자격이 필요하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12조, [별표1]).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필요하며(법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의4)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심사·확인한 후 사증을 발급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이주민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은 세부적으로 국민의 배우자(F-6-1), 자녀양육자(F-6-2), 혼인단절자(F-6-3)으로 구분된다.

<표 II-5>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28의4.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2) 체류자격 유지 단계(기간연장, 자격변경) : 출입국관리법령,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

① 혼인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국민의 배우자, F-6-1)

결혼이주민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결혼이민(F-6) 사증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매년 배포하는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에 따르면 국민의 배우자(F-6-1)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초 체류허가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²²⁾. 최초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연장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단, 국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가 가능하다(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2017)).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제25조의2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주민은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위의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에 단기사증 소지자나 불법체류자 등은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며 출국 후 다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임신·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2017)).

②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국민의 배우자, F-6-1)

혼인이 단절되지는 않았으나, 배우자와 별거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배우자의 실종으로 실종선고를 받기 전의 사람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2017)).

③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민의 경우 (자녀 양육자, F-6-2)

자녀양육 사증(F-6-2)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녀가 성인이 되는

22) 단,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이수자는 체류허가기간이 2년임. ‘해피스타트’란 결혼이민자가 입국 초기 국내 정착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국내 생활에 필요한 법과 제도, 문화이해, 생활정보 등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날까지 최대 3년씩 체류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결혼이민 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통해 자녀양육 사증(F-6-2)을 발급받을 수 있다(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2017)).

④ 혼인이 단절된 경우 (혼인단절자, F-6-3)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인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또는 국민 배우자에게 실종선고가 된 경우,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에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한 결혼이주민은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혼인단절에 국민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은 특칙을 두어,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라도 그 외국인이 국민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관련 입증서류를 징구하여 F-6-3 자격으로 1년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중 과거 국민의 배우자(F-6-1, F-2-1 포함)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사람 중에,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혼인단절자(F-6-3)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령상 정함은 없으나,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에는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예: 국민의 귀책사유 없는 혼인단절 등)의 경우라도, 재산분할이나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게는 가사정리(F-1-6) 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여 주고 있다.

(3) 영주자격 취득 단계 (국적, 영주자격) :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

국민 또는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녀로서 대한

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F-5)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8의3-나). 영주자격이란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하며,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²³⁾.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주민은 일반귀화보다 요건이 완화된 간이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은 제6조 제2항에서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한편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법무부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제2항은 증명자료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1. 판결문
2.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나 진단서
3.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결정문 등
4.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나 출국사실증명원
5.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6.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가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
7.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3) 김두년, 앞의 글, 332쪽.

다.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1) 외국인으로서 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

결혼이주민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국적 취득 전 신분은 외국인이다. 결혼이주민은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 국적취득 이후 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는 한국인의 그것과 동일하고, 이때 발생하는 인권보호 및 관련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은 국적취득 이전의, 불안정한 신분을 지닌 외국인으로서의 결혼이주민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제10조 내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진다고 하므로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함으로써,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다.²⁴⁾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적극적 견해를 취하였다.²⁵⁾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횟수 제한과 관련하여,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외국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²⁶⁾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 분야의 권리에 대하여는 타국과의 상호보증관계에 기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사회보장 및 보험 또는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경우는 국적 취득 이전의 외국인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다. 결혼이주민은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후 정주가 예상되는 지위를 갖는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의 양육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는 결혼이주민이 노동이주민 등 다른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과는 다소 다른,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갖게 해 준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결혼이주민은 다른 외국인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기도

24) 헌법재판소 19094. 12. 29. 선고 93헌마120 결정.

25)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26)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결정.

하나 반면에 결혼이주민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매우 종속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인 신분보장 및 체류자격의 유지를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과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한 지위는 국제결혼이라는 인신매매적 성격을 띠는 혼인성립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 한국에 거주하며 가정폭력 등 여러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됨에도 이를 견딜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2)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와 관련 법률

(1) 혼인성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① 결혼중개업자의 왜곡된 정보제공 및 인신매매성 결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결혼이주민의 경우 인권침해의 시작은 인신매매적 결혼중개이다. 결혼이주의 경우 한국인 남성이 중개료를 지불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며, 결혼이주민은 빈곤탈출을 위해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게 된다. 양당사자의 관계는 일반적인 결혼의 경우보다 매우 불평등하게 시작된다. 무엇보다 국제결혼의 중개영업이 정상적인 결혼중개행위가 되려면 양 당사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내용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은 정보의 불균형과 왜곡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결혼이주민들은 알콜중독, 정신지체, 무직, 과도한 나이차이, 다수의 이혼 및 재혼전력, 국제결혼 중독자와 같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혼이주민의 국제결혼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권, 즉 결혼선택권은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국남성에게 있다.

결혼중개업체의 알선 및 중개에 의한 국제결혼은 그 과정 자체가 매매의 성격을 띤다. 대개 현지의 결혼브로커들은 한국 중개업체의 파트너 형식으로 현지에서 결혼희망자를 한 곳에 모아 집단숙식을 시킨다. 모집 과정에서 현지 가족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혹은 결혼 성립 후 일정금액을 약속하기도 한다.

결혼중개업체들은 한국인 남편들에게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본국민이 모이는 곳에 보내지 않기, 컴퓨터 배우지 못하게 하기, 아이 낳을 때까지 외출 금지하기, 여권 등 신분증을 당사자에게 주지 않기 등 반인권적 지침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내건 인신매매성 현수막 광고와 결혼중개업의 중개과정은 한국인 남성들에게 국제결혼 이주여

성을 ‘돈 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편견을 갖게 하며, 한국인 남성으로 하여금 아내를 동등한 배우자로서 존중하기보다는 지배하는 대상으로 대하게 한다.

더욱이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촌총각의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남 구례·나주·화순, 전북 진안·장수, 충북 단양·증평·청양 등의 지자체에서는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라고 불리는 사업을 통해 연령 및 거주요건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농촌거주 미혼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할 경우, 지원비용으로 1인당 약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급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가 사실상 매매혼을 장려하는 반인권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농촌 인구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반론 및 지원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존재한다.

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이주민에 대한 결혼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제결혼 중개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그 요건을 국내결혼중개업보다 무겁게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이주민의 경우 왜곡된 정보로 인해 결혼 이후 많은 인권침해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서 신고필증 게시의무(제8조), 명의대여 금지의무(제9조), 계약내용 설명의무 및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제10조)를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조의2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신랑, 신부 쌍방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상호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신상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이주민이 한국인 남성 배우자에 대해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를 믿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에 대하여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제10조의3), 결혼중개계약서·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를 진다(제10조의4).

국제결혼업자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10조의5). 국내외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제12조).

위 규정들을 위반한 결혼중개업자는 그 행위에 따라 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제17조, 제18조, 제26조 및 제28조).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결혼중개업자는 위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함으로써 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2) 가정폭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

① 가정폭력, 성적학대 및 인격모독, 외출금지 등 생활통제

i) 가정폭력

결혼이주인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가정폭력이다.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통해 부당·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한국으로 유입된 결혼이주민들은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위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혼이주인이 겪는 가정폭력은 비단 배우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 즉 가족 안에서도 빈번히 이루어진다. 또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이혼 강요, 낙태 강요, 악의적 유기, 인격적 모독, 경제적 학대 등 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무형적 가정폭력도 매우 빈번히 발생한다. 혼인의 인신매매적 성격과 이에 따른 국적취득 전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결혼이주민은 인권침해 상황에 쉽게 노출되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 행동을 하는 경우 강제추방 또는 강제퇴거명령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ii) 성적학대 및 인격모독

결혼이주민들 대부분은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고 있으며, 이때 결혼과 관련된 비용 등은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인 배우자들은 결혼이주민을 동등한 반려자 또는 배우자로 대하기보다는 돈을 주고 사온 소유물같이 취급하며, 보다 쉽게 결혼이주민들에 대하여 인격모

독적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 성적 학대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결혼이주민은 결혼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기반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변태적 성행위 등 성적학대와 인격모독, 언어폭력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

iii) 외출금지 등 생활통제

결혼이주민들은 한국생활에 있어 한국인 배우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혼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 곧 현재의 한국인 배우자를 떠날 것이라는 편견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이주민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취직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아예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생활통제를 하게 된다. 결혼이주민의 국내체류와 관련하여 신원보증은 남편이 하도록 되어 있고, 비자연장의 경우나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에도 남편이 동행해야 한다(국적법 제6조 제2항). 이를 무기로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주민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② 결혼이주민 가정폭력 피해 관련 법률

결혼이주민에 대한 가정폭력피해는 일반폭력보다 특수한 점이 있다.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의 불안정이라는 열등한 지위가 부당한 가정폭력을 견딜 수밖에 없게 한다는 점이다.²⁷⁾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정폭력피해방지를 통해 혼인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외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을 규율하고 있다.

i)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7년 제정되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법률로서, 가정폭력범죄와 그로 인해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가정보호사건, 조사 및 심리, 항고와 재항고,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 제2장 제1호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형적 가정폭력에 대하여도 일응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

27)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화순 외 4인,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118-119면 참조.

과 그 장 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ii)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결혼이주민 및 그 자녀를 보호하고, 의료·법률·출국 등과 관련된 문제의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외국인 보호시설로서 이주여성 센터의 운영을 정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한다.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으로 결혼이주민의 인권향상 및 안정된 가정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관심있는 남성이나 국제결혼 부부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와 양성평등, 관계와 소통, 국제결혼 관련 법률, 사례발표 등을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²⁸⁾

3)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제도

(1)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 시행되었다. 위 법은 결혼이주민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주민들을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어

28) 윤덕경 외 2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54면.

서 현행 법률들 중 결혼이주민 및 그 가족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개관하면, 동법 제2조의 정의규정을 비롯하여, 제4조 제1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 제1항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 중 특히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보장적 성격을 갖는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권 및 노동권과 관련하여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제6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한 가족형성을 위한 지원으로는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의 추진규정(제7조)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가정폭력 방지 노력,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확대 노력, 혼인관계 종료시 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제공(제8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성권 보호로는 임신, 출산교육 및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강검진(제9조)을 규정하고 있다.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때 재한외국인에는 결혼이민자도 포함된다(제2조 제3호).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로는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기타 필요한 조치,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제10조 및 제11조). 특히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결혼이주민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 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5조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기한을 국적 취득 후 3년까지로 정하고 있다.

(3)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07. 1.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법 적용의 대상을 ‘합법’ 체류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조례안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조항에서 ‘거주외국인’을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각종 행정혜택, 한국어 등 적응교육, 취업고충상담, 응급구호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합법적’ 체류자격의 외국인이라는 이중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외국인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거주외국인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준조례안은 거주외국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제공 및 응급구호체계의 확립, 문화체육행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4) 사회보험

결혼이주민들은 다른 목적의 이주자들과 달리, 국민의 배우자로서 또는 한국국적 자녀의 어머니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사회권 보장에 있어서도 내국민과 동일한 수준에서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린다.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주민은 외국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동안 ‘외국인 특례조항’에 의해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국민의 배우자로서 수급자격을 갖게 되고,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같은 법률에서는 한국 국적 자녀의 양육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을 갖는다.

i)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이나 사망으로

소득이 중단될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외국인 적용조항을 두게 되면서,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호주의 원칙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유형은 세 가지이다. 첫째, 외국인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둘째,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되며, 셋째, 이 두 가지 외에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자가 된다.

ii)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권을 보장해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귀화하지 않은 이주민도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 3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민이든 노동이주자이든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다(제93조 외국인특례조항).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불법체류상태로 인해 미등록 상태로 간주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이주아동)들도 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제9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참조).

iii)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험이다. 내국인의 경우 1998년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시간이 1개월에 60시간 미만인 자 등은 내국인이라도 가입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해 가입시키는 임의적용 원칙이 적용되며, 일부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8종류가 있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여야 한다.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위 법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점은, 불법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지원이 된다는 점이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정의 벌칙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v)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도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의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5)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의 경우에도 결혼이주민은 노동이주 여성과 달리 한국인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로서 수급대상자로 포섭된다. 결혼이주민이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되는데 필수적인 자격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이다. 공공부조의 경우 결혼이주민, 난민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결혼이주민에게는 기초노령연금 및 근로장려세제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는 상당수 결혼이주민과 중복이 되고 있어 영주자격이 있는 결혼이주민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통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결혼이주민이 아닌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는 아무런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결혼이주민을 제외한 영주자격 체류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공공부조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의료지원서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결혼이주민에 대한 특례가 있을 뿐이며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불법체류자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5년에 개정된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제5조의2)에 의해 2007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일부 혹은 전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결혼이주민은 의료급여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는 의료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혼이주민들은 한국 국적의 자녀를 둔 모의 자격으로만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즉,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으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수급절차는 결혼이주민이 급여신청을 하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여 14일 이내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이 결정되며,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외국인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 이후 해당 대상에 대한 심사를 함으로써, 긴박한 생계형 사고나 가정해체 및 빈곤화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제1조).

2009년 5월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혼이주민이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및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결혼이주민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법 제5조,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1조의2). 위 법에 따르면, 적용대상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교육지원 및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제9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12. 6. ‘긴급복지지원법’이 합법적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을 배제한 것에 대하여는 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을 긴급복지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 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에서 는 여전히 그 적용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iii) 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국가간 인력이동 활성화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욕구 또한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위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자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주인을 제외한 외국인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다. 위 제도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결혼이주민 등의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그 운영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iv)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현재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제1조에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된다. ‘기초연금법’ 제3조는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금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현재 결혼이주민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연령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나, 위 연금제도 역시 외국인 신분 중 결혼이주민에 한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v) 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세제제도 자체에 근로유인기능

을 보유하고 있어 일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극빈층 추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이 없다. 그러나 전술한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결혼이주민에 한해서만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 또는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 제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여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혼인한 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이라 하더라도 이혼 등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경우에는 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vi) ‘한부모가족지원법’

결혼이주민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 이외에, 양육권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수급권을 갖는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결혼이주민의 문제를 이주여성운동단체들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결과, 2007년 11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호대상자 범위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14. 1. 21. 개정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즉,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민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부모인 결혼이주민은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자금을 대어 받을 수 있으며, 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vii) 의료지원서비스

복권기금으로 외국인근로자 및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을 지원하며 2006년 7월 그 대상자에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 결혼이주민 자녀를 추가하였다. 건강급여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로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주민 및 그 자녀 등이 대상이 된다.

viii)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

법무부는 2008. 4. 4. 일부 개정된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혼이주민의 한국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를 면제받기 위해 사회통합교육 이수

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민에 대하여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한 결과, 국어능력,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회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적응 현상은 국제결혼 2세에게 영향을 미쳐 언어능력의 취약함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법무부 주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주민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언어교육과 다문화 사회이해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²⁹⁾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은 Korea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의 약자로 이주민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으며, 이주민의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본 소양의 사전평가 및 이수 레벨을 지정하고 있다.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 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체류 외국인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체류 유형과 자격을 프로그램 안에 반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재는 법무부 훈령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법과 제도로서의 기반을 충분히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전의 법령이나 제도, 정책들이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의 성격을 가졌던 것에 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라. 결혼이주민 체류 관련 해외 제도

1) 대만

대만의 결혼이민자는 2006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³⁰⁾.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가까이 위치하여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 여성이나 중국대륙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이 성행하였고, 그에 따라 수백여 개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난립하였으나, 결혼중개업 관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³¹⁾

29)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8년 법무부훈령 제612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개정을 거쳐 2013년 현재 법무부훈령 제888호에 이른다.

30) 조영희 편(2013),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4, p.116

31) 김두년(2014), 대만의 국제결혼과 결혼중개업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6, p.101

그에 따라 대만은 2003년 결혼중개업을 제재하고 관리하기 위한 ‘출입국 및 이민법’을 시행하였고, 이후 인신매매적 성격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 및 아동의 무국적, 방치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하자 2007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결혼중개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³²⁾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4(조영희 편, 2013)에 따르면, 대만의 이민법은 외국인 방문, 거주, (등록된) 영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결혼이민자들의 거주를 규율하고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는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국적법과 국적법시행령에 의한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 거주기간: 계속적으로 3년 이상 대만에 거주하면서 매년 183일 이상을 대만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것. ii) 이주연령 및 지위: 20세 이상, 독립적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재산이나 기술이 있을 것. iii) 개인적 특성: 온화한 인성, 유죄선고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iv) 경제적 지위: 스스로 삶을 영위하거나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산이나 전문기술이 있는 경우. 이는 국적법시행령에서 구체화되는데, 동령 제5조 제2항은 재정적 조건에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v) 귀화신청을 한 모든 외국인은 모국의 시민권을 포기해야 함.

한편 대만은 2007년 1월 ‘출입국 및 이민서’를 신설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결혼이민자들의 실질적인 체류안정을 돕고 그들을 점차 수용하려는 경향에 있다.³³⁾

2) 일본

최근 일본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국제결혼과 그 체류가족의 이주, 그리고 1980년대 제조업 중심의 산업현장에서 아시아 또는 남미계의 외국인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³⁴⁾ 2013년 12월 현재, 일본인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151,156명이고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24,649명에 달하나, 현재까지 국제결혼중개업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³⁵⁾

한국이민법학회(2014)의 결혼이민(F-6) 체류관리 개선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장기체류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에게

32) 김두년(2014), p.102

33) 조영희 편(2013),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4, p.130

34) 김남진(2013),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에 관한 법제연구”, 전남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35) 한국이민법학회(2014), 결혼이민(F-6) 체류관리 개선연구, p.70

주어지며, 결혼이민자는 일본법에 따라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재류자격인 증명서를 신청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는 1년 내지 3년 체류자격이 부여되며, 이는 심사하는 담당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한다.

2017년 4월 개정된 일본 법무성이 제공하는 영주허가 가이드라인(2017.4. 개정)에 따르면, 영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1) 소행이 선량하고, 법률을 준수하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는 생활을 영위할 것, (2)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질 것, (3)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의 국익에 합치된다고 볼 것 등을 요한다. 그러나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1) 및 (2)에 적합함을 요하지 않으며, 10년 재류요건에 관하여는 특례를 두어 실체를 동반한 혼인생활이 3년 이상 계속하며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을 요하여 상당 부분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³⁶⁾

일본 국적법에 따르면, 계속하여 5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을 것(1호), 20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을 것(2호), 소행이 선량할 것(3호),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그 외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4호) 등을 요한다(제5조 제1항). 그러나 일본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혼인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는 위 1호 및 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할 경우, 일본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배우자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제22조의4 제1항 7호). 이 경우 결혼이주민은 가정폭력 등 특단의 사정을 소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으며, 일본인 배우자의 협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체류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³⁷⁾

위와 같이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이혼하여 일본인 배우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경우 또는 사별한 경우, 결혼이주민은 자신이 해당성을 충족하고 있는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³⁸⁾ 이 때 정주자로의 자격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주자의 체류기간은 1년 내지 3년의 범위에서 법무대신이 일정한 체류기간을 지정하게 된다. 실무상 혼인기간이 3년 이상에 이르며 직업적으로나 생활상으로 일본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 일본에서의 거주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상

36) 일본 법무성,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50.html

37) 한국이민법학회(2014), “결혼이민(F-6) 체류관리 개선연구”, p.84~85

38) 한국이민법학회(2014), p.86

세히 소명하여야 하나, 일본 법무성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인의 자녀를 부양할 경우, 친자관계의 존재와 양육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주자로서의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여 주도록 되어있다.³⁹⁾

3) 미국

한국이민법학회(2014)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결혼이민은 주로 1986년 이민사기 결혼 수정안(Immigration Marriage Fraud Amendments of 1986, IMFA)에 의해 미국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에 추가된 법률규정들을 토대로 규율되고 있다. :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조건부 영주기간은 2년이고 귀화에 필요한 거주기간에 전부 산입된다. 2년의 조건부 영주기간 말에 해당 결혼이 유효하며 종결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자의 지위를 얻게 되나, 위 기간 중 해당 결혼이 부적절하거나 법적으로 취소 또는 종료될 경우 강제퇴거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한국이민법학회(2014)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결혼이민절차는 다음과 같다. : 미국시민,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청원의 수혜자가 될 자를 초청하고, USCIS가 이민우대권 범주에 속하는 자임을 인정하면 수혜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수혜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되고, 2년 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부여된다.

조건부 영주권자가 자신의 체류에 부가된 조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2년의 조건부 영주기간 소멸 직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공동으로 조건제거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동 기간 내에 제출되지 못한 경우 영주 지위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이를 이유로 추방될 수 있다. 상당한 이유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유를 입증하면 이를 면할 수 있으나, USCIS의 실무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⁴⁰⁾

조건부 영주기간 2년을 둔 취지는 가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이 기간 동안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행사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자, 미연방의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에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피학대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 절차에서 ‘초청’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여 외국인 배우자 스스로 ‘자기초청 내지 자기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건제거신청에 있어서도 공동신청이 필요 없게 되었다.⁴¹⁾

39) 한국이민법학회(2014), p.87

40) 한국이민법학회(2014), 결혼이민(F-6) 체류관리 개선연구, p.103

41) 한국이민법학회(2014), p.111~112

4) 호주

호주의 결혼이민사증(partner visa)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인지, 국내 또는 국외 소재인지에 따라 사증 유형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결혼이민사증을 신청하였으나 결정이 내리지기 전 단계에서 발급되는 임시배우자 사증, 정식 결혼 전에도 장래 결혼을 전제로 하는 약혼자 사증 등을 마련하고 있어, 매우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있다.⁴²⁾

약혼자 사증은 호주인 또는 영주권자의 초청으로 9개월 간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기간 동안 결혼을 해야 하며, 그 후 배우자의 지위에서 영주신청을 할 수 있다. 파트너 사증의 경우 첫째 단계에서 2년의 기한부 사증이 부여되며, 이 기간 경과 후 관계가 '진정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에만 영구사증이 발급될 수 있다.⁴³⁾

호주 이민법상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도 영주권이 부여되나, 이러한 가정폭력 예외 규정은 약혼사증 소지자의 경우 호주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초청자와 이미 결혼하였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결혼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있다.⁴⁴⁾

5) 독일

체류에 관한 권리는 혼인의 자유 및 가족의 보호를 규정한 독일기본법 제6조와 그것이 구체화된 통합이민법에 의하여 규율된다.⁴⁵⁾

통합이민법 제27조 제1항은 “가족적 생활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구성원에 대한 체류”를 허가한다고 하여, 가족수반 기본원칙을 천명하였으나, 제31조에서 그것과 별개의 배우자의 독자적인 체류권을 규정하고 있다. 부부의 생활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 i) 부부관계가 적어도 3년 이상 독일 내에 적법하게 존재했거나, ii) 부부관계가 독일에서 존속하던 도중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iii) 그 때까지 체류허가나 영주허가를 보유하고 있었던 당해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수반의 원칙과 별개로 독자적인 체류권이 부여되어 체류허가가 1년 연장된다(제1항).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등 특별히 가혹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부부관계가 3년 간 독일에 존재했어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 부부의 생활공동체 해체 이후, 결혼이주민의 생활이 스스

42) 한국이민법학회(2014), p.116

43) 한국이민법학회(2014), 결혼이민(F-6) 체류관리 개선연구, p.125~126

44) 한국이민법학회(2014), p.136~136

45) 한국이민법학회(2014), p.143~144

로 유지되고 영주허가를 보유한 경우, 여타 요건들에도 불구하고 영주허가를 발급할 수 있고(제3항), 영주허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동안은 체류허가가 연장될 수 있다(제4조).

4.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및 결정례 분석

가.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1)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재량권과 그 한계

전통적으로 국가의 외국인체류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국가가 외국인이 그 국가에 체류하도록 허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폭넓은 이민정책적 재량을 가진다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입장에 따라 출입국관리행정 관련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이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⁴⁷⁾고 판시하면서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의 재량범위와 그 한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⁴⁸⁾ 위 판결은 행정기관이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기는 하지만 공익적 측면을 특히 강

46) 최윤철·카이 하일브로너, “출입국통제에 관한 국제법적인 문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집 1호(2003) 259, 문중흠, ‘출입국관리법 해석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의 보호’ 사법논집 제60집(2015), 95쪽 각주2) 재인용

47) 대구지법 2013.7.12. 선고 2012구합4878, 문중흠 95쪽 각주 3) 재인용

48)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조하고 있지는 않으며, 출입국행정 역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된다고 하면서 재량권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결혼이주민의 체류와 관련되는 판례는 체류기간연장불허, 영주자격변경불허, 귀
화신청불허 등에 관한 것들이 있다. 이중 체류기간연장불허·영주자격변경불허 사
안에서는 주로 혼인의 진정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며, 귀화신청불허 사안에서는
간이귀화 요건 관련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
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
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해당 여부가 문
제된다.

아래에서는 출입국관련 판결에서 ‘혼인진정성 인정여부’, ‘외국인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한 판단을 어
떻게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⁴⁹⁾

2) 혼인 진정성이 부정된 사례

(1) 상시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이 문제로 혼인의 진정성이 부인된 사례

서울고법 2013.03.28.선고 2012누23367 판결(원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10642 판결)은 “국적법 제6조 제1, 2, 3호 소정의 간이귀화 요건 중 ‘혼인한 상
태’란 혼인신고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관념 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 즉, 참다운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
한다.”고 하면서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짧은 동거기간, 사망 전후 경과 등을 미
루어봤을 때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동거개시시점과 동거 장소에
관한 원고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주말부부였지만 거주지가 인근이었고 체류기
간 만료일 직전 이혼을 한 후 제3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례에서 혼인의 진정성
이 부정된 바 있다(대법원 2011.01.27.선고 2010두25336 판결, 원심 서울고법
2009누40423, 1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7032 판결). 이와 아래와 같은 사안에
서 상시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이 혼인의 진정성 부인의 이유로 제시되었다.

서울고법 2011.02.11.선고 2010누16907 판결(원심 인천지법 2009구합5033 판
결)에서, “...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약 9개
월동안 박OO의 주소지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체류한 점... 원고는 위 약 9개월

49) 이하에서 소개하는 판결 사례는 한국이민법학회 ‘결혼이민(F-6) 체류관리 개선 연구’
(2014.11.) 제1항 제4절(10쪽~18쪽)에서 소개된 판결과 사실관계를 발췌한 것이다.

의 기간동안 약 3개월 동안 혼자 중국에 있기도 한 점… 원고가 1년 7개월간 이혼한 상태였다가 체류기간 만료를 1년 남짓 두고 별다른 이유 없이 혼인신고한 점, 원고는 박OO과 다시 혼인하였다고 하나, 박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의 차임도 알지 못하는 점, 시댁과의 교류 등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과 박OO의 진술은 서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박OO 사이의 혼인의 진정성 내지 실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고 하며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2011.04.20.선고 2010구합4081 판결에서도,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김OO의 혼인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두 사람이 만난 시기와 장소, 혼인신고 이전 원고의 거주형태, 혼인신고 이후 서로의 방문이나 생활비 관계 등에 관한 원고와 김원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김OO는 원고와의 혼인신고 이후로도 약 3개월간 전처 김**와 162회 통화하였던 반면, 같은 기간 원고와는 불과 15회 통화하는데 그쳤다. (특히 원고는 김OO와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신혼의 부부가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통화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고 판시하여 주말부부이면서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던 점을 혼인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제시하였다.

인천지법 2011.10.27.선고 2011구합3214 판결은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전OO 사이의 혼인은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전OO은 시흥시 정왕동 ###번지 ##호에 살았는데, 위 주택의 임대인은 위 주택에서 전OO 혼자 살았으며 원고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전OO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는 시흥시 정왕동 ***번지 **호에서 거주하여 원고와 전OO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동거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전OO은 자신들의 혼인 사실을 전OO의 부모, 형제, 자녀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원고와 전OO이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혼인신고서에는 증인으로 전OO의 언니인 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OO이 전##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전##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전OO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관계로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전OO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전OO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OO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라고 하여, 동거하지 않은 사정 외에 혼인사실을 친족 등에게 알리지 않은 점, 통화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혼인진정성 부인 근거로 제시하였다.

(2) 의심스러운 금전거래를 이유로 혼인진정성이 부인된 사례

서울고법 2012.01.18.선고 2011누1028 판결(원심 춘천지법 2011구합1410 판결)에서는 “... ① 원고는 전 남편인 이##이 사망한 후 귀화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고,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7. 불허가되자 그로부터 불과 8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OO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1. 5. 2.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한 점, ② 이OO이 작성한 교제경위서, 진술서 외에는 원고가 이OO과 혼인을 하고 실제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OO과의 혼인시점인 2011. 3. 15.을 전후하여 이OO에게 합계 2,400만원을 입금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OO이 혼인신고를 한 것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고 하며, 혼인시점 전후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을 혼인진정성 부인의 사유로 인정하였다.

이외 위장결혼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혼인의 진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의 서울고법 2011.10.07. 선고 2011누37444 판결(원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512 판결)도 있는 등, 기본적으로 법원은 출입국행정기관의 혼인진정성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출입국행정기관의 혼인의 진정성 부인 판단을 배척한 사례

다만 아래와 같이 상시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사안에서는 혼인의 진정성을 부인한 행정관청의 판단을 부인하고 체류기간연장, 영주자격변경불허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대전지법 2013.02.18.선고 2012구합4151 판결에서는 “ ... 현대사회에서 혼인의 형태는 다양하여 당사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동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흔한바, 상시적인 동거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정이 되는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자들이 ‘부부가 매월 3-4회 대전과 안산을 오가며 만나는 등 현재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통화 내역으로 매월 10여 차례 이상의 통화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의 母의 병환 등 최근 근황에 대한 진술이 거의 일치하는 등 최소한의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관계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고 하여, 미동거 사실만으로 바로 혼인의 진정성

이 없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당시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전지법 2011.04.13.선고 2010구합2564 판결에서는, “혼인의 합의라 함은 양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일치를 뜻하고, 이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하며, 위와 같은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하면서, “... 원고와 김OO은 2006. 4. 이전부터 원고의 아파트에서 동거하면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자연스러운 의사에 따라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혼인신고 이후에도 원고와 김OO은 함께 호주에서 살 의사로 호주에 가기로 결정하였고, 다만 원고의 직장문제 등으로 김OO이 먼저 호주로 출국하고 원고가 뒤따라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중략) 피고가 혼인신고 후 7일 후 김OO이 호주로 출국하여 소식이 끊긴 점, 2009년 이혼판결을 받은 점, 한국인 배우자와의 실질적인 혼인동거기간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고 하며 혼인신고 후 실질적인 동거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영주자격변경불허처분을 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3) 혼인단절자의 체류 관련 판례

(1) 결혼이주민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의미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는 결혼이주민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혼인관계 단절이 결혼이주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⁵⁰⁾. 또한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인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의 경우에

5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제28의 4호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는 그 혼인관계의 단절에 본인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국에서의 체류를 계속할 수 있다. 위 규정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이혼한 결혼이주민의 경우 이혼에 본인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안정적인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은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항 제1, 2호의 예외로서 배우자의 사망, 실종이나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단순히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간이귀화를 거부한다면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함은 타방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에 준할 정도로 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2.02.01.선고 2011구합37091 판결)고 하여, 혼인 단절에 대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2) 공시송달 또는 피고 불출석으로 이혼판결에 대하여 결혼이주민의 귀책사유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2.02.01.선고 2011구합37091 판결은 “... ① 원고는 정OO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정OO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정OO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것으로서 위 판결만으로는 원고의 배우자인 정OO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정OO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정OO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는지 여부도 매우 의심스러운 점, ③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해인 2009.11.12에 정OO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이혼소송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직후에 바로 피고에게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한 점 ...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영주 자격 요건의 하나인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하여,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인 경우 이 판결만으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고법 2014.01.14.선고 2013누17734 판결(원심 인천지법 2012구합 6319 판결)은 “... 원고와 노OO의 이혼 등 사건에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노OO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였으므로, 위와 같은 판결 결과만으로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외국인 원고가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가 원고의 소장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아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인천지법 2013.08.16.선고 2013구합1199 판결 역시 “... 원고가 이OO를 상대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나, 위 판결은 이OO가 원고의 소장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판결 결과만으로 전적으로 이OO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이OO의 혼인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에 이르렀으나 결혼이주민의 귀책사유 인정한 경우

인천지법 2012.05.03.선고 2011구합4217 판결은 “... 원고가 심OO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심OO의 무시와 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심OO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당사자간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나타낼 뿐이고 위 결정결과 만으로는 원고의 배우자인 심O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2010. 1. 28. 가출하여 배우자인 심OO과의 연락을 단절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하며, 법원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 결정만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2011.12.01.선고 2011구합27421 판결도 “... 최OO, 허OO는 각 원고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노O는 원고가 말한대로 진술서를 적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OO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원고와 김OO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위 각 진술인들의 각 증인진술서 등의 각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 첨부되어 있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폭행신고 출동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의 자료와 갑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2008. 3. 26경 원고의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가 경미하여

처벌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김OO와 혼인생활 중 2회에 걸쳐 무단가출하였던 점, 원고에 대한 의학상 진단명인 ‘자궁체부의 폴립’이 출혈의 원인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김OO의 귀책사유의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3.04.25.선고 2013두2631 판결(원심 서울고법 2012누11685 판결, 1심 수원지법 2011구합13607 판결)에서도, “ …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 함은 배우자의 사망, 실종에 준할 정도로 배우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 단순히 ‘원고와 김OO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김OO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그 파탄에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는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김OO와 결혼하여 함께 살다가 2008.8.3경부터 1년가량 가출한 바 있고 다시 2011. 3월경부터도 가출하여 김OO와 별거하다가 위와 같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김OO는 위와 같이 가출한 원고를 그때마다 수소문하여 그 귀가를 설득하는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후로 계속 별거를 고집하면서 이혼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김OO도 결국 위와 같은 노력을 포기하게 되었던 점, 위와 같은 원고의 가출이 비록 김OO의 폭행 등 잘못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출의 기간과 횟수 및 그 기간 동안의 거주관계나 경제활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가출의 책임을 김OO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신청을 전후하여 원고가 보인 위와 같은 모순적 행태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김OO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데에 원고 자신에게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결혼이주민에게 혼인단절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체류연장 또는 간이귀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한국인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었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서울고법 2012.01.12.선고 2011누21852 판결(원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 44337 판결)은, “ … ① 이OO의 주소지로 발송된 이 사건 위자료소송의 소장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음에도 원고는 이OO의 주소지를 종전과 같은 주소지로 보정하였고, 그 후 위 주소지로 발송된 이 사건 위자료소송의 소장 및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이OO의 직장동료 또는 이웃이라고 하는 이**, 박##가 수령하여 이OO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위자료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위자료소송에서 이OO의 귀책사유에 관한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유OO(원고의 이모임)의 증인진술서는 원고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적은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위자료소송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과정에 이르기까지 이OO의 일방적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위자료소송의 판결 선고 전에 원고는 재판장에게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판결문에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이OO의 귀책사유를 기재해 달라고 탄원하였고, 이 사건 위자료소송의 판결문상 이OO의 귀책사유에 관한 기재가 매우 간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이OO의 혼인관계가 이OO의 일방적 책임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이OO의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으로 해소된 점과 이 사건 위자료소송 판결문 내용 등을 검토하여 원고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고 하며, 외국인 원고가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지급된 경우에도 결혼이주민의 귀책사유에 의해 혼인단절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외 대법원 2013.10.24.선고 2013두16258 판결(원심 서울고법 2012누24278 판결, 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459 판결)도 “ … 원고가 조OO과 이혼하였고 조OO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혼이 조OO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5) 이혼소송 경과 과정에서 보이는 간접사실을 이유로 결혼이주민의 귀책사유 인정

서울고법 2012.12.21.선고 2012누22340 판결(원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68 판결)은, “설령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후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제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혼인이 진정한 것이었다거나 신청인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허가권자가 이를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고 하여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간접사실을 이유로 하여 결혼이주민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2.03.15.선고 2011두30991 판결(원심 서울고법 2011누18603 판결, 1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359 판결)에서도, “이혼소송 당시 원고는 김OO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수소법원은 증거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다며 이러한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배척하

고, 다만, 김OO이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자주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한 점이나 원고와 별거하면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2006년 이후 서울 또는 수원시 일원에서 거주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빈번하게 출입국을 반복하였던 사실(특히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원고가 국내에 실제 체류한 기간이 극히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등이 인정되며, 위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보태어 볼 때, 원고와 김OO 사이의 혼인관계가 김OO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마저 엿보인다고 하겠다....”고 하며,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간접사실을 이유로 결혼이주민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6) 결혼이주민의 일부 귀책사유에도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사유를 인정한 사례

위와 같이 출입국행정기관은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지급 판결 등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도, 결혼이주민에게 일부라도 혼인단절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이주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결혼이주민의 책임 없는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여 출입국관리행정기관이 판단한 결혼이주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최근 “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함은 타방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에 준할 정도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성이 없는 경우, 즉 상대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혹은 주된 귀책사유가 있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 한다”고 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었다(울산지법 2017.5.11. 선고 2016구합7006 판결)⁵¹⁾.

51) 문중흠(2016), ‘출입국관리법 해석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의 보호’ 사법논집 제60집 p.102~103 :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의 폭력에 못이겨 대다수가 출국을 하게 되고 소송에서 배우자가 폭력행사를 부인하면 다른 입증자료가 사실상 없게 되므로 결국 결혼이민자는 대부분 구제받지 못하게 된다. 위 규정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정도로 그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 다누리콜센터 상담 현황 및 분석

2014년 설치된 다문화가족의 종합정보 전화센터인 다누리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으로 13개국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센터를 이용한 상담현황을 주제별로 보니 체류 및 국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담이 2015년에는 13,959건에서 2016년에는 16,747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상담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 상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에는 상담내용 중 부부갈등이 11.8%로 가장 높고 이혼문제가 11.2%, 가정폭력 10.6%, 체류 및 국적은 9.6%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6년에는 부부갈등 11.3%, 체류 및 국적 10.9%, 이혼문제 9.7%, 가정폭력 8.6% 등이다. 따라서 체류 및 국적에 대한 문제가 결혼이주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중앙에서는 8.5% 지역은 11.3%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도에는 중앙에서는 9%이고 지역은 13.8%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들의 더욱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체류 및 국적에 대한 상담이 많은 이유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신분은 입국부터 한국인배우자들이 체류자격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므로 여성들이 의존적 또는 종속적 관계로 되고 있으며, 국적취득 시에도 결혼생활이 안정적이고 배우자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 배우자에게에 있다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혼인초기에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할 경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표 II-6> 2015년 의뢰내용별 현황

(1통화로 여러 건 상담 있음, 단위: 건, %)

구분		계	가정 폭력	일반 폭력	성폭력	성매매	부부 갈등	가족 갈등	심리 정서	이혼 문제	일반 법률	체류 및 국적	취업 및 노동	쉼터
총 계	건	144,616	15,399	945	1,434	173	17,094	4,559	2,702	16,159	7,851	13,959	5,350	7,722
	비율	100	10.6	0.7	1.0	0.1	11.8	3.2	1.9	11.2	5.4	9.7	3.7	5.3
중 앙	건	85,118	6,459	616	383	54	11,352	2,597	1,541	5,943	3,527	7,226	3,199	3,740
	비율	100	7.7	0.7	0.4	0.1	13.3	3.1	1.8	7.0	4.1	8.5	3.8	4.4
지 역	건	59,498	8,850	329	1,051	119	5,742	1,962	1,161	10,216	4,324	6,733	2,151	3,982
	비율	100	14.9	0.6	1.8	0.2	9.7	3.3	2.0	17.2	7.3	11.3	3.6	6.7
지 역 별	수원	15,331	2,670	127	495	75	903	284	333	4,216	1,197	1,828	662	394
	대전	10,756	1,443	36	162	3	1,260	642	64	1,688	679	919	344	668
	광주	8,161	1,605	83	148	27	877	79	344	1,332	1,020	727	241	662
	부산	9,373	1,996	64	80	10	647	387	60	1,395	399	786	187	1,166
	전주	7,149	740	7	95	0	1,357	297	227	811	318	767	278	671
	구미	8,728	396	12	71	4	698	173	133	774	711	1,706	439	421

<표 II-7> 2016년 상담내용별 현황

(1통화로 여러 건 상담 있음, 단위: 건, %)

구분		계	가정 폭력	일반 폭력	성폭력	성매매	부부 갈등	가족 갈등	심리 정서	이혼 문제	일반 법률	체류 및 국적	취업 및 노동	쉼터
총 계	건	150,520	12,997	1,026	1,134	362	16,927	3,986	2,701	14,558	9,942	16,474	5,169	6,161
	비율	100	8.6	0.7	0.8	0.2	11.3	2.7	1.8	9.7	6.6	10.9	3.4	4.1
중 앙	건	89,322	5,731	521	340	114	12,099	2,635	1,822	4,778	4,316	8,038	3,277	2,749
	비율	100	6.4	0.6	0.4	0.1	13.6	3.0	2.0	5.3	4.8	9.0	3.7	3.1
지 역	건	61,198	7,266	505	794	248	4,828	1,351	879	9,780	5,626	8,436	1,892	3,412
	비율	100	11.9	0.8	1.3	0.4	7.9	2.2	1.4	15.9	9.2	13.8	3.1	5.6
지 역 별	수원	15,419	1,783	175	190	92	866	324	201	3,167	2,352	2,453	537	403
	대전	9,952	1,360	17	91	17	1,041	288	97	1,175	856	857	304	478
	광주	7,379	1,230	75	250	65	658	158	75	1,384	707	586	193	727
	부산	10,281	1,786	88	85	52	553	108	128	1,695	561	1,113	139	825
	전주	8,037	660	76	168	0	1,220	356	175	1,012	515	1,118	283	747
	구미	10,130	447	74	10	22	490	117	203	807	635	2,309	436	232

이를 2011년부터 체류 및 국적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는 비율을 보면 2011년에는 10.9%, 2012년 7.64%, 2014년 13.2%, 2015년 9.7%, 2016년 10.9% 등이다.

<표 II-8> 연도별 상담내용 현황

(1통화로 여러 건 상담 있음, 단위: 건, %)

구 분		계	폭력피해			성매매	갈등상담		심리 정서	이혼 문제	일반 법률	체류 및 국적	취업 및 노동	쉼터
			가정 폭력	일반 폭력	성폭력		부부 갈등	가족 갈등						
2011	건	12,711	509			-	1,146	164	-	-	-	1,388	363	-
	비율	100	4.0			-	9.0	1.3	-	-	-	10.9	2.8	-
2012	건	21,525	179			-	1,013	193	-	-	-	1,645	816	-
	비율	100	0.83			-	4.7	0.9	-	-	-	7.64	3.8	-
2013	건	22,375	142			-	1,114	218	-	-	-	2,033	989	-
	비율	100	0.63			-	5.0	1.0	-	-	-	9.08	4.4	-
2014	건	106,684	11,837			-	21,066		-	15,566	-	14,117		5,709
	비율	100	11.1			-	19.8		-	14.6	-	13.2		5.4
2015	건	144,616	15,399	945	1,434	173	17,094	4,559	2,702	16,159	7,851	13,959	5,350	7,722
	비율	100	10.6	0.7	1.0	0.1	11.8	3.2	1.9	11.2	5.4	9.7	3.7	5.3
2016	건	150,520	12,997	1,026	1,134	362	16,927	3,986	2,701	14,558	9,942	16,474	5,169	6,161
	비율	100	8.6	0.7	0.8	0.2	11.3	2.7	1.8	9.7	6.6	10.9	3.4	4.1

※ 2014년은 ‘취업 및 노동’과 함께 집계된 수치임.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여성 체류 관련 결정례 및 의견표명

1) 2011.8.26. 11진정0173200 국내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

결혼이주여성이 국내체류한지 5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사례이다.

이 진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치아보험 가입시 국내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계약인수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요지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3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국내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표준청약서의 건강고지 문항을 보면 최근 5년 이내의 질병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사항이 있는데 외국인은 국내체류이전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파악하기 힘들므로 국내병의원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이 5년 이상에 한해 보험승인처리를 한다. 이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므로 결혼이주자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은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 거주자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외국에 장기체류한 한 내국인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 경우에는 국내체류기간 5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진정인이 상담을 받은 보험을 검진, 발치, 치근절단술 등 치아관련 치료항목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치아안심보험이라서 치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22개 생명보험사 대상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면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청약서와 보험약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능력이 있어야 하고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해야 하며 상품에 따라서 체류목적이나 체류자격코드별로 일부 제한을 두고 있으나 5년의 국내 체류기간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의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용과 관련과정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였다.

즉 피진정인이 보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5년 이내의 질병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나 체류기간 5년 이상을 보험가입요건으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의 경우 한국어로 된 청약서와 약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외에 별도의 국내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위반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 2012. 12.6. 결정 인도적 체류자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권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을 배제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생계곤란, 주거상실, 건강악화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위 대상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사례이다.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난민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시키고, 제1조의2 제2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국내체류이주민 사회복지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 18%가 가족생활비가 적어 가정생활에 고통을

느끼고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는 여성은 3.2%에 불과하고 6.4%의 결혼이주 여성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민의 경우도 29.2%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인도적 체류자나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국적을 넘어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국인과 달리 대우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으로 대상자의 범위확대가 요구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이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에서 인도적 체류자나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응급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외국인보호시설 운영현황(2010)’을 보면 입소자의 91.2%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가정폭력의 피해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주여성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아이가 없거나 돌보지 않는 이주여성도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지고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긴급지원대상으로 편입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민여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힘들고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이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므로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을 이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3) 2009.4.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는 강제퇴거 되지 않도록 의견표명을 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조 제2항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강제퇴거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법률안 제46조 제2항에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도 강제퇴거 되지 않도록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판단이유로는 법률안 제46조 제2항은 강제퇴거 제외대상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결혼이주자의 인권보호에 이바지 할 것이다. 한편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간이귀화 요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귀책사유의 입증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 결혼이주자는 강제퇴거의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도 강제퇴거 되지 않도록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국적법의 간이귀화 규정취지와 맞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4) 2016. 7.25.자 결정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통합국가보고서 제48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9.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 2 신원보증서의 제출규정을 삭제하라고 의견표명한 것을 받아들여 2011.12. 신원보증서 청구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2012.12.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복지법시행령 제1보의2 제2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지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개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 입법적, 행정적 조치 관련현황으로 국가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5. 소결

가.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의 문제점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 등 결혼이주민을 둘러싼 다양한 의제는 꾸준히 외국인 정책의 주요 과제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주된 정책 중 하나는 결혼이주민의 입국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위장결혼 등의 사회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높은 비율이 중개업체를 통해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최초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위장결혼을 거르는 것만으로는 속성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없다.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속성결혼 자체가 인신매매적 결혼이라는 사회적 폐해나, 단기의 혼인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외국인 신분인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와 직결되는데,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대응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을 떠나야 한다. 결혼이 단절된 결혼이주민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고자 했던 결혼이주민의 인권과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현행 법·제도가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과 관련하여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결혼이주민의 최초 입국 시 신원보증 제도 문제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던 조항은 2011년 폐지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 및 [별표5의2]에서는 결혼이주민이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원보증제도는 체류기간 연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부부관계를 막고,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원보증서의 제출 의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간이귀화의 국내거주 요건 및 귀화허가 심사 기한 문제

기존 국적법은 외국인이 국민과 혼인을 함으로써 곧바로 혼인귀화를 허가하였으나, 위장결혼이나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되는 일이 증가하면서 현행 국적법에서는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제도’가 폐지되고, 간이귀화에 의하여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2년 유예의 간이귀화 요건을 규정한 것은 위법한 행위를 하는 소수를 규제하기 위해 선량한 다수의 결혼이주민의 인권과 삶을 제약하는 것으로, 국적 취득 시까지 결혼이주민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을 한국인 남편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⁵²⁾

또한 귀화신청 후 귀화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기한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고, 심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결혼이주민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이귀화 심사기한의 설정, 최초 체류기간의 상한기간 준수, 심사권자의 재량권 축소를 위한 개선조치 등이 필요하다.

③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의 간이귀화 및 체류연장 문제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결혼이주민은 혼인단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를 불현듯 박탈당한다.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기간의 연장, 체류자격의 변경, 나아가 국적취득의 기회를 부여받기 어렵다. 예외적인 경우조차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양육권이 있는지, 면접교섭권만 있는지에 따라 차별을 받으며, 자녀가 없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을 부양하기라도 하여야 체류가 허가된다. 또한 결혼단절 결혼이주민은 국적 취득 후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는다.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 및 간이귀화 신청시 귀책사유 없을 것을 요구하는 문제,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의 복수국적 불인정 문제, 면접교섭권을 가진 결혼이주민의 체류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④ 간이귀화 및 영주자격 변경허가의 요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

현행 ‘국적법’상 귀화의 요건(제5조 및 제6조)과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에 따르면 귀화 및 영주자격(F-5)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품행단정’이라는 요건은 그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심사권자의 재량이 남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는 결혼이주민은 3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귀화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52) 박승용,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측면 고찰’, 한국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118쪽.

에 대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⑤ 가정폭력피해자인 결혼이주민에 대한 보호문제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 특칙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어서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에 있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나.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①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문제

결혼이주민이 사실상의 매매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이며, 이의 규제를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은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로부터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영리적인 국제결혼중개업을 금지하여 속성결혼의 방식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민 보호에 따른 문제

실제 결혼이주민들이 국제결혼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점은 가정폭력이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가정폭력은 비단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입증이 어려운 협박이혼 강요, 낙태강요, 악의적 유기, 인격모독, 언어적·심리적 폭력, 경제적 착취 등 무형적 가정폭력의 경우도 포함된다. 국내법은 이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법제도와 법무부의 업무관행은 결혼이주민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려면 심각한 정도의 폭력을 상습적으로 겪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해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③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의 문제

결혼이주민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지원 법률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으나, ‘합법’적 체류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합법적 체류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주민들도 위 법률의 보호 내지 지원대상이 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문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사회보험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결혼이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지위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양육자 지위에서 일반 노동이주 여성과는 달리 지원혜택을 다소 폭넓게 받고 있다. 그러나 위 지원을 받는 결혼이주민은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요구된다.

Ⅲ

결혼이주민 체류현황 실태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결혼이주민의 입국, 체류, 국적, 가족형태 등 일반현황, 가정폭력, 이혼 등 인권 현황, 취업, 임금 등 경제적 활동현황,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정책요구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혼이주민의 체류 현황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절차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국내 거주 결혼이주민이었으며 총 1,061부의 설문지를 전국에 배부하여 1,014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95.6%). 이 중 무응답 및 응답 누락 등 분석에 적절하지 다고 판단된 94명을 제외하고 총 920명의 표본을 조사대상으로 확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7월부터 2달여간 실시되었다.

<표 III-1> 결혼이주민 대상 설문조사 개요

구분	결혼이주민 대상 설문조사
조사대상	결혼이주민 920명
조사기간	2017. 07. ~ 08.

2) 설문지 검토 및 설문조사 TFT TEAM 회의

TFT 회의는 총 2회 진행되었다. 먼저 결혼이주민의 체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개발 및 점검을 위해 1차 TFT TEAM 회의를 실시하였다. 1차 TFT 회의에는 연구진과 TFT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가 참석하여 설문지를 검토하였다. 2차 TFT TEAM 회의에서는 완료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 조사방법

1) 개요

조사는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국내 결혼이주민의 수가 많은 출신국인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등 5개 국어로 번역하여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 선정은 다양한 이주여성 관련기관 및 다문화 관련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되 거주 지역, 연령, 국적취득 여부, 체류현황, 출신국 등의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결혼이주민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적 미취득 등 조사대상자의 결혼이주민의 다양한 상황과 지위로 인해 유의표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 기관 이용자들의 협조를 통한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다양한 조사대상자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아래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조사원이 해당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담당자 및 설문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대상자들이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뒤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주요 거점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2) 설문조사 배포 등 협조를 위한 주요 거점기관

<표 III-2> 결혼이주민 대상 설문조사 배포 주요기관

지역	기관명
서울·경기 (600부)	광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왕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여성디딤터
부산·경남 (150부)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150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전북 (150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무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전·충청 (150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라. 조사항목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현황 등을 단계별, 주제별로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인 인적사항, 입국시 인권실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과 가족관계, 경제활동, 체류연장 및 국적 취득시의 현황, 폭력 및 인권침해 현황 및 구제절차,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정책욕구 등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I-3> 결혼이주민 대상 설문조사 _ 조사항목

구 분	조사항목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 출신국, 현재 국적 - 최종 학력 - 혼인상태 - 거주지 및 거주형태 - 경제활동 및 경제생활수준 - 한국어능력 정도 - 한국생활 만족정도
한국체류상황	- 입국시기 - 입국시 체류자격, 현재 체류자격 - 체류연장경험 유무 - 체류연장/영주자격/국적 취득과정에서의 어려움 - 체류연장/영주자격/국적 취득과정에서의 지원여부 및 지원받은 곳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 혼인상태 및 가족구성원 현황 - 자녀 수 및 국적 - 폭력피해 경험여부: 남편 또는 남편가족으로부터의 신체적, 언어적, 경제적, 문화적 폭력 등 - 이혼여부, 이혼사유 및 이혼방법 -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 이혼과정에서의 어려움 - 이혼과정에서 자녀양육 관련사항; 면접교섭권 인지여부, 양육비 청구 및 지급여부
사회서비스	- 결혼이주민과 관련된 제도(정부의 양육지원, 다누리콜센터, 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취업지원센터 등) 인지 및 이용여부 -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
심리정서적 상태	- 문화적응스트레스(23문항)

2. 조사결과

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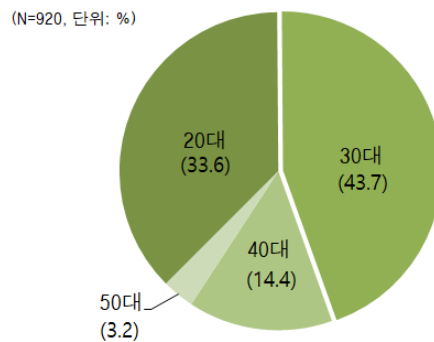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연령별로는 30대가 390명(42.4%)로 가장 많았고, 20대 345명(37.5%), 40대 129명(14.0%), 50대 이상 29명(3.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2.77세로 나타나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조사대상자의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평균
사례수(명)	345	390	129	29	32.77세
백분율(%)	38.6	43.7	14.4	3.2	

※ 무응답이 제외되어 사례별로 차이가 있음

<그림 III-1> 조사대상자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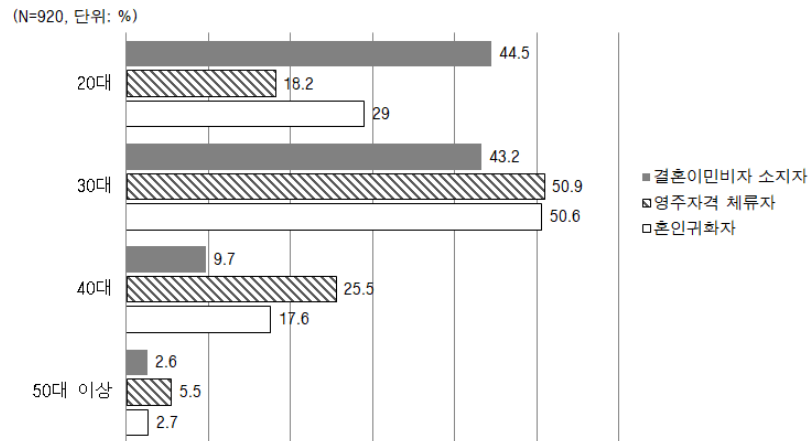


응답자의 연령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20대(44.5%), 30대(43.2%)가 비슷한 비율로 많았던 반면, 영주자격 체류자와 혼인귀화자의 경우 30대(각 50.9%, 50.6%)가 가장 많았다.

<표 III-5> 조사대상자의 연령 _ 체류자격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101	98	22	6	227
	%	44.5%	43.2%	9.7%	2.6%	100.0%
영주자격 체류자	명	20	56	28	6	110
	%	18.2%	50.9%	25.5%	5.5%	100.0%
혼인귀화자	명	74	129	45	7	255
	%	29.0%	50.6%	17.6%	2.7%	100.0%

<그림 III-2> 조사대상자의 연령 _ 체류자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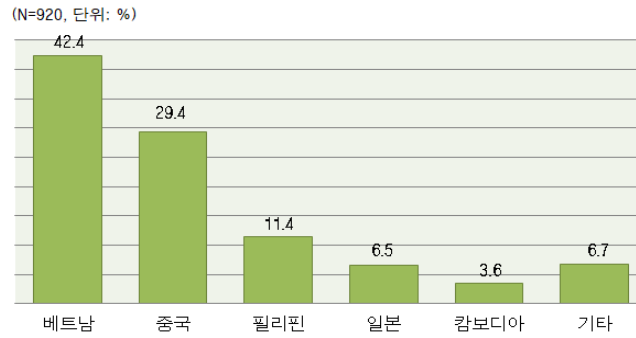
2) 출생국가

출생국가별로는 베트남이 356명(42.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국 247명(29.4%), 필리핀 96명(11.4%), 일본 56명(6.5%), 캄보디아 30명(3.6%)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가로는 대만(9명), 몽골(7명), 태국(6명), 우즈베키스탄(5명), 네팔(5명)을 비롯하여 키르기즈스탄(이상 각 2명), 캐나다, 스리랑카, 미국, 러시아(이상 각 1명) 등이 있었다.

<표 III-6> 조사대상자의 출생국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기타
사례수(명)	356	247	96	55	30	56
백분율(%)	42.4	29.4	11.4	6.5	3.6	6.7

<그림 III-3> 조사대상자의 출생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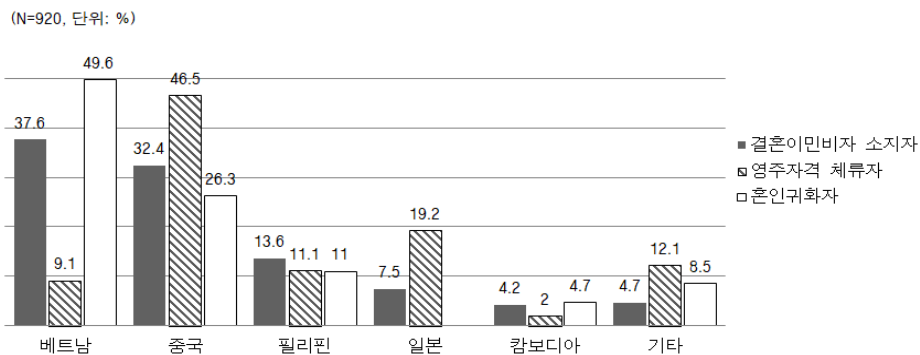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출생국가를 체류자격별로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13명 중에는 베트남 출신이 80명(37.6%), 중국 출신이 69명(32.4%) 순으로 많았다. 영주자격 체류자 99명 중에는 중국 출신자가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46.5%), 혼인귀화자 236명 중에는 베트남 출신자가 117명으로 가장 많았다(49.6%).

<표 III-7> 조사대상자의 출생국 _ 체류자격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기타	전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80	69	29	16	9	10	213
	%	37.6	32.4	13.6	7.5	4.2	4.7	100.0
영주자격 체류자	명	9	46	11	19	2	12	99
	%	9.1	46.5	11.1	19.2	2.0	12.1	100.0
혼인귀화자	명	117	62	26	0	11	20	236
	%	49.6	26.3	11.0	0.0	4.7	8.5	100.0

<그림 III-4> 조사대상자의 출생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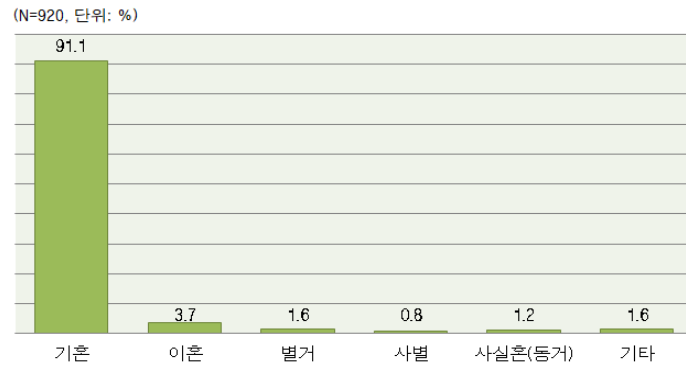
3) 혼인상태

혼인상태는 기혼 비율이 806명(91.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혼 3.7%, 별거 1.6%, 사실혼(동거) 1.2%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기혼	이혼	별거	사별	사실혼 (동거)	기타	계
사례수(명)	806	33	14	7	11	14	885
백분율(%)	91.1	3.7	1.6	0.8	1.2	1.6	100.0

<그림 III-5>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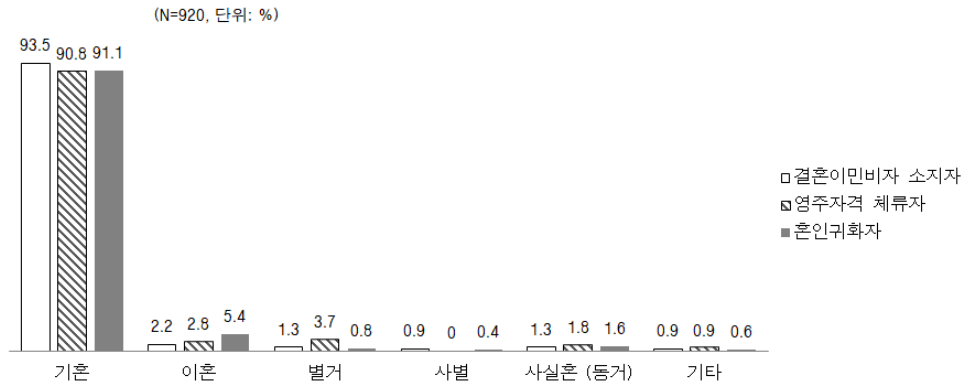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를 체류자격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체류상태에서 기혼 비율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만 혼인귀화자의 이혼 비율(5.4%)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2.2%)나 영주자격 체류자(2.8%)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_ 체류자격별

		기혼	이혼	별거	사별	사실혼 (동거)	기타	계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216	5	3	2	3	2	231
	%	93.5%	2.2%	1.3%	.9%	1.3%	.9%	100.0
영주자격 체류자	명	99	3	4	0	2	1	109
	%	90.8%	2.8%	3.7%	0.0%	1.8%	.9%	100.0
혼인귀화자	명	234	14	2	1	4	2	257
	%	91.1%	5.4%	.8%	.4%	1.6%	.8%	100.0

<그림 III-6>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_ 체류자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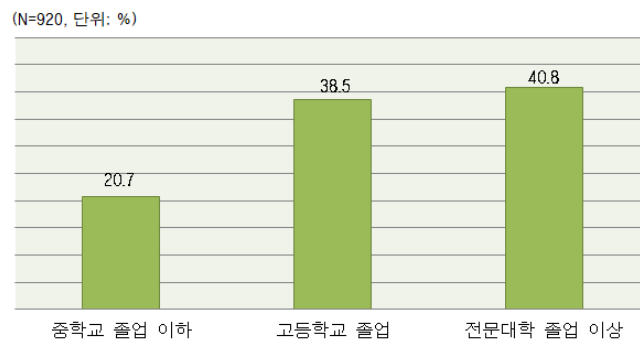
4)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40.8%, 고등학교 졸업이 38.5%로 나타나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80%에 달했다. 출신국에서의 교육기간을 포함해 교육을 받은 기간도 10년 이상이라는 응답(59.5%)의 비중이 가장 높아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민 체류자격별로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중학교 졸업 이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5%).

<표 III-10>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이상	계
사례수(명)	182	338	358	878
백분율(%)	20.7	38.5	4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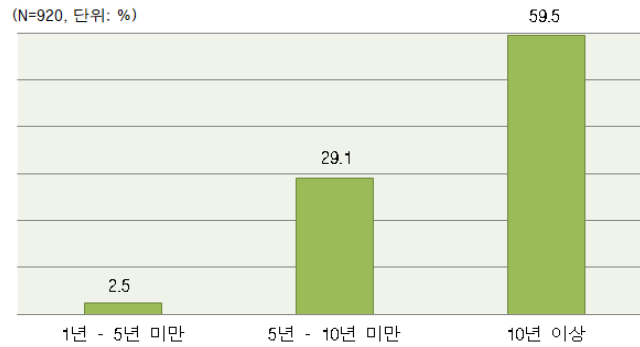
<그림 III-7>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표 III-11> 조사대상자의 교육기간

	1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평균
사례수(명)	22	260	531	813	10.99
백분율(%)	2.5	29.1	5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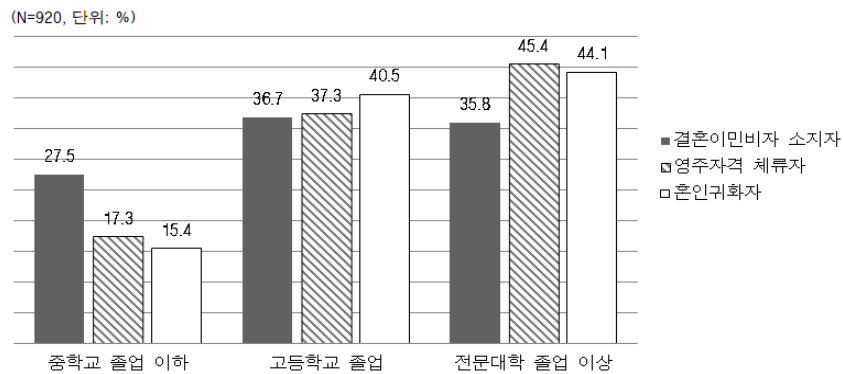
<그림 III-8> 조사대상자의 교육기간



<표 III-12>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_ 체류자격별

구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이상	전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63	84	82	229
	%	27.5	36.7	35.8	100.0%
영주자격 체류자	명	19	41	50	110
	%	17.3	37.3	45.4	100.0%
혼인귀화자	명	39	103	112	254
	%	15.4	40.5	44.1	100.0%

<그림 III-9>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_ 체류자격별



5)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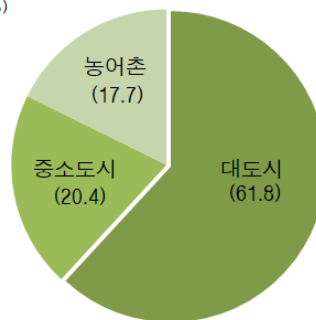
결혼이주민의 거주 지역은 대도시(서울특별시 및 6대광역시) 거주자가 569명(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188명(20.4%), 농어촌은 163명(17.7%)로 상당수가 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 거주 지역별로는 인천이 159명(17.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9명(16.7%), 경기 132명(14.8%), 대구/경북 123명(13.7%), 부산/경남 104명(11.7%), 전라/제주 119명(13.4%), 대전/충청 107명(11.9%)순으로, 조사대상자의 49.3%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사례수(명)	569	188	163
백분율(%)	61.8	20.4	17.7

<그림 III-10>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N=9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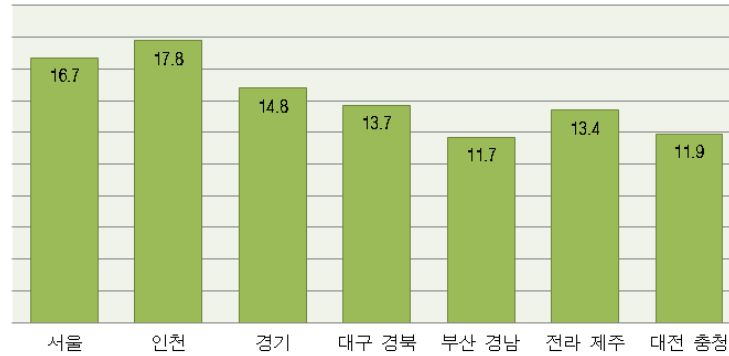


<표 III-14> 조사대상자의 세부 거주지역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라 제주	대전 충청	계
사례수(명)	149	159	132	123	104	119	107	893
백분율(%)	16.7	17.8	14.8	13.7	11.7	13.4	11.9	100.0

<그림 III-11> 조사대상자의 세부 거주지역

(N=9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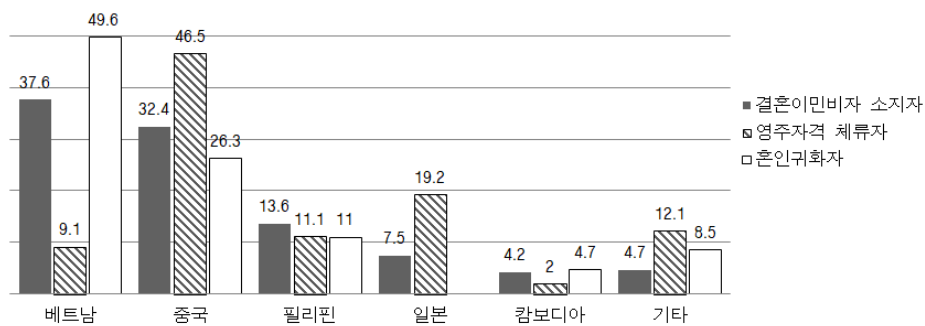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체류자격별로 거주지역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농어촌 거주비율이 22%로, 영주자격 체류자(11.5%)나 혼인귀화자(15.1%)에 비하여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_ 체류자격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빈도	146	35	51	232
	%	62.9%	15.1%	22.0%	100.0%
영주자격 체류자	빈도	88	12	13	113
	%	77.9%	10.6%	11.5%	100.0%
혼인귀화자	빈도	132	87	39	258
	%	51.2%	33.7%	15.1%	100.0%

<그림 III-12>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_ 체류자격별

(N=920, 단위: %)



6) 한국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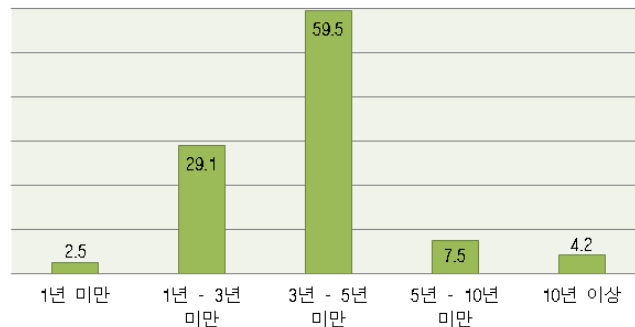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318명(35.6%)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이 188명(21.1%), 3년 이상 5년 미만이 123명(13.8), 1년 이상 3년 미만이 106명(11.9%)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한국거주기간은 16.3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평균 (년)
사례수(명)	91	106	123	318	188	826	16.37
백분율(%)	10.2	11.9	13.8	35.6	21.1	100.0	

<그림 III-13>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

(N=9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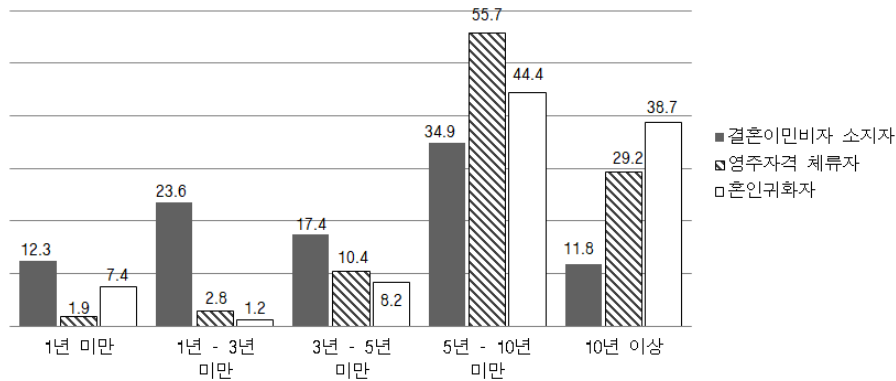


체류자격별로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1년 미만(12.3%), 1년 이상 3년 미만(23.6%) 거주 비율이 영주자격 체류자(각 1.9%, 2.8%)나 혼인귀화자(각 7.4%, 1.2%)에 비하여 높았던 반면, 5년 이상 거주 비율은 영주자격 체류자와 혼인귀화자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다. 특히 10년 이상 거주 비율은 11.8%로, 영주자격 체류자 29.2%, 혼인귀화자 38.7%와 차이가 컸다.

<표 III-17>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 _ 체류자격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26	50	37	74	25	212
	%	12.3	23.6	17.4	34.9	11.8	100.0
영주자격 체류자	명	2	3	11	59	31	106
	%	1.9	2.8	10.4	55.7	29.2	100.0
혼인귀화자	명	18	3	20	108	94	243
	%	7.4	1.2	8.2	44.4	38.7	100.0

<그림 III-14>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 _ 체류자격별



7)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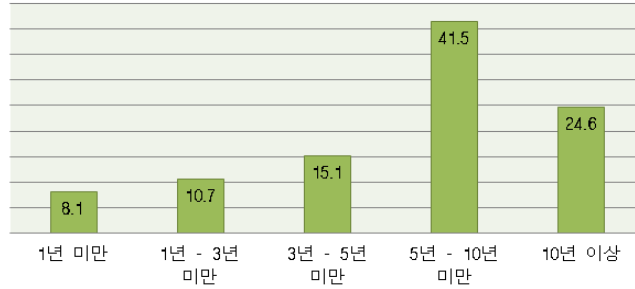
배우자와의 동거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33명으로 41.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24.6%), 3년 이상 5년 미만(15.1%), 1년 이상 3년 미만(10.7%) 순으로 나타나, 한국거주기간 응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동거기간연수는 6.3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평균 (년)
사례수(명)	65	86	121	333	197	802	6.38
백분율(%)	8.1	10.7	15.1	41.5	24.6	100.0	

<그림 III-15>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N=9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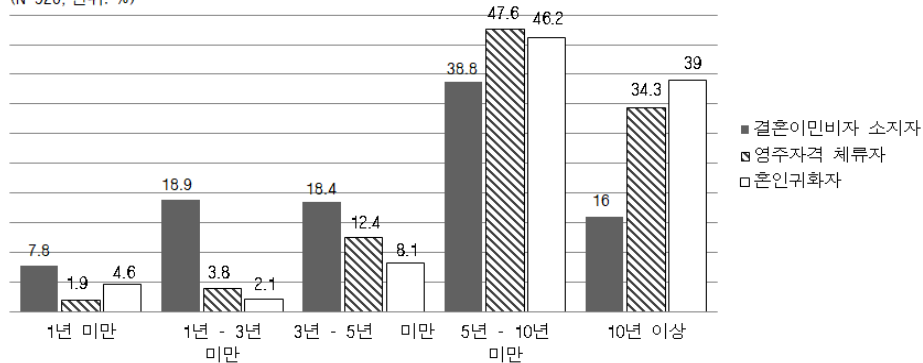
체류자격별로 배우자와의 동거기간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높았지만,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18.9%), 영주자격 체류자와 혼인귀화자의 경우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각 34.3%, 39%).

<표 III-19>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_ 체류자격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16	39	38	80	33	206
	%	7.8	18.9	18.4	38.8	16.0	100.0
영주자격 체류자	명	2	4	13	50	36	105
	%	1.9	3.8	12.4	47.6	34.3	100.0
혼인귀화자	명	11	5	19	109	92	236
	%	4.6	2.1	8.1	46.2	39.0	100.0

<그림 III-16>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_ 체류자격별

(N=920, 단위: %)



8)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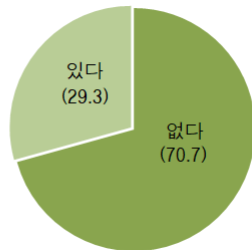
현재 직업유무에 대해서는 직업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70.7%)였으나, 과거에는 직업이 있었다는 응답이 61.5%로 나타나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과거 직업으로는 네일아트, 미싱사, 미용사 등 서비스직도 있었지만 회계, 통역, 교사, 간호사 등의 전문직도 다수 있었다. 현재 직업으로는 통번역이나 어학 또는 다문화강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일용직(아르바이트), 농업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표 III-20> 조사대상자의 현재 및 과거 직업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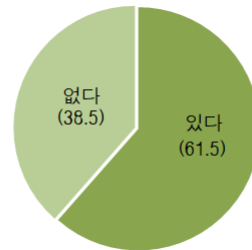
구분	현재 직업 유무		과거 직업 유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사례수(명)	260	626	541	338
백분율(%)	29.3	70.7	61.5	38.5

<그림 III-17> 조사대상자의 현재 및 과거 직업 유무

(N=920, 단위: %)



(N=9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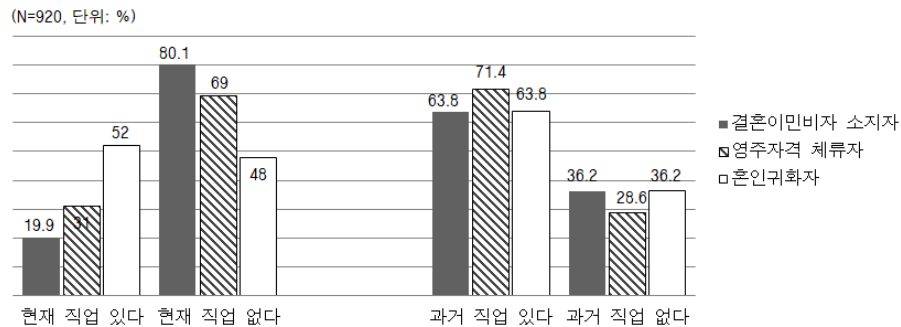


체류자격별로 조사대상자의 직업 유무를 분석한 결과, 과거의 직업 유무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현재의 직업 유무에서 체류자격별로 차이를 보였다. 현재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혼인귀화자의 경우 52.0%였으나,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 31.0%, 결혼이민비자 소지자는 19.9%에 불과해 체류자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21> 조사대상자의 직업 유무 _ 체류자격별

		현재 직업 유무		과거 직업 유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46	185	146	83
	%	19.9	80.1	63.8	36.2
영주자격 체류자	명	35	78	80	32
	%	31.0	69.0	71.4	28.6
혼인귀화자	명	132	122	162	92
	%	52.0	48.0	63.8	36.2

<그림 III-18> 조사대상자의 직업 유무 _ 체류자격별



9) 경제상태

조사대상자의 개인 소득 수준 조사결과, 소득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21명, 59.8%),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108명(12.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105명(12.1%)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150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귀화자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비율(37%)이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절반 정도로 적은 한편,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24.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8.7%) 응답은 2배 내지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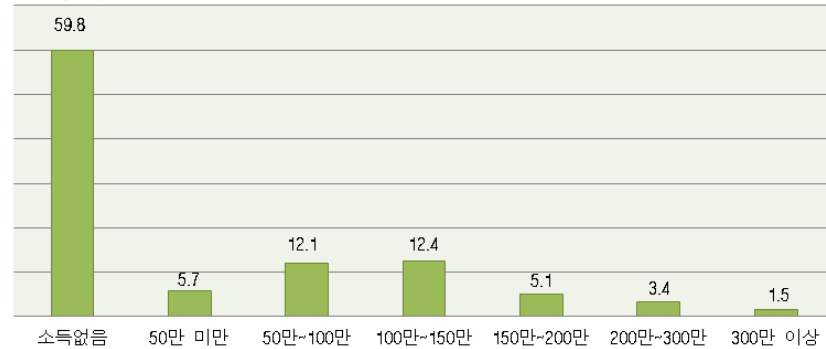
<표 III-22>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

(월 평균, 단위: 원)

	소득 없음	50만 미만	50만 ~100만	100만 ~150만	150만 ~200만	200만 ~300만	300만 이상	계
사례수(명)	521	50	105	108	44	30	13	871
백분율(%)	59.8	5.7	12.1	12.4	5.1	3.4	1.5	100.0

<그림 III-19>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

(N=9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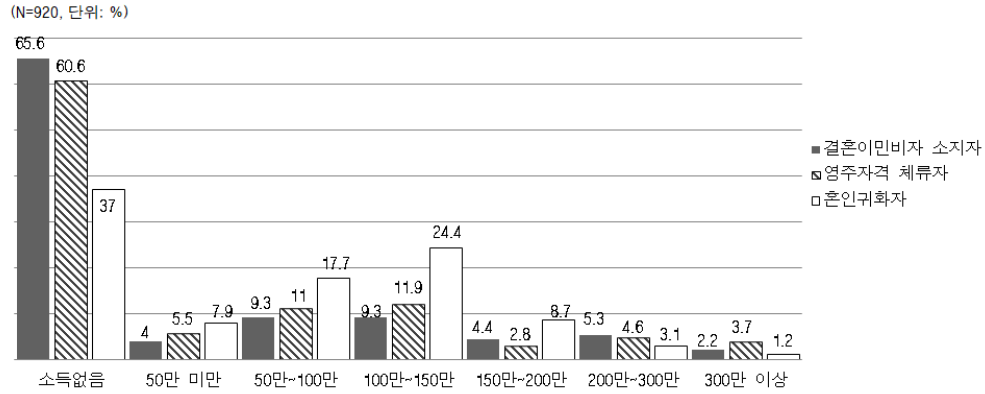


<표 III-23>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 _ 체류자격별

(월 평균, 단위: 원)

		소득 없음	50만원 미만	50만 ~100만	100만 ~150만	150만 ~200만	200만 ~300만	300만 이상	계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149	9	21	21	10	12	5	227
	%	65.6	4.0	9.3	9.3	4.4	5.3	2.2	100.0
영주자격 체류자	명	66	6	12	13	3	5	4	109
	%	60.6	5.5	11.0	11.9	2.8	4.6	3.7	100.0
혼인 귀화자	명	94	20	45	62	22	8	3	254
	%	37.0	7.9	17.7	24.4	8.7	3.1	1.2	100.0

<그림 III-20>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 _ 체류자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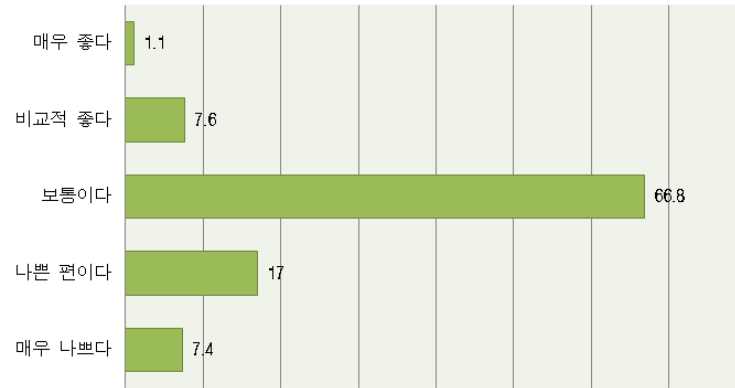
주관적인 경제생활수준 인식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6명(66.8%)으로 가장 높았다. 나쁘다는 응답(①+②)은 214명(24.4%), 좋다는 응답(④+⑤)은 77명(8.8%)으로,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보다 부정적인 경우가 3배 가까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체류자격별로 살펴본 결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나쁘다는 응답(①+②) 역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각 21.8%, 25%, 22.5%), 좋다고 응답한 비율(④+⑤)은 영주자격 체류자가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각 7.9%, 11.6%, 6.7%).

<표 III-24>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경제상태 인식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좋다	⑤ 매우 좋다
사례수(명)	65	149	586	67	10
백분율(%)	7.4	17.0	66.8	7.6	1.1

<그림 III-21>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경제상태 인식

(N=9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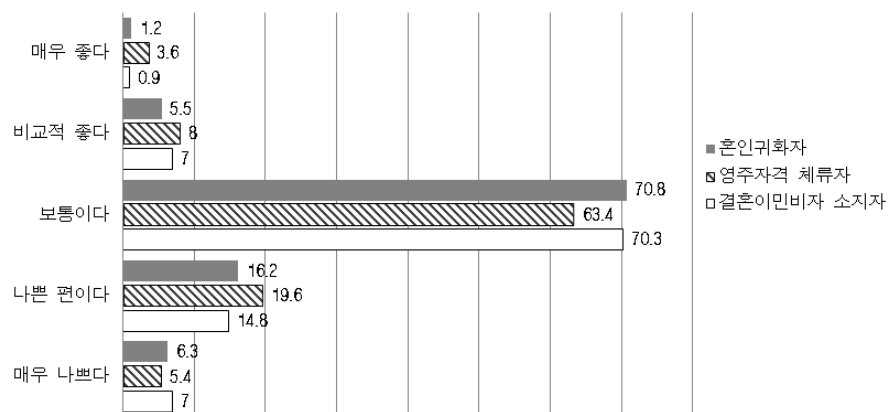


<표 III-25>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경제상태 인식 _ 체류자격별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좋다	⑤ 매우 좋다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16	34	161	16	2
	%	7.0	14.8	70.3	7.0	0.9
영주자격 체류자	명	6	22	71	9	4
	%	5.4	19.6	63.4	8.0	3.6
혼인귀화자	명	16	41	179	14	3
	%	6.3	16.2	70.8	5.5	1.2

<그림 III-22>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경제상태 인식 _ 체류자격별

(N=9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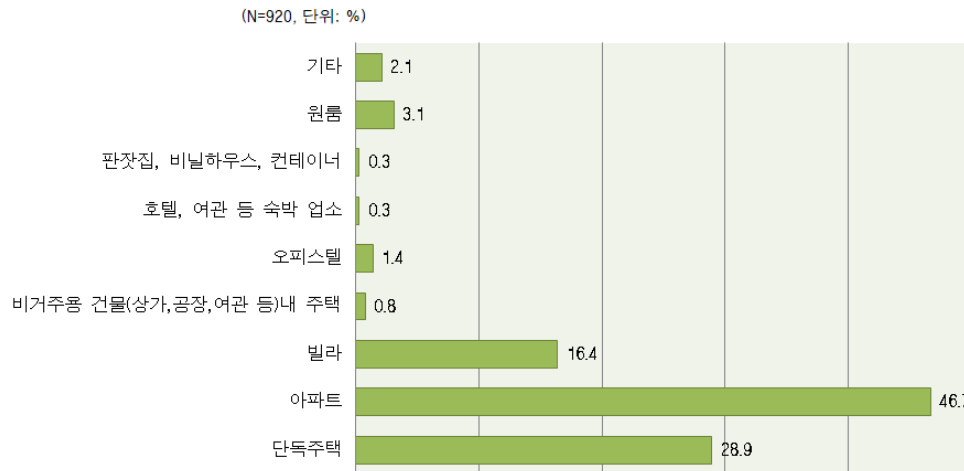
10) 주거상태

주거유형은 아파트라는 응답이 408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단독주택(252명, 28.9%), 빌라(143명, 16.4%) 순으로 나타났다. 비거주용 건물(0.8%),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0.3%), 숙박업소(0.3%)등 불안정한 거주형태를 보이는 응답도 많았다. 체류자격별로 주거유형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빌라 거주비율(20.4%)이 영주자격 체류자(16.7%)나 혼인귀화자(14.2%)에 비하여 다소 높다는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II-26> 조사대상자의 주거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내 주택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원룸	기타	계
사례수(명)	252	408	143	7	12	3	3	27	18	873
백분율(%)	28.9	46.7	16.4	0.8	1.4	0.3	0.3	3.1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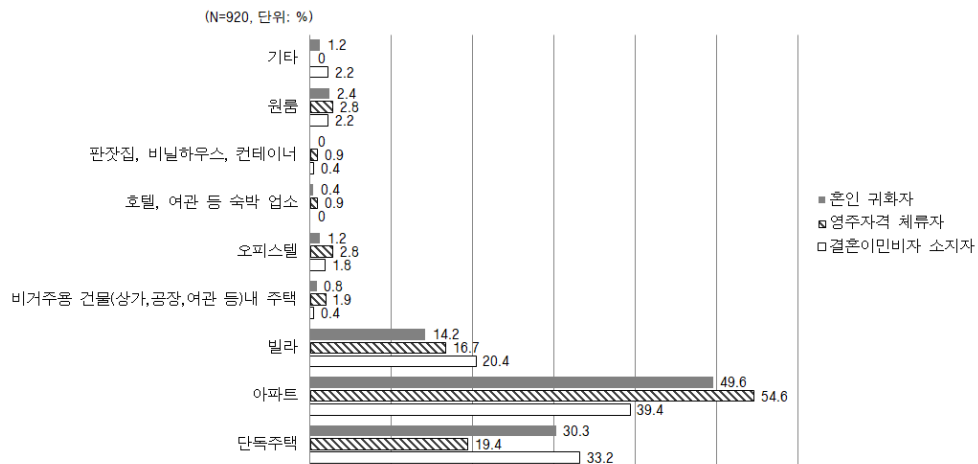
<그림 III-23> 조사대상자의 주거유형



<표 III-27> 조사대상자의 주거유형 _ 체류자격별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내 주택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원룸	기타	계
결혼이민비 자 소지자	명	75	89	46	1	4	0	1	5	5	226
	%	33.2	39.4	20.4	0.4	1.8	0.0	0.4	2.2	2.2	100.0
영주자격 체류자	명	21	59	18	2	3	1	1	3	0	108
	%	19.4	54.6	16.7	1.9	2.8	0.9	0.9	2.8	0.0	100.0
혼인 귀화자	명	77	126	36	2	3	1	0	6	3	254
	%	30.3	49.6	14.2	0.8	1.2	0.4	0.0	2.4	1.2	100.0

<그림 III-24> 조사대상자의 주거유형 _ 체류자격별



11)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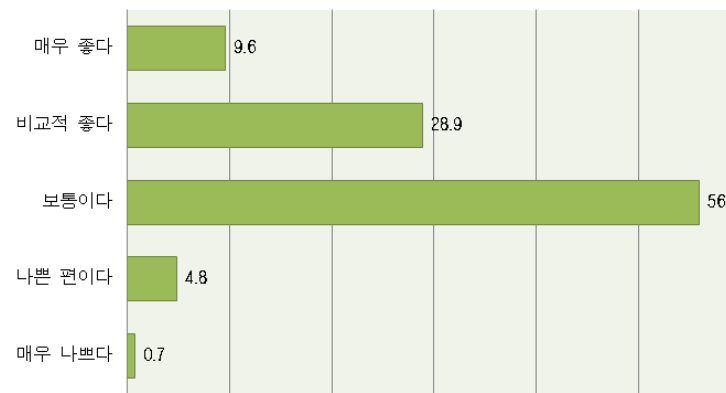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94명, 56%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좋다는 응답이 255명, 28.9%로 그 뒤를 이었다. 좋은 편이라는 응답(①+②)은 38.5%, 나쁜 편이라는 응답(④+⑤)은 5.4%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건강수준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식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좋다	⑤ 매우 좋다	계
사례수(명)	6	42	494	255	85	882
백분율(%)	0.7	4.8	56.0	28.9	9.6	100.0

<그림 III-25>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식

(N=9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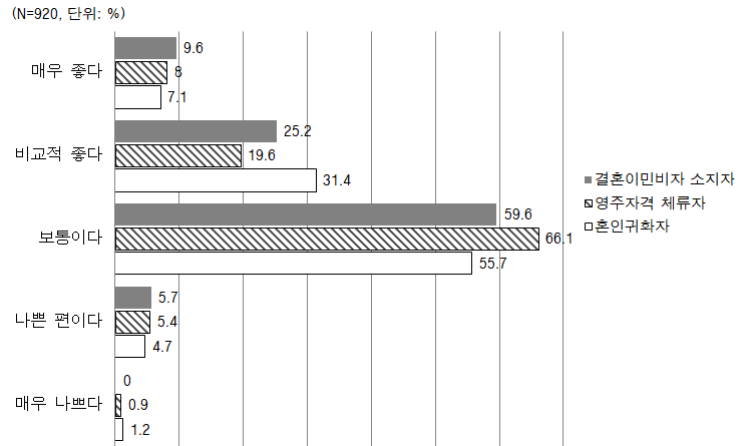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식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본 결과,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각 59.6%, 66.1%, 55.7%), 나쁜 편이라는 응답(④+⑤)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각 5.7%, 6.3%, 5.9%). 좋은 편이라는 응답(①+②)은 혼인 귀화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8.5%), 결혼이민비자 소지자(34.8%), 영주자격 체류자(27.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식 _ 체류자격별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좋다	⑤ 매우 좋다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0	13	137	58	22
	%	0.0	5.7	59.6	25.2	9.6
영주자격 체류자	명	1	6	74	22	9
	%	0.9	5.4	66.1	19.6	8.0
혼인귀화자	명	3	12	142	80	18
	%	1.2	4.7	55.7	31.4	7.1

<그림 III-26>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식 _ 체류자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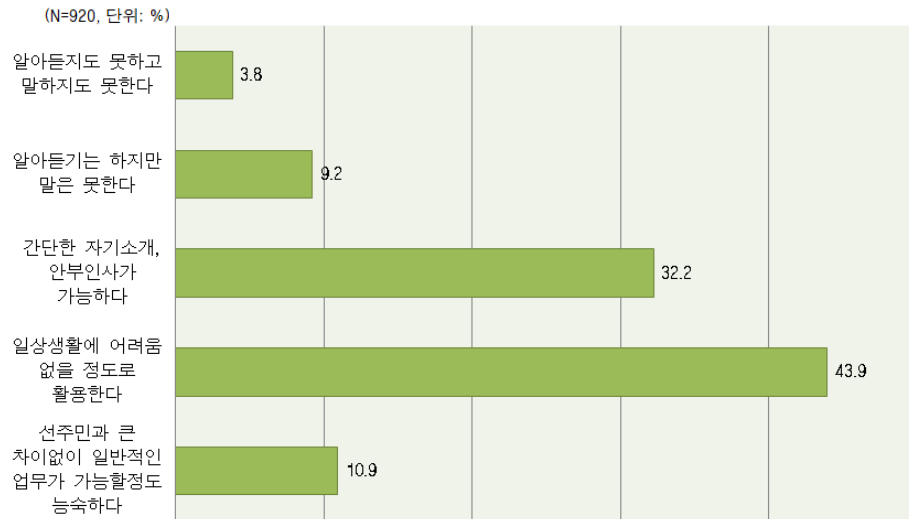
12) 한국어 활용수준

한국어 수준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라는 응답이 390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간단한 자기소개 등이 가능한 수준’이 286명(32.2%), 일반적 업무가능이 97명(10.9%)으로 나타나 상당수가 비교적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별로 한국어 활용수준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간단한 자기소개 등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40.0%), 다른 체류자들에 비하여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7.4%).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라는 응답은 영주자격 체류자가 52.2%, 혼인귀화자가 59.1%인 데 반하여 결혼이민비자 소지자는 37.8%에 그쳤고, ‘선주민과 큰 차이 없이 일반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응답도 6.1%에 그쳐 영주자격 체류자(15.0%)와 혼인귀화자(19.5%)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표 III-30>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활용수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은 못한다	간단한 자기소개, 안부인사가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을 정도로 활용한다.	선주민과 큰 차이 없이 일반적인 업무가 가능할정도 능숙하다.	계
사례수(명)	34	82	286	390	97	889
백분율(%)	3.8	9.2	32.2	43.9	1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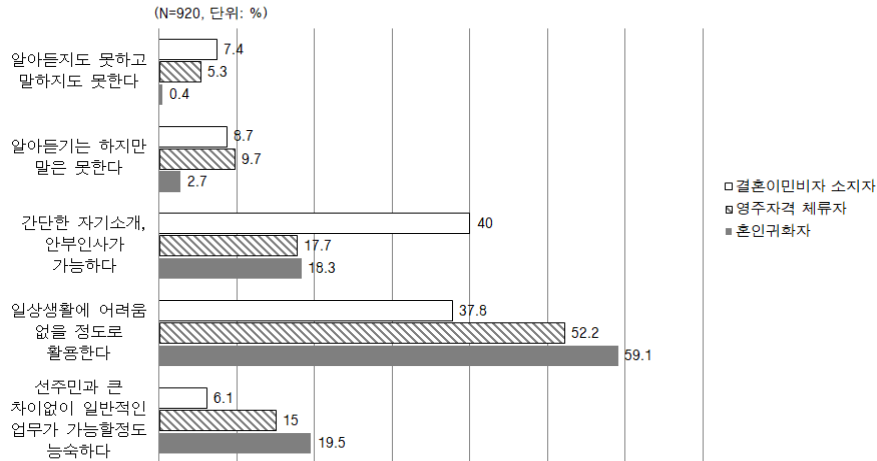
<그림 III-27>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활용수준



<표 III-31>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활용수준 _ 체류자격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은 못한다	간단한 자기소개, 안부인사가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을 정도로 활용한다.	선주민과 큰 차이 없이 일반적인 업무가 가능할 정도로 능숙하다.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17	20	92	87	14
	%	7.4	8.7	40.0	37.8	6.1
영주자격 체류자	명	6	11	20	59	17
	%	5.3	9.7	17.7	52.2	15.0
혼인 귀화자	명	1	7	47	152	50
	%	0.4	2.7	18.3	59.1	19.5

<그림 III-28>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활용수준 _ 체류자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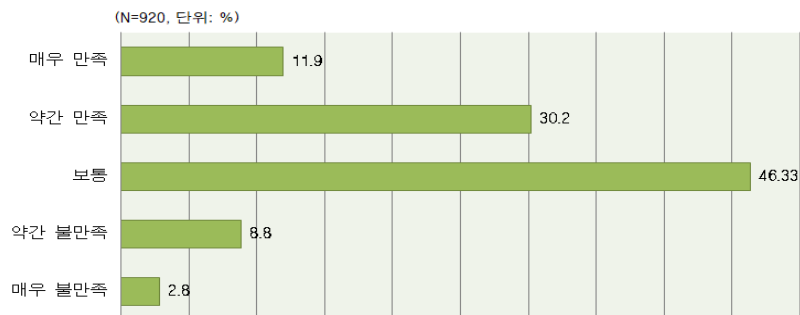
13) 한국거주 만족도 및 한국에 대한 인상변화

한국 거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10명(46.3%)으로 가장 높았고,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 267명(30.2%)으로 뒤를 이었다. 만족스럽다는 응답(④+⑤)은 총 372명으로 42%를 차지하여,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①+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03명, 11.6%).

<표 III-32> 한국거주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계
사례수(명)	25	78	410	267	105	885
백분율(%)	2.8	8.8	46.3	30.2	11.9	100.0

<그림 III-29> 한국거주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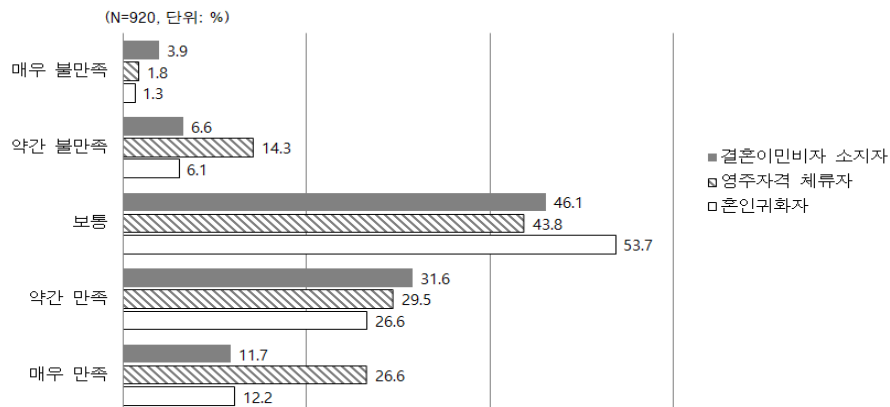


한국거주만족도를 체류자격별로 살펴본 결과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순으로 나타나 체류자격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 ‘약간 불만족’의 응답비율이 14.3%로, 다른 체류자격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I-33>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만족도 _ 체류자격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3	14	123	61	28
	%	1.3	6.1	53.7	26.6	12.2
영주자격 체류자	명	2	16	49	33	12
	%	1.8	14.3	43.8	29.5	10.7
혼인 귀화자	명	10	17	118	81	30
	%	3.9	6.6	46.1	31.6	11.7

<그림 III-30>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만족도 _ 체류자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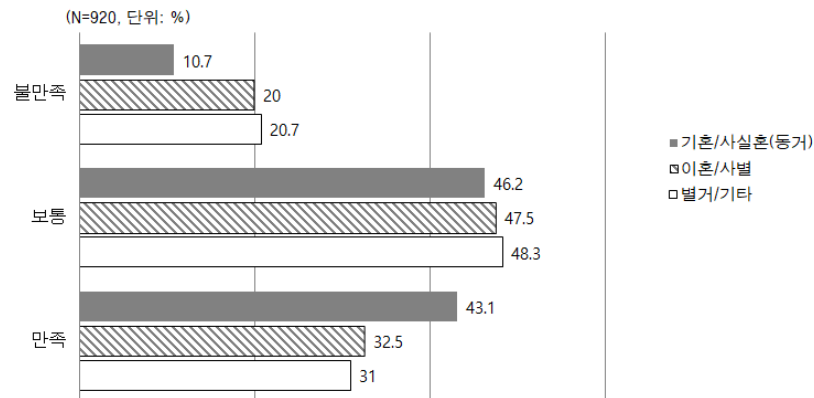
한편, 혼인상태별로 한국거주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 기혼 집단에 비해 이혼/사별, 별거 집단이 한국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III-34>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만족도 _ 혼인상태별

		한국거주 만족도			전체
		불만족	보통	만족	
기혼/사실혼 (동거)	명	89	386	360	835
	%	10.7%	46.2%	43.1%	100.0%
이혼/사별	명	8	19	13	40
	%	20.0%	47.5%	32.5%	100.0%
별거/기타	명	6	14	9	29
	%	20.7%	48.3%	31.0%	100.0%

F=3.163, p=.043

<그림 III-31>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만족도 _ 혼인상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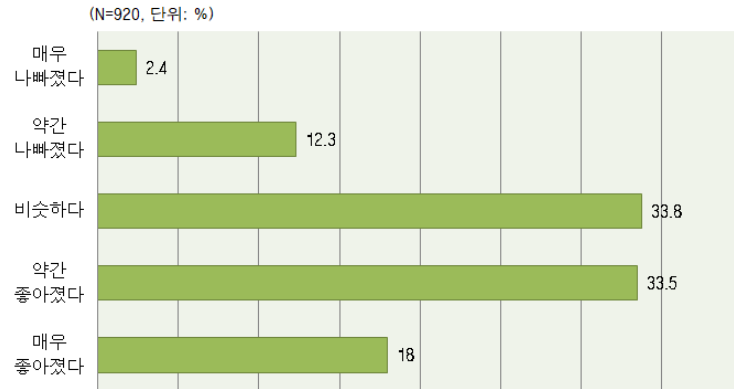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①+②)이 130명, 14.7%인 데 비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④+⑤)이 455명(51.5%)으로 나타나, 한국거주상황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35> 조사대상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변화

	① 매우 나빠졌다	② 약간 나빠졌다	③ 비슷하다	④ 약간 좋아졌다	⑤ 매우 좋아졌다	계
사례수(명)	21	109	299	296	159	884
백분율(%)	2.4	12.3	33.8	33.5	18.0	100.0

<그림 III-32> 조사대상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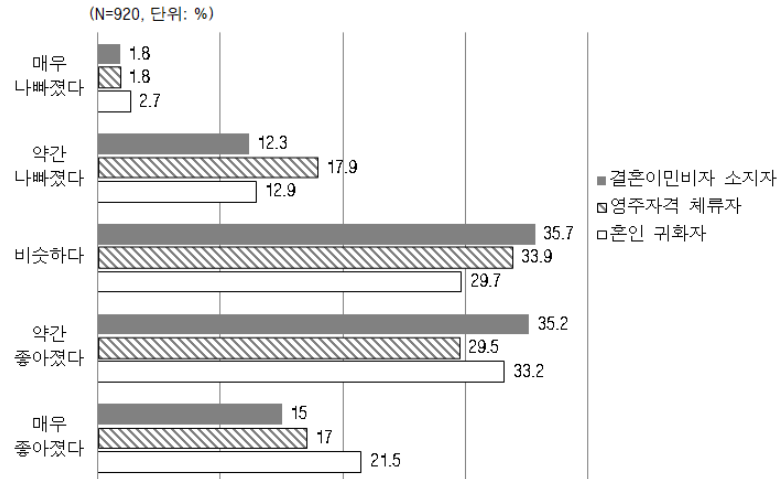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는 체류자격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모든 체류자격에서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좋아졌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나빠졌다는 응답(①+②)도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14.1%,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 19.6%, 혼인귀화자의 경우 15.6%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36> 조사대상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변화 _ 체류자격별

		① 매우 나빠졌다	② 약간 나빠졌다	③ 비슷하다	④ 약간 좋아졌다	⑤ 매우 좋아졌다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4	28	81	80	34
	%	1.8	12.3	35.7	35.2	15.0
영주자격 체류자	명	2	20	38	33	19
	%	1.8	17.9	33.9	29.5	17.0
혼인 귀화자	명	7	33	76	85	55
	%	2.7	12.9	29.7	33.2	21.5

<그림 III-33> 조사대상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변화 _ 체류자격별



나. 국내 입국 전후의 체류현황 및 실태

1) 입국과정에서의 체류현황 및 실태

(1) 입국시/현재 체류자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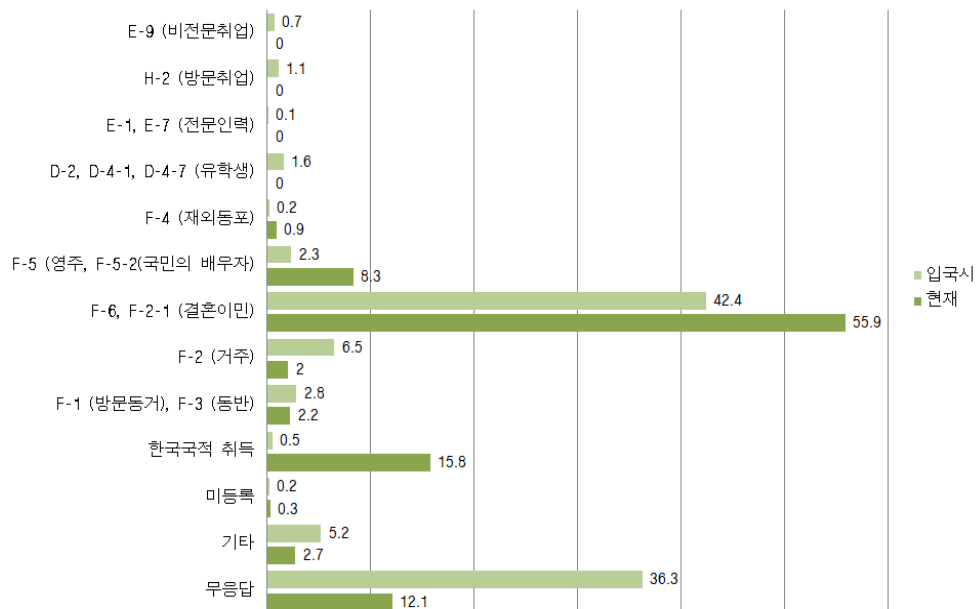
입국 시의 체류자격은 응답자 920명 중 F-6, F-2-1(결혼이민)이 390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응답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무응답이 33.7%에 달했는데, 이는 자신의 입국시 체류자격을 잘 몰랐던 조사대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체류자격에 대한 응답 역시 F-6, F-2-1(결혼이민)이라는 응답이 514명(55.9%)로 가장 많았고, 한국국적 취득이 145명(15.8%), F-5 비자취득이 76명(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입국시/현재 체류자격 현황

구분	입국시		현재	
	사례수(명)	백분율(%)	사례수(명)	백분율(%)
E-9 (비전문취업)	6	0.7	-	-
H-2 (방문취업)	10	1.1	-	-
E-1, E-7 (전문인력)	1	0.1	-	-
D-2, D-4-1, D-4-7 (유학생)	15	1.6	-	-
F-4 (재외동포)	2	0.2	8	0.9
F-5 (영주, F-5-2(국민의 배우자)	21	2.3	76	8.3
F-6, F-2-1 (결혼이민)	390	42.4	514	55.9
F-2 (거주)	60	6.5	18	2.0
F-1 (방문동거), F-3 (동반)	26	2.8	20	2.2
한국국적 취득	5	0.5	145	15.8
미등록	2	0.2	3	0.3
기타	48	5.2	25	2.7
무응답	334	36.3	111	12.1

<그림 III-34> 입국시/현재 체류자격 현황

(N=920, 단위: %)



(2) 체류연장 경험유무 및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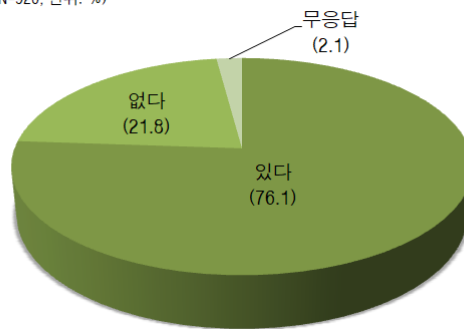
체류연장 경험은 조사대상자의 76.1%가 체류연장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평균 체류연장 횟수는 2.69회였다. 연장 횟수별로는 2회 연장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25.2%), 3회 연장(21.8%), 1회 연장(1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체류연장 경험유무

구분	있다	없다	무응답	계
사례수(명)	700	201	19	920
백분율(%)	76.1	21.8	2.1	100.0

<그림 III-35> 체류연장 경험유무

(N=920, 단위: %)



<표 III-39> 체류연장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무응답	계	평균
사례수(명)	110	181	157	46	50	175	719	2.69
백분율(%)	15.3	25.2	21.8	6.4	6.95	24.3	100.0	

(3) 체류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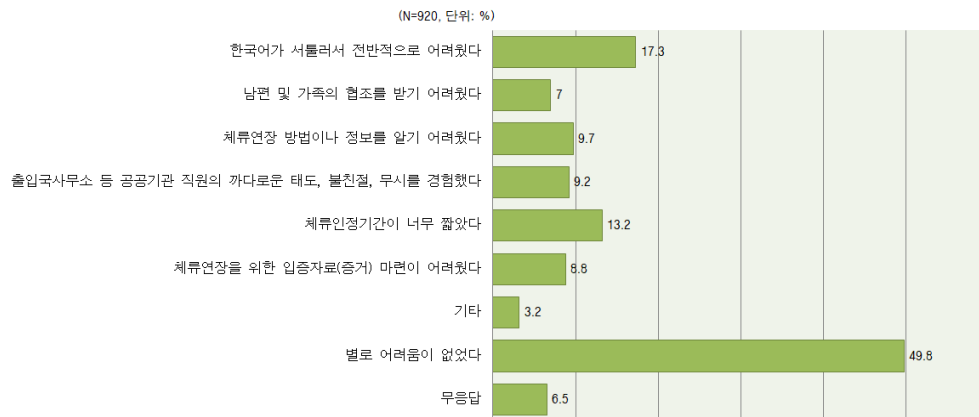
체류연장 경험이 있다고 답한 719명에게 체류연장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한국어가 서투른데서 기인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17.2%), 다음으로 체류인정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13.2%), 체류연장 방법이나 정보를 알기 어려워서(9.7%), 출입국사무소 등 공공기관 직원의 불친절(9.2%), 체류연장을 위한 증거마련이 어려워서(8.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입국관리소가 혼잡해서 힘들었다는 의견, 영주자격 신청시 범죄기록을 요구하여 다

시 귀국하여 발급받다 보니 번거로웠다는 의견, 관련 보조요원의 도움이 없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III-40> 체류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복응답)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한국어가 서툴러서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124	17.3
남편 및 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웠다	50	7.0
체류연장 방법이나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70	9.7
출입국사무소 등 공공기관 직원의 까다로운 태도, 불친절, 무시를 경험했다	66	9.2
체류인정기간이 너무 짧았다	95	13.2
체류연장을 위한 입증자료(증거) 마련이 어려웠다	63	8.8
기타	23	3.2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359	49.8
무응답	47	6.5

<그림 III-36> 체류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복응답)



혼인상태별로 체류연장시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참여자가 한국어가 서투른데 오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이혼사별 집단의 경우 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웠던 점, 공공기관 직원들의 무시도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별거/기타 집단의 경우 체류연장 정보와 방법을 알기 어려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표 III-41> 체류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_ 혼인상태별

항목	기혼/사실혼 (동거)		이혼/사별		별거/기타	
	명	%	명	%	명	%
한국어가 서툴러서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112	18.2	3	10.0	3	16.7
남편 및 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웠다	31	5.0	4	13.3	3	16.7
체류연장 방법이나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43	7.0	2	6.7	4	22.2
출입국사무소 등 공공기관 직원의 까다로운 태도, 불친절, 무시를 경험했다	31	5.0	3	10.0	2	11.1
체류인정기간이 너무 짧았다	37	6.0	0	0.0	1	5.6
체류연장을 위한 입증자료(증거) 마련이 어려웠다	18	2.9	0	0.0	2	11.1
기타	10	1.6	0	0.0	0	0.0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335	54.3	18	60.0	3	16.7
전체	617	100.0	30	100.0	18	100.0

$\chi^2=29.64$, $p=.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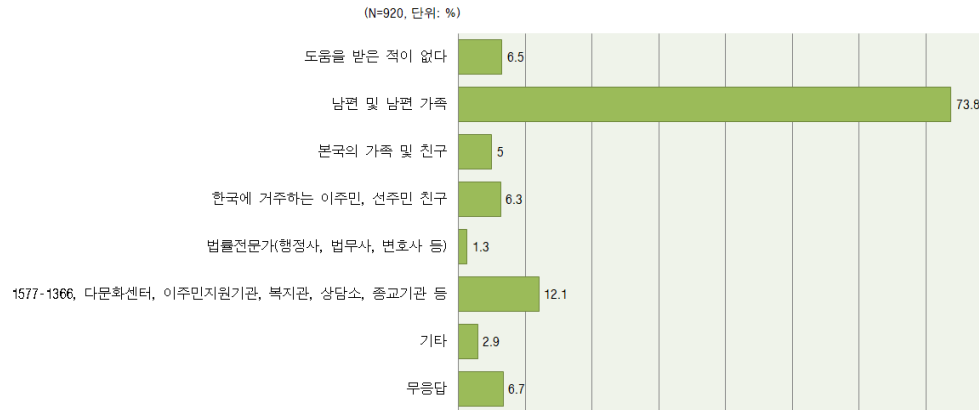
(4) 체류연장 과정에서 도움받은 곳

체류연장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은 남편 및 남편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529명, 73.6%) 주로 남편 및 남편 가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12.1%로 뒤를 이었으며, 한국거주 선주민 친구들로부터의 도움이 5.0%로 나타났다. 한편, 체류연장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응답도 47명(6.5%)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체류연장과정에서 도움받은 곳 (중복응답)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47	6.5
남편 및 남편 가족	529	73.6
본국의 가족 및 친구	36	5.0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선주민 친구	45	6.3
법률전문가(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등)	9	1.3
1577-1366, 다문화센터, 이주민지원기관, 복지관, 상담소, 종교기관 등	87	12.1
기타	21	2.9
무응답	48	6.7

<그림 III-37> 체류연장과정에서 도움받은 곳 (중복응답)



혼인상태별로 체류연장 과정에서 도움 받은 곳을 살펴본 결과,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및 남편가족이 가장 큰 조력자로 나타났으나, 이혼/사별 집단의 경우 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에서 조력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별거/기타 집단의 경우 본국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43> 체류연장과정에서 도움받은 곳 _ 혼인상태별

항목	기혼/사실혼 (동거)		이혼/사별		별거/기타	
	명	%	명	%	명	%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40	6.5	6	19.4	0	0.0
남편 및 남편 가족	499	80.7	15	48.4	11	68.8
본국의 가족 및 친구	18	2.9	2	6.5	2	12.5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선주민 친구	17	2.8	3	9.7	1	6.3
법률전문가(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등)	1	2	0	0.0	1	6.3
1577-1366, 다문화센터, 이주민지원기관, 복지관, 상담소, 종교기관 등	31	5.0	4	12.9	0	0.0
기타	12	1.9	1	3.2	1	6.3
전체	618	100.0	31	100.0	16	100.0

$\chi^2=47.87$, $p=.000$

(5)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

체류자격 연장절차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이 527명(57.3%)로 높았으나 ‘모른다’는 응답도 344명(3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주자격 및 국적취득 절차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47.7%로 ‘알고 있다’(47.5%)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 결혼이주민들이 체류연장 또는 영주자격/국적취득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4>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

	알고 있다	모른다	무응답	계
사례수(명)	527	344	49	920
백분율(%)	57.3	37.4	5.3	100.0

<표 III-45> 영주 및 국적취득 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

	알고 있다	모른다	무응답	계
사례수(명)	437	439	44	920
백분율(%)	47.5	47.7	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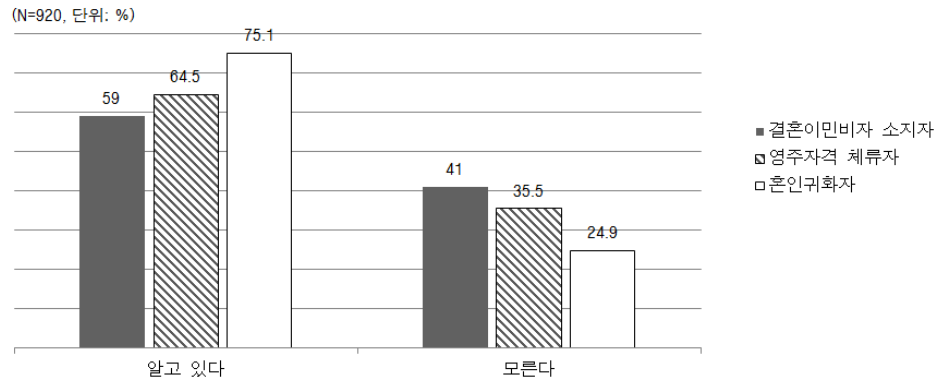
결혼이주민 체류자격별로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연장절차를 모른다는 응답이 41.0%로 나타나, 영주자격 체류자(35.5%) 및 혼인귀화자(24.9%)에 비해 연장절차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6>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 _ 체류자격별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128	89	217
	%	59.0%	41.0%	100.0%
영주자격 체류자	명	69	38	107
	%	64.5%	35.5%	100.0%
혼인귀화자	명	190	63	253
	%	75.1%	24.9%	100.0%

$\chi^2=14.14$, $p=.001$

<그림 III-38>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 _ 체류자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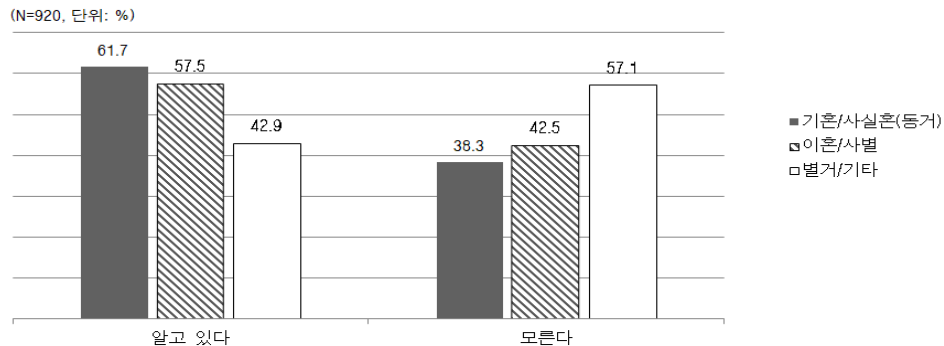
또한 혼인상태별로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사별(42.5%), 별거/기타(57.1%) 집단이 기혼(38.3%) 집단에 비해 체류자격 연장절차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47> 혼인상태별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기혼/사실혼 (동거)	명	490	304	794
	%	61.7%	38.3%	100.0%
이혼/사별	명	23	17	40
	%	57.5%	42.5%	100.0%
별거/기타	명	12	16	28
	%	42.9%	57.1%	100.0%

$\chi^2=10.03$, $p=.007$

<그림 III-39> 혼인상태별 체류자격 연장절차 인지여부



2) 입국 후 체류현황 및 실태

(1) 체류상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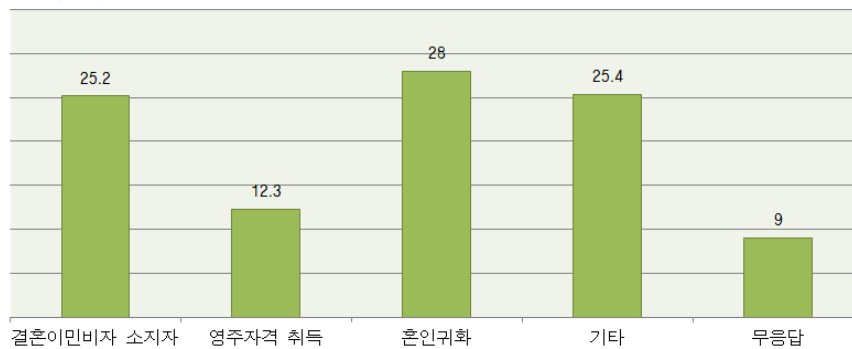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체류상태 현황은 혼인귀화자가 258명(28.0%), 결혼이민비자 소지자가 232명(25.2%), 영주자격 체류자가 113명(12.3%) 순의 분포를 보였다.

<표 III-48> 조사대상자의 체류상태 현황

구분	결혼이민비자 소지	영주자격 취득	혼인귀화	기타	무응답	계
사례수(명)	232	113	258	234	83	920
백분율(%)	25.2	12.3	28.0	25.4	9.0	100.0

<그림 III-40> 조사대상자의 체류상태 현황

(N=920, 단위: %)



(2) 체류유형별 실태: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영주자격 체류자, 혼인귀화자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 232명

가)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체류연장 기한

현재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인 232명에게 최근 체류연장 기한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최근 체류연장 기한은 2년 이상~3년 미만이 40명(2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이 39명(20.9%), 1년 이상~2년 미만이 22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류연장 기한은 22.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9>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_ 체류연장 기한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6개월 미만	20	10.7
6개월 ~ 1년 미만	3	1.6
1년 ~ 2년 미만	22	11.8
2년 ~ 3년 미만	40	21.4
3년 이상	39	20.9
무응답	63	33.7
평균(개월)	187	22.79개월

나)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향후 체류자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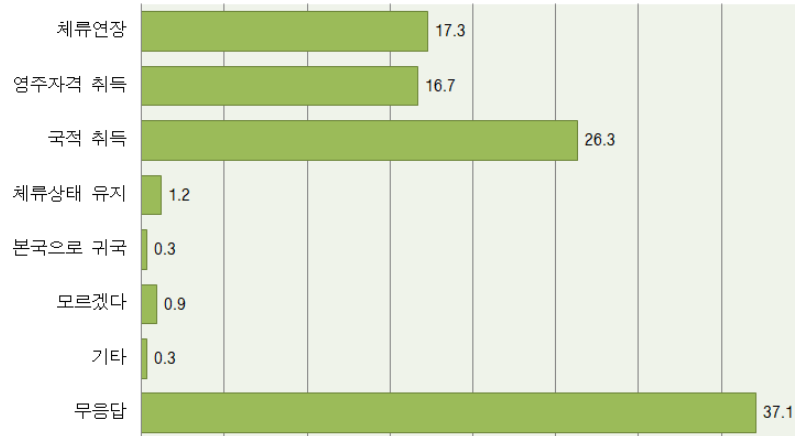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90명(26.3%)이 향후 국적취득 계획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59명(17.3%)은 체류연장을 할 계획이 있고, 57명(16.7%)는 영주자격 취득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60.3%가 향후 한국에 체류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0>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_ 향후 체류자격 계획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체류연장	59	17.3
영주자격 취득	57	16.7
국적 취득	90	26.3
체류상태 유지	4	1.2
본국으로 귀국	1	0.3
모르겠다	3	0.9
기타	1	0.3
무응답	127	37.1

<그림 III-41>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_ 향후 체류자격 계획

(N=920, 단위: %)



다) 영주자격/국적 미취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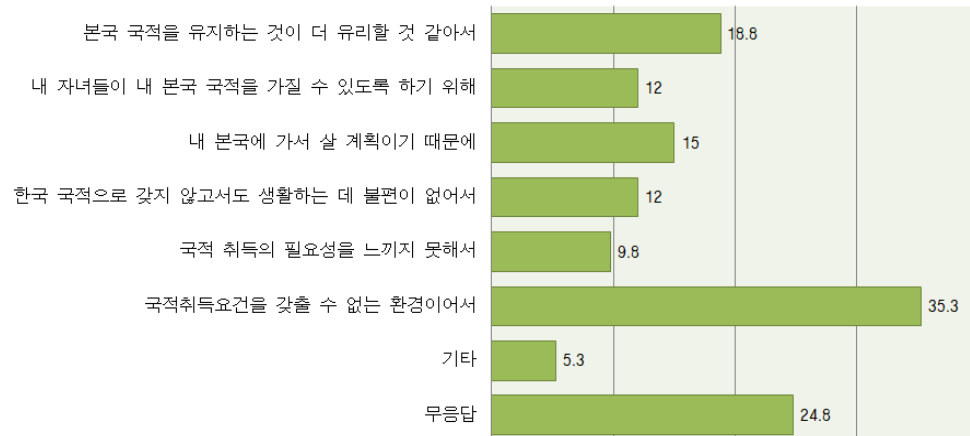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인 응답자들 중 향후 국적취득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35.3%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 수 없는 환경이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18.8%), 본국에 가서 살 계획(1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_ 국적취득 미계획 이유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25	18.8
내 자녀들이 내 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6	12.0
내 본국에 가서 살 계획이기 때문에	20	15.0
한국 국적으로 갖지 않고서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어서	16	12.0
국적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3	9.8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 수 없는 환경이어서	47	35.3
기타	7	5.3
무응답	33	24.8

<그림 III-42>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_ 국적취득 미계획 이유

(N=920, 단위: %)



라) 국적취득 요건 미비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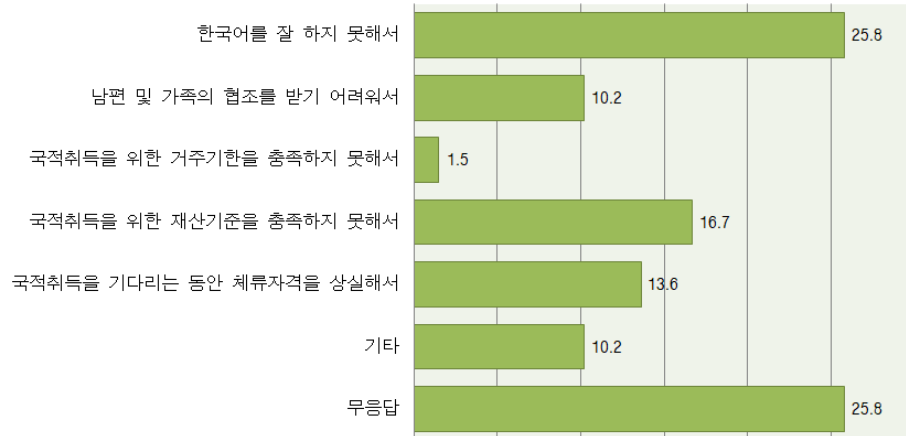
위 문항 중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국적 취득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47명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 미숙(31.8%), 재산기준 미충족(16.7%), 거주기한 미충족(13.6%), 남편 및 남편가족의 비협조(12.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아직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III-52>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_ 국적취득요건 미비 요인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21	31.8
남편 및 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서	8	12.1
국적취득을 위한 거주기한을 충족하지 못해서	9	13.6
국적취득을 위한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11	16.7
국적취득을 기다리는 동안 체류자격을 상실해서	1	1.5
기타	5	10.2
무응답	17	25.8

<그림 III-43>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_ 국적취득요건 미비 요인

(N=920, 단위: %)



영주자격 체류자 : 126명

가) 영주자격 체류자의 영주자격 취득 소요기간

영주자격 체류자 126명에게 영주자격 취득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20.9%, 6개월 미만인 20.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영주자격 취득기간은 15.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 영주자격 체류자 _ 영주자격 취득 소요기간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평균(개월)
6개월 미만	22	20.0	15.68
6개월 ~ 1년 미만	23	20.9	
1년 ~ 2년 미만	15	13.6	
2년 이상	13	11.8	
무응답	37	33.6	

나) 영주자격 취득 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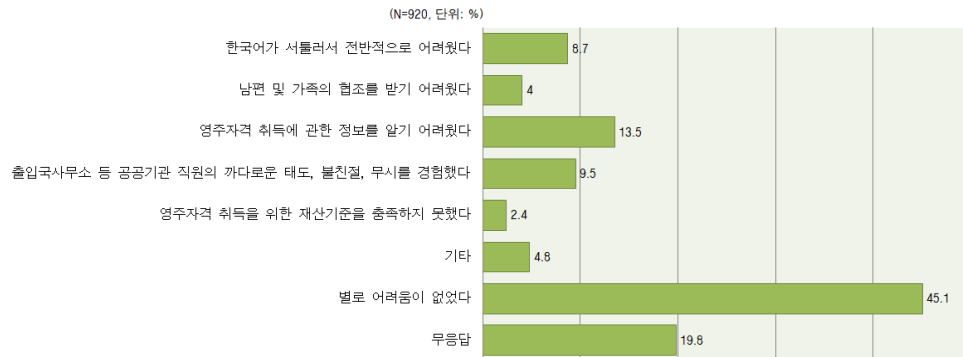
영주자격 체류자들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는 응답 비율이 1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국어가 서툴러서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응답이 8.7%, 담당공무원의 태도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은 9.5%로 나타나, 정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준비서류에 대한 대답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는 의견, 온라인상 제공해야 하는 서류와 실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 신청에 지연이 된다는 의견,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54> 영주자격 체류자 _ 영주자격 취득 시 어려움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한국어가 서툴러서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11	8.7
남편 및 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웠다	5	4.0
영주자격 취득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17	13.5
출입국사무소 등 공공기관 직원의 까다로운 태도, 불친절, 무시를 경험했다	12	9.5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3	2.4
기타	6	4.8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57	45.1
무응답	25	19.8

<그림 III-44> 영주자격 체류자 _ 영주자격 취득 시 어려움



다) 영주자격 취득 과정에서 도움받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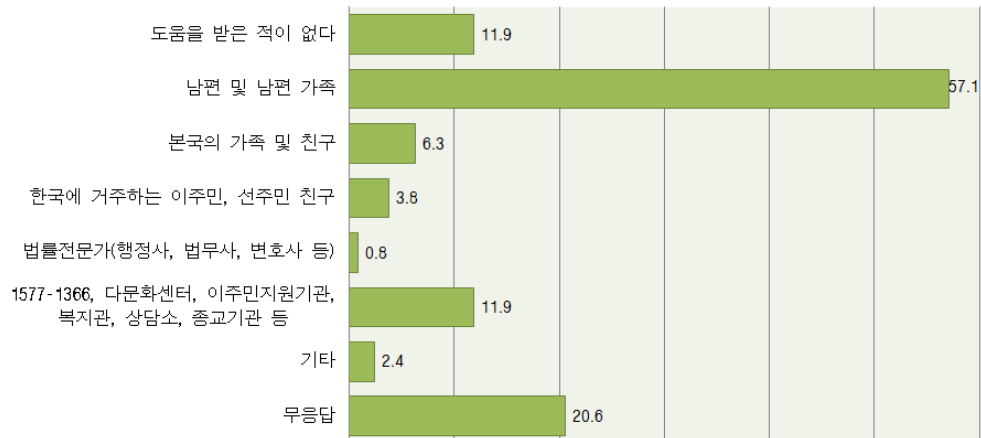
영주자격 체류자들은 영주자격 취득 과정에서 남편 및 남편가족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7.1%), 다음으로 1577-1366 등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11.9%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1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비자 소지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하여 조력자 및 조력기관이 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55> 영주자격 체류자 _ 영주자격 취득 시 도움받은 곳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15	11.9
남편 및 남편 가족	72	57.1
본국의 가족 및 친구	8	6.3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선주민 친구	6	3.8
법률전문가(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등)	1	0.8
1577-1366, 다문화센터, 이주민지원기관, 복지관, 상담소, 종교기관 등	15	11.9
기타	3	2.4
무응답	26	20.6

<그림 III-45> 영주자격 체류자 _ 영주자격 취득 시 도움받은 곳

(N=920, 단위: %)



혼인귀화자 : 252명

가) 국적 취득 소요기간

혼인귀화자들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소요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63명(25.0%)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취득 소요 기간은 23.6개월로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 혼인귀화자 _ 국적취득 소요기간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평균(개월)
6개월 미만	20	7.9	23.55
6개월 ~ 1년 미만	42	16.7	
1년 ~ 2년 미만	63	25.0	
2년 ~ 3년 미만	23	9.1	
3년 이상	41	16.3	
무응답	63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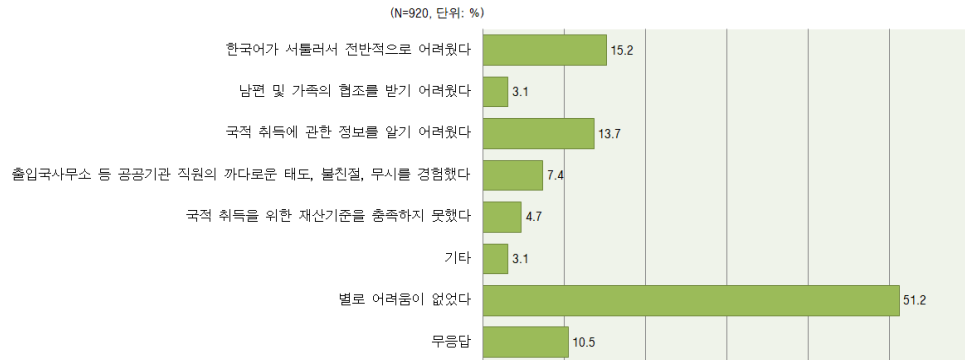
나) 국적 취득과정에서의 어려움

국적취득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국어 미숙(15.2%), 국적취득에 관한 정보 취득의 어려움(13.7%), 공공기관 직원들의 까다로운 태도(7.4%)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귀화자의 경우 영주자격 체류자와는 달리 한국어 구사능력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57> 혼인귀화자 _ 국적취득 시 어려움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한국어가 서툴러서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39	15.2
납편 및 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웠다	8	3.1
국적 취득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35	13.7
출입국사무소 등 공공기관 직원의 까다로운 태도, 불친절, 무시를 경험했다	19	7.4
국적 취득을 위한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12	4.7
기타	8	3.1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131	51.2
무응답	27	10.5

<그림 III-46> 혼인귀화자 _ 국적취득 시 어려움



다) 국적 취득과정에서 도움받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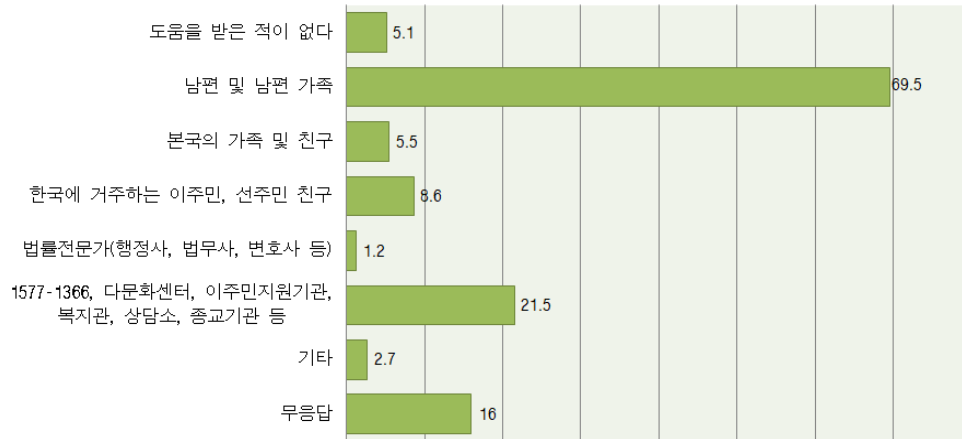
혼인귀화자들의 경우에도 결혼이민비자 소지자나 영주자격 체류자와 같이 국적 취득 과정에서 남편 및 남편 가족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9.5%). 또한 1577-1366, 다문화지원센터, 이주민지원기관을 비롯한 관련 민간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도 21.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5.1%로 나타났다.

<표 III-58> 혼인귀화자 _ 국적취득 시 도움받은 곳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13	5.1
남편 및 남편 가족	178	69.5
본국의 가족 및 친구	14	5.5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선주민 친구	22	8.6
법률전문가(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등)	3	1.2
1577-1366, 다문화센터, 이주민지원기관, 복지관, 상담소, 종교기관 등	55	21.5
기타	7	2.7
무응답	41	16.0

<그림 III-47> 혼인귀화자 _ 국적취득 시 도움받은 곳

(N=920, 단위: %)



다. 가족구성 및 해체 과정에서의 체류현황 및 실태

1) 혼인 및 가족관계

(1) 동거가족 수

조사대상자의 동거가족 수는 4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29.6%), 다음으로 3명(22.9%), 5명(15.7%), 2명(13.0%)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 수의 평균은 3.95명이었다.

<표 III-59> 동거가족 수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이상	계	평균
사례수(명)	4	120	211	272	144	74	37	920	3.95
백분율(%)	0.4	13.0	22.9	29.6	15.7	8.0	4.0	100.0	

(2) 동거가구원

동거가족 구성원은 남편(82.3%), 자녀(64.7%), 남편 부모(26.4%)로 나타났다.

<표 III-60> 동거가구원

구분	남편	남편의 부모	남편의 형제자매	본국에서 온 가족	자녀	기타	계
사례수(명)	757	243	36	58	595	23	920
백분율(%)	82.3	26.4	3.9	6.3	64.7	2.5	100.0

(3) 자녀수

자녀수는 1명(3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명(32.9%), 3명(6.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녀수는 평균 1.41명이었다.

<표 III-61> 자녀 수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계	평균
사례수(명)	331	303	57	10	1	920	1.41
백분율(%)	36.0	32.9	6.2	1.1	0.1	100.0	

(4) 자녀의 국적

조사대상자의 자녀들은 한국 국적을 소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74.0%, 둘째 자녀의 70.6%, 셋째 자녀의 34.7%가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62> 자녀의 국적

항목	한국		본국		기타		무응답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첫째	597	74.0	72	8.9	31	3.8	145	18.0	807	100.0
둘째	336	70.6	26	5.5	11	2.3	127	26.7	476	100.0
셋째	60	34.7	10	5.8	4	2.3	108	62.4	173	100.0

(5) 자녀양육자

양육권자 및 실제 양육자는 본인 또는 남편인 경우가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민들이 실제 양육자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3> 자녀양육자 _ 양육권자 및 실제양육자

항목		본인		남편		기타		무응답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첫째	양육권자	449	55.6	415	51.4	36	4.5	202	25.0	807	100.0
	실양육자	490	60.7	373	46.2	23	8.5	207	25.7		
둘째	양육권자	238	50.0	222	46.6	16	3.4	168	35.3	476	100.0
	실양육자	264	55.5	209	43.9	22	4.6	165	34.7		
셋째	양육권자	49	28.3	43	24.9	2	1.2	114	65.9	173	100.0
	실양육자	56	32.4	40	23.1	3	1.8	111	64.2		

(6) 이혼 및 별거고려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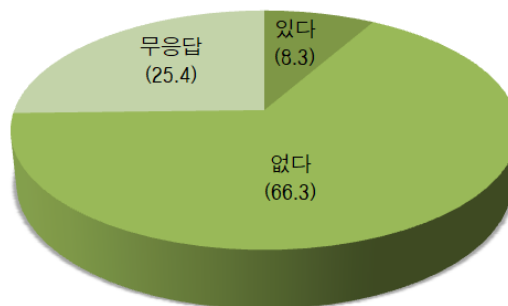
조사대상자 중 이혼 및 별거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8.3%로 나타났다.

<표 III-64> 이혼 및 별거 고려 유무

구분	있다	없다	무응답	계
사례수(명)	76	610	234	920
백분율(%)	8.3	66.3	25.4	100.0

<그림 III-48> 이혼 및 별거 고려 유무

(N=9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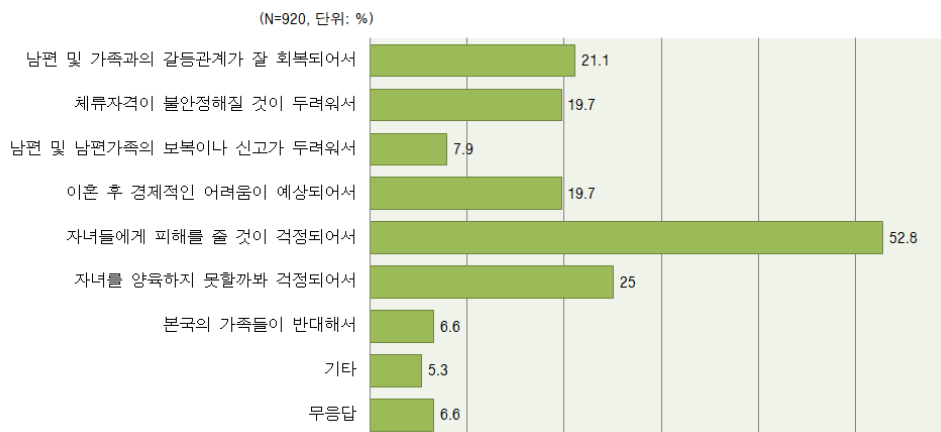
(7) 혼인관계 유지 이유

결혼이주민에게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한 적이 있음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걱정되어 유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52.6%),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25.0%). 그 외에 갈등관계가 잘 회복되어서(21.1%),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서(19.7%), 체류자격 불안정 우려(1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65> 혼인관계 유지 이유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남편 및 가족과의 갈등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16	21.1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질 것이 두려워서	15	19.7
남편 및 남편가족의 보복이나 신고가 두려워서	6	7.9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15	19.7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걱정되어서	40	52.6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어서	19	25.0
본국의 가족들이 반대해서	5	6.6
기타	4	5.3
무응답	5	6.6

<그림 III-49> 혼인관계 유지 이유



2) 혼인단절/가정해체 과정에서의 체류현황 및 실태

(1) 가정폭력 실태

가) 가정폭력 경험 유무

가정폭력의 경험유무 및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920명중 387명(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한 욕설(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0%) 순으로 가정폭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폭력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심리언어적 학대 영역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고, 부모나 본국에 대한 모욕적 말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6%에 달하였다. 또한 성행위 강요(27.9%),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언동(24.5%) 등 성적 학대를 경험하였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본국에의 방문과 송금을 방해하는(각 26.9%)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전적으로 방해하고(33.3%) 과도한 집안일을 시키는 등(27.4%)하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폭력 경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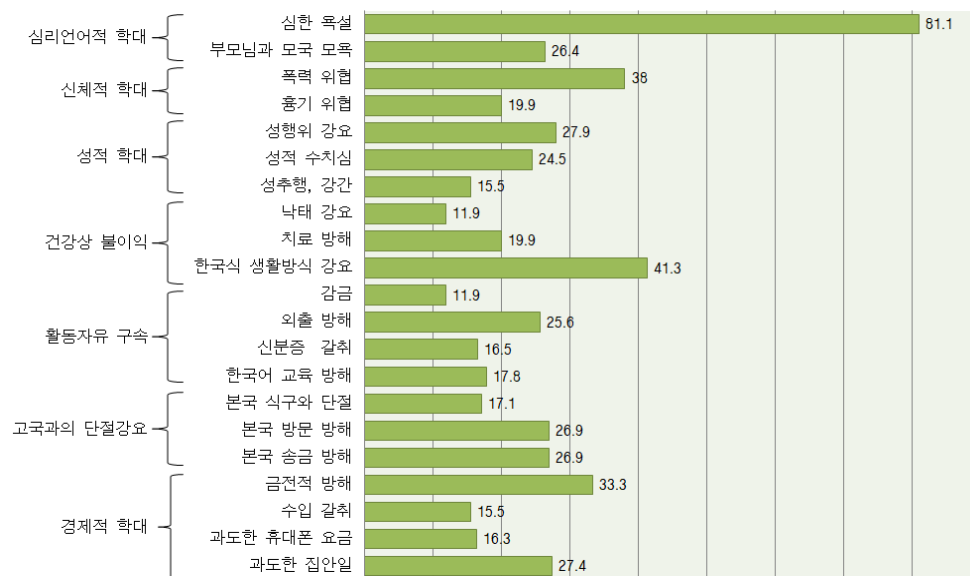
<표 III-66> 가정폭력 경험유무 현황

변수		사례수(명)	백분율(%)
심리언어적 학대	심한 욕설	314	81.1
	부모님과 모국 모욕	102	26.4
신체적 학대	폭력 위협	147	38.0
	흥기 위협	77	19.9
성적 학대	성행위 강요	108	27.9
	성적 수치심	95	24.5
	성추행, 강간	60	15.5
건강상 불이익	낙태 강요	46	11.9
	치료 방해	77	19.9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160	41.3
활동자유 구속	감금	46	11.9
	외출 방해	99	25.6
	신분증 갈취	64	16.5
	한국어 교육 방해	69	17.8

변수		사례수(명)	백분율(%)
고국과의 단절강요	본국 식구와 단절	66	17.1
	본국 방문 방해	104	26.9
	본국 송금 방해	104	26.9
경제적 학대	금전적 방해	129	33.3
	수입 갈취	60	15.5
	과도한 휴대폰 요금	63	16.3
	과도한 집안일	106	27.4

<그림 III-50> 가정폭력 경험유무 현황

(N=920, 단위: %)



체류자격별로 가정폭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전반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심리언어적 학대 영역에서 집단간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489$, $p<.05$). 즉 결혼이민비자 소지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영주자격 체류자가 심리언어적 학대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7> 가정폭력 현황 _ 체류자격별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심리언어적 학대	심한 욕설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10	1.56	.95
		영주자격 취득자	110	1.95	1.29
		혼인귀화자	252	1.61	.94
		합계	572	1.66	1.03
	부모님과 모국 모욕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9	1.15	.56
		영주자격 취득자	108	1.38	.90
		혼인귀화자	251	1.21	.60
		합계	568	1.22	.66
신체적 학대	폭력 위협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10	1.23	.67
		영주자격 취득자	107	1.39	.85
		혼인귀화자	252	1.27	.60
		합계	569	1.28	.68
	흉기 위협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8	1.14	.52
		영주자격 취득자	107	1.22	.64
		혼인귀화자	251	1.11	.39
		합계	566	1.14	.50
성적 학대	성행위 강요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10	1.18	.57
		영주자격 취득자	105	1.22	.60
		혼인귀화자	251	1.20	.58
		합계	566	1.20	.58
	성적 수치심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10	1.13	.47
		영주자격 취득자	105	1.24	.67
		혼인귀화자	252	1.20	.61
		합계	567	1.18	.58
	성추행, 강간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9	1.11	.46
		영주자격 취득자	106	1.12	.42
		혼인귀화자	252	1.12	.48
		합계	567	1.12	.46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건강상 불이익	낙태 강요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9	1.08	.41
		영주자격 취득자	105	1.08	.33
		혼인귀화자	252	1.08	.37
		합계	566	1.08	.37
	치료 방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10	1.14	.54
		영주자격 취득자	106	1.25	.67
		혼인귀화자	252	1.15	.55
		합계	568	1.17	.57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10	1.33	.83
		영주자격 취득자	107	1.55	1.04
		혼인귀화자	251	1.37	.86
		합계	568	1.39	.89
활동자유 구속	감금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9	1.06	.36
		영주자격 취득자	107	1.15	.47
		혼인귀화자	251	1.06	.34
		합계	567	1.08	.37
	외출 방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11	1.23	.70
		영주자격 취득자	107	1.28	.72
		혼인귀화자	251	1.16	.54
		합계	569	1.21	.64
	신분증 갈취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9	1.15	.62
		영주자격 취득자	106	1.16	.48
		혼인귀화자	251	1.09	.36
		합계	566	1.12	.49
	한국어 교육 방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8	1.13	.51
		영주자격 취득자	107	1.14	.53
		혼인귀화자	250	1.14	.53
		합계	565	1.14	.52
고국과의 단절강요	본국 식구와 단절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9	1.12	.51
		영주자격 취득자	107	1.16	.49
		혼인귀화자	252	1.10	.38
		합계	568	1.12	.45
	본국 방문 방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9	1.16	.58
		영주자격 취득자	107	1.20	.53
		혼인귀화자	252	1.20	.58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본국 송금 방해	합계	568	1.18	.57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9	1.20	.66
		영주자격 취득자	107	1.21	.61
		혼인귀화자	252	1.21	.58
		합계	568	1.20	.62
경제적 확대	금전적 방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11	1.35	.88
		영주자격 취득자	107	1.31	.75
		혼인귀화자	253	1.27	.76
		합계	571	1.31	.80
	수입 갈취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8	1.12	.54
		영주자격 취득자	107	1.14	.50
		혼인귀화자	252	1.11	.44
		합계	567	1.12	.49
	과도한 휴대폰 요금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9	1.12	.51
		영주자격 취득자	107	1.15	.49
		혼인귀화자	250	1.15	.58
		합계	566	1.14	.53
	과도한 집안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9	1.19	.62
		영주자격 취득자	107	1.38	.87
		혼인귀화자	251	1.26	.73
		합계	567	1.25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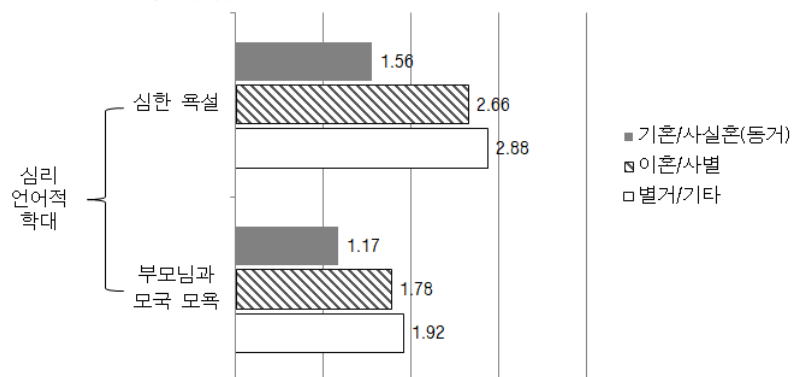
혼인상태별로 가정폭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이혼/사별, 별거/기타 집단이 기혼 집단에 비해 폭력경험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인단절 상태의 결혼이주민들의 가정폭력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8>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심리 언어적 학대)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심리 언어적 학대	심한 욕설	기혼/사실혼(동거)	796	1.56	.95	40.43	.000
		이혼/사별	38	2.66	1.38		
		별거/기타	24	2.88	1.59		
		합계	858	1.65	1.04		
	부모님과 모국 모욕	기혼/사실혼(동거)	795	1.17	.58	29.24	.000
		이혼/사별	36	1.78	1.19		
		별거/기타	24	1.92	1.31		
		합계	855	1.21	.67		

<그림 III-51>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심리 언어적 학대)

(N=920,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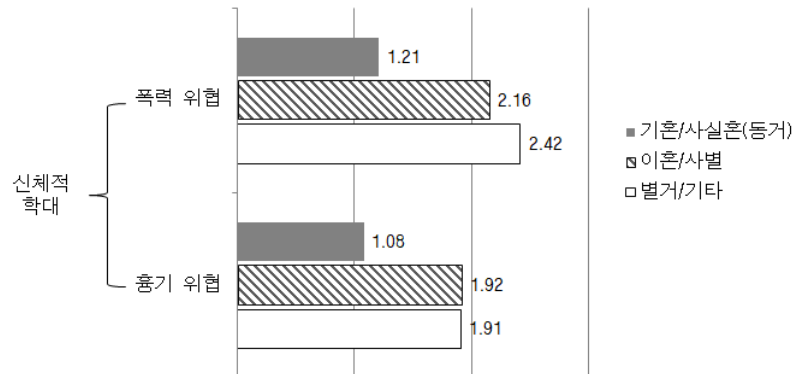


<표 III-69>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신체적 학대)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신체적 학대	폭력 위협	기혼/사실혼(동거)	793	1.21	.62	66.69	.000
		이혼/사별	38	2.16	1.21		
		별거/기타	24	2.42	1.38		
		합계	855	1.29	.74		
	흉기 위협	기혼/사실혼(동거)	793	1.08	.36	90.32	.000
		이혼/사별	37	1.92	1.18		
		별거/기타	23	1.91	1.12		
		합계	853	1.14	.51		

<그림 III-52>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신체적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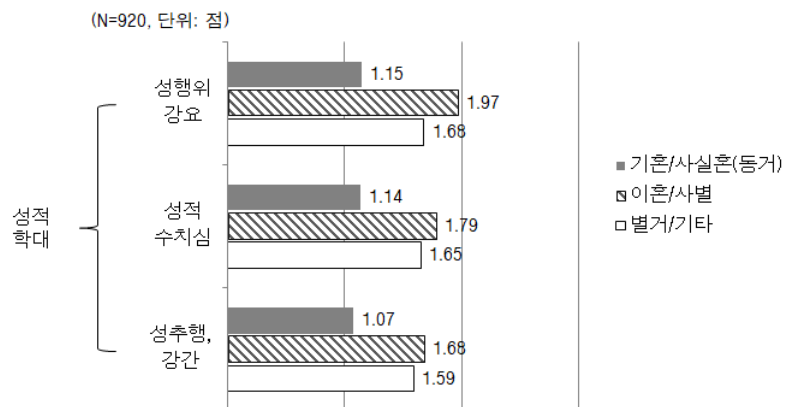
(N=920, 단위: 점)



<표 III-70>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성적 학대)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성적 학대	성행위 강요	기혼/사실혼(동거)	793	1.15	.51	43.68	.000
		이혼/사별	38	1.97	1.17		
		별거/기타	22	1.68	1.12		
		합계	853	1.20	.61		
	성적 수치심	기혼/사실혼(동거)	795	1.14	.54	28.53	.000
		이혼/사별	38	1.79	1.11		
		별거/기타	23	1.65	.98		
		합계	856	1.19	.61		
	성추행, 강간	기혼/사실혼(동거)	794	1.07	.36	44.19	.000
		이혼/사별	37	1.68	1.08		
		별거/기타	22	1.59	1.05		
		합계	853	1.11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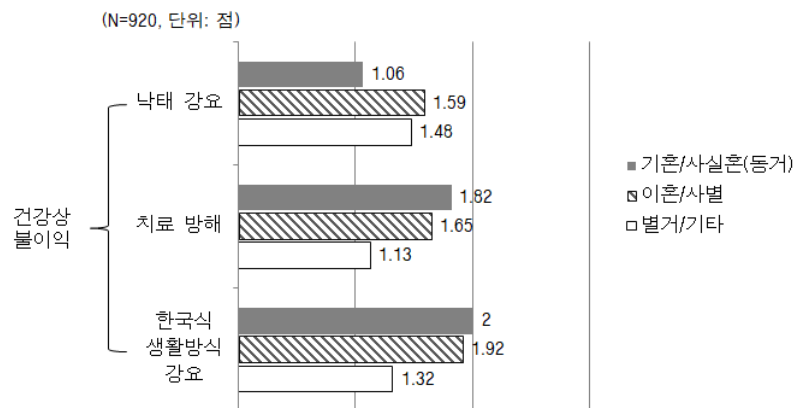
<그림 III-53>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성적 학대)



<표 III-71>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건강상 불이익)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건강상 불이익	낙태 강요	기혼/사실혼(동거)	794	1.06	.32	39.88	.000
		이혼/사별	37	1.59	1.16		
		별거/기타	21	1.48	.81		
		합계	852	1.09	.42		
	치료 방해	기혼/사실혼(동거)	797	1.13	.51	29.65	.000
		이혼/사별	37	1.65	1.08		
		별거/기타	22	1.82	1.18		
		합계	856	1.16	.59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기혼/사실혼(동거)	797	1.32	.82	14.16	.000
		이혼/사별	36	1.92	1.29		
		별거/기타	22	2.00	1.48		
		합계	855	1.36	.88		

<그림 III-54>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건강상 불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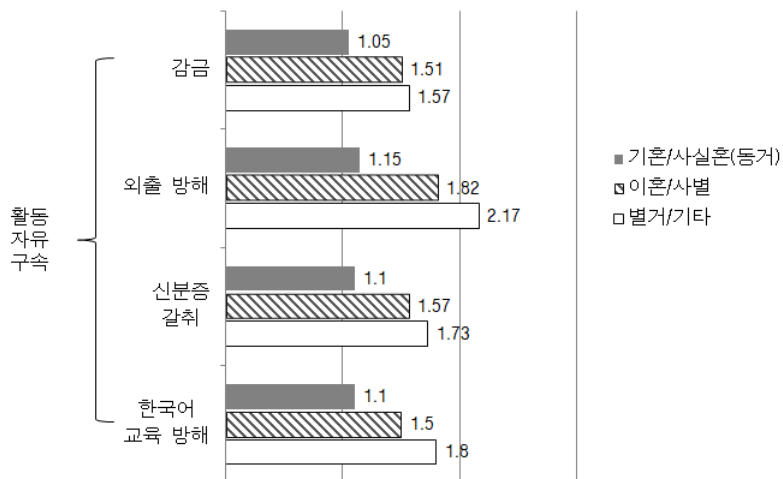


<표 III-72>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활동자유 구속)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활동자유 구속	감금	기혼/사실혼(동거)	795	1.05	.31	40.86	.000
		이혼/사별	37	1.51	1.04		
		별거/기타	23	1.57	.89		
		합계	855	1.09	.41		
	외출 방해	기혼/사실혼(동거)	795	1.15	.56	47.13	.000
		이혼/사별	38	1.82	1.15		
		별거/기타	23	2.17	1.37		
		합계	856	1.21	.66		
	신분증 갈취	기혼/사실혼(동거)	794	1.10	.46	28.79	.000
		이혼/사별	37	1.57	1.01		
		별거/기타	22	1.73	1.16		
		합계	853	1.13	.54		
	한국어 교육 방해	기혼/사실혼(동거)	792	1.10	.45	30.80	.000
		이혼/사별	36	1.50	1.00		
		별거/기타	24	1.80	1.10		
		합계	852	1.14	.53		

<그림 III-55>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활동자유 구속)

(N=920,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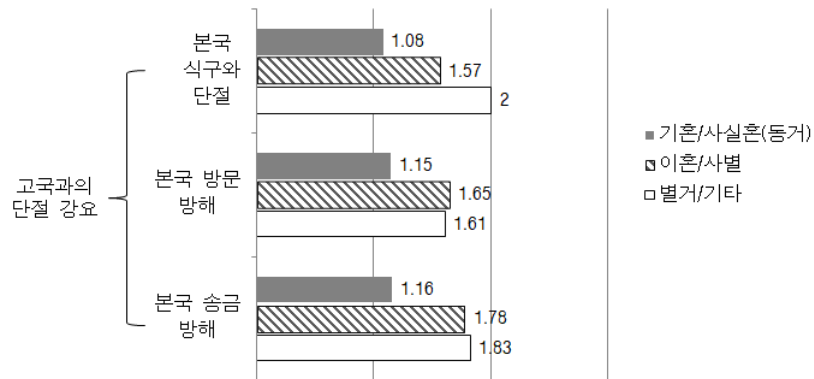


<표 III-73>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고국과의 단절강요)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고국과의 단절강요	본국 식구와 단절	기혼/사실혼(동거)	795	1.08	.40	54.74	.000
		이혼/사별	37	1.57	.89		
		별거/기타	23	2.00	1.18		
		합계	855	1.13	.50		
	본국 방문 방해	기혼/사실혼(동거)	795	1.15	.52	20.40	.000
		이혼/사별	37	1.65	1.01		
		별거/기타	23	1.61	.89		
		합계	855	1.18	.58		
	본국 송금 방해	기혼/사실혼(동거)	795	1.16	.56	29.89	.000
		이혼/사별	37	1.78	1.08		
		별거/기타	23	1.83	1.19		
		합계	855	1.20	.64		

<그림 III-56>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고국과의 단절강요)

(N=920,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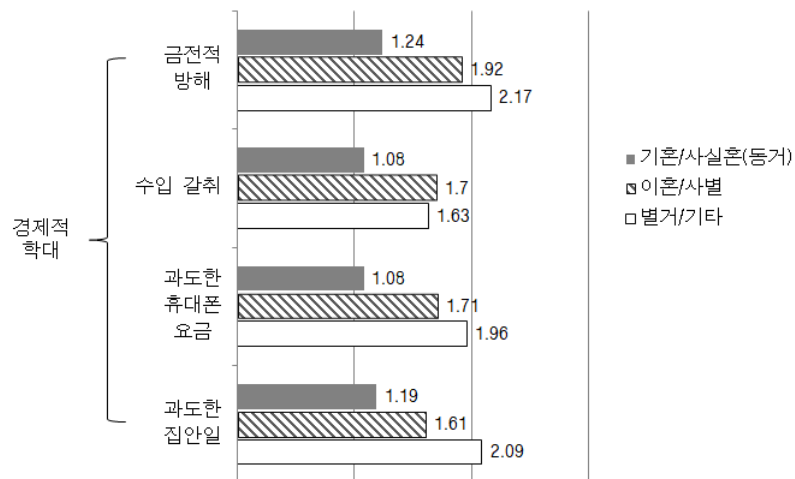


<표 III-74>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경제적 학대)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p
경제적 학대	금전적 방해	기혼/사실혼(동거)	797	1.24	.73	27.18	.000
		이혼/사별	37	1.92	1.40		
		별거/기타	23	2.17	1.40		
		합계	857	1.30	.82		
	수입 갈취	기혼/사실혼(동거)	793	1.08	.41	39.91	.000
		이혼/사별	37	1.70	1.19		
		별거/기타	24	1.63	.97		
		합계	854	1.12	.52		
	과도한 휴대폰 요금	기혼/사실혼(동거)	794	1.08	.41	57.67	.000
		이혼/사별	35	1.71	1.22		
		별거/기타	24	1.96	1.19		
		합계	853	1.13	.54		
	과도한 집안일	기혼/사실혼(동거)	795	1.19	.65	24.24	.000
		이혼/사별	36	1.61	1.07		
		별거/기타	23	2.09	1.23		
		합계	854	1.23	.71		

<그림 III-57> 가정폭력 현황 _ 혼인상태별(경제적 학대)

(N=920, 단위: 점)



또한 폭력발생시 도움 요청 여부 및 도움을 요청한 곳도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혼사별, 별거기타 집단이 기혼집단에 비해 도움 요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혼사별, 별거기타 집단이 기혼집단에 비해 1366 등 기관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75> 폭력발생시 도움 요청 여부 _ 혼인상태별

		사건발생시 도움요청 여부		전체
		있다	없다	
기혼/사실혼 (동거)	명	95	126	221
	%	43.0	57.0	100.0
이혼/사별	명	14	9	23
	%	60.9	39.1	100.0
별거/기타	사명	10	4	14
	%	71.4	28.6	100.0

$\chi^2=6.50$, $p=.039$

<표 III-76> 폭력발생시 도움을 요청한 곳 _ 혼인상태별

항목		남편	이웃	경찰	본국 가족 및 친구	한국 거주 이주민, 선주민 친구	1577- 1366 등 관련 기관	기타	전체
기혼/사실혼 (동거)	명	27	0	15	10	12	23	2	89
	%	30.3	0.0	16.9	11.2	13.5	25.8	2.2	100.0
이혼/사별	명	1	1	6	1	1	3	0	13
	%	7.7	7.7	46.2	7.7	7.7	23.1	0.0	100.0
별거/기타	명	0	0	4	3	1	1	1	10
	%	0.0	0.0	40.0	30.0	10.0	10.0	10.0	100.0

$\chi^2=25.10$, $p=.014$

또한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도 집단간 차이가 있었는데, 이혼/사별 집단의 경우 남편이 보복이 두려워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III-77>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_ 혼인상태별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이나 남편 가족의 보복이 두려워서	체류자격 불안정 해질 것 두려워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기타	전체
기혼/사실혼 (동거)	명	27	24	2	4	29	25	119
	%	22.7	20.2	1.7	3.4	24.4	21.0	100.0
이혼/사별	명	1	2	3	1	1	1	9
	%	11.1	22.2	33.3	11.1	11.1	11.1	100.0
별거/기타	명	1	1	1	1	1	0	5
	%	20.0	20.0	20.0	20.0	20.0	0.0	100.0

$\chi^2=90.88$, $p=.000$

거주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활동자유 구속, 경제적 학대, 고국과의 단절강요, 심리언어적 폭력, 건강상불이익 영역에서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중소도시, 농어촌 거주자일수록 가정폭력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8> 가정폭력 현황 _ 거주지역별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심리언어적 학대	심한 욕설	대도시	527	1.6129	1.02166
		중소도시	183	1.7268	1.18214
		농어촌	155	1.6710	.93357
		합계	865	1.6474	1.04275
	부모님과 모국 모욕	대도시	523	1.1931	.63953
		중소도시	183	1.3279	.85269
		농어촌	155	1.1677	.55619
		합계	861	1.2172	.67891
신체적 학대	폭력 위협	대도시	526	1.2738	.73105
		중소도시	181	1.3536	.83457
		농어촌	154	1.2857	.67363
		합계	861	1.2927	.74416
	흥기 위협	대도시	524	1.1431	.51044
		중소도시	181	1.1381	.53514
		농어촌	154	1.1494	.52122
		합계	859	1.1432	.51706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성적 확대	성행위 강요	대도시	524	1.1851	.58510
		중소도시	180	1.1833	.59302
		농어촌	155	1.3032	.71509
		합계	859	1.2061	.61311
	성적 수치심	대도시	525	1.1905	.60050
		중소도시	182	1.1978	.66847
		농어촌	155	1.1871	.62197
		합계	862	1.1914	.61854
	성추행, 강간	대도시	524	1.1126	.45095
		중소도시	180	1.1056	.47856
		농어촌	155	1.1419	.57478
		합계	859	1.1164	.48082
건강상 불이익	낙태 강요	대도시	523	1.0880	.42425
		중소도시	180	1.0833	.42116
		농어촌	155	1.1161	.48289
		합계	858	1.0921	.43441
	치료 방해	대도시	526	1.1445	.55036
		중소도시	182	1.2253	.71974
		농어촌	154	1.1688	.59194
		합계	862	1.1659	.59740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대도시	524	1.3168	.81268
		중소도시	181	1.5193	1.07285
		농어촌	156	1.3462	.83977
		합계	861	1.3647	.88099
활동자유 구속	감금	대도시	526	1.0856	.42572
		중소도시	180	1.0889	.39957
		농어촌	155	1.1161	.48289
		합계	861	1.0918	.43100
	외출 방해	대도시	528	1.1610	.57016
		중소도시	179	1.3017	.83366
		농어촌	155	1.2903	.78101
		합계	862	1.2135	.67537
	신분증 갈취	대도시	524	1.1202	.51632
		중소도시	180	1.1667	.61180
		농어촌	155	1.1548	.57142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교육 방해	합계	859	1.1362	.54736
		대도시	521	1.1305	.53910
		중소도시	182	1.1703	.53455
		농어촌	155	1.1290	.53098
		합계	858	1.1387	.53631
고국과의 단절강요	본국 식구와 단절	대도시	525	1.1048	.43518
		중소도시	181	1.1934	.65926
		농어촌	155	1.1419	.53983
		합계	861	1.1301	.50971
	본국 방문 방해	대도시	525	1.1524	.51283
		중소도시	181	1.2597	.72570
		농어촌	155	1.2129	.62405
		합계	861	1.1858	.58495
	본국 송금 방해	대도시	525	1.1581	.54541
		중소도시	182	1.3626	.89216
		농어촌	154	1.1883	.58039
		합계	861	1.2067	.64448
경제적 확대	금전적 방해	대도시	525	1.2400	.74362
		중소도시	183	1.4044	.95525
		농어촌	155	1.3613	.88188
		합계	863	1.2966	.82032
	수입 갈취	대도시	523	1.1166	.51021
		중소도시	182	1.1264	.50464
		농어촌	155	1.1613	.60821
		합계	860	1.1267	.52768
	과도한 휴대폰 요금	대도시	522	1.1092	.48147
		중소도시	182	1.1923	.67419
		농어촌	155	1.1677	.57907
		합계	859	1.1374	.54601
	과도한 집안일	대도시	523	1.2161	.69561
		중소도시	182	1.2912	.81276
		농어촌	155	1.2323	.66273
		합계	860	1.2349	.71615

나) 가정폭력시 도움요청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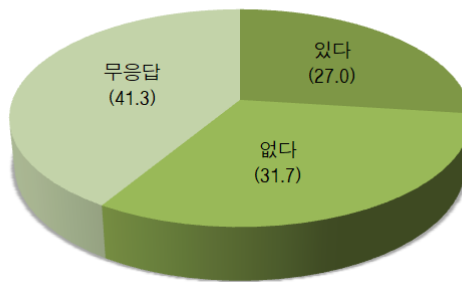
가정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도움 요청 유무에 대한 결과,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27.0%)보다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응답(31.7%)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높은 폭력 경험 비중에 비해 지원요청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9> 가정폭력시 도움요청 여부

구분	있다	없다	무응답	계
사례수(명)	119	140	182	441
백분율(%)	27.0	31.7	41.3	100.0

<그림 III-58> 가정폭력시 도움요청 여부

(N=920, 단위: %)



가정폭력 피해시 도움 요청유무에 대해 거주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대도시 거주 이주민들이 폭력피해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0> 폭력피해시 도움요청 여부 _ 거주지역별

		있다	없다	전체
대도시	명	57	93	150
	%	38.0%	62.0%	100.0%
중소도시	명	34	22	56
	%	60.7%	39.3%	100.0%
농어촌	명	28	25	53
	%	52.8%	47.2%	100.0%

$\chi^2=9.74$, $p=.008$

다) 가정폭력 발생 후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가정폭력 피해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40명을 조사한 결과,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거주기간 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응답자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14.6%),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질까 두려워서(9.8%)의 순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한국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들은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12.6%),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11.5%)를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다.

<표 III-81> 가정폭력시 도움요청하지 않은 이유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29	7.6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29	7.6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8	2.1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질 것이 두려워서	11	2.9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35	9.2
기타	28	7.3
무응답	249	65.2

<표 III-82> 가정폭력시 도움요청하지 않은 이유 _ 한국거주기간별

항목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1	3.6	1	2.4	1	2.0	14	9.7	11	12.6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1	3.6	6	14.6	4	8.0	9	6.2	8	9.2
남편이나 남편가족의 보복이 두려워서	1	3.6	1	2.4	2	4.0	2	1.4	2	2.3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질 것이 두려워서	0	0.0	4	9.8	1	2.0	4	2.8	2	1.1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	7.1	4	9.8	1	2.0	14	9.7	10	11.5
기타	3	10.7	2	4.9	5	10.0	10	6.9	5	5.7
무응답	21	75.0	27	65.9	33	66.0	94	64.8	53	60.9

라) 가정폭력 발생시 도움을 요청한 곳

가정폭력 피해시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99명을 조사한 결과, 도움 요청 대상은 1577-1366 등 관련 민간기관이 가장 높았으며(47.1%), 경찰(23.5%), 한국에 거주하는 선주민 친구(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3> 가정폭력시 도움요청한 대상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남편	28	23.5
이웃	4	3.4
경찰	28	23.5
본국의 가족 및 친구	20	16.8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선주민 친구	23	19.3
1577-1366, 다문화센터, 이주민지원기관, 복지관, 상담소, 종교기관 등 관련기관	56	47.1
결혼중개업자	4	3.4
기타	7	5.9
무응답	7	5.9

마) 도움요청 후 해결여부

사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37.6%)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9.1%)보다 많았다. 사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가 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7.6%),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7.6%)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의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응답도 있었다(2.1%).

<표 III-84> 도움요청 후 가정폭력 해결여부

항목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계
사례수(명)	99	24	140	263
백분율(%)	37.6	9.1	53.2	100.0

(2) 이혼

가) 이혼 및 별거 사유

이혼/별거중인 38명에게 이유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남편의 폭력(56.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32.6%), 성격 차이(32.6%), 남편 가족과의 갈등(21.7%),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2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85> 이혼/별거 사유

	사례수(명)	백분율(%)
남편의 폭력	26	56.5
남편의 외도	5	10.9
경제적 문제	15	32.6
남편 가족과의 갈등	10	21.7
본인 가족과의 갈등	3	6.5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10	21.7
성격차이	15	32.6
기타	3	6.5
무응답	5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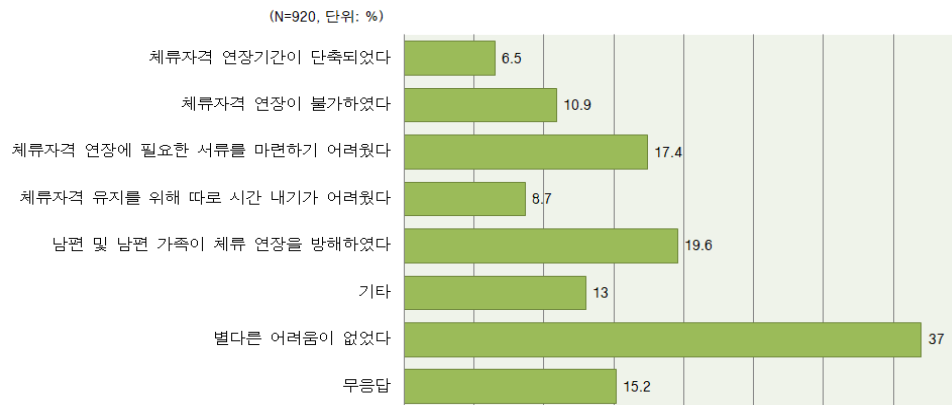
나) 혼인단절 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시 어려움

이혼/별거 등 혼인단절 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남편 및 남편가족이 체류연장을 방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19.6%), 다음으로 체류자격 연장에 필요한 서류 마련에 어려움(17.4%)을 겪고, 체류연장 자격이 불가하는 등(10.9%), 이혼 및 별거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6> 이혼/별거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시 어려움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체류자격 연장기간이 단축되었다	3	6.5
체류자격 연장이 불가하였다	6	10.9
체류자격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8	17.4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려웠다	4	8.7
남편 및 남편 가족이 체류 연장을 방해하였다	9	19.6
기타	6	13.0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17	37.0
무응답	7	15.2

<그림 III-59> 이혼/별거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시 어려움



(3) 이혼 후 자녀양육

가) 면접교섭권 제도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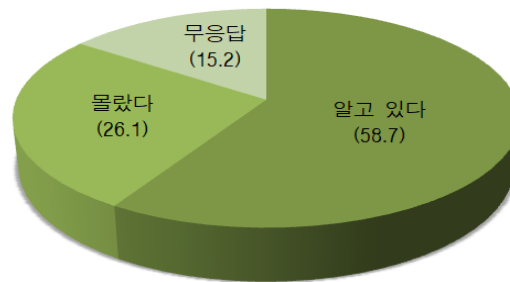
이혼한 경우 면접교섭권 제도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58.7%)였지만, 면접교섭권을 몰랐다는 응답도 2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거주자들이 면접교섭권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거주자에 비해 높았다(70%).

<표 III-87> 면접교섭권 인지도부

항목	알고 있다	몰랐다	무응답	계
사례수(명)	27	12	7	46
백분율(%)	58.7	26.1	15.2	100.0

<그림 III-60> 면접교섭권 인지도부

(N=920, 단위: %)



<표 III-88> 면접교섭권 인지도부 _ 거주지역별

항목		면접교섭권 인지도부		전체
		알고 있다	몰랐다	
대도시	명	12	6	18
	%	66.7%	33.3%	100.0%
중소도시	명	13	1	14
	%	92.9%	7.1%	100.0%
농어촌	명	2	5	7
	%	28.6%	71.4%	100.0%

나) 자녀양육 여부 및 양육비 지원현황

이혼/별거중인 결혼이주민 본인의 자녀 양육비율은 39.1%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61.1%가 전남편 또는 가족으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9>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녀양육 여부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계
사례수(명)	18	11	17	46
백분율(%)	39.1	23.9	37.0	100.0

<표 III-90> 양육비 지원현황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계
사례수(명)	7	11	18
백분율(%)	38.9	61.1	100.0

다) 자녀미양육에 따른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이혼/별거 후 조사대상자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75%가 행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표 III-91>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항목	행사	불행사	무응답	계
사례수(명)	6	1	1	8
백분율(%)	75	12.5	12.5	100.0

라.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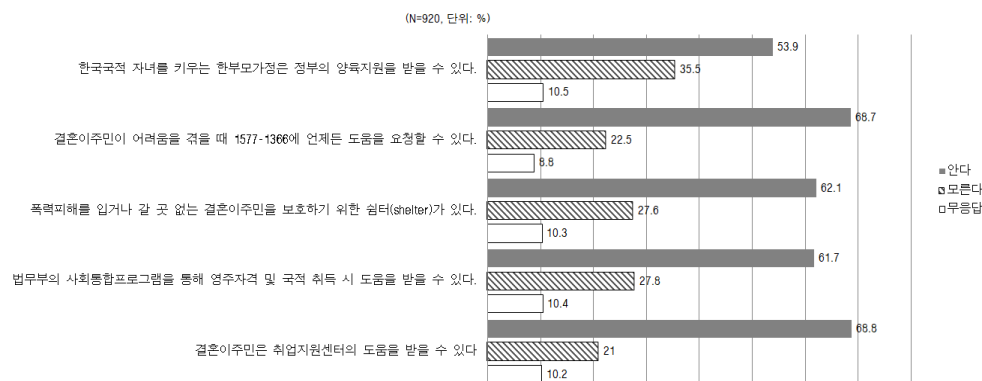
1) 사회서비스 인지여부

결혼이주민을 위한 정부 및 민간기관의 주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사회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모른다는 응답도 21.0~3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제도에 대한 미인지 비율(35.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2> 결혼이주민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 인지여부

	안다		모른다		무응답	
	명	%	명	%	명	%
한국국적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은 정부의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496	53.9	327	35.5	97	10.5
결혼이주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1577-1366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632	68.7	207	22.5	81	8.8
폭력피해를 입거나 갈 곳 없는 결혼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shelter)가 있다.	571	62.1	254	27.6	95	10.3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68	61.7	256	27.8	96	10.4
결혼이주민은 취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33	68.8	193	21.0	94	10.2

<그림 III-61> 결혼이주민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 인지여부



결혼이주민 체류자격별로 사회서비스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하여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결혼이주민 관련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3> 사회서비스 인지여부 _ 체류자격별

		정부양육지원		1577-1366		쉼터(shelter)		법무부 사통		취업지원센터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97	100	143	62	119	81	117	81	135	63
	%	49.2	50.8	69.8	30.2	59.5	40.5	59.1	40.9	68.2	31.8
영주 자격 체류자	명	63	42	61	46	69	38	70	37	84	23
	%	60.0	40.0	57.0	43.0	64.5	35.5	65.4	34.6	78.5	21.5
혼인 귀화자	명	180	60	212	32	196	44	199	41	208	34
	%	75.0	25.0	86.9	13.1	81.7	18.3	82.9	17.1	86.0	14.0

혼인상태별로 사회서비스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기혼집단에 비해 혼인단절 이주민 집단이 1577-1366 서비스, 취업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4> 사회서비스 인지여부 _ 혼인상태별

		정부 양육지원		1577-1366		쉼터(shelter)		법무부 사통		취업지원센터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기혼/사실 혼(동거)	명	458	296	596	174	531	226	527	228	592	165
	%	60.7	39.3	77.4	22.6	70.1	29.9	69.8	30.2	78.2	21.8
이혼/사별	명	22	15	22	15	23	13	24	13	23	14
	%	59.5	40.5	59.5	40.5	63.9	36.1	64.9	35.1	62.2	37.8
별거/기타	명	12	14	10	16	13	13	13	13	14	12
	%	46.2	53.8	38.5	61.5	50.0	50.0	50.0	50.0	53.8	46.2
χ^2		31.28		33.66		37.70		31.69		20.09	
p		.000		.000		.000		.000		.000	

한국 거주기간별로 사회서비스 인지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대체로 사회서비스 인지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95> 결혼이주민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 인지역부 _ 거주기간별

항목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정부의 양육지원	43	47.3	45	40.9	55	43.3	195	59.8	125	65.4
1577-1366	63	69.2	70	63.6	85	66.9	234	71.8	136	71.2
쉼터 (shelter)	50	54.9	60	54.5	79	62.2	218	66.9	124	64.9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52	57.1	62	56.4	77	60.6	217	66.6	125	65.4
취업지원센터	61	67.0	64	58.2	83	65.4	244	74.8	138	72.3

2) 사회서비스 수혜여부

결혼이주민 지원기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민은 전체의 56%였으며, 20~30대에 비하여 40대 이상이 비교적 이용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표 III-96> 주요 사회서비스 이용현황 _ 연령 및 거주기간별

항목		있다		없다		무응답		계	
		명	%	명	%	명	%	명	%
전체		515	56.0	265	28.8	140	15.2	920	100.0
연령별	20대	187	54.2	103	29.9	55	15.9	345	100.0
	30대	218	55.9	117	30.0	55	14.1	390	100.0
	40대	86	66.7	28	21.7	15	11.6	120	100.0
	50대 이상	16	55.2	5	17.2	8	27.6	29	100.0
	무응답	8	29.6	12	44.4	7	25.9	27	100.0
한국 거주기간별	1년 미만	45	49.5	30	33.0	16	17.6	91	100.0
	1년 - 3년 미만	52	47.3	37	33.6	21	19.1	110	100.0
	3년 - 5년 미만	59	46.5	42	33.1	26	20.5	127	100.0
	5년 - 10년 미만	198	60.7	85	26.1	43	13.2	326	100.0
	10년 이상	133	69.6	45	23.6	13	6.8	191	100.0
	무응답	28	37.3	26	34.7	21	28.0	75	100.0

이용해본 지원기관 중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8.2%). 다음으로 보건소(23%), 시청·구청·동사무소(2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97> 결혼이주민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 이용현황 _ 기관별

항목	사례수(명)	백분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82	68.2
이주민센터(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센터)	104	12.2
시청, 구청, 동사무소	175	20.5
보건소	196	23.0
1577-1366	64	7.5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30	2.3
여성쉼터	28	3.3
지역사회복지관	60	7.0
기타	15	1.8
무응답	224	26.3

또한 결혼이주민 체류자격별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결혼 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이주민 관련기관 지원기관 이용경험이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37.3%), 결혼 이주민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에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8> 결혼이주민을 위한 주요사회서비스 이용현황 _ 체류자격별

항목		있다	없다	전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명	116	69	185
	%	62.7%	37.3%	100.0%
영주자격 체류자	명	64	32	96
	%	66.7%	33.3%	100.0%
혼인귀화자	명	175	62	237
	%	73.8%	26.2%	100.0%

$\chi^2=6.17$ $p=0.047$

3) 체류안정을 위한 정책적 욕구

결혼이주민의 체류 안정을 위한 정책적 요구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3개),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문항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51.7%). 그 다음으로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47.9%),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38.4%), ‘자녀 유무 및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31.4%)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서류 간소화, 비자발급 신청절차 간소화 등 행정절차 간소화에 포함되는 응답 내용이 가장 많았다. 또한 재정능력과 상관없이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주민 가족의 외국인등록조건 완화 등 본국 가족의 원활한 출입국을 원하는 응답이 많았다. 그 외에도 통역이 없어 남편과 같이 가야 하는데 평일은 어려우니 주말에도 행정기관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국적취득 면접과 시험을 쉽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국가별 지원서비스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국적 취득 후 이혼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영주자격이나 국적을 취소해야 한다거나,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 후 이혼하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심사절차가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표 III-99> 결혼이주민을 위한 정책요구

항목	사례수 (명)	백분율 (%)
현행 제도 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59	18.7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121	38.4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151	47.9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90	28.6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99	31.4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163	51.7
배우자(남편)의 동의 요건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	41	13.0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활용 수준 정도를 낮춰져야 한다.	40	12.7
국적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재산기준이 낮춰져야 한다.	59	18.7
기타	8	2.5

<그림 III-62> 결혼이주민을 위한 정책욕구



체류자격별로 정책 욕구를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율이 높았던 반면(33.1%),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 ‘현행 제도 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28.1%). 혼인귀화자의 경우에는 자격요건 완화의견이 26.1%, 현행제도 유지 의견이 21.2%로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또한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10.1%로, 영주자격 체류자(4.5%), 혼인귀화자(1.8%)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표 III-100> 결혼이주민을 위한 정책욕구 _ 체류자격별

항목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영주자격 체류자		혼인귀화자	
	명	%	명	%	명	%
현행 제도 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0	17.8	25	28.1	47	21.0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56	33.1	19	21.3	59	26.3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6	3.6	4	4.5	13	5.8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9	5.3	3	3.4	3	1.3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17	10.1	4	4.5	4	1.8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13	7.7	17	19.1	38	17.0
배우자(남편)의 동의 요건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	9	5.3	9	10.1	13	5.8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활용 수준 정도를 낮춰져야 한다.	19	11.2	5	5.6	10	4.5
국적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재산기준이 낮춰져야 한다.	3	1.8	1	6.8	33	14.7
기타	7	4.1	2	2.2	4	1.8

결혼이주민을 위한 정책욕구를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기혼/사실혼(동거)의 경우 27.7%(184명), 이혼/사별의 경우 35.9%(14명)로 나타났으며, 특히 별거/기타 집단의 경우 52.2%(12명)인 것으로 나타나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에 대한 욕구가 다른 정책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기혼/사실혼(동거) 집단의 경우, 현행제도 유지가 적절하다는 응답(21.2%),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사별 집단 역시 현행제도 유지가 적절하다(17.9%),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입국을 허용해야 한다(10.3%)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별거/기타 집단의 경우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의 욕구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8.7%).

<표 III-101> 결혼이주민을 위한 정책욕구 - 혼인상태별

항목	기혼/사실혼 (동거)		이혼/사별		별거/기타	
	명	%	명	%	명	%
현행 제도 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41	21.2	7	17.9	4	17.4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184	27.7	14	35.9	12	52.2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52	7.8	3	7.7	2	8.7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19	2.9	0	0.0	1	4.3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32	4.8	3	7.7	1	4.3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89	13.4	4	10.3	1	4.3
배우자(남편)의 동의 요건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	52	7.8	2	5.1	0	0.0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활용 수준 정도를 낮춰져야 한다.	43	6.5	1	2.6	0	0.0
국적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재산기준이 낮춰져야 한다.	40	6.0	3	7.7	1	4.3
기타	13	2.0	2	5.1	1	4.3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및 ‘한국어 활용수준 정도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6.17$ p=0.029).

<표 III-102> 결혼이주민을 위한 정책욕구 _ 거주지역별

항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명	%	명	%	명	%
현행 제도 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03	22.1	23	15.8	26	21.8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139	29.8	42	28.8	30	25.2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39	8.4	10	6.8	9	7.6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13	2.8	4	2.7	3	2.5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38	6.0	7	4.8	1	0.8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60	12.8	16	11.0	20	16.8
배우자(남편)의 동의 요건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	33	7.1	11	7.5	11	9.2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활용 수준 정도를 낮춰져야 한다.	21	4.5	10	6.8	13	10.9
국적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재산기준이 낮춰져야 한다.	23	4.9	16	11.0	5	4.2
기타	8	1.7	7	4.8	1	0.8

마. 결혼이주민의 심리정서적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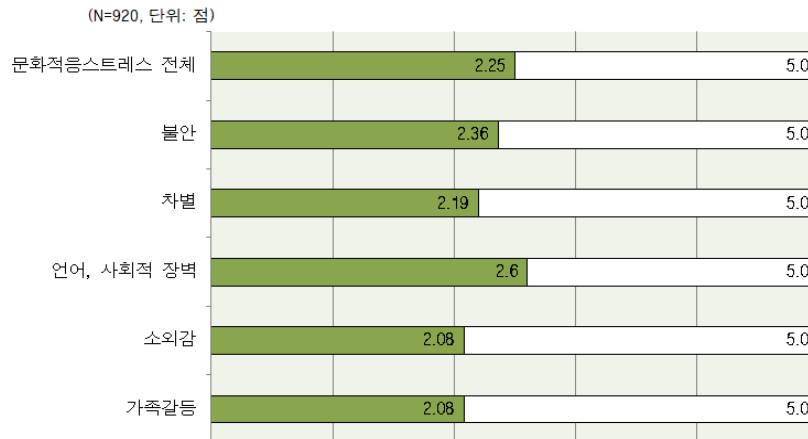
결혼이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손의성(2012)이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⁵³⁾로 측정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불안, 차별, 언어사회적 장벽, 소외감, 가족갈등의 5개 하위척도,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25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 언어·사회적 장벽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36점), 다음으로 불안(2.36점), 차별(2.19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03> 결혼이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변수	만점	평균
문화적응스트레스 전체	5.00	2.25
불안	5.00	2.36
차별	5.00	2.19
언어·사회적 장벽	5.00	2.60
소외감	5.00	2.08
가족갈등	5.00	2.08

<그림 III-63> 결혼이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



53) 손의성,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8권, 198쪽.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64점), 특히 차별, 가족갈등, 불안, 언어사회적 장벽 영역에서 고령층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104> 결혼이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 _ 연령별

항목	사례수 (명)	전체	불안	차별	언어사회적 장벽	소외감	가족갈등
20대	345	2.09	2.21	1.96	2.47	2.00	1.85
30대	390	2.34	2.45	2.32	2.65	2.13	2.22
40대	129	2.35	2.44	2.32	2.71	2.12	2.21
50대이상	29	2.64	2.57	2.78	3.05	2.23	2.46
F			4.57	11.92	4.10	1.78	11.23
p			.004	.000	.009	.150	.000

체류자격별로 살펴본 결과, 언어사회적 장벽(F=7.97, P=.000), 소외감(F=13.66, P=.000), 가족갈등(F=4.86, P=.008) 영역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하위영역은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와 영주자격 체류자가, 혼인귀화자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5> 결혼이주민 문화적응스트레스 _ 체류자격별

		N	평균	표준편차
불안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12	2.45	.91
	영주자격 체류자	106	2.58	.95
	혼인귀화자	251	2.32	1.01
	합계	569	2.42	.96
차별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8	2.22	.88
	영주자격 체류자	106	2.49	.96
	혼인귀화자	250	2.30	1.05
	합계	564	2.30	.98
언어사회적 장벽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12	2.79	.97
	영주자격 체류자	106	2.71	1.03
	혼인귀화자	250	2.42	1.04
	합계	568	2.62	1.03
소외감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8	2.26	.84
	영주자격 체류자	107	2.25	.83
	혼인귀화자	251	1.91	.74
	합계	566	2.10	.81

		N	평균	표준편차
가족갈등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07	2.13	.91
	영주자격 체류자	106	2.40	.95
	혼인귀화자	250	2.05	.98
	합계	563	2.15	.96

혼인상태별로 살펴본 결과 사별이나 이혼, 별거 등 혼인단절 상태의 결혼이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기혼/동거 상태에 있는 결혼이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의 경우 언어·사회적 장벽(3.58), 차별(3.17), 불안(3.07) 순서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이혼의 경우 가족갈등(2.83), 불안(2.72), 언어사회적 장벽(2.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06> 결혼이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 _ 혼인상태별

항목	사례수 (명)	전체	불안	차별	언어사회적 장벽	소외감	가족갈등
기혼	830	2.23	2.34	2.17	2.59	2.08	2.04
이혼	33	2.52	2.72	2.38	2.61	2.07	2.83
별거	14	2.66	3.05	2.59	2.78	2.18	2.85
사별	7	3.16	3.07	3.17	3.58	3.00	2.73
사실혼 (동거)	12	2.21	2.30	1.88	2.60	2.13	1.83

한국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언어사회적 장벽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평균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은 1년~3년 미만(2.34), 5년~10년 미만(2.33), 10년 이상(2.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07> 결혼이주민 문화적응 스트레스 _ 한국거주기간별

항목	사례수 (명)	전체	불안	차별	언어사회적 장벽	소외감	가족갈등
1년 미만	91	1.99	2.18	1.62	2.50	2.02	1.68
1년~3년 미만	110	2.34	2.47	2.09	2.79	2.33	2.02
3년~5년 미만	127	2.27	2.28	2.25	2.81	2.10	1.99
5년~10년 미만	326	2.33	2.43	2.33	2.63	2.09	2.22
10년 이상	191	2.30	2.42	2.35	2.50	2.03	2.23
F			2.35	10.26	4.28	3.03	7.22
p			.041	.000	.001	.010	.000

3.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결과 요약

1) 일반적 특성

결혼이주민들은 20대~30대의 연령대로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기혼 여성이 다수였다. 출신국은 베트남(42.4%), 중국(29.4%), 필리핀(11.4%)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0.7%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약 60%가 개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및 한국 거주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동거 가족 수는 평균 약 4명이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1.4명이었다. 한편 이혼, 사별 등 가정해체 상태인 결혼이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6.1%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거주자가 가장 많았으며(61.8%),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절반(49.3%)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활용수준은 '일상생활 가능'한 정도로 비교적 어려움 없이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체류자격별 특성

국내 입국시 체류자격 및 현재 체류자격은 결혼이민비자(F6, F-2-1) 소지자가 가장 많았으며(42.4%, 55.9%), 응답자의 76.1%가 체류 연장경험이 있고 평균 횟수는 약 2.7회였다. 체류자격별로는 결혼이민비자 소지자가 25.2%, 영주자격 체류자가 12.3%, 혼인귀화자가 28.0%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들은 체류연장과정에서 상당수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한국어 수준이 낮고(17.2%), 체류인정 기간이 짧고(13.2), 체류연장방법이나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으로(9.7%) 조사되었다.

체류과정에서는 남편 및 남편가족의 도움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3.6%), 누구에게도 도움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5%나 되었다. 또한 체류자격 연장절차에 대해서도 37.4%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연장절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으며, 기혼상태에 비해 혼인해체 상태의 이주민들이 체류자격 연장절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평균 체류연장 기한은 22.8개월이었으며 60.3%가 향후 한국에 체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영주자격/국적 취득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는데, 이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국적 취득 요건

을 갖출 수 없는 환경'을 꼽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미숙(31.8%), 재산기준 미충족(16.7%), 국내 거주기한 미충족(13.6%), 남편 및 가족의 비협조(12.1%) 순으로 나타났다.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 영주자격 평균 취득시한은 15.7개월이었으며, 영주자격 취득과정에서 약 42%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관련 정보 취득시 어려움, 담당기관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로 인해 어려움이 컸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영주자격 취득과정에서는 남편 및 남편가족의 도움이 가장 컸으나(57.1%), 도움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약 12%에 달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자의 경우, 평균 국적 취득 소요시간은 23.6개월이었으며, 국적 취득과정에서 약 48%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한국어 미숙, 관련정보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 과정에서는 남편 및 남편가족의 도움이 가장 컸으나(69.5%), 도움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5.1%였다.

3) 가족관련 특성

동거중인 가족 수는 평균 약 4명이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1.4명이었다. 한편 이혼, 사별 등 혼인단절이거나 가정해체 상태인 결혼이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6.1%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경우 한국 국적 소지 비율이 70%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해 이혼 및 별거 등을 고려해 본 결혼이주민은 8.3%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시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체류자격 불안정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적 폭력,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폭력 위협의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상황시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는 응답한 비율이 31.7%에 달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도움 요청방법을 모르고,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혼인단절 기혼집단에 비해 가정폭력 경험 빈도가 더 많았다.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의 경우 체류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5%에 달했다. 주요 이유로는 서류구비의 어려움, 남편 및 남편 가족의 방해로 인한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인단절 결혼이주민 39.1%가 본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으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26.1%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육비는 61.1%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관련특성

결혼이주민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 인지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모른다는 응답도 약 30%에 달하였다. 특히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인식 수준이 낮았다.

사회서비스 수혜여부는 관련 기관을 이용해본 이주민이 약 56%였으며, 한국거주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기관 서비스 이용 경험율이 높았다. 체류자격별로는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들이 지원기관 서비스 이용경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 관련 정책욕구로는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입국 허용(51.7%), 행정절차 간소화(47.9%), 자격요건 완화(38.4%),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상관없는 체류자격 유지(31.4%) 등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자격요건 완화,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상관없는 체류자격 유지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5) 결혼이주민의 심리정서적 특성

결혼이주민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언어사회적 장벽, 불안, 차별 영역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비자 소지자가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컸고, 혼인단절 상태의 결혼이주민이 불안과 차별, 가족갈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시사점

1)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의 필요성

결혼이주민들은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해체를 고려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상 어려움이나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하여 불만족스러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민이 국내 체류자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혼인상태여야 하고, 이혼 후에라도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비양육권자라도 면접교섭권 행사를 입증해야 체류자격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혼인단절 및 가정해체 과정을 살펴보면 결혼이주민들이 체류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 및 남편 가족의 방해로 인한 어려움이 크고, 체류연장 과정에서도 남편 및 가족의 비협조로 인해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나 남편 가족의 협조 여부나 범위에 따라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결혼이주민들은 불만족스러운 혼인관계나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는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요인이 된다.

결혼이주민의 정책욕구에서도 체류자격 요건의 완화 및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상관없는 체류자격 유지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인상태 유지나 자녀양육 유무,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를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유지의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체류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결혼이주민의 상당수가 체류연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주요 이유로 한국어 수준이 낮고(17.2%), 체류인정 기간이 너무 짧고(13.2%), 체류연장방법이나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으로(9.7%) 나타나므로, 체류연장 과정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

체류인정 기간에 대한 정책 개선 논의가 필요하며 체류연장 과정에서 한국어 지원서비스 제공확대, 체류연장 방법 등 정보취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체류연장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도움 받지 못했다는 거나, 체류연장 절차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이므로, 체류연장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3)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혼인 상태에 따르면 특히 기혼상태의 결혼이주민에 비해 이혼/사별 등 가정해체 상태인 결혼이주민이 건강상태나 한국생활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가정해체 집단이 기혼집단에 비해 가정폭력 경험 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해체 결혼이주민 지원을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혼인단절 등 가정해체 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혼상태 결혼이주민에 비해 높았다. 특히 남편 및 남편 가족의 방해로 인한 어려움이 크고, 체류연장 과정에서도 남편 및 가족의 비협조, 무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편이나 가족의 협조 여부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에 따른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4) 결혼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조사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42.1%)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언어적 폭력,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폭력 위협의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상황시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는 응답한 비율이 31.7%에 달했는데, 그 이유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거나 도움 요청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현재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 구제 및 예방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민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크고, 특히 언어 및 사회적 장벽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감, 차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과 사회서비스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IV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체류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및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 제도적 개선과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총 12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69부를 회수하였으며(54.3%), 무응답 등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2부를 제외한 총 67부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나. 조사절차

구 분	결혼이주민 관련 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조사대상 및 부수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및 담당공무원 온라인 설문조사 67명
조사기간	2017. 08. ~ 10.

다. 조사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7개), 다누리콜센터(6개 지역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6개 지부) 등 결혼이주민 관련 기관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회수율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설문조사 시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업무담당자 리스트를 확보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회수율 담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설문조사 진행하였다.

라. 조사항목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보장, 간이귀화,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시 현황, 이혼, 폭력피해에 따른 체류자격 유지의 어려운 점,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시 어려운 점, 결혼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제 정비 및 정책개선 등에 대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 분	설문문항/질문내용
일반적특성	- 성별, 연령 - 근무기관, 총 재직연수 - 결혼이주민과의 직접적 접촉의 정도 - 결혼이주민의 방문사유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사항	- 체류연장 시기, 조건, 절차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견해 - 구체적인 허가요건(재산기준, 한국어 자격증 유무, 한국국적 자녀 유무 등)에 대한 견해 - 결혼이주민의 현행 국적취득절차에 대한 본인의 견해
결혼이주민 관련 정부정책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내용, 요건, 절차 등에 관한 본인의 견해 -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한 본인의 견해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한 본인의 견해 -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방해하는 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기타 제언사항

2. 조사결과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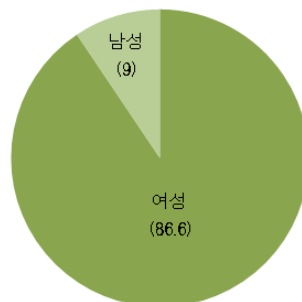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담당자들은 총 67명이며, 여성이 58명, 남성이 9명이었다.

<표 IV-1> 조사대상 업무담당자 성별

항목	여성	남성	계
사례수(명)	58	13.4	67
백분율(%)	86.6	9	100.0

<그림 IV-1> 조사대상 업무담당자 성별

(N=6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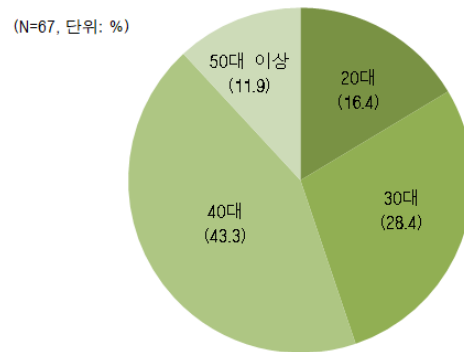


연령은 40대가 29명(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28.4%), 20대(1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 조사대상 업무담당자 연령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20대	11	16.4
30대	19	28.4
40대	29	43.3
50대 이상	8	11.9

<그림 IV-2> 조사대상 업무담당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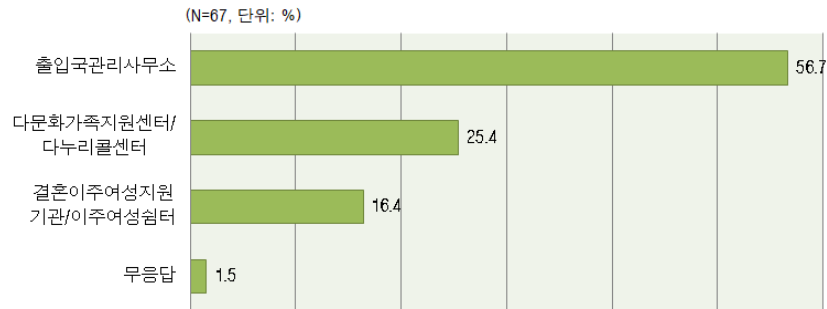


근무기관별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38명(56.7%)이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누리콜센터가 17명(25.4%),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및 이주여성쉼터가 11명(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조사대상 업무담당자의 근무기관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출입국관리사무소	38	56.7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	17	25.4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이주여성쉼터	11	16.4
무응답	1	1.5

<그림 IV-3> 조사대상 업무담당자의 근무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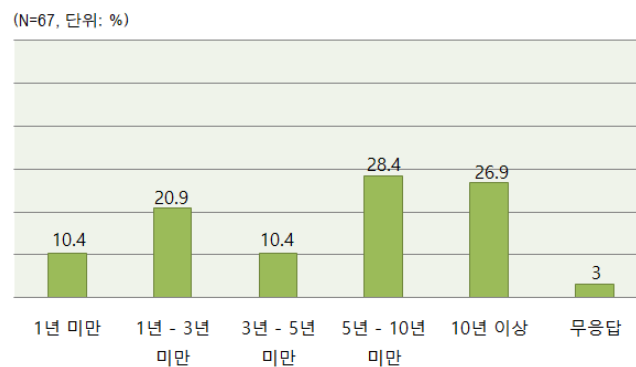


재직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응답자가 19명(28.4%), 10년 이상인 응답자가 18명(26.9%)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결혼이주민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4> 조사대상 업무담당자의 재직기간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1년 미만	7	10.4
1년 - 3년 미만	14	20.9
5년 - 5년 미만	7	10.4
5년 - 10년 미만	19	28.4
10년 이상	18	26.9
무응답	2	3.0

<그림 IV-4> 조사대상 업무담당자의 재직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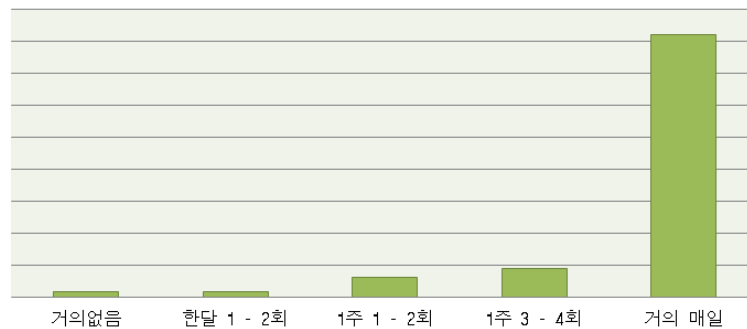
결혼이주민 접촉빈도로는 한 달 1~2회 또는 거의 없는 경우는 각 1회에 불과하였고, 거의 매일 접촉한다는 응답이 55명(82.1%)로 가장 많았다.

<표 IV-5> 결혼이주민 접촉빈도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거의없음	1	1.5
한달 1 - 2회	1	1.5
1주 1 - 2회	4	6.0
1주 3 - 4회	6	9.0
거의 매일	55	82.1

<그림 IV-5> 결혼이주민 접촉빈도

(N=6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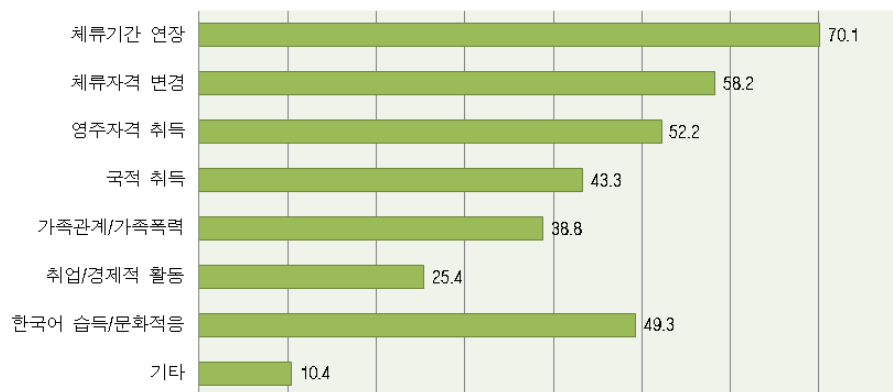
결혼이주민들이 기관을 방문하는 이유는 체류기간 연장목적이 가장 많았으며 (47명, 70.1%), 체류자격 변경(39명, 58.2%), 영주자격 취득(35명, 52.2%), 국적 취득(29명, 43.3%) 순으로 나타나, 체류자격 및 영주자격/국적 취득 관련한 방문이 가장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 습득/문화적응(33명, 49.3%), 가족관계/가족폭력(26명, 38.8%) 등의 이유로도 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법률 및 의료지원요청, 가족초청 및 체류연장, 취업 및 긴급지원, 자녀교육, 가족갈등, 성폭력/성매매 구조 및 지원요청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6> 결혼이주민의 기관서비스(방문) 이유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체류기간 연장	47	70.1
체류자격 변경	39	58.2
영주자격 취득	35	52.2
국적 취득	29	43.3
가족관계/가족폭력	26	38.8
취업/경제적 활동	17	25.4
한국어 습득/문화적응	33	49.3
기타	7	10.4

<그림 IV-6> 결혼이주민의 기관서비스(방문) 이유

(N=6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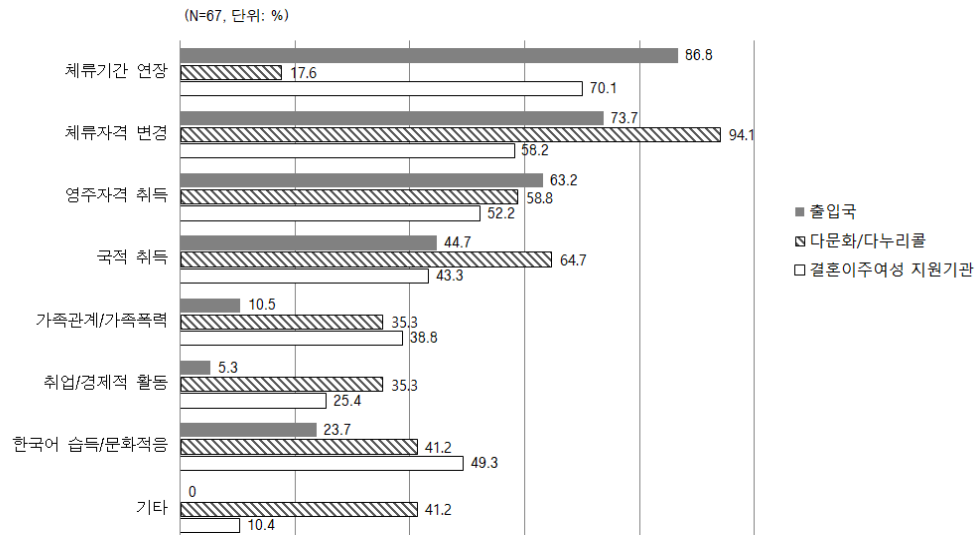


기관별로 결혼이주민의 방문사유를 살펴보았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86.8%) 및 체류자격 변경(73.7%), 영주자격 취득(63.2%) 사유의 비중이 높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 및 결혼이주여성센터의 경우 가족관계/가족폭력(각 64.7%, 100%) 및 한국어습득/문화적응(각 94.1%, 63.6%) 쪽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V-7> 결혼이주민의 기관서비스 방문이유 _ 지원기관별

항목	출입국		다문화/다누리콜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명	%	명	%	명	%
체류기간 연장	33	86.8	7	41.2	7	63.6
체류자격 변경	28	73.7	7	41.2	4	36.4
영주자격 취득	24	63.2	6	35.3	5	45.5
국적 취득	17	44.7	6	35.3	6	54.5
가족관계/가족폭력	4	10.5	11	64.7	11	100
취업/경제적 활동	2	5.3	10	58.8	4	36.4
한국어 습득/문화적응	9	23.7	16	94.1	7	63.6
기타	0	0.0	3	17.6	4	36.4

<그림 IV-7> 결혼이주민의 기관서비스 방문이유 _ 지원기관별



나. 결혼이주민의 체류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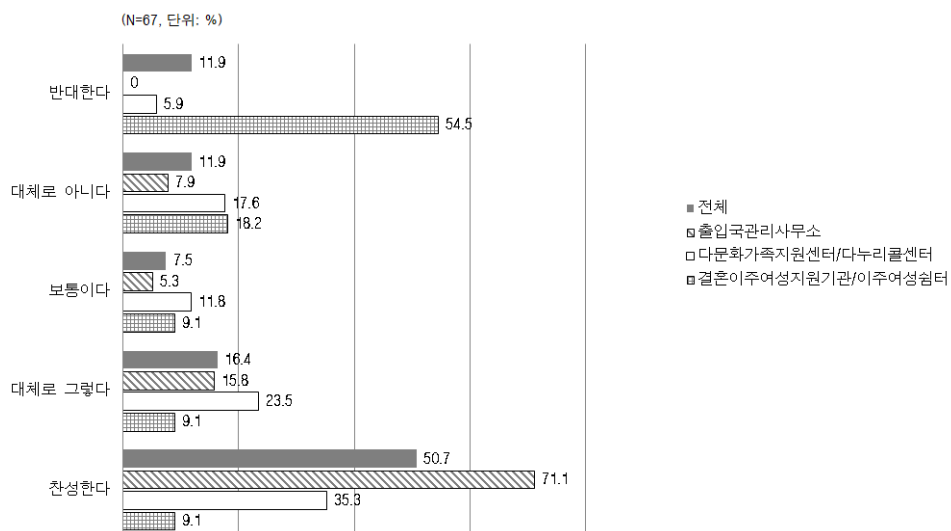
1)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업무담당자들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1년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찬성한다+대체로 그렇다)이 67.2%, 반대한다는 의견(반대한다+대체로 아니다)은 23.9%로 나타나,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담당자의 찬성쪽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86.8%),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은 반대쪽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72.7%).

<표 IV-8>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1년 한정

항목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8	11.9	8	11.9	5	7.5	11	16.4	34	50.7
출입국관리사무소	0	0.0	3	7.9	2	5.3	6	15.8	27	7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	5.9	3	17.6	2	11.8	4	23.5	6	35.3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6	54.5	2	18.2	1	9.1	1	9.1	1	9.1

<그림 IV-8>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1년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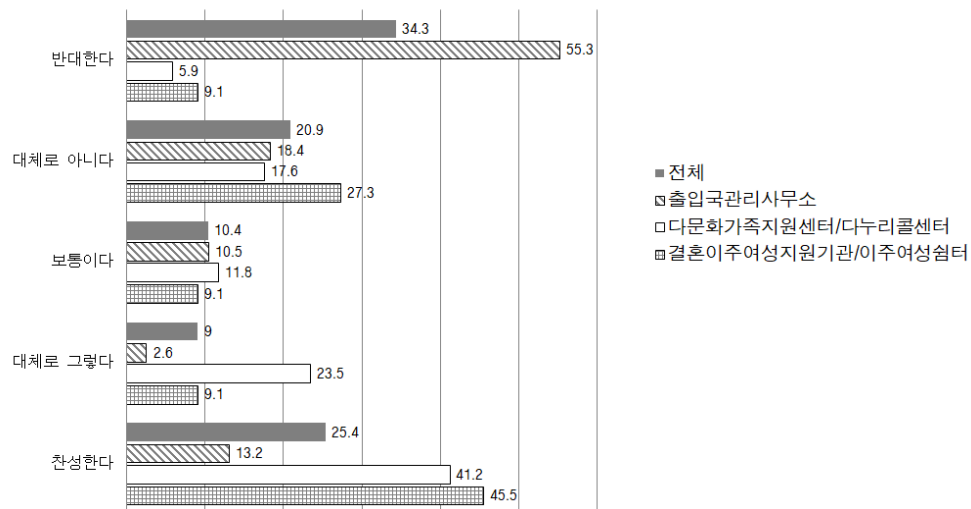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없이 ‘2년 범위 내’가 아닌 ‘2년’으로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73.7%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및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 민간기관의 경우 각각 찬성의견이 64.7%, 54.5%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9>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2) 체류기간 재량여부

항목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23	34.3	14	20.9	7	10.4	6	9.0	17	25.4
출입국관리사무소	21	55.3	7	18.4	4	10.5	1	2.6	5	1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	5.9	3	17.6	2	11.8	4	23.5	7	41.2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1	9.1	3	27.3	1	9.1	1	9.1	5	45.5

<그림 IV-9>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2) 체류기간 재량여부

(N=6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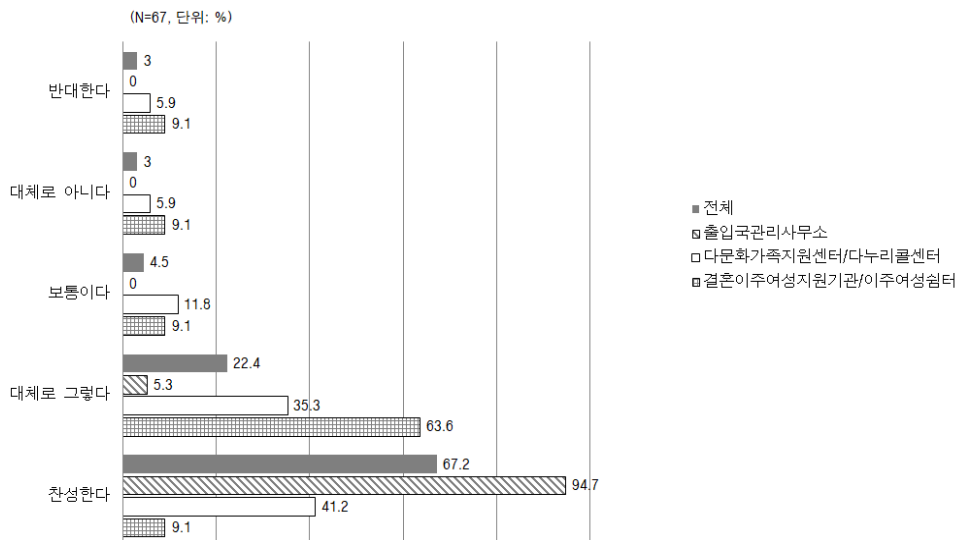


“별거, 이혼소송, 배우자 실종의 경우 입증서류 제출의 필요성”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및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의 경우에도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각 76.5%, 72.7%).

<표 IV-10> 별거/이혼/배우자실종 시 입증서류 제출 필요성

항목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2	3.0	2	3.0	3	4.5	15	22.4	45	67.2
출입국관리사무소	0	0.0	0	0.0	0	0.0	2	5.3	36	94.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	5.9	1	5.9	2	11.8	6	35.3	7	41.2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1	9.1	1	9.1	1	9.1	7	63.6	1	9.1

<그림 IV-10> 별거/이혼/배우자실종 시 입증서류 제출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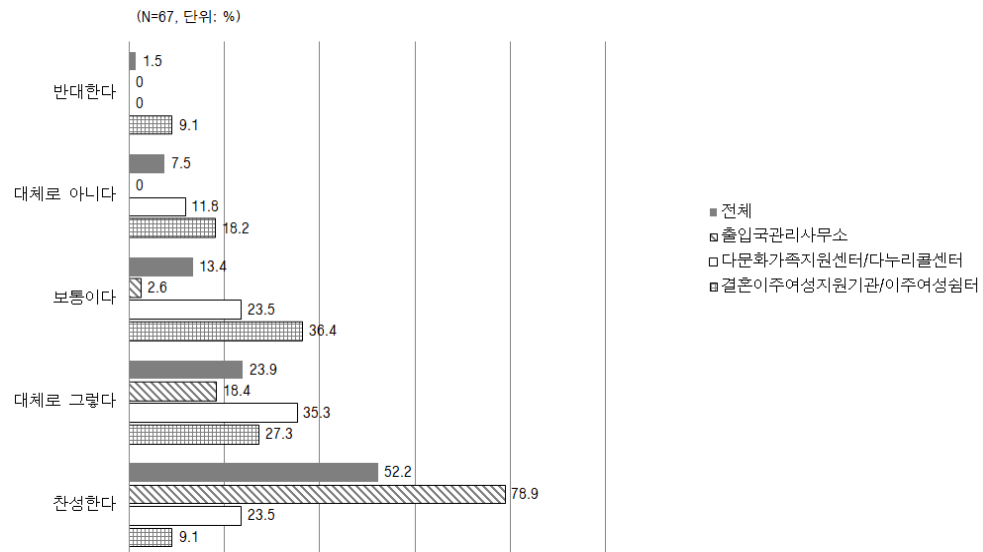


면접교섭권 행사에 있어 자녀와의 교류를 증명할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담당자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97.4%).

<표 IV-11> 면접교섭권 행사 시 서류제출 필요

항목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	1.5	5	7.5	9	13.4	16	23.9	35	52.2
출입국관리사무소	0	0.0	0	0.0	1	2.6	7	18.4	30	78.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0	0.0	2	11.8	4	23.5	6	35.3	4	23.5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1	9.1	2	18.2	4	36.4	3	27.3	1	9.1

<그림 IV-11> 면접교섭권 행사 시 서류제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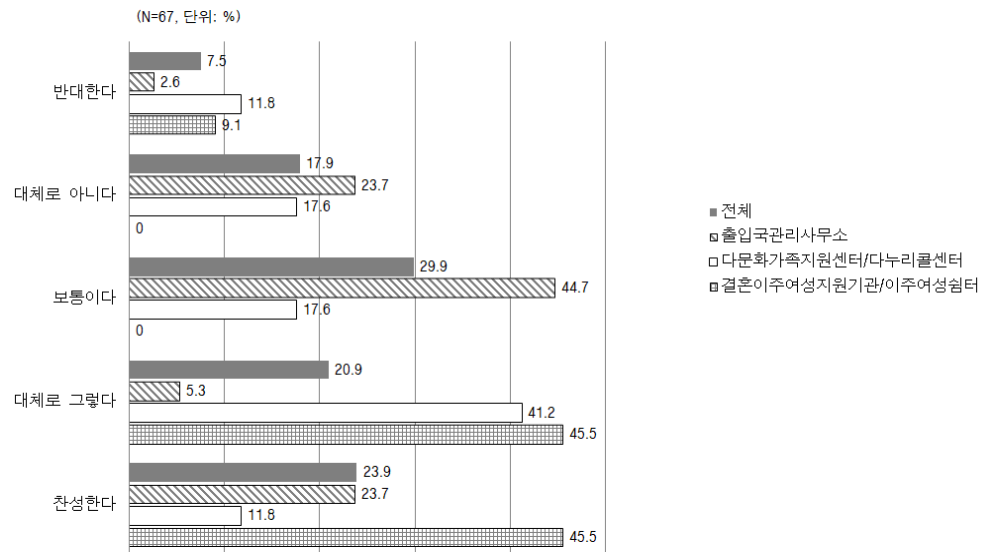


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큰 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보통이다’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44.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및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각 41.2%, 45.5%).

<표 IV-1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행정기관의 재량권에 대한 인식

항목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	7.5	12	17.9	20	29.9	14	20.9	16	23.9
출입국관리사무소	1	2.6	9	23.7	17	44.7	2	5.3	9	2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2	11.8	3	17.6	3	17.6	7	41.2	2	11.8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1	9.1	0	0.0	0	0.0	5	45.5	5	45.5

<그림 IV-1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행정기관의 재량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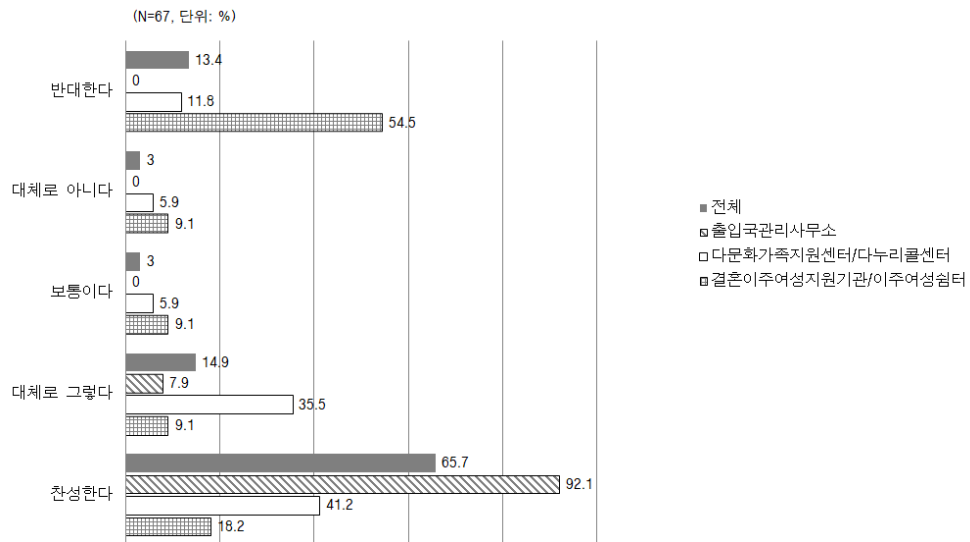
2) 영주자격 변경허가 관련

품행단정 요건에 대해서는 44명(65.7%)가 찬성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들이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 (92.1%, 41.2%),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은 반대 의견 비율(54.5%)이 더 높았다.

<표 IV-13>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1)_ 품행단정

항목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	13.4	2	3.0	2	3.0	10	14.9	44	65.7
출입국관리사무소	0	0.0	0	0.0	0	0.0	3	7.9	35	9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2	11.8	1	5.9	1	5.9	6	35.3	7	41.2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6	54.5	1	9.1	1	9.1	1	9.1	2	18.2

<그림 IV-13>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1)_ 품행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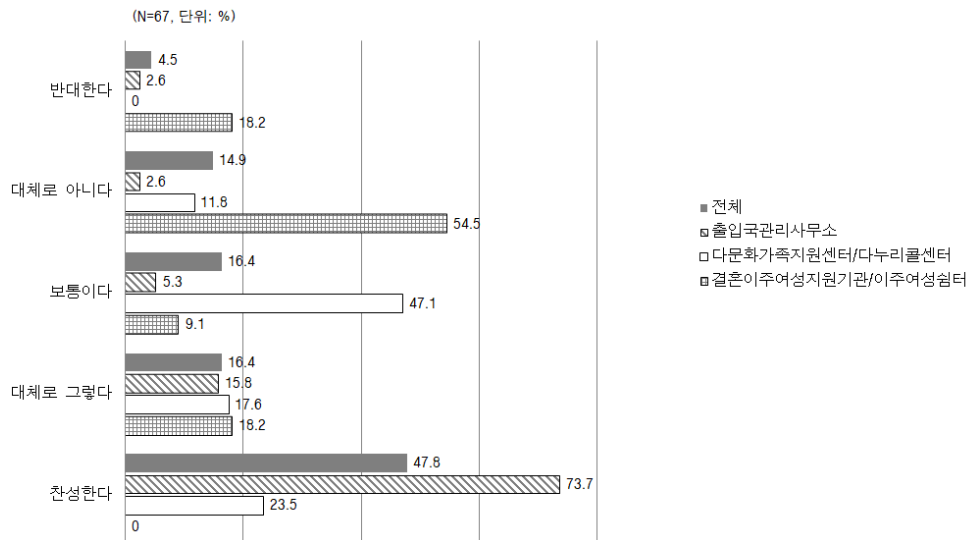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에 관해서는 32명(47.8%)가 찬성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89.5%),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은 반대쪽 응답률이 높았다(72.7%).

<표 IV-14>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2) _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

항목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3	4.5	10	14.9	11	16.4	11	16.4	32	47.8
출입국관리사무소	1	2.6	1	2.6	2	5.3	6	15.8	28	7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0	0.0	2	11.8	8	47.1	3	17.6	4	23.5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센터	2	18.2	6	54.5	1	9.1	2	18.2	0	0.0

<그림 IV-14>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2) _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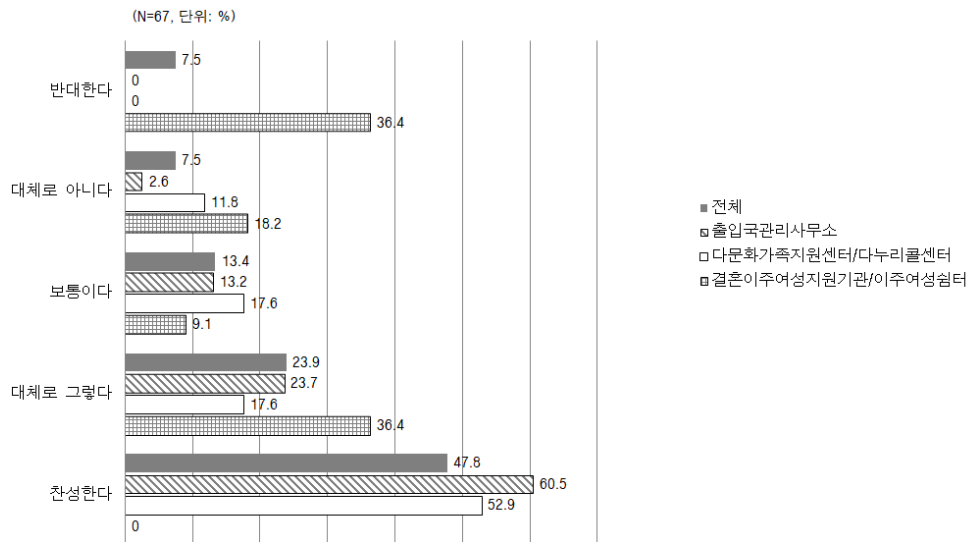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의 결혼이주민은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 32명(47.8%)가 찬성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담당자는 84.2%가 찬성 비율을 보인 반면,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은 반대한다는 의견이(36.4%) 가장 높았다.

<표 IV-15>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3) _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통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요구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	7.5	5	7.5	9	13.4	16	23.9	32	47.8
출입국관리사무소	0	0.0	1	2.6	5	13.2	9	23.7	23	60.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0	0.0	2	11.8	3	17.6	3	17.6	9	52.9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4	36.4	2	18.2	1	9.1	4	36.4	0	0.0

<그림 IV-15>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3) _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통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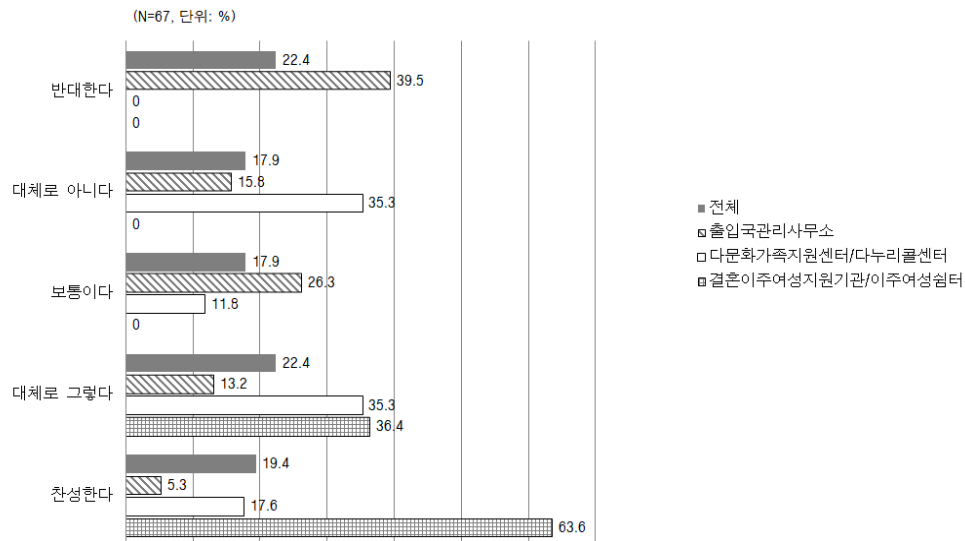


“자녀유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국내 체류한 결혼이주민에게도 영주자격이 신청 가능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55.3%가 반대쪽 응답인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은 찬성측 응답이 높아 상반된 응답을 보였다(52.9%, 100%).

<표 IV-16>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4)_ 자녀유무, 귀책사유 관계없는 영주자격 신청 가능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5	22.4	12	17.9	12	17.9	15	22.4	13	19.4
출입국관리사무소	15	39.5	6	15.8	10	26.3	5	13.2	2	5.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0	0.0	6	35.3	2	11.8	6	35.3	3	17.6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0	0.0	0	0.0	0	0.0	4	36.4	7	63.6

<그림 IV-16> 영주자격 변경허가 요건(4)_ 자녀유무, 귀책사유 관계없는 영주자격 신청 가능



3) 국적취득(귀화)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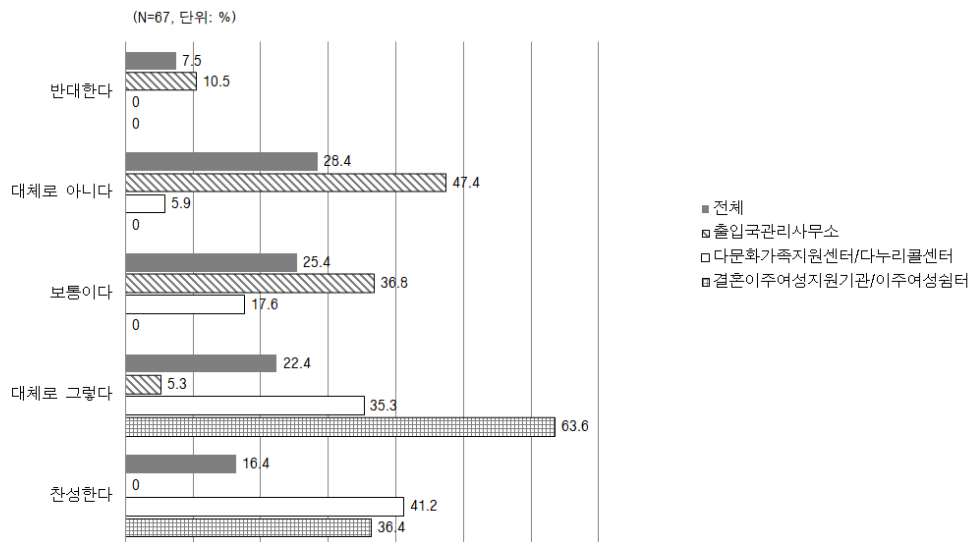
결혼이주민에게 국적취득 요건과 절차가 어려운지에 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57.9%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경우 76.5%,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의 경우 100%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7> 국적취득 요건 및 절차 난이도

항목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	7.5	19	28.4	17	25.4	15	22.4	11	16.4
출입국관리사무소	4	10.5	18	47.4	14	36.8	2	5.3	0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0	0.0	1	5.9	3	17.6	6	35.3	7	41.2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0	0.0	0	0.0	0	0.0	7	63.6	4	36.4

<그림 IV-17> 국적취득 요건 및 절차 난이도

<표 IV-17> 국적취득 요건 및 절차 난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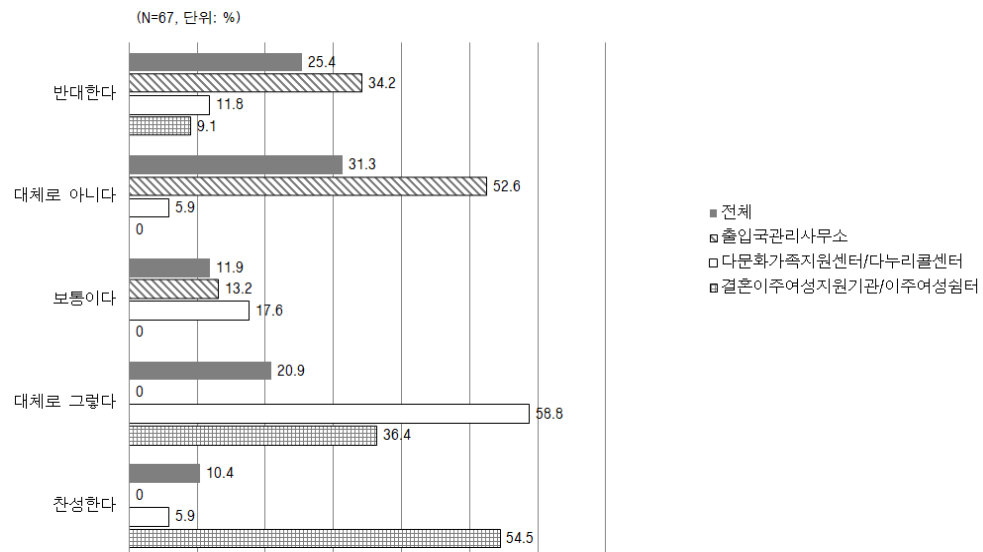


“면접시험 2회 불합격에 대해 결혼이주민의 귀화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86.8%가 반대하는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은 64.7%, 90.9%가 찬성하는 응답을 보여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표 IV-18> 면접시험 2회 불합격 시 귀화불허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7	25.4	21	31.3	8	11.9	14	20.9	7	10.4
출입국관리사무소	13	34.2	20	52.6	5	13.2	0	0.0	0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2	11.8	1	5.9	3	17.6	10	58.8	1	5.9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1	9.1	0	0.0	0	0.0	4	36.4	6	54.5

<그림 IV-18> ‘면접시험 2회 불합격 시 귀화불허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다. 결혼이주민 관련 정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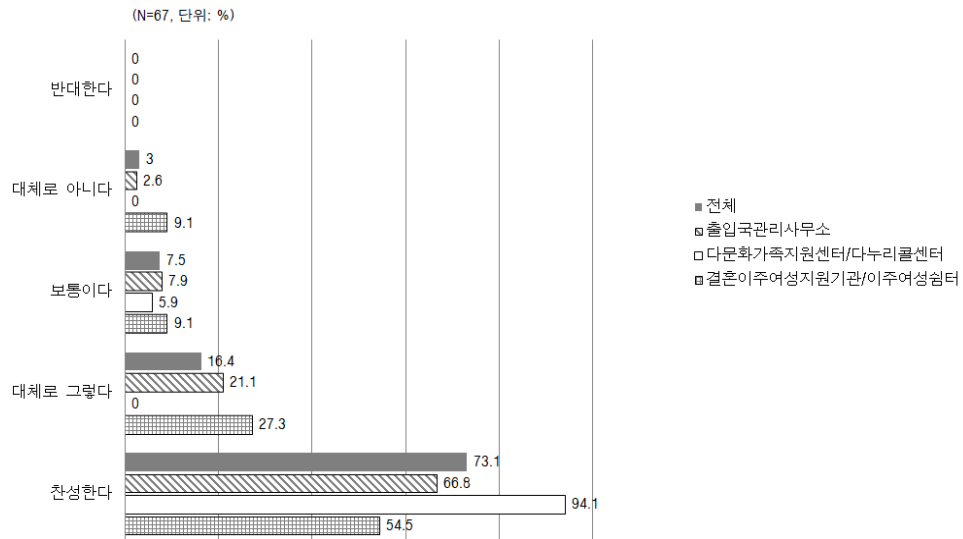
1)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의 필요성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0	0.0	2	3.0	5	7.5	11	16.4	49	73.1
출입국관리사무소	0	0.0	1	2.6	3	7.9	8	21.1	26	68.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0	0.0	0	0.0	1	5.9	0	0.0	16	94.1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0	0.0	1	9.1	1	9.1	3	27.3	6	54.5

<그림 IV-19>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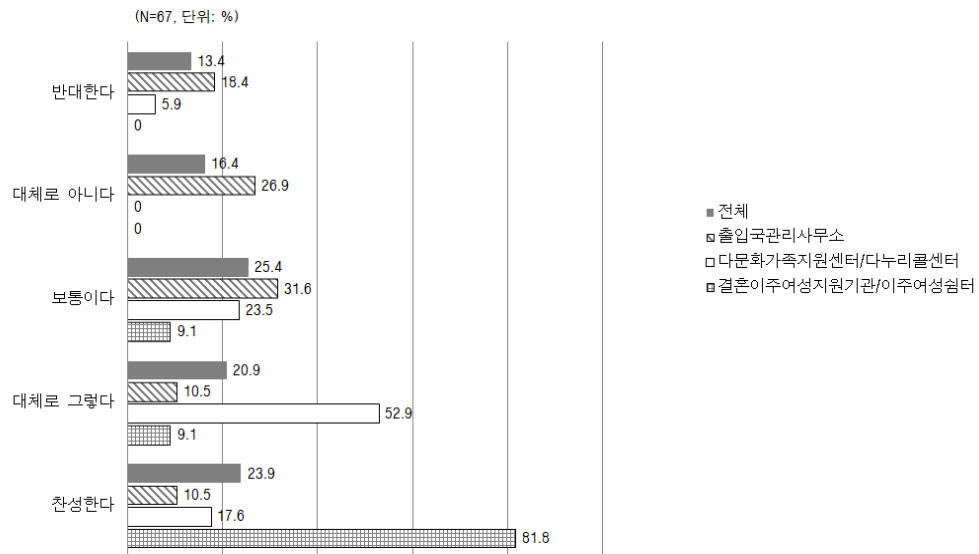


특정 국가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차별이 아니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47.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은 차별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각 70.6%, 90.9%).

<표 IV-20> 특정국가에 대한 프로그램 이수 의무 차별 여부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	13.4	11	16.4	17	25.4	14	20.9	16	23.9
출입국관리사무소	7	18.4	11	28.9	12	31.6	4	10.5	4	10.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	5.9	0	0.0	4	23.5	9	52.9	3	17.6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센터	0	0.0	0	0.0	1	9.1	1	9.1	9	81.8

<그림 IV-20> 특정국가에 대한 프로그램 이수 의무 차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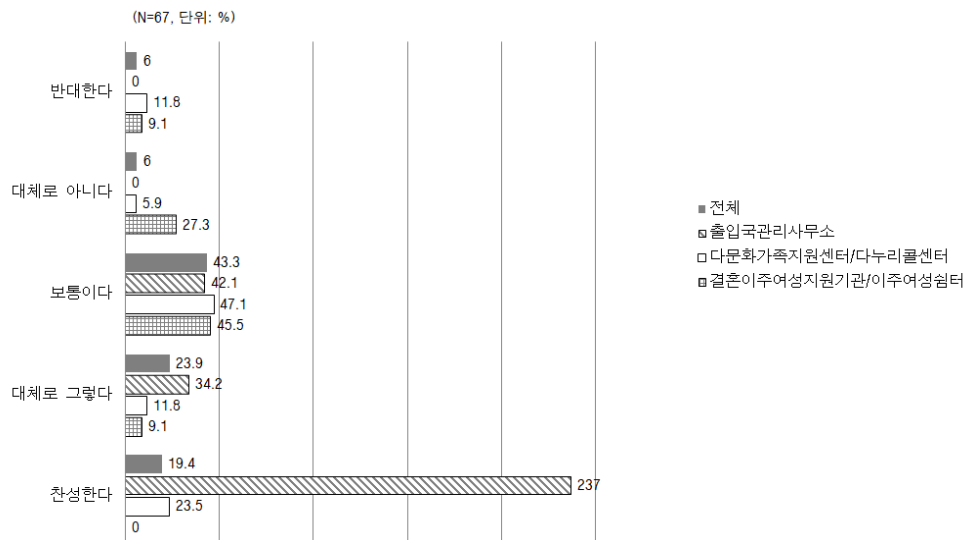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대체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많았으며 (57.9%) 결혼이주여성기관 등은 36.4%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표 IV-21>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4	6.0	4	6.0	29	43.3	16	23.9	13	19.4
출입국관리사무소	0	0.0	0	0.0	16	42.1	13	34.2	9	2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2	11.8	1	5.9	8	47.1	2	11.8	4	23.5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1	9.1	3	27.3	5	45.5	1	9.1	0	0.0

<그림 IV-21>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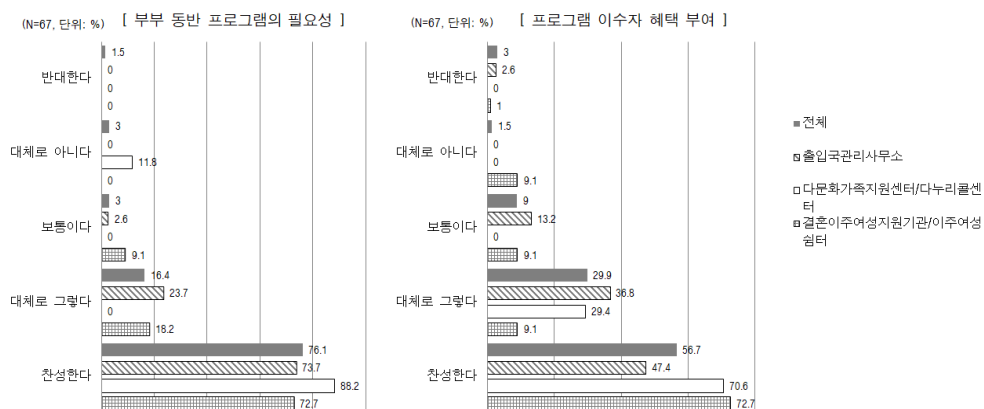
2)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을 위한 부부동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하는 응답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에 관하여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IV-22> 조기적응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

항목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부부 동반 프로 그램 필요성	전체	1	1.5	2	3.0	2	3.0	11	16.4	51	76.1
	출입국관리사무소	0	0.0	0	0.0	1	2.6	9	23.7	28	7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0	0.0	2	11.8	0	0.0	0	0.0	15	88.2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0	0.0	0	0.0	1	9.1	2	18.2	8	72.7
프로 그램 이수자 혜택 부여	전체	2	3.0	1	1.5	6	9.0	20	29.9	38	56.7
	출입국관리사무소	1	2.6	0	0.0	5	13.2	14	36.8	18	47.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0	0.0	0	0.0	0	0.0	5	29.4	12	70.6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0	0.0	1	9.1	1	9.1	1	9.1	8	72.7

<그림 IV-22> 조기적응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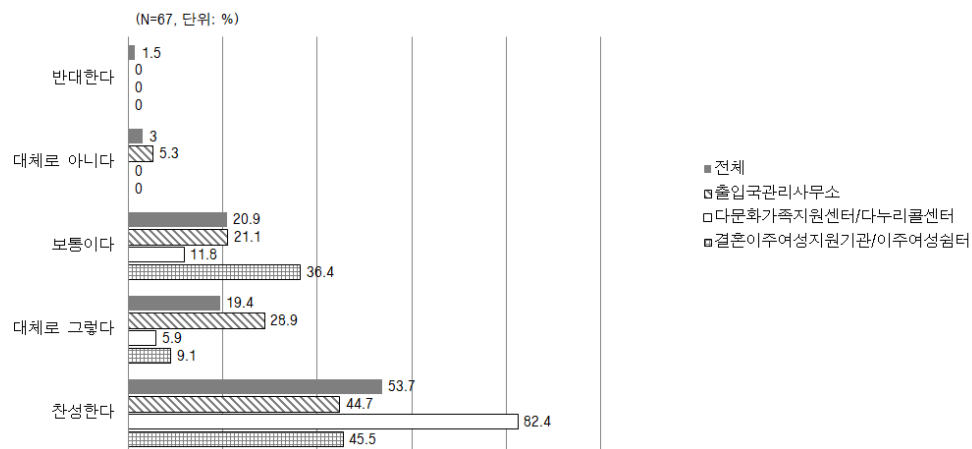


프로그램 이수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하는 응답이 높았다(53.7%).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간 차이를 보였는데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의 부정적 의견 비율이 높았다(36.4%).

<표 IV-23>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시간 확대

항목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	1.5	2	3.0	14	20.9	13	19.4	36	53.7
출입국관리사무소	0	0.0	2	5.3	8	21.1	11	28.9	17	44.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0	0.0	0	0.0	2	11.8	1	5.9	14	82.4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0	0.0	0	0.0	4	36.4	1	9.1	5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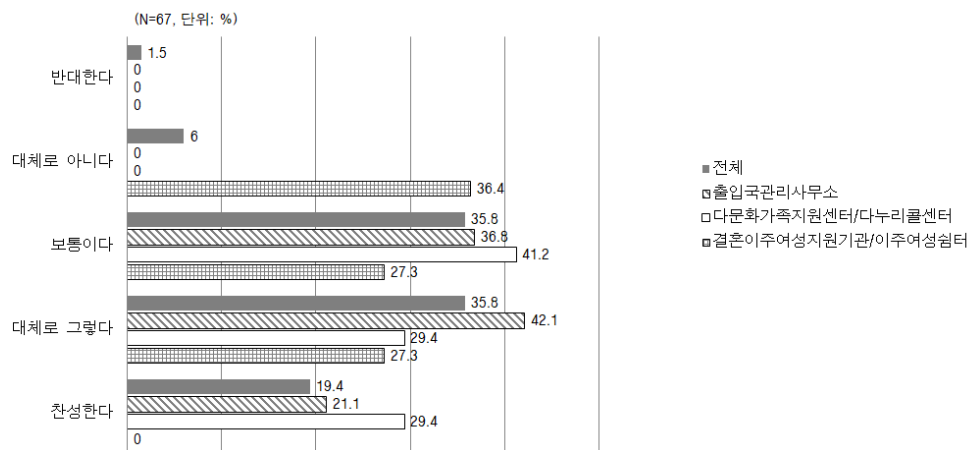
<그림 IV-23>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시간 확대



<표 IV-24>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항목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	1.5	4	6.0	24	35.8	24	35.8	13	19.4
출입국관리사무소	0	0.0	0	0.0	14	36.8	16	42.1	8	2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0	0.0	0	0.0	7	41.2	5	29.4	5	29.4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0	0.0	4	36.4	3	27.3	3	27.3	0	0.0

<그림 IV-24>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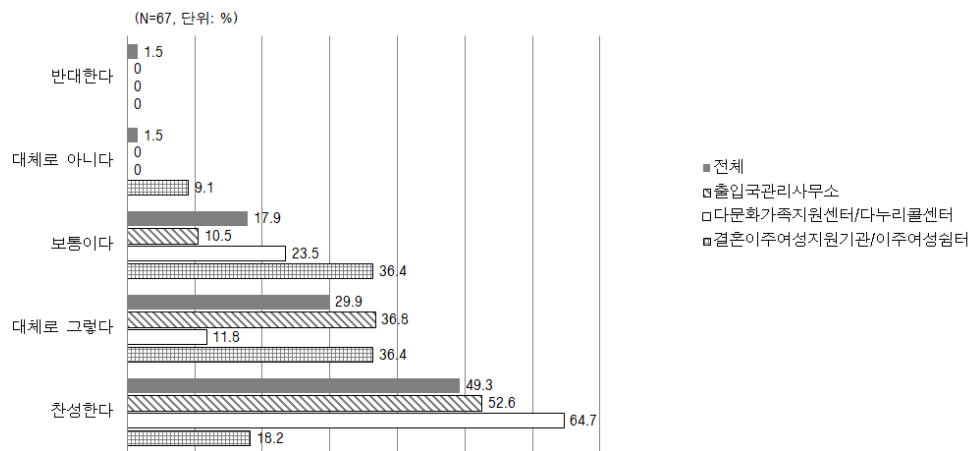
3)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에 적합한가 하는 문항에 대하여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49.3%, 46.3%).

<표 IV-25>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한국어 능력향상에 적합한지 여부

항목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	1.5	1	1.5	12	17.9	20	29.9	33	49.3
출입국관리사무소	0	0.0	0	0.0	4	10.5	14	36.8	20	52.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0	0.0	0	0.0	4	23.5	2	11.8	11	64.7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0	0.0	1	9.1	4	36.4	4	36.4	2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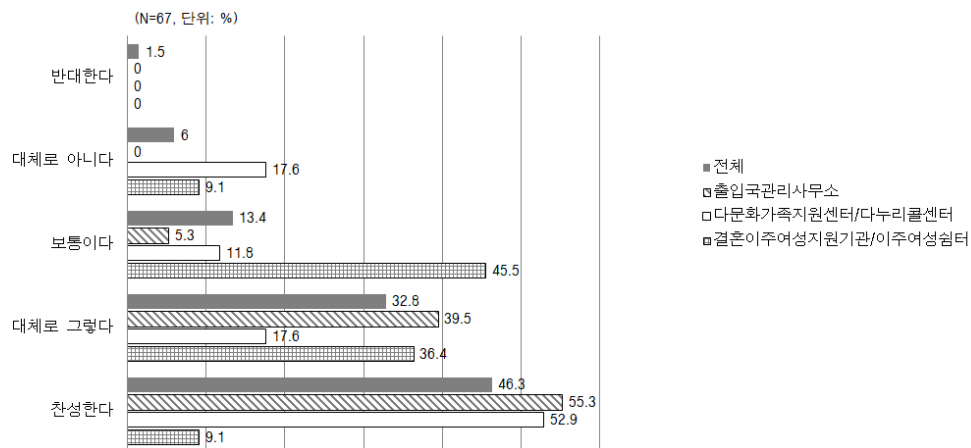
<그림 IV-25>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한국어 능력향상에 적합한지 여부



<표 IV-26>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에 적합한지 여부

항목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	1.5	4	6.0	9	13.4	22	32.8	31	46.3
출입국관리사무소	0	0.0	0	0.0	2	5.3	15	39.5	21	55.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0	0.0	3	17.6	2	11.8	3	17.6	9	52.9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0	0.0	1	9.1	5	45.5	4	36.4	1	9.1

<그림 IV-26>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에 적합한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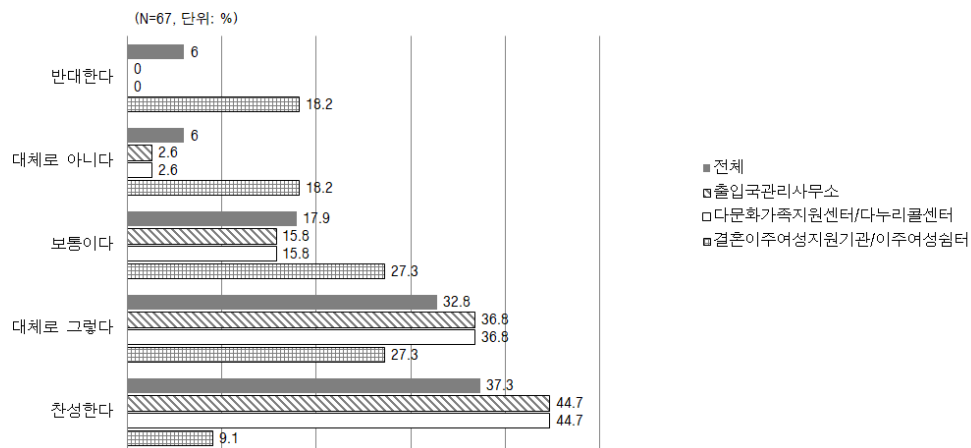
“결혼이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민들로 하여금 빨리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담당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81.6%),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에서는 반대 응답도 찬성응답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각 36.4%).

<표 IV-27> 결혼이주민 프로그램 방향성(1)_ 빠른 한국문화 습득

항목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4	6.0	4	6.0	12	17.9	22	32.8	25	37.3
출입국관리사무소	0	0.0	1	2.6	6	15.8	14	36.8	17	44.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	5.9	1	5.9	3	17.6	5	29.4	7	41.2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2	18.2	2	18.2	3	27.3	3	27.3	1	9.1

<그림 IV-27> 결혼이주민 프로그램 방향성(1)_ 빠른 한국문화 습득

<표 IV-27> 결혼이주민 프로그램 방향성(1)_ 빠른 한국문화 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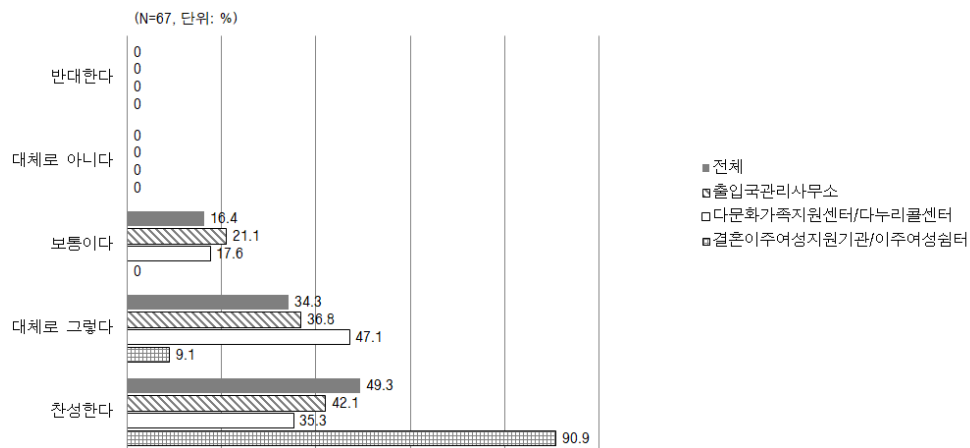


“결혼이주민 대상 프로그램이 한국사회 적응과 함께 고유문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찬성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3.6%).

<표 IV-28> 결혼이주민 대상 프로그램의 방향성(2)_ 고유문화 보존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0	0.0	0	0.0	11	16.4	23	34.3	33	49.3
출입국관리사무소	0	0.0	0	0.0	8	21.1	14	36.8	16	4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0	0.0	0	0.0	3	17.6	8	47.1	6	35.3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0	0.0	0	0.0	0	0.0	1	9.1	10	90.9

<그림 IV-28> 결혼이주민 대상 프로그램의 방향성(2)_ 고유문화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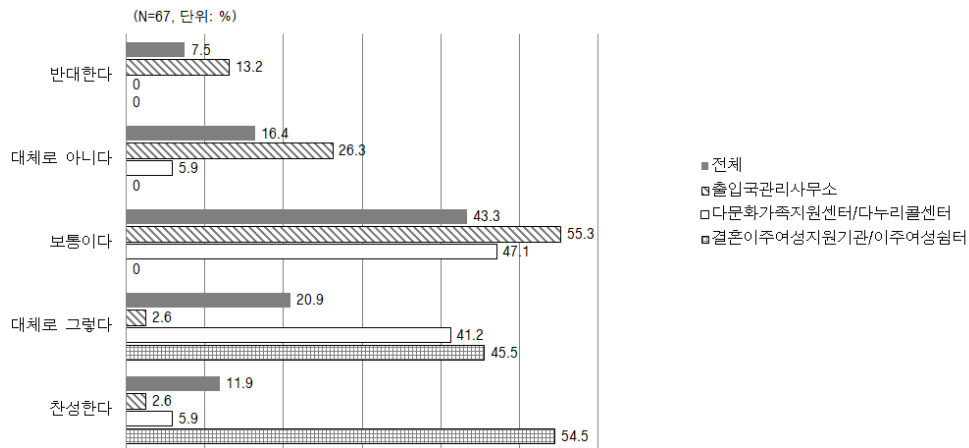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보다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에서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반대한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찬성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	7.5	11	16.4	29	43.3	14	20.9	8	11.9
출입국관리사무소	5	13.2	10	26.3	21	55.3	1	2.6	1	2.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0	0.0	1	5.9	8	47.1	7	41.2	1	5.9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0	0.0	0	0.0	0	0.0	5	45.5	6	54.5

<그림 IV-29>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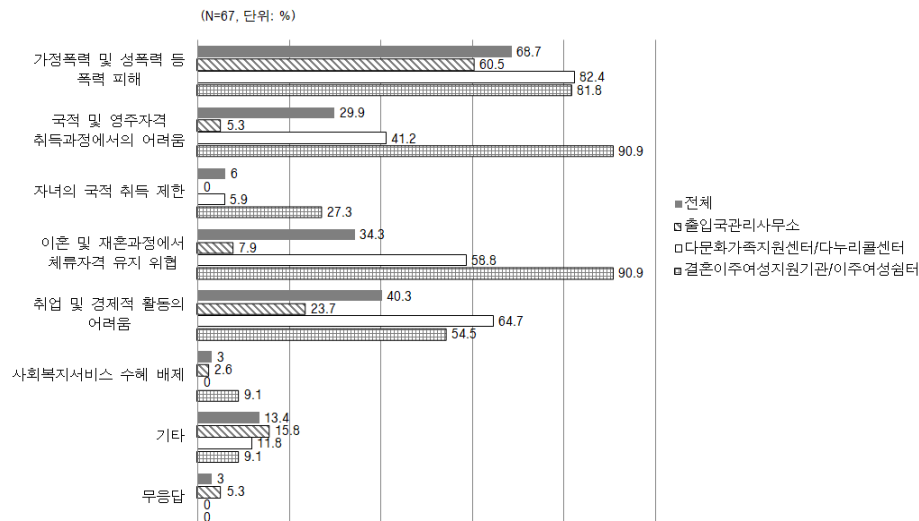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복수응답)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68.7%), 취업 및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40.3%), 이혼 및 재혼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 위협(3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폭력피해를 특히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 체류연장시 개별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한국인배우자(남편)과 동거하게 하는 것, 배우자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인프라 부족, 한국어습득 및 정보접근의 어려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 기관 부재 및 불필요한 서비스들의 중복·남용 등을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표 IV-30>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 위협요인

항목	전체		출입국		다문화 /다누리콜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	
	명	%	명	%	명	%	명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폭력 피해	46	68.7	23	60.5	14	82.4	9	81.8
국적 및 영주자격 취득과정에서의 어려움	20	29.9	2	5.3	7	41.2	10	90.9
자녀의 국적 취득 제한	4	6.0	0	0.0	1	5.9	3	27.3
이혼 및 재혼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 위협	23	34.3	3	7.9	10	58.8	10	90.9
취업 및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	27	40.3	9	23.7	11	64.7	6	54.5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배제	2	3.0	1	2.6	0	0.0	1	9.1
기타	9	13.4	6	15.8	2	11.8	1	9.1
무응답	2	3.0	2	5.3	0	0.0	0	0.0

<그림 IV-30>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 위협요인



개선 또는 마련되어야 할 체류보장 정책에 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현행제도 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53.7%). 근무기관별로 살펴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담당자의 경우, 현행 제도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78.9%), 그 뒤로 재산기준 하향(28.9%), 행정절차 간소화(21.1%),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입국 허용(21.1%), 체류자격 및 영주자격 취득 기간 단축(13.2%)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경우 대체로 정책수요가 고르게 나타났지만 행정절차 간소화(47.1%),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 가능해야 한다(41.2%)는 응답이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등의 경우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취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정책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취득을 위한 기간 단축(45.5%), 자격요건 완화(36.4%), 배우자의 동의요건 완화(36.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세 유형의 기관 업무담당자들 모두 한국어 활용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응답률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각 5.3%, 11.8%,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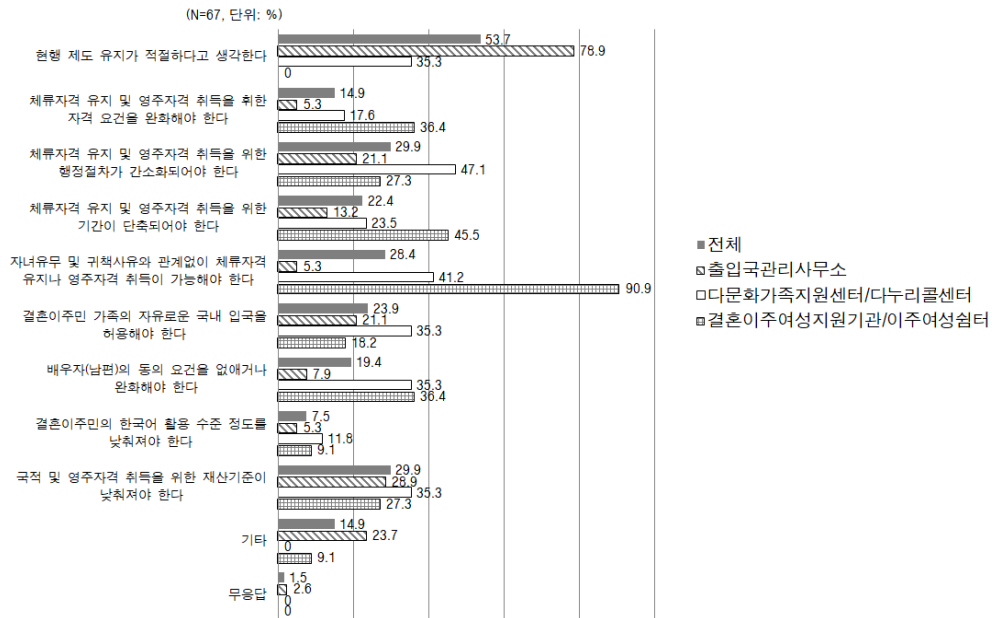
<표 IV-31> 업무담당자의 정책수요 욕구

항목	전체		출입국		다문화 /다누리콜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 등	
	명	%	명	%	명	%	명	%
현행 제도 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6	53.7	30	78.9	6	35.3	0	0.0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10	14.9	2	5.3	3	17.6	4	36.4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20	29.9	8	21.1	8	47.1	3	27.3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15	22.4	5	13.2	4	23.5	5	45.5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19	28.4	2	5.3	7	41.2	10	90.9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16	23.9	8	21.1	6	35.3	2	18.2
배우자(남편)의 동의 요건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	13	19.4	3	7.9	6	35.3	4	36.4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활용 수준 정도를 낮춰져야 한다	5	7.5	2	5.3	2	11.8	1	9.1

항목	전체		출입국		다문화 /다누리콜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 등	
	명	%	명	%	명	%	명	%
국적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재산기준이 낮춰져야 한다	20	29.9	11	28.9	6	35.3	3	27.3
기타	10	14.9	9	23.7	0	0.0	1	9.1
무응답	1	1.5	1	2.6	0	0.0	0	0.0

<그림 IV-31> 업무담당자의 정책수요 욕구

<표 IV-31> 업무담당자의 정책수요 욕구



3.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결과 요약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담당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56.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누리콜센터 25.4%, 결혼이주여성지원기관 및 쉼터 업무담당자가 16.4%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업무담당자가 유사한 분포로 조사되었다.

2) 결혼이주민 체류기간 연장 허가 관련

현행 제도인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1년 한정 요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찬성, 민간기관은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체류기간 재량권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반대, 민간기관은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혼소송 및 별거 등 혼인파탄 상황에 대한 입증서류 및 면접교섭권 행사시 입증 제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기관 업무담당자 모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재 체류자격 연장허가와 관련된 재량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재량권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관들은 재량권이 과도하다고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3) 영주자격 변경 허가 관련

현행 제도인 품행단정 요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찬성, 민간기관은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은 찬성, 민간기관은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제출여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들의 찬성비율은 높았으나, 지원기관 및 쉼터업무담당자들은 반대의견이 많았다.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에 따른 영주자격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반대, 민간기관은 찬성의견이 높았다.

4) 귀화자격 변경 허가 관련

현행 국적취득 요건과 절차에 대해 공공기관은 결혼이주민에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많은 반면, 민간기관은 어려움이 크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귀화 불허에 대한 재량권 남용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민간기관은 반대로 나타났다.

5) 결혼이주민 관련 정부정책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 대다수가 찬성하였다. 또한 특정국가 프로그램 이수 의무제도는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부부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이수시간 확대에 대해서도 역시 전반적인 찬성 비율이 높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포함한 결혼이주민 대상 프로그램 실시와 효과성에 대해서도 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들에 비해 민간기관 업무담당자들이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 위협요인으로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68.7%),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40.3%), 이혼 및 재혼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 위험(34.3%)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 전반적으로는 현행제도 유지가 적절하다는 의견비율이 가장 높았으나(53.7%), 항목별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경우, 현행 제도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데 비해(78.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은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47.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은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체류/영주자격 유지(90.9%) 응답 비율이 높았다.

나. 시사점

업무담당자들은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68.7%),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40.3%), 이혼 및 재혼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 위험(34.3%)을 들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정책 개선 및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과 민간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결혼이주민관련 지원기관) 간 결혼이주민 체류와 관련해 인권침해의 심각성, 체류현황 및 위협 요인 등에 대해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를 조율하고 정책개선의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기관 업무담당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가기간의 1년 한정, 결혼이주민의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 및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입증서류제출, 품행단정 요건 구비 등에 대해 민간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아, 결혼이주민을 특정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이에 따른 결혼이주민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와 안정적인 체류보장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결혼이주민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자 권리의 주체로써 전체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심층면접조사

1. 심층면접조사 개요
2. 심층면접 조사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1. 심층면접조사 개요

가. 조사대상 및 방법

심층면접 대상은 결혼이주민과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결혼이주민 심층면접 참여자는 총 15명이었으며, 이주관련 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 시에는 체류유형, 출신국가, 연령, 혼인상태 등 다양한 조건들을 포함하는 참여자를 선정하여 결혼이주민의 체류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심층면접 참여자는 민간기관 현장전문가와 공공기관 공무원을 나누어 각각 진행하였다. 민간기관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자, 이주여성지원기관 업무담당자, 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이주여성쉼터 업무담당자,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미흡한 점은 연구진이 추가적으로 서면을 통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은 출입국관리소 등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 형태로 진행하였다.

나. 조사내용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조사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참여자 전원에게 인터뷰에 대한 녹음과 녹취자료 활용, 참여자 익명처리 및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여 동의를 받았다. 필요한 경우 통역자가 배석하였다.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결혼이주민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참여자는 총 15명이며, 여성이 13명, 남성 2명이었다. 출신국의 경우 베트남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캄보디아 3명, 중국 2명, 일본 1명, 방글라데시 1명, 네팔 1명, 우즈베키스탄 1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연령은 20대 중반~30대 초중반이 가장 많았으며, 40대 3명, 50대 1명이었다.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결혼이민비자 소지자가 8명, 영주자격 체류자가 2명, 혼인귀화자가 5명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가 7명, 이혼/사별이 7명이었으며 현재 소송중인 참여자도 1명 있었다.

<표 V-1> 결혼이주민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출신국	거주지	혼인상태	체류현황
면접자1	남	51	네팔	서울	기혼	결혼이민자격 체류
면접자2	여	45	중국	서울	이혼후재혼	결혼이민자격 체류
면접자3	여	36	일본	서울	기혼	영주자격 체류
면접자4	여	29	베트남	서울	이혼소송중	혼인귀화
면접자5	여	26	캄보디아	서울	이혼	결혼이민자격 체류
면접자6	여	39	베트남	서울	이혼	결혼이민자격 체류
면접자7	여	29	베트남	서울	이혼	혼인귀화
면접자8	여	36	우즈베키스탄	서울	이혼	영주자격 체류
면접자9	여	32	중국	서울	기혼	혼인귀화
면접자10	여	43	캄보디아	경기	사별	결혼이민자격 체류
면접자11	여	35	캄보디아	경기	기혼	혼인귀화
면접자12	남	46	방글라데시	경기	사별	결혼이민자격
면접자13	여	33	베트남	군포	이혼	결혼이민자격 체류
면접자14	여	28	베트남	수원	이혼	혼인귀화
면접자15	여	27	베트남	대구	기혼	결혼이민자격 체류

2)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참여자는 총 10명이었으며, 민간기관 현장전문가와 공공기관 공무원을 나누어 각각 진행하였다. 민간기관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련업무 담당자, 이주여성지원기관 실무자, 이주여성센터 실무자,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은 출입국관리소 등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 형태로 진행하였다.

2. 심층면접 조사결과

가. 결혼이주민

1) 체류기간 연장 및 영주자격, 국적취득 과정에서의 어려움

(1) 체류기간 연장과정 경험에서의 어려움

① 배우자(남편)의 비협조로 인한 체류자격 유지 문제 발생

결혼이주민들은 체류자격 연장과정에 있어 배우자(주로 남편)의 비협조로 체류 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배우자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체류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남편의 비협조와 갈등으로 인해 체류연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체류자격 할 적에 남편동의 필요한 게 가장 문제...그거 없었으면 차라리 내가 가서 신청하고 빨리 했을 텐데... 동의들이 필요하니까 가서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면접자 6)

2014~2015년 사이에 끝났어요. 자녀 면접을 할 수 있었는데 한 달에 두 번, 둘째주, 넷째주 주말에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남편이 계속 아이 못보게 하려고 해서 남편도 벌금을 냈어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내려왔지만 남편이 아이를 계속 못 보게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야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체류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013년에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베트남에 잠깐 갔다고 그 이후부터 아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교회 가서 아이를 만났어요. 한번은 아이가 다리 다친 것을 목격하게 돼서 다리 다친 사진을 찍어서 그거가지고 또 체류 연장하고 그랬어요. (면접자 13)

② 빈번한 체류기간 연장과 복잡한 절차에 따른 부담감

결혼이주민들은 기본적으로 2년마다 돌아오는 체류자격 연장기간에 대한 스트레스와 제반 서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도움 주는 사람 역시 혼자 말도 잘 못하는데, 준비할 서류는 너무 많고. 횡수는 2년에 한번에...너무 자주 갔던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출입국 관리소 분위기도 안 좋고. (면접자 8)

한편, 한 연구참여자는 체류연장 기간 신청 시, 반드시 배우자의 동행과 동의 하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을 토로하였다.

그때 연장할 때 항상 남편이 같이 갔어요. 그거 조금 불편했어요. 항상 남편 일해서 좀 휴가 내는 거 좀 어려워 어려워했어요. 신원보증. 남편 꼭 있어야 돼요. 남편 없이 그거 연장할 수... 신원보증서만 받아오면 되잖아요. 꼭 그 사람이 안와도... 회사 일해서 그거 마음대로 휴가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싸울 때 있었어요. 그거 때문에 연장. 매년마다 연장하러 가야 돼요. 남편이 저한테 화를 풀어요. 그렇게. 저 때문에 그렇게 그거 사장님한테 혼났다고. (면접자 9)

③ 4중 苦: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정보부재, 배우자의 비협조, 복잡한 제출자료, 의사소통 어려움

결혼이주민들은 2년마다 돌아오는 체류 연장기간과 신청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체류자격 유지에 대한 정보의 부재, 복잡한 신청서류, 비협조적인 남편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근 10년간 체류를 했으니까 2년에 한번씩...? 5번 정도... 제일 어려운 거는 역시 어떤 소리가 일어나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거, 한번 출입국 관리소에 갔다가 서류가 모자라다고 해서 다시 집에 와서 또 하고...근데 신랑은 싫어하고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 제가 지금만큼은 한국어를 못했으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귀찮아하고 저는 사정을 또 하고. 그리고 남편은 제가 사정하면 될 것은 왜 사정도 안하고 오냐고...그치만 사정도 우리말이 능숙해야 사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니까...(면접자 3)

④ 귀책사유 입증의 어려움

결혼이주민들은 이혼 및 남편 사망 등의 귀책사유 입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입국 후 남편의 사망으로 체류연장 기간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체류 연장할 때 엄청 힘들었어요. 일주일 만나고 결혼했는데, 한국말도 잘 모르고 혼자해서...남편 사망관련 서류 떼는 것도 힘들었어요. 연구생 같은 걸로 5년간 한국에 있다가 다시 캄보디아 갔다가 그리고 결혼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셔서 처음에 체류연장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도와줬어요. (면접자 10)

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따른 두려움

결혼이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불친절한 응대와성의 없는 정보제공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마음을.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마음고생 했고 거기 앉아서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고 그러니까 좀 실례가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마 외국에 나가서 살지도 못했으니까 우리 입장을 이해 못해요. (중략) 너무 직원이 불친절해서... 싫었어요. 거기만 가면 너무 가슴이 쿵광 쿵광... 거기 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류가 안 됐다고 이렇게 다시 오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서류가 모자라 다는 것을 메모 주시는데 글씨도 제대로 안 써주고 응대도 통명스럽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면접자 3)

불친절 하게 하니까 그거랑은 별개로 마음은 무겁고 확실하기만 하면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닌데 불확실한 정보들이 있다. 그거 출입국관리소에서 안 알려줘요? 이런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체류나 영주자격을 할 때 안내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그렇게 한마디로 끝났어요. (면접자 6)

그때는 당황해서 한번은 출입국에서 서류를 잘못 넣었는데 한국에 오래 살았으면서 그 말도 하나 못 알아 들냐고 소리 야단을 막 쳤어요 거기 직원이. (면접자 10)

⑥ 기준이 모호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결혼이주민들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담당기관의 재량에 따라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등 연장허가를 받는 것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2) 영주자격 취득과정에서의 어려움

① 높은 재산기준 및 범죄기준 인정절차의 복잡성

결혼이주민들은 영주자격 취득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인정기준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높은 재산기준과 범죄여부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가족의 협조(남편의 비협조)는 물론 관련 대사관 조회 등을 통해 제출하는 과정의 복잡성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영주자격 취득 할 때, 일단 돈이 있어야 돼서 돈이 없어서 어머님께 돈을 빌려서 3천만 원인가...모자라서 어머님께 돈을 빌려서 통장에 넣고 그걸 증명서 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번거로우셨죠. 그리고 범죄? 제가 예전에 범죄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없는지 서류가 있어야 그거 대사관에서 가서 만들어야 되고...일본 주한 일본 대사관가서 만들고 서류 준비 하시는 게 되게 복잡하고 재산도 증명해야 되는 게 어렵고... 다행히 전 (시) 어머님이 이해하시고 돈을 빌려주셔서 다행이긴 했어요. (면접자 3)

② 국적 취득후 일어날 신분변화에 대한 남편(가족)의 몰이해

결혼이주민들은 가족 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였는데, 영주자격 취득 후 본인이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남편이나 가족들의 우려를 접하며, 이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국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때문에 몇 년 전에 국적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친정 어머니한테 공증 같은거 받으려고 중국에서 서류도 보내주고 한 번 갔다오니깐 다시 엄마한테 공증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빠랑 같이 가야된대” 하니까 안 간대요. 남편이 “왜 그렇게 빨리 국적을 딸라고? 국적 따고 나서 나랑 이혼할거야?” 정말 왜 따야 되냐고 자꾸. 그때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설명해줘도 “영주권이 뭐야?” 계속.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이 아직 없어요. 전에 다 없어져서 지금 새로 2년 뒤에 영주권을 따려고 신청하려구요. (면접자 2)

(3) 국적 취득과정 경험에서의 어려움

① 남편의 비협조로 인한 국적취득의 어려움

결혼이주민들은 배우자들의 비협조로 인해 국적취득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면접자6, 베트남)는 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국적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남편의 비협조와 폭력으로 국적취득에 실패하였으며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다시 남편의 폭력에 노출된 채 쉼터를 전전공공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면접자5, 캄보디아)는 남편이 한국어 습득을 위한 학습기회나 기관방문에 대한 동의조차 해주지 않아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2015년 9월에 이혼했고 결혼생활을 5년...국적 취득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안 해줘요. 그전에 남편과 저 그 싸웠잖아요. 쉼터도 나오고, 가정 폭력 당해서 쉼터에 갔다 왔어요. 여기 한국 와서 그 3개월...3개월 4개월 많이 때리고요... 엄청 때리고요 남편이 많이 때리고요. 또 전화 통역 베트남 통역이 도와 주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가 이혼 안 돼요. 만약에 이혼하면 베트남 보내고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자기 생각에 국적 있으면 도망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적 많이 하고 싶어요. (면접자 6)

국적과 영주권 둘 다... 둘 다 아빠가 아예 뭔지 모르고 안 해줘요. 진짜 서류 같은 것도 다 왔는데 그런데도 같이 안 가준다고. 그렇다면 출입국 사무소에 한 번 가봤는데... 뭐가 빠져가지고 다시 한 번 서류를 달라고하니까. 두 번째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안 간다고...주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실 때 전 남편이 가장 걸림돌...(면접자 2)

내가 국적을 취득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반대했어요). 아예 말도 못 꺼냈어요.

그때는 한국어 배우고 싶어도 학교도 못 가게 했어요. 심지어 선생님도...공부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정부처럼 나를 데리고...(면접자 5)

우리가 국적 취득 하는데 있어서, 남편 동의, 재산 이런 서류 같은 거가 굳이 필요 없지 않아요? 어떤 거 같아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선생님들 국적 취득할 때 혹시 어떻게 국적취득하면 우리 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 돈 필요하다 그러거든. 3천만 원 이상 돈. 그 다음에 남편 동의 필요하고, 저는 돈 생각 못하고 남편만 동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남편이 동의 못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죠. (면접자 13)

②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부담감

결혼이주민들은 국적취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한국어능력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였다.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을 따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이 한국어... 좀 힘들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질문을 잘 이해 못하고, 어려운 의사소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떨리고...처음이어서 떨렸어요. 우리도 좀 어렵고 한국말도 못했었고. 역사에 나온 것 잘 몰라서... 옛날 전쟁 우리 뭐 어떻게 싸웠는지... 그 다음에 그것도 있었고 좀... 의사소통이 좀 이해 뜻이 잘 이해가 안 가서...(면접자 11)

캄보디아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2013년에 신청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총 3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합격한 후에 주민등록증 나왔어요. 2013년에 신청하고 2015년에 받고 3개월 후에 주민등록증이... 2년 걸렸는데 길었죠...(면접자 14)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배우고 나서 국적 신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에 2013년에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많이 공부했는데도 잘 안돼서. 네 지금까지 3번... 잘 안됐어요. (중략) 내년 사회 프로그램 5단계 끝나고 바로 할 예정이에요. 전에는 교육하기 전에 한번 인터뷰했어요. 국적을 왜 받고 싶냐고, 남편도 없는데 왜 받고 싶냐고 그런 것들. (면접자 10)

③ 배우자의 협조와 높은 재산기준 충족의 어려움

결혼이주민들은 영주자격과 마찬가지로 높은 재산기준과 남편의 협조의 필수요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국적 취득 신청 과정에서 어려웠던 거는 남편하고 계속 시간 맞춰야 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거 서류하고 그거 자산증명 서류 같은 것도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 월세 월

세였어요. 그거 3천5백만 원 그거 맞출 수 없었어요. 다시 시아버지 집에 가서 그거 두
째 같은 거 서류 띄우고 나서 다시 갔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친구들 좀 어려운 거 같
아요. 한국에 오고 나서 남편 돈이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어요. 시댁에도 돈이 없고. 3천
만 원 맞추는 거 어려워서. 3천5백만 원? 그때 3천6백 준거 같애. 제가 생각할 때. 그
래서 귀화하고 싶었는데 그거 3천만 원 정도 때문에 자산증명 때문에 귀화할 수 없었
어요. (면접자 9)

제가 지금 국적만 별로 지금도 국적 해가지고 신청해서 취소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은 주민등록 하나 그거를 가지고만 제가 아무리 주민등록만 하나 가진 거지 제가
다른 거는 한국사람 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청자격이 3년 이상이 배우자
비자로 있으면 신청자격이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구요. 돈이 6천만원이 이상 있어야
됩니다. 6천만원도 자기 돈이 있어야 되고요. 제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첫째는 전
세금 그런 거 있어야 되고 은행에 돈도 안 믿어요. 전세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귀화 한다는게 별
로 전엔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제가 취소를 했어요. (면접자 1)

④ 신청 후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결혼이주민들은 국적취득을 신청했지만, 신청 후 얼마나 기다리면 허가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불안하다고 하였다. 특히 신청 후 곧 연락이 갈 것이라
고 출입국사무소에서 말해 주었으나 6개월 이상을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는 경
우도 있고, 전화해 보면 마냥 기다리라고만 한다는 등, 과정상에서 자세한 안내가
부재함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4)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① 남편 및 남편가족의 폭력과 양육부담 전가

결혼이주민들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상습적인 폭행 등으로 인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및 신체적인 폭력에
노출된 결혼이주민도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면접자6, 베트남)는 임신 상태에서
심한 구타를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혼을 하였으나 남편의 재결합 요구로 함
께 살며 여전히 폭력에 노출된 채로 생활하고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면접자2, 중
국)는 남편의 잦은 음주로 인해 언어폭력과 자녀의 학대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
게 된 경험을 토로하였다.

한국 와서 4월 와서 7월에 남편 많이 때리고 임신 모르겠어요. 지금 생리가 안 나와
요...내 생각에 임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병원 데리고 가요. 진짜 임신했어요.

16주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 같이 병원 가고. 또 그 다음에 자주 때리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 한번 나갔어요. 지금 나가서 돈도 없고 친구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 도와주고 모르겠어요. 남편이 자기 친구의 애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때리고 5개월 애기 임신 5개월. 엄청 때리고 엄청 때렸어요. 많이 아프고 많이 때리고 그래서 이주 여성센터에 왔어요. 우리 여기 한국 살아요. 여기 애기도 키워요. 그래서 국적 있으면 애기가 나중에 학교 들어가는데 괜찮은데 하지만 국적 안 만들어 줘요. (면접자 6)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줘요. 시어머님도 남편 많이 무섭다고 무서워해요. 무서워해. 폭력을 휘둘러서...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애기 저 임신 때문에 많이 때리고 그래서 저 못 참아요. 그냥 다문화가족(센터)에 전화 안 하고 그 바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래서 신고하고 경찰 2명 집에 왔어요. (면접자 2)

지금 이혼하고 애 아빠가 권해서 저 같이 살아요. 같이 합쳐서 같이 살아요. 맞고 하고 또 자주 문자 와서 욕하고 맞고 안 해요. 그래서 또 같이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요. (면접자 6)

술 마시고 폭력을 하는 있어서... 욕을 막 하고. 잠을 못자요. 술 먹고 애까지 깨워요 술 먹고 12시, 새벽1시... 잠을 안자고 애까지 깨우고 술 먹으면 두렵고 자다가 깨는 거죠. (면접자 2)

한편, 한 연구참여자(면접자6)의 경우에는 남편이 경제적 책임은 물론 양육책임조차 전가하여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면접자2)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스트레스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남편 가족의 폭력을 당연히 여기는 가족원들의 반응을 경험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민도 있었다.

남편은 마흔여덟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파서 돈 못 벌어요. 남편은... 돈이라도 좀 잘 벌어서 주면 좋을 텐데... 당구장만 가고... 집안일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애들 교육도 잘 안 도와주고... 내가 일... 계속 청소일 다니니깐... (면접자 11)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오히려 남편은 괜찮고 다 이해를 해주는데 시어머니가 “일찍 일찍 오지? 맨날 또 어디를 다녀와! 남편 오기 전에 오지? 밥도 차려놓고” 간섭이 많아서 힘들어요. (면접자 1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 못해서 시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한국말 못해 한국 음식이 잘 그 애기 첫째 애기 낳고 나서 미역국 많이 못 먹었어요. 먹고 나서 입맛이 그

때 좀 안 맞아요. 먹고 나서 토했어요. 시어머니 그거 제가 일부러 안 먹었다고 생각하고 좀 때렸어요. (중략) 남편 그냥 큰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큰시어머니가 미역국 안 먹으니까 맞은 거지 그랬어요.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처럼 음식 먹어야 해요. 남편 누나한테 남편 큰어머니한테 가족한테 남편이 가족한테 얘기할 때 저한테 맞은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9)

②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

결혼이주민들은 배우자와 다른 문화 속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한 연구참여자(면접자3)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에서의 부담과 적대적인 경험을 제시하였다.

결혼하고 주부의 삶을 그것도 다른 나라 남자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나라 중에서도 한국하고 인연을 맺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문화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르기도 하고 약간 또 한국일본은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적대적인... (면접자 3)

③ 자녀양육비 지원과 면접교섭권 행사시 어려움

결혼이주민들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원이나 면접교섭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한 참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일정액의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받았지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등의 폭력으로 인해 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혼하고... 30만원 하지만 적게...5개월 동안 적게 보내고 한 달인가 빼고 계속 5개월 보내고 한 달 빼고 이렇게...아빠 양육비 보내고 안 맞아요. 똑바로 보내주세요 하면... 남편이 막 욕해. 돈 얘기 했다고 욕해. 돈 얘기 했다고 욕해. 애기가 아빠 만나요 하지만.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만나요. 한 달에 두 번...안 가요. 1년에 한번만 가고. 만나면 꼭 싸워. 둘이 안 맞아요. 조금 자기가 나 외국사람 무시하고 얘기 못 키워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면접자 6)

(5) 한국에서의 차별경험

① 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무시

결혼이주민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며 자신들의 출신국을 무시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기관 이용시에도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줄 수 있는 배우자가 동행해야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웃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갔다 오고 나서...거기 가난하다 먹을 거 없다, 그런 소리를

좀 무시하는 소리를 나한테 많이 해서...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면접자 11)

동사무소에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 같은 것들도 좀 떼려고...그런 것들이 다 차별이죠. 너무 짜증나요. 등본은 잘 안 떼어줘요. 가족관계증명서도 본인도 떼 수 있는데 그것도 안돼요. (면접자 2)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결혼 안하고 공부하러 왔는데, 옷가게 한번 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옷인데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이쁘다 그러고 권해주기도 했는데, 제가 물어 봤을 때는 그냥 비싸다.. 이런 말만 했어요. 그거는 그냥 비싸다 너가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슬펐죠.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 같아서.. (면접자 15)

② 결혼이주민이자 노동자로서의 겪는 이중차별

결혼이주민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차별과 무시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남성 결혼이주민들은 노동현장에서의 인권문제와 부당한 차별경험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저는 이제 법·제도들이 제대로 노동자 편에서 별로 없구요. 사업자한테만 많이 있고 노동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 그럴까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하는 게 사회 안에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강제노동이 있구요. 강제노동자분들하고 이주노동자는 인권 노동이 보장이 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많고 인권노동권을 배려안하면서 법·제도를 만드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 자격 변경의 문제. 그 제도에는 모든 권리가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하지 못해서 여러 음 문제들을 겪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문제도 늘어나고 있구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면접자 1)

내가 지금 얼마 한국이라면 제 나이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한국가면 20대 30대들이 별로 반말을 듣는 나이 아니잖아요. 엄청 외국사람한테 반말이 아직 있고. 그런데 어디 가면 깔기 시작하는 게 내가 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한 게 국적이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이런 건 바뀌어야 한다는 게 사무실에서는 뭐 만나서 반말하는데 사무실에서는 이주하고 한국인 조금 똑같이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구요. 이게 엄청 이게 많아요. 엄청 많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뭐 그만큼 한국도 많이 있는 사람 살게 빈부격차가 그런 거 한국사람들이 무시당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주노동자 그래서 이게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고 또 누구나 이주 누구나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무시하면 안 되고... (면접자12)

2) 결혼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한 방안

(1) 체류연장 신청기간 및 재산기준 완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

결혼이주민들은 현행 2년마다 돌아오는 체류연장 신청기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산기준도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 있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전반적인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결혼이주민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체류연장 기한이 너무 짧아요. 2년 말고 3~4년 됐으면 좋고...저는 운 좋게 (시)어머님이 돈 빌려 주셔서 됐었지만, 재산기준도 좀 낮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확실한 정보를 주면서 조금 단순화되면 좋겠어요. 정보 제공 친절한 대응,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면접자 3)

취득 기간이 2년이나 걸렸는데...좀 길었어요. 좀 시간도 더 짧게 졌으면 좋겠어요. 서류는 거의 하나도 못 알았어요. 서류는 엄청 많았어요. 그 서류도 좀 간단해지면 좋겠어요. (면접자 9)

(2) 국적취득 조건 중 한국어능력시험의 난이도 완화

결혼이주민들은 국적취득 과정에서 한국어능력 시험이 어렵다는 경험을 토로하며 이에 대한 난이도 완화를 제시하였다.

다음에 국적 취득할 때, 한국어 문제 너무 어렵게 내지 마시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고 그 특히 역사에 나온 것 잘 몰라요. (면접자 11)

(3)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체류연장 및 국적취득 인정

결혼이주민들은 이혼 및 남편 사망 등의 귀책사유로 입증으로 인한 체류연장과 국적취득의 문제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혼이주민들은 이와 같은 귀책사유 없이 체류연장기간은 물론 국적취득 인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적)취득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예를 들어서 결혼 이주여성이 남편 없이 국적취득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힘들고 집이 힘들어서 돈을 벌어야하는데 그럼 돈버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게 되는데 공부를 못하면 국적 취득도 힘들고 자녀가 없어도 체류연장도 힘들고 이혼하면 연장이 안 되고 이주여성에게 체류문제 같은 것들 관리할 수 있게끔 열심히 살면 해줘야 하지 않을까. (면접자 10)

저는 좀 더 빨리 받았으면 좋겠지만 체류연장을 해보니 연장만 해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저같이 이혼한 사람은 이것저것 심사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길어야하지 않을까요. 예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상이 아니라 본인이 바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 데 현실이 있으니까 쉽게 딱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점이 해결되어야...(면접자 13)

나.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1) 체류기간 연장 및 영주자격 취득, 국적취득 업무에 나타난 문제점

(1) 체류기간 연장 업무상의 문제점

① 담당자 재량에 따른 체류연장기준의 유연성과 매뉴얼 부재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체류기간 연장업무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더불어, 모호한 기준과 매뉴얼 부재로 인해 사례마다의 표준화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체류기간 연장할 때, 그것도 통상 기준이...통상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2년인가 3년인가 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그런 게 있고... 또 짧게 주는 경우는 남편이 한 번 와서 가출신고를 한 경험이 있다든지, 뭐 어쨌든 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있었던 경우, 우리 쪽에 누가 와서 가출신고를 했다든지, 뭐 여자가 남편을 폭력이나 이런 걸로 고소해서 문제가 됐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짧게 주게 되겠죠. 매뉴얼에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을 거예요. 다 있지는 않고... (법무부 공무원)

② 결혼이주민의 자격부족으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 지원의 어려움

결혼이주민의 체류연장을 지원하는 업무담당자들은, 결혼이주민 여성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아동을 악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사례마다 상황이 달라 체류기간 연장을 일괄적으로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제가 지원한 결혼이주민 한 분이 무책임하게 아이 낳고 방임하다가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중풍으로. 그랬더니 애 못 키운다고 이혼해 달라고 해서 이혼을 했더니 이제 이혼하고 나니까 체류권이 없잖아요. 이혼하고 이제 혼인비자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애를 다시 달라고, 애를 줘야지 내가 한국에 거주 할 수 있으니까. 그니까 지금 그 애를 키우고 있는 사촌 고모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애를 너무 방임해서 애를 씻기지도 않아요. (중략)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③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악용으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지원의 어려움

업무담당자들은 체류자격 및 기간 연장 업무에 있어 결혼이주민과 배우자간의 부부갈등 문제와 배우자의 동의조건이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민간기관의 현장기관 업무담당자들은 결혼이주인 여성에 대한 남편의 일방적인 학대와 폭력, 의도적인 이혼, 가출신고를 하게 되어 체류연장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이혼을 하고 애도 뺏어오고 그리고 가출 신고를 해서 아예 한국땅에 발붙일 수 없게 의도적으로 못 오게 그렇게 하면 이 안에 애도 키우고 싶고 사실 이혼 하고 싶지도 않았고 본인은 피해자 인데 귀책사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남편 그쪽 집에 너무 힘이 세니까 한마디로 그냥 쫓겨난 거죠...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두 분 사이에 물론 자녀가 없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남편 측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혼인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내 분한테 이제 경제 활동을 요구해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서 살 수 밖에 없는 직업이라 그 직업자체가 이제 뭐 어디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라 공장에서 취직을 하거나 식당이나 모텔에서 거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보면 저녁에 이제 12시나 1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귀가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래서 남편들도 다 동의를 하세요. (중략) 그러면 별거를 이유로 해서 출입국에 가출신고를 해서 체류자격을 협박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이제 음... 별거일 경우에 이게 배우자 실종이라고 해야 되나 가출... 해서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서 연락이 됐다 안 됐다 경우에도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출입국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이혼을 해야 되지 않냐. 이혼 안 하면 체류연장 못 해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반면,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재량의 여지는 있으나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인의 친연한 대립시 조율이 어려운 점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뭐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혼인파탄자의 결혼 연장이나...아니면 한국에서 2~3년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사실 혼인단절자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이 보통 있어요. 아니면 신고내용,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는 크게 많다고 볼 수는...그런데 극하게 결혼이주여성하고 한국인하고 격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략) 외국인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통역자를 통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남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기주장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재량이란 거는 사실 좀 성실하게 답을 해주는 쪽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재량의 여지, 참 애매한 말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 공무원).

④ 귀책사유로 인한 체류자격 유지의 어려움과 귀책사유 기준의 모호성

업무담당자들은 결혼이주민들이 자녀가 없거나 이혼 귀책사유로 인해 체류연장 시 어려움을 겪는 점, 안정적인 체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 공통적으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즉, 가정해체 과정에서 체류자격 문제로 인해 체류자격 연장 과 영주자격 취득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었다.

이혼을 하면 자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본국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재량인 거죠.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라고 해요. 물론 남편을 귀책사유로 2~3년 봐주겠다. 이런 경우인데 그것도 출입국사무소 재량인 거죠 2~3년 봐주다가 이제 더 이상 네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해야 할 이유를 제공 하라는 거예요. 1~2년 정도는 무난하게 줘요. 귀책사유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 뭐 내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 그니까 한국에서 결혼했고 남편 귀책사유로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2~3년 주지 않았냐, (중략) 충분하지 않냐 보상되지 않았냐. 귀국하세요 하고 체류연장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주여성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반면,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의 경우 귀책사유가 체류자격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기준의 적용이 모호한 점을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자녀유무 여부는...자녀가 있으면 사실 거의 인정을 해주는 편이고요,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없더라도 해주긴 해줍니다. 뭐 자녀가 필수요건은 아닌데, 근데 대신 자녀가 있으면 확실하게 거의 허가 쪽으로 많이 기울고, 어쨌든 두 분 사이에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조금 더 다른 요건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귀책사유는 이걸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뭐 판결문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에 접수된 사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너무 사실관계 자체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리한 것만 설명하기 때문에...한국인도 마찬가지이고 결혼이주민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법무부 공무원).

⑤ 신원보증과 관련된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

업무담당자들은 한국인 배우자(남편)가 신원보증 서류를 제출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고 보고 있었다. 즉, 신원보증 서류를 빌미로 결혼이주민의 체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다.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 서류 제출하는 거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도 지금 현장에서는, 이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남편들이 여전히 그것들을 무기로 사용하기

도 하고 나쁜 경우에는 그걸로 좌지우지…또 출입국에서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이주여성쉼터 업무담당자)

3~4개월 전에 사례 하나가 부부갈등. 일시적인 부부갈등인데, 남편이 핏김에 '신원보증 처리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남편이 같이 동행했음에도 신원보증 처리 하지 않았나 하면서 이제 남편은 끌려간 거예요. 체류연장을 안 해줘요. 신원보증 처리 하지 않았나 왜 그랬냐면서 부부갈등입니다 라고 하면은 부부갈등 어떻게 해결됐냐 하고 그럼 남편은 투덜대잖아요. 억지로 끌려갔으니까 두 분 해결하시고 오라고 체류 연장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⑥ 실효성 없는 면접교섭권과 이로 인한 체류자격 상실 문제

업무담당자들은 결혼이주민이 합의이혼을 통해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더라도, 이혼 후 일방적인 배우자의 거부로 인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제가 지원한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분도 남편하고 계속 면접교섭을 합의 이혼을 해서 이제 그 면접교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는 거죠. 애를 이제 다른 데로 빼돌리고 면접교섭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여성이 이제 계속 연락을 하는데 끝까지 안 보여 줘요. 그러면 애 선물 물론 사다가 보내는 영수증은 있지만 사진이나 양육비 그때는 이혼했을 때 빈손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양육비 지급 능력이 안 돼서 양육비 지금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본인이 뭔가 시작해서 양육비를 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통장 계좌번호도 안주고 안 줘요 안 받는다고. 연락을 받는데 그런 경우에 체류가 만기가 된 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2)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 업무상의 문제점

① 영주자격 취득기준의 불명확성과 기준 적용의 어려움

업무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영주자격 취득기준에 있어서 품행단정, 재산기준, 범죄여부 등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중 품행단정 기준과 범죄여부에 대한 애매한 기준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품행단정 관련해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폭행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범죄기록들을 받아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품행단정에 대해서는…이 부분은 사실 거의 다 인정한다고 보면 돼요.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

고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우리 보고, 가서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갔을 때 우리 보고 갑자기 욕을 한다든지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아까 말했듯이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품행단정을 요건으로 연장을 안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법무부 공무원).

너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심지어 교통질서 위반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형사처벌까지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품행 미 단정 이라고 하면 당신이 이리이러한 그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출입국에 뭐... 이렇게 라인을 거쳐서 좀 대체 뭔지 좀 알려 달라하면 범죄 경력도 없고 깔끔한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품행단정 이게 문제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도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덜 하게 되어야. (이주여성지원센터 실무자)

또한 업무담당자들은 재산기준이 모호하여 결혼이주민들이 체류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재산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입증서류도 받고 실제 이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재산관련 부분은 좀 애매한 게, 입증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끔 일당으로 받는 경우는 통장을 통해서 가기는 하는데 그게 뭐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해서 요건만 맞으면, 뭐 집이 있다든지 월급명세서를 본다든지, 월급명세서가 없는 일용직일 경우에는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법무부 공무원).

② 재량권 행사로 인한 체류연장 및 영주자격 기준 적용의 어려움

민간기관 현장전문가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에 따라 체류연장 기간이 결혼이주민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그렇게 재량권을 가지고 편차가 있는 게 케이스가 일반화가 되기가 다 어려워진 것 같아요. (중략) 출입국에 오면 이게 잠재적으로 이 사람들은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논리가 조금 통하지 않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재량권을 훨씬 줄어줄 수 있는 거죠. 최대치를 기본으로 해버리면 근데 그 최대치를 최소화하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주여성쉼터 업무담당자)

- ③ 국적취득 인정 기준인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충족 못하는 대상에 대한 문제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민의 국적취득 인정 기준에 있어서의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에 있어 자격요건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 제출 안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뭐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학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부 공무원).

2)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1) 체류연장 허가에 대한 연장기간 조정

업무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체류연장 기간 허가와 관련한 연장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할 기관의 재량권의 범주가 크고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일부 현장전문가들은 행정기관에 재량권을 두면서 무조건 연장허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체류기간은 기본으로 하면서 불가항적인 사례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기한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초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1년으로 한정된 건 아닌 것 같구요. (기한이) 3년이긴 한데 주로 1년으로 주는 거예요.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2년도 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다 재량권이에요. 교육 안 받으면 1년, 교육 받으면 2년, 사실은 3년까지 줘도 되는 건데, 저는 애초에 그냥 최대로 처음부터 3년 줘도 되는 거라고 봐요. (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체류연장은 한 2년 정도는 무조건 기본으로 해야 되자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혼인 단절자 체류 연장 허가에 행정기관의 재량권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게 이거를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략) 사람이 재산도 없고 한국어도 미숙하고 이러면 이제 얻어내기가 영주권 얻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러나 선량한 이주민들...남편이 돌아가셨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체류 연장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게 요건을 완화해줘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체류기간을 지금 정도, 뭐 1년 주고 2년, 3년을 주는, 이런 식으로 연장하게 하는 것들. 두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년씩, 3년씩 주기 때문에...기준이 모호해요. 개

인적으로는 차이는 어느 정도는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주여성쉼터 업무담당자)

(2)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체류자격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 인정 필요

업무담당자들은 자녀유무와 귀책사유 없이 체류자격 유지와 영주자격 취득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녀가 없거나 이혼을 한 귀책사유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체류자격 유지와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녀가 없거나 이혼을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는 저는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거나 하는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환해서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저는 자녀유무 귀책사유 관계없이 국내 체류하면 영주자격 신청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약간 선생님이랑 비슷한 얘기는 한데 자녀만 있으면 어쨌든 한국에 거주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갇히 되시는 상황인 거예요. 한국인 아 이들이 있는 게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자녀유무나 귀책사유를 고려하는 것도...필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고려할 요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공무원).

(3) 실효성을 고려한 체류자격 유지와 영주자격 취득인정 여부 검토

특히 다양한 상황에 처한 결혼이주민을 만나온 민간기관 현장전문가들은 사례들마다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철저한 근거서류를 통해 악용소지를 예방하고, 유책사유 적용 전제를 통해 체류자격 유지와 영주자격 취득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걸 이걸 통해서 하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야 체류 연장을 해주겠다, 라는 것이 합당한가. 저는 어저께 사실 소명 서를 하나 써드렸어요 남편 분이 집 나가서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려서 뭐 카톡 온 거 보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애 키워 그래서 소명서에 다 적었어요. 그런 게 있어야 체류 연장을 해주는 건데, 저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저는 항상 악용하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나의 경제 사정 때문에 일부러 이

혼 신고를 하고 가짜로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이게 또 너무 허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주여성쉼터 업무담당자)

(4) 배우자(남편) 신원보증제 등의 동의조건 삭제 필요

업무담당자들은 배우자(남편)의 동의조건이 다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배우자의 신원보증제…인권위 권고로 인해서 없어진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식으로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건데 현장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는…(중략) 어쨌든 과거에는 신원보증서라는 서류를 냈어야 했는데, 그 제출 하는 게 이제 문제다라고 해서 이번에 권고 나오는 거를 법무부가 수용을 한 게 벌써 몇 년 전이거든요. (이주여성지원센터 실무자)

제 생각은 동의, 굳이 남편의 동의까지…고려요건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남편의 동의가 고려요건은 되어야겠지만… 이게 필수요건으로 되어서는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법무부 공무원)

(5) 면접교섭권 인정 증빙서류에 대한 완화 필요

업무담당자들은 결혼이주민들이 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받아 체류자격을 유지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었다. 즉, 결혼이주민들은 면접교섭권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체류유지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실제 서류 준비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면접교섭권을 받아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입증해라 라는 게 체류현장의 조건인데…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렇게 내가 노력은 했으나 결과가 그 배우자 상대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어떤 증빙을 하는 걸로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완화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면접교섭권 증빙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니까 면접교섭을 한 자료를 그 동네 가서 뒤지고 찾아봐라 뭐 이런 그럼 내 생계를 거의 포기하고 거기에 붙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입증하라고 하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6) 영주자격 취득 인정기준 및 절차의 명확성과 기준 완화 필요

업무담당자들은 현재 영주자격 취득에 대한 인정기준에 있어 품행단정, 재산관계입증, 한국어능력시험의 인정절차과정이 모호하면서 인정기준이 엄격한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민간기관 현장전문가들은 ‘품행단정’의 인정기준이 모호한 점과 재산기준 및 한국어능력시험의 인정기준이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주권의 경우 품행단정이 재산관계 입증,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시험, 자녀 유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절차적인 부분인데 개선이 좀 있으면 좋겠다...뭔가 좀 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주여성지원센터 상담원)

저는 이것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꾸준한 수입을 계속 이제 그 통장에 꼭 입금을 해서 기록을 남기시라고 그것도 이제 생계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이게 안내를 하고는 하는데 이제 한국어 외국어도 저희가 이제 공부하세요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그 다음에 재산관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완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녀 유무도 왜냐하면 아이가 없는데 사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지원센터 실무자)

(7) 국적취득 조건의 세부기준의 적절성 검토 필요

업무담당자들은 영주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국적취득 기준을 적절성 검토를 토대로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적취득의 세부조건의 경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시간과 한국어능력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체류권은 영주권을 통해서 안정화 시키되 국적은 조금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이게 또 워낙 정부에서 처음에 발표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하고 있어서. (이주여성지원센터 실무자)

영주권은 조금 쉽게 그리고 빨리 주고 국적취득의 요건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것 같다 그런 의견... (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반면, 세부기준에 있어서는 민간기관 현장전문가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능력시험은 현행 유지를 제시하지만, 법무부 공무원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능력기준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간은 저는 물론 내용은 더 많이 담았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확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아까 그것은 2번하고 연동해서 이 사람들에게만 받게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더 늘린다는 거는 조금…더 물론 3시간보다 더 하면 좋겠지만… 이런 자리가 더 늘어지면 본인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저는 한국어 능력을 그 정도 하려면 사실은 뭔가 일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악순환인 것 같으니까…예를 들어서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대폭 완화를 해준다 라든지 하는 형태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한국어요건은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소통이나 문화를 모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들이 많고…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언어나 이런 부분이 자기 의사표현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부 공무원)

(8)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제공과 인권침해 교육내용 반영 필요

업무담당자들은 결혼이주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결혼이주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교육 커리큘럼의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지금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어떤 특정 국가, 뭐 결혼이민이 많이 오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만 프로그램 이수를 하게 하는데…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그 나라 외국인 여성이 왔을 때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다 하면 좋겠죠. 전체 외국인들이 다 하면 좋은데… 일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국가 여성들의 경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본인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뭐 자기가 다른 방향으로도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됐다면 모르겠는데, 좀 일부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법무부 공무원)

3.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결과 요약

1) 체류자격 유지와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허가기준의 모호성

결혼이주민 당사자는 물론 업무담당자들도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체류 연장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1) 체류자격 유지,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배우자의 비협조로 인한 체류자격의 불안정성과 인권침해

결혼이주민들은 체류자격 기간 연장,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의 관련 과정에서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의 비협조가 실질적인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짧은 체류허가 기간으로 인한 잦은 연장신청과 배우자의 행정절차 과정상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혼이주민들은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협조를 빌미로 가정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2) 체류자격 유지와 영주자격, 국적 취득시 높은 자격요건 장벽

배우자(남편) 등의 동의, 한국어수준, 재산기준 등에서 오는 높은 자격요건이 이들의 체류연장과 영주자격, 국적취득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업무담당자들에게서 국적 취득에 있어서의 기준인 한국어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은 타 기준보다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발견되었다.

(3)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 입증으로 인한 체류자격 유지의 어려움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 입증을 인해 결혼이주민들은 체류자격 유지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혼이주민들은 이혼을 하더라도 자식이 없는 경우 업무 담당자의 재량으로 2~3년을 체류기간을 연장 받지만, 그 이후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없으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체류연장과 영주자격 취득시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었다.

(4) 관할 행정 기관의 문제

결혼이주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현장기관 업무담당자들의 공통적으로 언급한 바, 최일선에서 결혼이주민의 체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의 불친절한 업무태도와 불확실한 정보 제공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들은 결혼이주민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등 업무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시사점

(1)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결혼이주민 당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에 있어 배우자(남편)의 동의조건을 없애거나 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재산기준에 있어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주자격의 경우 국적취득에 비해 언어적 측면에서 낮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활용수준을 영주자격과 국적취득시를 달리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체류자격 유지 및 국적,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에 있어 전반적으로 정확한 정보안내를 토대로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 단축

결혼이주민들은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자격 기간 연장을 2년마다 하는 방안이 있어서의 연장의 필요성의 제시하였다. 실질적인 제시로써, 3-4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관 현장전문가들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행정적인 재량권은 유지하되, 체류기간을 연장(2년→3년)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사례마다 달리 적용되어야 할 유연성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체류기간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4)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 등 체류자격 유지 요건 완화 검토

결혼이주민 당사자들 및 현장기관 업무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체류자격 유지시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 입증과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와 영주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국적취득 요건 기준 강화의 필요성

현장기관 업무담당자들은 영주자격 취득기준에 반해 국적 취득기준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6)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민에 대한 지원강화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적(체류기간 연장 및 영주자격, 국적) 보장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심각한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에 놓여진 문제 개입 및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사례 개입 강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민간기관에서는 사례관리보다는 한국어 교육 및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에 치우쳐진 사업방향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저해요소가 된다.

(7) 행정기관의 원칙적이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결혼이주민 및 현장기관 전문가들은 체류관련 요건이나 절차와 더불어 관할 행정기관의 불친절한 응대를 큰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불확실하고 성의 없는 정보제공과 사례마다 달리 적용되는 일관성 없는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할 행정기관의 수요자의 욕구에 근거한 행정 처리와 더불어, 결혼이주민들의 체류기간 연장과 영주자격, 국적취득 과정에서 보다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2.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가.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 필요

1) 현황

결혼이주민의 입국시 체류자격 및 현재 체류자격은 결혼이민비자(F6, F-2-1) 소지자가 가장 많았으며(42.4%, 55.9%), 응답자의 76.1%가 체류 연장경험이 있었다. 평균 체류연장 횟수는 약 2.7회였고 체류연장 기한은 22.8개월이었다.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 평균 취득시한은 15.7개월이었으며, 혼인귀화자의 경우 23.6개월로 비교적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었다.

결혼이주민의 약 50% 체류연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주요 이유로는 한국어가 미숙하고(17.2%) 체류인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13.2%), 체류연장 관련 정보와 방법을 잘 몰라서(9.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 비자 소지자의 60.3%가 체류연장이나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을 통해 향후 한국에 체류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이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 수 없는 환경’(35.3%)을 꼽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미숙(31.8%), 재산기준 미충족(16.7%), 국내 거주기한 미충족(13.6%), 남편 및 가족의 비협조(12.1%) 순이었다.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 결혼이주민들은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해체를 고려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상 어려움이나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하여 불만족스러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민이 국내 체류자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혼인상태여야 하고, 혼인 파탄 시에는 배우자(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비양육권자라도 면접교섭권 행사를 입증해야 체류자격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민의 체류연장 과정에서도 결혼이주민들은 남편 및 남편가족의 도움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었다(73.6%). 즉 결혼이주민들은 남편이나 남편 가족의 협조 여부나 범위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가 확보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므로 불만족스러운 혼인관계나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혼인파탄 과정이나 이후에도 배우자의 귀책사유나 자녀양육 유무,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등을 입증해야 체류자격 유지가 가능하므로, 결론적으로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남편 가족에 따른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종속적 상황을 전제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2) 정책제언

현재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은 남편 및 남편가족의 협조 여부 및 범위에 따라 그 안정성이 종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체류인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시 정부의 재량권이 크므로, 현행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유지 및 연장 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결혼이주민의 최초 입국 시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국적법 시행령 규정을 폐지한다.
- 결혼이주민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시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 미만으로 체류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결혼이주민의 예측가능성과 알권리를 보호한다.
- 국적법상 간이귀화 신청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을 보유하는 등의 재정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결혼이주민의 현실에 맞추어 완화하고, 결혼이민 초청시 국민인 배우자의 재정요건 신설 규정이 시행된 2014.4.1. 이전에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혼이주민에 대하여는 간이귀화 요건에 재정능력요건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특히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당사자 정책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체류자격 요건의 완화(38.4%) 및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상관없는 체류자격 유지’(31.4%)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체류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정책적 욕구가 가장 높으므로(33.1%), 혼인상태 유지나 배우자 귀책사유 입증, 자녀양육 유무,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를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유지의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요건에서 결혼이주민에게 ‘귀책사유 없을 것’을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책임을 지우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되, 규정 개정 전까지는 ‘결혼이주민의 주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결혼이주민에게 귀책사유 없을 것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 혼인단절된 결혼이주민 중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결혼이주민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간이귀화신청 대상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간이귀화의 요건으로 2년의 국내거주 요건을 일률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국적 취득 시 까지 결혼이주민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을 한국인 남편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국내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재정비한다.
- 현재는 귀화허가의 심사기한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아, 결혼이주민이 귀화를 신청한 후에도 수년간을 불안정한 외국인의 지위에서 체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심사기한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나. 체류연장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절차상 어려움에 대한 대응 필요

1) 현황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약 50%,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에는 약 42%, 혼인귀화자의 경우 약 48%가 체류연장/영주자격/국적 취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주요 이유로는 관련 정보와 방법을 모르는데서 오는 어려움, 한국어 미숙, 담당기관 직원의 까다로운 태도가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꼽혔다.

체류 과정에서는 남편 및 남편가족의 도움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73.6%), 누구에게도 도움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5%였다. 또한 체류자격 연장절차에 대해서도 37.4%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주자격 체류자 역시 남편 및 남편가족의 도움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57.1%), 누구에게도 도움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11.9%였다. 혼인귀화자도 남편 및 남편가족의 도움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69.5%), 누구에게도 도움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5.1%나 되었다.

즉 체류연장, 영주자격 및 국적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거나, 체류연장 절차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로 나타났으므로, 결혼이주민의 체류연장 및 영주자격/국적 취득 과정과 절차상 지원과 대응이 요구된다.

2) 정책제언

체류연장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체류연장 및 영주자격/국적취득 과정에서 결혼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지원서비스

제공확대, 체류연장 방법 등 정보취득에 대한 보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수립, 담당직원의 결혼이주민 대응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 현재 체류연장 및 영주자격/국적취득 과정에서 결혼이주민들을 절차상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이민자네트워크’ 등을 통한 (이중언어)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자원봉사단의 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의 욕구에 따른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주요 행정기관에 이중언어가 가능한 행정지원 가이드 및 인력을 확보하여, 결혼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체류연장 및 영주자격/국적취득 심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 차별을 느끼는 행동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의 실시와, 면접관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결혼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

1) 현황

조사결과 결혼이주민의 절반 가까이(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적 폭력,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폭력 위협의 경험 빈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높은 발생 빈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는 응답한 비율이 31.7%에 달했다. 그 이유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거나 도움 요청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결혼이주민 관련 주요 사회서비스에 인지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미인지 비율도 약 30%에 달했다. 특히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자격 체류자나 혼인귀화자에 비해 인식 수준이나 실제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민의 심리정서적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언어 및 사회적 장벽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감, 차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이 당면한 폭력피해, 차별과 불안 등을 완화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언

현재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수립, 운영되고는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 구제 및 예방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1차 피해자 지원 기관인 1577-1588 다누리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폭력 피해시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민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이주여성을 위한 피해자 쉼터에 대한 확충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민의 언어사회적 장벽감, 불안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욕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결혼이주민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선주민 교육이나 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폭력피해 여성 쉼터 입소시 자녀동반 피해자의 경우 입소 자격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결혼이주민이 경험하는 차별 완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선주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되어야 한다.

라. 혼인단절/가정해체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1) 현황

혼인단절 및 가정해체 상태인 결혼이주민들이 혼인상태 유지 결혼이주민에 비해 가정폭력 경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유지 결혼이주민에 비해 상태인 결혼이주민이 건강상태나 한국생활만족도가 낮았다.

가정해체 과정에서 결혼이주민들은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63.0%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남편 및 남편 가족의 방해로 인해 체류연장이 어려워(19.6%),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이나 면접교섭권 행사 등 체류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워(17.4%)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류연장 과정에서도 혼인유지 상태의 결혼이주민에 비해 남편 및 남편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비율이 더욱 높았다(14.5%).

가정해체 결혼이주민의 경우 혼인유지 상태의 결혼이주민에 비해 남편이나 가족의 협조 여부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에 따른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류안정성을 더욱 크게 위협받는 여건에 놓여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해체 상황의 결혼이주민 지원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 정책제언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가정해체 상태에 있는 결혼이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자녀’가 있을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어, 무자녀인 가정해체상태(한부모) 결혼이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시에도 무자녀 결혼이주민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민들이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 수 없는 환경’으로 한국어 미숙, 재산기준 미충족, 남편 및 가족의 비협조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제시했는데, 한부모 결혼이주민의 경우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여건이므로 한국어를 습득할 교육시간 확보가 충분치 않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영주자격이나 국적취득 위한 재산기준 충족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무자녀 결혼이주민의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부모 결혼이주민의 경우에는 영주자격/국적취득을 위한 한국어 활용수준 및 재산 기준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

마. 정책대상자 및 행정서비스 수요자로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식전환

1) 현황

정부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와 민간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결혼이주민관련 지원기관) 업무담당자 조사결과 두 집단 간 결혼이주민 체류와 관련해 인권침해의 심각성, 체류현황 및 위협 요인 등에 대해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정부기관 업무담당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가기간 한정, 결혼이주민의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 및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입증서류제출, 품행단정 요건 구비 등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아, 결혼이주민을 특정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기관 업무담당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 및 이에 따른 결혼이주민 정책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는 결혼이주민의 인권침해와 안정적인 체류보장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결혼이주민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자 권리의 주체로써 전제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2) 정책제언

결혼이주민을 ‘관리 대상’이 아닌 정책 대상이자 행정 수요자로서 전제하고, 공공서비스 대상자로서 그들의 현황과 욕구에 대응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주민의 경우, 다른 이주민과 달리 국내 입국 목적이 혼인 및 이에 따른 자녀출산/양육이며 추후 영속적인 국내 체류가 예측되므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정책적 당위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결혼이주민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통합적인 방향으로의 정책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결혼이주민 체류관리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매뉴얼에 근거해 체류자격 심사시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정부기관(업무담당자)의 재량권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2.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가.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안

1) 결혼이주민의 최초 입국 시 신원보증 제도 폐지

(1) 현황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던 조항은 2011년 폐지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 및 [별표5의2]에서는 결혼이주민이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원보증제도는 체류기간 연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부부관계를 막고,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내린 결정내용에 따르면 “신원보증서는 피용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정한 신원보증법에 따른 것으로 이를 국제결혼가정에 적용하면 국가는 사용자, 한국인 배우자는 중간 관리자, 결혼이민여성은 피용자가 되는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

고 지적한 바 있으며 실제로 결혼이주민들은 여전히 신원보증을 빌미로 배우자로 부터 협박을 경험하고 있다.

(2) 개선안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 및 [별표5의2]에 규정된 신원 보증서의 제출의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2) 간이귀화의 국내거주 요건 및 귀화허가 심사 기한 검토

(1) 현황

기존 국적법은 외국인이 국민과 혼인을 함으로써 곧바로 혼인귀화를 허가하였으나, 위장결혼이나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되는 일이 증가하면서 현행 국적법에서는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제도’가 폐지되고, 간이귀화에 의하여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2년 유예의 간이귀화 요건을 규정한 것은 위법한 행위를 하는 소수를 규제하기 위해 선량한 다수의 결혼이주민의 인권과 삶을 제약하는 것으로, 국적 취득 시까지 결혼이주민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을 한국인 남편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⁵⁴⁾

간이귀화와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귀화신청 후 귀화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기한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고, 심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결혼이주민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2017.11. 법무부가 공개한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혼인 귀화 이주민의 경우 현재 2016.4. 이전에 접수된 건에 관하여 심사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신청 후 이미 1년 7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한 결혼이주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있는 혼인귀화 이주민의 경우도 1년이 넘도록 귀화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54) 박승용,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측면 고찰’, 한국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118쪽.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2017년 11월 현재

유형별	심사 중 (年, 月)	내 용	소요 기간
혼인귀화 (유자녀)	2016. 12. 이전 접수건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	11개월 이상
혼인귀화 (무자녀)	2016. 4. 이전 접수건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없음)	19개월 이상

현실이 이와 같다면 결혼이주민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상 정한 2년의 체류요건을 충족해야할 뿐 아니라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 다시 최소 1~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총 4년 이상의 체류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결국 결혼이주민은 한국에 정착하여 생활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면서도 4년 이상을 불안정한 외국인의 신분으로 있게 되며, 동시에 국민과의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비로소 국민으로서의 법적 정체성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혼인상태에서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주민이라도 허가여부가 확정되는 1~2년 사이에 이혼 등으로 혼인이 단절되었다면, 귀화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2) 개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이귀화의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귀화 허가 업무의 신속성과 결혼이주민의 체류안정성, 귀화를 신청한 결혼이주민 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결혼이주민에게 인정되는 체류기간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득 시에 1년(해피스타트 이수시 2년)으로 매우 짧으며 이후 체류연장도 2년 이하의 기간에서 재량으로 인정되고 있어, 결혼이주민이 간이귀화의 체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 이상의 체류연장을 거쳐야만 한다.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결혼이주민이 간이귀화허가를 획득하기 까지는 4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므로, 최초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체

류기간 상한인 3년으로 부여하고, 나아가 연장 시에도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을 3년으로 허가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류기간을 3년 미만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도록 하여, 신청권자인 결혼이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결혼이주민이 국민이 배우자와의 관계에만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법적 주체성을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의 간이귀화 및 체류연장 문제

- 체류기간 연장 및 간이귀화 신청 시 ‘귀책사유 없을 것’을 요구에 대한 개선조치

(1) 현황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간이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과 ‘국적법’상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에 따라,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사람은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혼인단절에 국민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도 결혼이주민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잔여 체류기간을 채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간이귀화를 인정하고 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제2항에서는 결혼이주민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제시된 대부분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들이다⁵⁵⁾.

그러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를 곧바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라고 새기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으며 결혼이주민에게 명백히 불리한 해석이다. 여전히 외국인의 신분으로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열악한 결혼이주민으로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의 연장 및 국적이 부여되는 바, 법무부장관의 재량이라는 조건이 모호하여 문제가 된다.

한편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2017)’은 특칙을 두어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

55)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나 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나 출국사실증명원,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확인한 확인서,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가 작성한 확인서,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한 경우라도 그 외국인이 국민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이는 일응 결혼이주민의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특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혼 파탄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결혼이주민에게까지 국민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체류를 허가해 주는 취지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2) 개선안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혹은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문언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⁵⁶⁾로 구체화 하는 방안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두 사람의 결합인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데에는 어느 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드문데도 현행 체류 및 국적관련 법제는 외국인인 결혼이주민에게는 결혼 파탄에 전혀 책임이 없어야 하는 듯이 규정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결혼이주민의 권리보장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채워 간이귀화가 가능하도록 법 문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의 복수국적 불인정 폐지

(1) 현황

혼인단절 결혼이주민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혼인 지속중인 결혼이주민과는 달리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제10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한 경우에 제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단절된 결혼이주민에게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결혼여부에 따른 차별이며, 동일하게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결혼이주민이 원국적을 보유할 권리를 이유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차별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56) 김상찬, 김유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43, 340쪽.

(2) 개선안

현행 ‘국적법’상으로 간이귀화가 가능한 결혼이주민이라면 제한적 복수국적 취득을 동일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 면접교섭권만 가진 결혼이주민의 체류 및 국적취득 요건 완화

(1) 현황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에는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결혼이주민에게 자녀 양육자(F-6-2)로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출입국 관리의 지침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정으로, 사실상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위의 특칙은 면접교섭권이 있더라도 제한, 배제된 경우나,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에는 체류를 불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 측에서 결혼이주민이 자녀를 만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거나 방해하여 체류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 체류허가를 인정하는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만으로 정하고 있어 문제된다. 즉, 결혼이주민은 국민의 배우자(특히, 아내)나 국민의 부모(특히, 엄마)로서만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둔 이주민으로서의 주체성과 권리는 무시된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결혼이주민을 도구화, 기능화하여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므로 문제가 된다. 또한 면접교섭권만 보유한 결혼이주민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결혼이주민과 달리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⁵⁷⁾.

(2) 개선안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자녀양육권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혼인 중에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7) 이무선, 위의 글, 17쪽.

4) 간이귀화 및 영주자격 변경허가의 요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

- 귀화 및 영주자격 취득시 ‘품행단정’을 요건에 대한 개선조치 필요

(1) 현황

현행 ‘국적법’상 귀화의 요건(제5조 및 제6조)과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에 따르면 귀화 및 영주자격(F-5)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품행단정’이라는 요건은 그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예측가능성이 없는 등 재량이 남용될 여지가 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2년 ‘품행단정’의 상세한 기준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구체적인 규정을 법령 등에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모호한 요건으로 인해 결혼이주민 등 외국인들은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어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자신의 기본권 침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2) 개선안

품행단정 요건은 폐지되거나 품행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에 따른 귀화여부 결정에 대한 국적법 시행규칙 재고

(1) 현황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목의 나. 에 의하면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결혼이주민은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나,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증명사항서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결혼이주민 중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 이주하여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2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3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스스로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국적취득에 있어 한국인 배우자가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또는 국적취득을 빌미로 학대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결혼이주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한편 2013. 10. 10. 일부개정되기 전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결혼이

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 초청인(국민인 배우자)의 소득 관련 요건 등에 관하여 심사·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재산이 3천만원 이상에 달하지 않는 초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민도 결혼사증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국적법 시행규칙’은 간이귀화 신청에 있어 3천만원 이상의 재산 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미 2013. 10. 이전에 국내에 정상적으로 입국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재산이 3천만원에 달하지 않는 결혼이주민은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번 결혼이주민 실태조사에 접수된 응답에 따르면, 향후 국적취득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의 35.3%가 ‘요건을 갖추 수 없어서’라고 답하였다. 또한 국적취득요건 미비에 관하여 ‘재산기준 미충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16.7%로 두 번째로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도 연구용역보고로 발표한 ‘제조업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히 여성이주자들은 임금이 매우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이 드러난다. ‘결혼이주여성 상당수가 경제력이 없는 남편과 결혼해 고생하는데, 남편의 경제적 무능 때문에 국적을 주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⁵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 개선안

현행 국적법상 간이귀화의 요건은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결혼이주민의 국적취득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은 재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목의 나. 의 소득요건은 그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고 특히 2013. 10. 이전에 결혼이민 사증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에게는 적용을 배제, 또는 그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사실상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결혼이주민이 일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 의지만 있어도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 귀화심사과정에서 면접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

(1) 현황

결혼이주민이 귀화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하면 국적법 시행령 제4조에서

58) 세계일보, “돈 없으면 귀화 NO… 3천만원이 없어서”. 2013. 7. 4.

정한 바에 따라 신청자에 대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귀화허가가 불허되므로(동조 제5항 2호) 면접심사는 귀화를 원하는 결혼이주민에게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귀화심사는 물론 체류연장/영주허가 심사를 경험한 결혼이주민들이 심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 차별을 느끼게 하는 행동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2) 개선안

면접관의 자격심사 및 인권,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5) 가정폭력피해자인 결혼이주민에 대한 보호문제

(1) 현황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 특칙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어서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에 있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2) 개선안

한국인 배우자 측에서 협의이혼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체류를 보장하거나 협의이혼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 등에 관해 명문화시켜 구제할 필요가 있다.

나.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개선안

1) 국제결혼 중개업에 재검토 필요

결혼이주민이 사실상의 매매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이며, 이의 규제를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은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로부터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위 법률은 부정한 방법이나 속임수로 대상자를 모집·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표현이 애매하다는 점과 피해자 보호나 처벌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또한 결혼중개업자에게 중개결혼과 관련하여 서면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지 중개업자와 이루어지는 결혼이주민과의 결혼중개계약을 규

제하는데 있어 위 조항을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그 예로써, 피해여성이 본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국비용을 지원하고, 국내 체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규정의 신설, 그리고 생계를 보장하는 피해자 보호조항을 위 법률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결혼 지원금 제도’는 사실상의 매매혼을 지원하는 반인권적 제도인바, 조속한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대만의 예와 같이 영리적인 국제결혼중개업을 금지하여 속성결혼의 방식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민에 대한 보호 필요

실제 결혼이주민들이 국제결혼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점은 가정폭력이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가정폭력은 비단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입증이 어려운 협의이혼 강요, 낙태강요, 악의적 유기, 인격모독, 언어적·심리적 폭력, 경제적 착취 등 무형적 가정폭력의 경우도 포함된다. 국내법은 이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법제도와 법무부의 업무관행은 결혼이주민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려면 심각한 정도의 폭력을 상습적으로 겪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해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 결혼이주민은 한국인 배우자의 교묘한 방식의 폭력과 협의이혼의 요구에 굴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상 명문규정을 통해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체류보장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부여, 법률구조,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의 부여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⁵⁹⁾

3)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개선

결혼이주민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지원 법률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으나, 이 역시 ‘합법’적 체류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

59) 김상찬·김유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43권 (2011. 8.), 335면.

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민만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주민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체류 연장이나 국적 신청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는 경우, 결혼이주민은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 경우 결혼이주민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배제되어 더 이상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등(제2조)과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전제하고 있어(제2조 제1항 나목)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다른 나라 출신 외국인간의 혼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가족을 이루게 된 원인으로 혼인만을 인정하고 있어, 입양과 결혼이주민이 수반하는 가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사실혼에 이르지 못한 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의 그 자녀, 자녀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의 사실혼 배우자, 한국국적의 혼혈인 가족 등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체류자격'이 합법인지 여부를 기준에 두고 정착지원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다면,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고 초과체류 상태가 된 결혼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도 위 법률의 보호 내지 지원대상이 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역시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 두 개의 법률이 사실상 같다고 보아 중복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바, 두 법을 통합하여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재한외국인의 권리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⁶⁰⁾

'다문화가족지원법'과 함께 결혼이주민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합법적 체류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이 본인의 주된 귀책사유 없이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5조는 재한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60) 송서순, 결혼이주민의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6호(2009), 315면.

대하여는 획일적으로 위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 규정에 대하여는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에 있어 지나치게 단기로 제한하였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⁶¹⁾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경우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각종 행정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원대상을 한정할 경우 출산 및 건강, 기타 이주당사자의 주된 귀책사유 없이 생계활동을 중단한 이주자, 특히 가사노동 및 양육, 노부모보양 등을 담당하는 결혼이주민,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미등록 결혼이주민 등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주기간제한이나 생계활동종사 조건은 조속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4) 혼인단절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필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사회보험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결혼이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지위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양육자 지위에서 일반 노동이주 여성과는 달리 지원혜택을 다소 폭넓게 받고 있다. 그러나 위 지원을 받는 결혼이주민은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이 적용대상자를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인단절자 중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 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대하여는 2012. 12. 6.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가 있었으므로 조속한 개정을 통해 혼인관계가 단절된 결혼이주민에 대하여도 지원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1) 이승우,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9), 226면.

참고문헌

- Marilyn Achiron(2005), “국적과 무국적: 국회의원을 위한 편람”,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의회연맹(IPU)
- 강현숙 외(2012), “문화주체로서의 이주민 지원 정책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 결혼이주민의 체류권보장을 위한 연대모임(2011), ‘결혼이주민의 체류권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구인회 외(2009),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2호, 126-150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분야 결정례집(2006~2011)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5집(2012)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6집(2013)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7집(2014)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8집(2015)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9집(2016)
- 국회인권포럼(2013),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김남진(2013),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에 관한 법제연구”, 전남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두년(2013),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법학연구, 제49권, 한국법학회, 325-347
- _____(2014), 대만의 국제결혼과 결혼중개업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6권, 95-117
- 김민정(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9권 제3호, 1-28
- 김상찬·김유정(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43권, 319-344

- 김안나 외(2012),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국제비교 및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통합연구소, 법무부
- 김병곤·김민수(2015), “이주민 시민권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의 한계와 대안”, 평화연구, 제23권 제1호, 295-328
- 김이선(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10-02, 여성가족부
- 김은정(2013).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가 겪는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 다문화가족포럼 토론회 자료집, 여성가족부
- 김이선·이아름·이은아(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양상과 정책 수요 분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연구보고서-21
- 김이선·이아름·황정미(2014),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연계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연구보고서-8
- 김이선·정해숙·이진숙(2015),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연구보고서-13
- 김지영·최훈석(201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제42권 제2호, 36-71
- _____(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기초연구: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05
- 김현미·김민정·김정선(2008), “‘안전한 결혼이주’: 몽골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제24권 제1호
- 김환학 외(2014), “결혼이민(F-6) 체류관리 개선연구”, 한국이민법학회, 법무부
- 문경연(2011),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과 이혼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44권 제2호, 71-112

- 문중흙(2016), “출입국관리법 해석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의 보호”
사법논집 제60집, 91-204
- 문홍안(2013),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비판적 검토”, 한국
가족법학회
- 박귀천·이유봉(2012),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인노
동자,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
원, 2012-14
- 박민희·양숙자(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한국보건
간호학회지, 제26권 제3호, 518-531
- 박승용(2014),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측면 고찰”, 한국정책
연구, 제14권 제2호, 107-130
- 법무부 외(2016),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08-2012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_____,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_____,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법무부(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12월호
- 변화순 외 4인(2008),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개선방
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소라미(2012), “이주민에 대한 귀화·영주 제도의 변천과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에 대한 검토”, 영주자격전치주의 토론회 자료집
- 손의성(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개발 연구”, 한국가족
복지학, 제38권, 169-199
- 송서순(2009), “결혼이주민의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6호,
289-320
- 심승우(2013), “이주민의 증가와 국적 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

총 제35집 제1호, 175-205

안진(2013), “결혼이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일고찰”, 법학
논총, 제30집 제1호, 41-74

안창혜(2016),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페미니즘 연구, 제16권 제2호,
93-132

양혜우(2016), [소수자의 눈으로 한국사회를 본다 ②] “이주자의 시민권을 민
주화하기”, 창작과비평, 제44권 제2호, 512-529

오윤수(2017), “이주외국인의 사회권 기반으로서의 시민권과 인권 그리고 분
배정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117-132

오정은·김경미·송석원(2014), “대한민국 귀화적격심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혼인귀화적격심사를 중심으로”,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
서 No.2014-04

오정은·박세미(2015), “외국인 장기체류 허가를 위한 자산요건 연구”, IOM이
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2015-01

윤덕경·김이선·박복순(2009),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
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09-33, 여성부

이다혜(2014), “시민권과 이주노동”,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195-243

이무선(2014), “인권차원에서의 결혼이주여성 보호법제의 재정비 방안”, 법학
논총 제32집, 131-159

이승우(2009),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 215-238

이연옥(2016),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다
문화콘텐츠연구 제21권, 7-42

이완수 외(2015),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연구”, 청소년
희망재단, 서울특별시

이용재(2012). “결혼이주여성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고찰”, 다문화와 인간,
제1권 제2호, 235-268

이창규(2013), “혼인이주여성의 이혼에 대한 법적 고찰”, 경희법학, 제48권

제3호

- 이해경(2015),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47호
- 임수진·오수성·한규석(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심리 학회지: 여성, 제14권 제4호, 515-528
- 임영수(2015). “국제혼인에 대한 재판상의 대응과 그 가정의 해체에 따른 문제”, 법학논총, 제27권 제3호, 221-256
- 임혁·남일재(2014). “결혼이주여성의 정치참여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8권 제5호, 43-65
- 장명선(2010), 『글로벌아시아의 이주와 젠더』, 한울아카데미
- 전점구·최상진·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 - 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6권 제1호, 59-76
- 정기선 외(2012), “2012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 정기선 외(2016),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체계 및 항목연구”,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 정순둘(2016),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본 OECD 각국의 교육체계 비교”, 입법과 정책,
- 정해숙 외(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 조동기(2015), “인권체제와 이주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4호, 353-370
- 조영희 편(2013), “아시아 내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4
- _____ (2015), “동남아시아 주요 송출국에서 귀환 및 재통합 문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IOM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No.2015-05
- 주정(2015), “탈가정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사례를 통한 실태와 문제점의

- 방안”, 사회복지경영연구, 제2권 제2호, p.125, 18
- 지은진·최지명·김교현·권선중·박은진·이민규(201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7권 제1호, 243-252
-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2016), 「2015년 출입국외국인 통계연보」
 _____(2016), 「2016년 12월 통계연보」
- 최봉경(2010), “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2호
- 최서리·이창원·김웅기·정혜진(2014), “국제비교를 통한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2014-03
- 최윤철·카이 하일브로너(2003), “출입국통제에 관한 국제법적인 문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집 1호(2003)
- 최혜지·이은정·김정환·홍기원(2012)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염(2006), “한국결혼이주여성의 인권현황과 과제”,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_____(2011), “결혼이민자 가정의 실태와 자녀문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이민법학회(2014), “결혼이민(F-6) 체류관리 개선연구”
- 허오영숙(2013),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지원: 송금, 가족초청, 물품제공』, 한울
- _____ (2014),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에스닉(ethnic) 노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3권 제2호
- _____ (2016),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정책 제언: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형근혜(2011),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권리 비교 연구”, 인권복지연구 9,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황정미(2011),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제27권 제4호, 111-143

- _____(2012). “다문화 사회와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 아시아여성연구, 제51권 제2호, 103-142
- _____(2014), “초국적 이주와 시민권의 재조정”, 아세아연구, 제57권 제2호, 228-257

*

부록

1. 결혼이주민 대상 설문조사지
2.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지

※부록1. 결혼이주민 대상 설문조사지

○ 한국어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 태 조 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시간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의 일환으로써, 결혼이주민의 인권실태 파악을 통해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설문은 결혼이주민의 인권실태에 대한 통계마련과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신 대로 답해주시고, 다소 불편하고 귀찮으시더라도 각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설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 연구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 연구책임자 : 김은정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설문 응답 방법>

- 해당되는 번호를 적거나 빈칸에 ✓를 표시하고 괄호 안에는 구체적 답변을 써 주십시오.
-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올해 나이는 몇 살입니까? _____ 세 (년생)
2. 귀하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 1) 한국 ☐ 2) 외국 (국가명:)
3. 귀하의 현재 국적은 어디입니까?
☐ 1) 한국 ☐ 2) 외국 (국가명:)
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1) 무학 ☐ 2) 초등학교 ☐ 3) 중학교 ☐ 4) 고등학교
☐ 5) 전문대학 ☐ 6) 대학교 ☐ 7) 대학원 이상
5. 귀하가 학교 교육을 받은 기간은 총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부터) 년
6. 귀하의 혼인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기혼 ☐ 2) 이혼 ☐ 3) 별거
☐ 4) 사별 ☐ 5) 사실혼(동거) ☐ 6) 기타 ()
7. 귀하가 현재 남편과 실제로 동거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법적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_____ 년 개월
8.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도 시 구(군)
9.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 1) 단독주택 ☐ 2) 아파트 ☐ 3) 빌라
☐ 4)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내 주택 ☐ 5) 오피스텔
☐ 6)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 7)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 8) 원룸 ☐ 9) 기타 ()

10. 귀하는 현재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 1) 없다 ☐ 2) 있다 (구체적으로 _____)

11. 귀하는 과거에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 1) 없다 ☐ 2) 있다 (구체적으로 _____)

12. 귀하의 현재 개인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1) 소득없음 ☐ 2) 50만원 미만 ☐ 3) 50만원~100만원 미만
☐ 3) 100만원~150만원 미만 ☐ 4) 150만원~200만원 미만
☐ 5) 200만원~3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

13. 현재 귀하의 경제생활 수준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나쁘다 ☐ 2) 나쁜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비교적 좋다 ☐ 5) 매우 좋다

14. 현재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합니까?

☐ 1) 매우 나쁘다 ☐ 2) 나쁜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비교적 좋다 ☐ 5) 매우 좋다

15. 귀하의 실제 한국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총 _____년 _____개월

(국내입국 후 거주기간 ____년 ____개월 + 혼인후 거주기간 ____년 ____개월)

16. 귀하의 한국어 수준은 다음 중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 1)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 2)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은 못한다
☐ 3) 간단한 자기소개, 안부인사가 가능하다
☐ 4)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을 정도로 활용한다.
☐ 5) 선주민과 큰 차이 없이 일반적인 업무가 가능할 정도로 능숙하다.

17.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한국에서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 2) 약간 불만족 ☐ 3) 보통
☐ 4) 약간 만족 ☐ 5) 매우 만족

18. 한국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인상은 한국에 오기 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 ☐ 1) 매우 나빠졌다 ☐ 2) 약간 나빠졌다 ☐ 3) 비슷하다
☐ 4) 약간 좋아졌다 ☐ 5) 매우 좋아졌다

II. 다음은 귀하의 한국 거주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위해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때는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여행, 출장, 친척방문 등 단기체류를 위해 입국한 경우 제외)

2. 귀하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① E-9 (비전문취업) ② H-2 (방문취업)
- ③ E-1, E-7 (전문인력) ④ D-2, D-4-1, D-4-7 (유학생)
- ⑤ F-4 (재외동포) ⑥ F-5 (영주, F-5-2(국민의 배우자))
- ⑦ F-6, F-2-1 (결혼이민) ⑧ F-2 (거주)
- ⑨ F-1 (방문동거), F-3 (동반) ⑩ G-1-5, G-1-6, F-2-4 (난민)
- ⑪ 한국 국적 취득 ⑫ 미등록
- ⑬ 기타 ()

▶ 입국 당시 체류자격(비자) _____

▶ 현재 체류자격(비자) _____

ex) 입국당시 체류자격(H-2, 방문취업), 현재 체류자격(F-6, 결혼이민, 미등록) 등

3. 귀하는 체류연장 경험이 있으십니까?

- ☐ 1) 있다 (☞ 3-1번 문항으로) ☐ 2) 없다 (☞ 4번 문항으로)

3-1. 체류연장 경험이 몇 번 있으십니까? 횟수를 적어주세요. () 회

3-2. 귀하가 체류연장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1)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 ☐ 2) 한국어가 서툴러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 ☐ 3) 남편 및 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웠다
- ☐ 4) 체류연장 방법이나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 ☐ 5) 출입국사무소 등 공공기관 직원의 까다로운 태도, 불친절, 무시를 경험했다
- ☐ 6) 체류인정기간이 너무 짧았다
- ☐ 7) 체류연장을 위한 입증자료(증거) 마련이 어려웠다
- ☐ 8) 기타 ()

3-3. 체류연장 과정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1)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 ☐ 2) 남편 및 남편 가족
- ☐ 3) 본국의 가족 및 친구
- ☐ 4)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선주민 친구
- ☐ 5) 법률전문가(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등)
- ☐ 6) 1577-1366, 다문화센터, 이주민지원기관, 복지관, 상담소, 종교기관 등
- ☐ 7) 기타 ()

4. 귀하는 체류권 연장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1) 알고 있다
- ☐ 2) 모른다

5. 귀하는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1) 알고 있다
- ☐ 2) 모른다

6. 귀하의 현재 체류자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1) 미등록 상태 (☞ 7번 문항으로)
- ☐ 2) 영주권 취득자 (☞ 9번 문항으로)
- ☐ 3) 국적 취득자 (☞ 10번 문항으로)
- ☐ 4) 기타() (☞ III-1번 문항으로)

※ 다음 문항(7번)은 현재 미등록 상태인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7. 귀하가 가장 최근에 받은 체류연장의 기한은 얼마입니까?

_____년 _____개월

8. 귀하는 앞으로 체류자격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 1) 체류연장 (☞ 8-1번 문항으로)
- ☐ 2) 영주권 취득 (☞ 8-1번 문항으로)
- ☐ 3) 귀화(국적취득) (☞ Ⅲ-1번 문항으로)
- ☐ 4) 미등록상태 유지 (☞ Ⅲ-1번 문항으로)
- ☐ 5) 본국으로 귀국 (☞ Ⅲ-1번 문항으로)
- ☐ 6) 모르겠다 (☞ Ⅲ-1번 문항으로)
- ☐ 7) 기타 () (☞ Ⅲ-1번 문항으로)

8-1. (1),(2)번 응답자만 답변) 국적취득 계획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 1)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 ☐ 2) 내 자녀들이 내 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 3) 내 본국에 가서 살 계획이기 때문에
- ☐ 4) 한국 국적으로 갖지 않고서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어서
- ☐ 5) 국적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 6)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 수 없는 환경이어서 (☞ 8-2문항으로)
- ☐ 7) 기타 ()

8-2. (8-1 6)번 응답자만 답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요? (중복응답 가능)

- ☐ 1)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 ☐ 2) 남편 및 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서
- ☐ 3) 국적취득을 위한 거주기한을 충족하지 못해서
- ☐ 4) 국적취득을 위한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 ☐ 5) 국적취득을 기다리는 동안 체류자격을 상실해서
- ☐ 6) 기타 ()

※ 다음 문항(9번)은 현재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9. 귀하는 언제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9-1. 귀하가 영주권 신청 후 취득시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9-2. 귀하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1)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 ☐ 2) 한국어가 서툴러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 ☐ 3) 남편 및 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웠다
- ☐ 4) 영주권 취득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 ☐ 5) 출입국사무소 등 공공기관 직원의 까다로운 태도, 불친절, 무시를 경험했다
- ☐ 6)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 7) 기타 ()

9-3.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 1)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 ☐ 2) 남편 및 남편 가족
- ☐ 3) 본국의 가족 및 친구
- ☐ 4)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선주민 친구
- ☐ 5) 법률전문가(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등)
- ☐ 6) 1577-1366, 다문화센터, 이주민지원기관, 복지관, 상담소, 종교기관 등
- ☐ 7) 기타 ()

※ 다음(10번)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0. 귀하는 언제 국적을 취득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10-1. 귀하가 국적 신청 후 취득시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10-2. 귀하는 국적 취득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1)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 ☐ 2)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했다
- ☐ 3) 남편 및 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웠다
- ☐ 4) 국적 취득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 ☐ 5) 출입국사무소 등 공공기관 직원의 까다로운 태도, 불친절, 무시를 경험했다
- ☐ 6) 국적 취득을 위한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 7) 기타 ()

10-3. 귀하는 국적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 1)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 ☐ 2) 남편 및 남편 가족
- ☐ 3) 본국의 가족 및 친구
- ☐ 4)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선주민 친구
- ☐ 5) 법률전문가(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등)
- ☐ 6) 1577-1366, 다문화센터, 이주민지원기관, 복지관, 상담소, 종교기관 등
- ☐ 7) 기타 ()

Ⅲ. 다음은 귀하의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본인을 포함해 모두 몇 명입니까?

총 _____ 명

2. 귀하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 ☐ 1) 남편 ☐ 2) 남편의 부모 ☐ 3) 남편의 형제 및 자매
- ☐ 4) 본국에서 온 가족 ☐ 5) 남편의 친척(부모, 형제, 자매 제외)
- ☐ 6) 자녀 ☐ 7) 기타 ()

3.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총 _____ 명

4. 다음은 귀하의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나이	성별	국적	양육권자	실제 양육자 (실제 키우는 사람)
첫째 자녀	—세	①남 ②여	①한국 ②본국 ③기타()	①본인 ②남편 ③기타()	①본인 ②남편 ③남편가족 및 친지 ④본인가족 및 친지 ⑤기타()
둘째 자녀	—세	①남 ②여	①한국 ②본국	①본인 ②남편	①본인 ②남편 ③남편가족 및 친지

구분	나이	성별	국적	양육권자	실제 양육자 (실제 키우는 사람)
			③기타()	③기타()	④본인가족 및 친지 ⑤기타()
셋째 자녀	—세	①남 ②여	①한국 ②본국 ③기타()	①본인 ②남편 ③기타()	①본인 ②남편 ③남편가족 및 친지 ④본인가족 및 친지 ⑤기타()

5. 한국 체류중 귀하의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들이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대체로 있다	종종 있다	자주 있다
1	나에게 욕설이나 심한 말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를 때리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했다	①	②	③	④	⑤
3	흥기(칼, 가위)로 위협하거나 공격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원하지 않는 때에 성행위를 강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말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를 성추행 혹은 강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낙태를 강요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방이나 창고 등에 감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본국 식구들과 연락을 못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13	본국 방문을 못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14	본국에 송금을 못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남편이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수입을 남편이나 남편 가족이 빼앗아 갔다	①	②	③	④	⑤
17	과도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도록 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18	과도하게 집안일을 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19	한국식 생활방식을 무조건 강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20	친정 부모님이나 나의 모국을 모욕했다	①	②	③	④	⑤
21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5-1~ 5-4) 귀하가 위에서 했던 경험 중 가장 심각했던 사건 하나를 떠올려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 해당 문항에 경험이 없으면(모두 1번 체크인 경우) 6번 문항으로 이동)

5-1. 사건 발생 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 1) 있다 ☐ 2) 없다 (☞ 5-4 문항으로)

5-2.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1) 남편 ☐ 2) 이웃 ☐ 3) 경찰
☐ 4) 본국의 가족 및 친구 ☐ 5)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선주민 친구
☐ 6) 1577-1366, 다문화센터, 이주민지원기관, 복지관, 상담소, 종교기관 등 관련기관
☐ 7) 결혼중개업자 ☐ 8) 기타 ()

5-3.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은 결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 ☐ 1) 그렇다 ☐ 2) 아니다

5-4.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 1)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 2)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 3)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 4)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질 것이 두려워서
☐ 5)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 6) 기타 ()

6. 귀하는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해(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 1) 있다 (☞ 7번 문항으로) ☐ 2) 없다 (☞ 8번 문항으로)

7.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했음에도 귀하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 1) 남편 및 가족과의 갈등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 2)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질 것이 두려워서
☐ 3) 남편 및 남편가족의 보복이나 신고가 두려워서
☐ 4)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 5)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걱정되어서

- ☐ 6)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어서
☐ 7) 본국의 가족들이 반대해서
☐ 8) 기타 ()

8. 귀하는 현재 이혼이나 별거중이십니까?

- ☐ 1) 그렇다(이혼 혹은 별거중) (☞ 9번 문항으로)
☐ 2) 아니다 (☞ IV-1번 문항으로)

※ 다음 문항(9번~19번)은 현재 이혼, 별거 중이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9. 결혼(동거, 사실혼 포함)후 이혼(별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년 _____개월

10. 이혼(별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 1) 남편의 폭력 ☐ 2) 남편의 외도 ☐ 3) 경제적 문제
☐ 4) 남편 가족과의 갈등 ☐ 5) 본인 가족과의 갈등
☐ 6)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 7) 본인의 외도 ☐ 8) 성격차이
☐ 9) 기타()

11. (이혼한 경우) 이혼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 1) 협의이혼 ☐ 2) 재판이혼 ☐ 3) 모른다

12. 이혼(별거) 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1)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 2) 체류자격 연장기간이 단축되었다
☐ 3) 체류자격 연장이 불가하였다
☐ 4) 체류자격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 5)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려웠다
☐ 6) 남편 및 남편 가족이 체류 연장을 방해하였다
☐ 7) 기타 ()

13. 귀하는 ‘면접교섭권’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알고 있다 ☐ 2) 몰랐다
14. 귀하는 이혼(별거)후 현재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 15번 문항으로) ☐ 2) 아니다 (☞ 17번 문항으로)
15. 귀하는 전 남편/남편가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까?
☐ 1) 받고 있다 (☞ 16번 문항으로) ☐ 2) 받고 있지 않다 (☞ 17번 문항으로)
16. 남편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액수는 얼마입니까? 월 _____ 원
17. 귀하는 이혼(별거)후 현재 남편/남편가족이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 18번 문항으로) ☐ 2) 아니다 (☞ IV-1번 문항으로)
18. 귀하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까?
☐ 1) 주고 있다 (☞ 19번 문항으로) ☐ 2) 주고 있지 않다 (☞ 20번 문항으로)
19. 남편에게 주는 양육비의 액수는 얼마입니까? 월 _____ 원
20. 귀하는 이혼(별거)후 자녀를 만나고 있습니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 1) 만나고 있다 (☞ 21번 문항으로)
☐ 2) 만나고 있지 않다 (☞ 22번 문항으로)
21. 귀하가 자녀를 만나는(면접교섭권 행사하는) 횟수는 몇 번입니까?
 월 _____ 회 (☞ IV-1번 문항으로)
22. 귀하가 면접교섭권을 사용하지 않(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남편 또는 남편 가족이 방해해서
☐ 2) 자녀가 원치 않아서
☐ 3) 내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 4) 기타 ()

IV. 다음은 귀하가 이용한 사회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결혼이주민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번호	내 용	안다	모른다
1-1	한국국적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은 정부의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1-2	결혼이주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센터(1577-1366)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1-3	폭력피해를 입거나 갈 곳 없는 결혼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shelter)가 있다	①	②
1-4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및 국적 취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1-5	결혼이주민은 취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2. 귀하는 결혼이주민을 지원하는 기관을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3번 문항으로) 2) 없다 (☞ 4번 문항으로)

3. 귀하가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민 지원기관에 표시해 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 [illegible]

4. 다음을 읽고 귀하의 현재 마음 상태에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숙하지 않은 이국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에 온 후 여러 가지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문화에 적응하려고 할 때 열등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인종이나 피부색 때문에 한국인과 다르게 취급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많은 사람들은 내 문화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이주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한국 사람들이 내 모국의 문화(문화, 종교, 생활방식)를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이 한국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언어차이 때문에 내 생각을 표현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신경이 많이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12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한국의 식생활이나 요리같은 음식문화에 적응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4	한국의 문화전통을 이해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친한 친구가 한명도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내 솔직한 감정을 내 친구들에게 표현하기 꺼려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한국에서 아직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시댁에서 모국 친정가족을 배려해주지 않아 서운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친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	①	②	③	④	⑤
20	현재 결혼생활이 친정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시댁에서 나에게 친정가족과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2	집안 일에 시댁 식구들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내 자녀들이 내 모국의 신념과 가치를 따르려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결혼이주민의 체류보장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마련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를 선택해 우선순위대로 좌측 □칸에 1,2,3순위까지 표기해 주세요)

- ☐ 1) 현행 제도 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 2)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 ☐ 2-1) 배우자(남편)의 동의 요건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
 - ☐ 2-2)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활용 수준 정도를 낮춰져야 한다.
 - ☐ 2-3) 국적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재산기준이 낮춰져야 한다.
- ☐ 3)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 ☐ 4)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 ☐ 5)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 ☐ 6)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 ☐ 7) 기타 _____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부록2.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대상자 대상 설문조사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 태 조 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시간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의 일환으로써, 결혼이주민의 인권실태 파악을 통해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설문은 국내 거주 결혼이주민의 인권실태에 대한 통계마련과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신 대로 답해주시고, 다소 불편하고 귀찮으시더라도 각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설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 연구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 연구책임자 : 김은정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복지학과)

<설문 응답 방법>

- 해당번호를 적거나 빈칸에 ✓를 표시하고 괄호 안에는 구체적 답변을 써주십시오.
-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I. 기본사항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여성

☐ 2) 남성

2. 귀하의 연령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세

3. 귀하의 현재 근무기관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출입국관리사무소

☐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 3) 결혼이주여성(이주민) 지원기관, 이주여성쉼터

☐ 4) 결혼이주여성 당사자조직

☐ 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6) 기타 (_____)

4. 귀하는 직무수행과정에서 결혼이주민을 접할 기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1) 거의 만날 기회가 없다

☐ 2) 한 달에 1~2회 정도

☐ 3) 1주일에 1~2회 정도

☐ 4) 1주일에 3~4회 이상

☐ 5) 거의 매일 만난다.

5. 결혼이주민이 해당기관을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1) 체류기간 연장 관련

☐ 2) 체류자격 변경 관련

☐ 3) 영주자격 취득 관련

☐ 4) 한국국적 취득 관련

☐ 5) 가족관계 유지, 가정폭력 관련

☐ 6) 취업 및 경제적 활동 관련

☐ 7) 한국어 습득 및 문화 적응

☐ 8) 기타 (_____)

6. 귀하가 (결혼)이주민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총 재직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II.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사항

7. 결혼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다음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의 견	찬성 한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반대 한다
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없이 '2년 범위 내'가 아닌 '2년'으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별거, 이혼소송, 배우자 실종의 경우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6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해 방문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꼭 주소지 관할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결혼이주민의 영주자격 변경허가 관련, 다음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의 견	찬성 한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반대 한다
1	'품행 단정' 허가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의 결혼이주민은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유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국내 체류한 결혼이주민에게도 영주자격이 신청 가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결혼이주민의 국적취득(귀화) 관련, 다음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의 견	찬성 한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반대 한다
1	결혼이주민에게 국적취득 조건과 절차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면접시험 2회 불합격에 대해 결혼이주민의 귀화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결혼이주민 관련 정부정책

10.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관련 다음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의 견	찬성 한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반대 한다
1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특정 국가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 것은 출신국가 차별의 소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시간(3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프로그램 내용은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관련 다음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의 견	찬성 한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반대 한다
1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부부동반 집합 프로그램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을 2년 부여하는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시간(3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프로그램 내용은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다음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의 견	찬성 한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반대 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결혼이주민 대상 프로그램 방향 관련 다음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의 견	찬성 한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반대 한다
1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한국문화를 배우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사회 적응과 함께 자기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의 견	찬성 한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반대 한다
1	결혼이주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한국인이므로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협하는 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 1)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폭력 피해
- ☐ 2) 국적 및 영주권 취득과정에서의 어려움
- ☐ 3) 자녀의 국적 취득 제한
- ☐ 4) 이혼 및 재혼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 위험
- ☐ 5) 취업 및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
- ☐ 6)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배제
- ☐ 7) 기타 ()

16.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를 선택하여 우선 순위대로 좌측 □칸에 1,2,3순위까지 표기 바람)

- ☐ 1) 현행 제도 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 2)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 ☐ 2-1) 배우자(남편)의 동의 요건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
 - ☐ 2-2)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활용 수준 정도를 낮춰져야 한다.
 - ☐ 2-3) 국적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재산기준이 낮춰져야 한다.
- ☐ 3)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 ☐ 4)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 ☐ 5) 자녀유무 및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체류자격 유지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 ☐ 6) 결혼이주민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 ☐ 7) 기타 _____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인쇄일 | 2017년 11월 18일
| 발행일 | 2017년 11월 18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02-2125-9841
| F A X | 02-2125-0918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 제 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代)

ISBN: 978-89-6114-585-5 93330 비매품

